www.mpb.go.kr

2026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26. 9.

III

기획예산처
보조사업평가단

목 차

제1부 서 론

제1장 국고보조금의 개요

1. 국고보조금의 의의 ····· 3
2. 국고보조금의 기능 ····· 5
3. 국고보조금의 유형 ····· 6
4. 국고보조금 근거 법률의 주요 내용 ····· 10

제2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 13
2.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 14

제3장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근거 및 방법

1. 법적근거 ····· 15
2.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주요 특징 ····· 15
3.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정 ····· 16
4. 2026년 평가단 구성 ····· 19
5. 평가 절차 ····· 24
6. 평가 기준 ····· 25

제2부 평가결과 분석

제1장 최종 판정 결과 총괄 분석

1.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 ····· 31
2.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 ····· 31

제2장 부처별 판정 결과

1. 부처별 최종 판정결과 ····· 32
2. 부처 세부사업별 판정결과 및 2027년 예산안 ····· 37

제3부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1. 대법원 ····· 69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5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79
4.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85
5. 재정경제부 ····· 9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5
7. 교육부 ····· 137
8. 외교부 ····· 219
9. 통일부 ····· 233
10. 법무부 ····· 259
11. 국방부 ····· 287
12. 행정안전부 ····· 295
13. 국가보훈부 ····· 375
14. 문화체육관광부 ····· 409
15. 농림축산식품부 ····· 685

16. 산업통상부 ····· 925
17. 보건복지부 ····· 1053
18. 기후에너지환경부 ····· 1325
19. 고용노동부 ····· 1551
20. 성평등가족부 ····· 1603
21. 국토교통부 ····· 1655
22. 해양수산부 ····· 1747
23. 중소벤처기업부 ····· 1887
24. 식품의약품안전처 ····· 1969
25. 지식재산처 ····· 1995
26. 국가인권위원회 ····· 2013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19
28. 공정거래위원회 ····· 2103
29. 금융위원회 ····· 2107
30. 국민권익위원회 ····· 2117
31. 조달청 ····· 2121
32. 우주항공청 ····· 2125
33. 재외동포청 ····· 2129
34. 방위사업청 ····· 2141
35. 경찰청 ····· 2151
36. 소방청 ····· 2155
37. 국가유산청 ····· 2165
38. 농촌진흥청 ····· 2207
39. 산림청 ····· 2235
40. 질병관리청 ····· 2299
41. 새만금개발청 ····· 2339
42. 해양경찰청 ····· 2345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해외취업지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중장년층취업지원
상생협력 확산지원
취약노동자지원
노사발전재단지원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고용안정장려금
직장어린이집지원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공공 고용 인프라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최근 3년간 집행률은 99% 내외로 양호하며, 서비스 수혜 인원도 예산 규모 대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다만, 성과관리가 참여자 수·만족도 등 산출지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취업률·고용의 질·지속근속 여부 등 결과지표 기반의 효과성 검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본 사업은 구조적으로 성과평가가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엄밀한 사업 효과 분석이 요구됨 · 또한 '26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어, 성과 검증 고도화 및 재정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운영비 일부 조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핵심 서비스는 유지하되, 효과성 평가 체계를 정교화하고 간접적 운영비 일부를 소폭 감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청년고용 정책의 실행 기반을 제공하는 인프라 사업으로서 정책 목표와 부합함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민간 자율에만 맡길 경우 안정적·지속적 운영이 곤란하므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유사 사업과 기능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직접 취업프로그램과 달리 상시적 인프라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중복성은 제한적인 수준임

○ 청년고용 지원 인프라의 운영·관리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어 목적 부합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전국 단위 인프라 운영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는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됨
- 다만, '26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직접 서비스 항목은 일부 감액된 반면 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간접적 행정·운영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는 효율화 및 일부 조정 여지가 존재함

○ 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에 따라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 - 지역 - 현장 간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확보되고 있음
- 보조금 관리 및 점검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성과 분석 결과가 예산 구조 조정이나 운영비 효율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는 다소 제한적이며, 체계적 환류 장치의 보완이 필요함

○ 청년층의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인프라 구축 측면의 성과는 확인됨

- 최근 수혜 인원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는 확인되고 있으나, 보다 엄밀한 사업 효과 분석이 요구됨

- 단기적으로는 본 사업 수혜 기관·학생과 비수혜 집단 간 성과 비교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준실험적 설계 또는 임의배정 방식을 활용하여 인프라 지원의 순수 효과를 식별하는 체계적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기본적 운영 성과가 인정되나, 재정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운영비 일부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성과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해외취업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보조사업의 실집행액 대비 반납액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이므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실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고 질적 성과 중심의 구조로 체질 개선 필요 - 청년 정책과의 높은 정합성 및 취약계층 지원 성과가 우수하나,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질적 성과 관리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아울러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한 해외 센터의 현지 보호 및 자문 기능 강화 유지 - 또한 기존의 단순 알선 및 인프라지원 중심 예산에서 벗어나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재유입을 고려한 예산 구조로 재편 검토 권고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국내 채용 시장의 경력직 선호 경향에 대응하여 청년들에게 글로벌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해외 현지 인프라를 활용한 정보제공 및 알선 기능은 고유하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해외 센터의 기능이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칠 경우 국내 고용센터나 민간 플랫폼과의 기능성 차별성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

○ 사업계획 적정성

- 해외 K-Move 센터를 통해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한 현지 노무·법률 자문과 취업자 안전 모니터링 강화, 단순 알선을 넘어선 현지 정착 지원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공급자 중심의 단순 송출 구조에서 벗어나, 해외 취업 이후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재유입 및 글로벌 인재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구조 재설계 필요

○ 집행 효율성

- 해외 K-Move 센터 운영 및 취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실집행액 대비 집행 잔액(불용액)이 매년 증가추세. 성과 왜곡없이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 조정 필요. (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액 '23년 4.2억, '24년 7.2억, '25년 11.4억 원으로 상승)

-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해 엄격히 관리 필요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해외취업자 수> 중심 지표는 성과 왜곡 유발 가능하므로 단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현지고용유지율, 수혜자 체감 만족도 등 사업의 실질적 기여도와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한 성과관리 필요

○ 제언

- 질적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 도입과 성과지표 개선, 행정 효율성 및 관리 엄정성 강화와 더불어, 단순히 청년 인력을 해외로 송출하는 방식의 사업 운영은 국가 인력

수급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24년 일자리사업평가)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기존의 단순 알선 및 인프라 지원 예산에서 벗어나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재유입을 고려한 예산 구조로 재편 검토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사업은 청년들의 구직기간 장기화 및 일경험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수요, 국정과제(96-4)와의 연계 등 정책적 타당성은 매우 높으나, 약 3,000억 원의 대규모 예산 규모 대비 실집행 부진 및 과정 중심 성과관리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함 - 사업 주기 조기화와 단순 만족도를 넘어선 결과 중심 성과지표와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시간 이상징후 포착 시스템 또는 신고 보상제 도입 등으로 데이터 기반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 결산 시점의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보조금 사업에서 실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운영기관의 실질적 집행 역량 대비 예산이 매년 과다 편성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의 적시성이 저해될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실집행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높은 청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참여기업 발굴에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 · 결론적으로 청년실업 돌파를 위한 국가적 중요도와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개선으로 평가하나, 차년도 사업 개선과 관련한 결과 확인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국정과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수시·경력직 중심 채용환경 변화에 맞추어 미취업 청년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또 중소기업의 정보 부족과 멘토링 부담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시장 실패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인 일모아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앙-지방 간 사업 정보를 실시간 연계함으로써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확인됨

○ 사업계획 적정성

- 인턴형·프로젝트형 위주로 내실화, 도전프로그램과 성장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한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우수함. 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참여 수당을 설정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확보한 점도 적정함

○ 집행 효율성

- 2차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여 매년 수십억 원의 불용액 발생. 성과와 결산 시점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결되지 못하고 익년도로 연차적으로 순연됨에 따라, 정부의 단년도 예산 주기 상 불일치하여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 결산 시점의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보조금 사업에서 실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운영기관의 실질적 집행 역량 대비 예산이 매년 과다 편성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의 적시성이 저해될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실집행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높은 청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참여기업 발굴에 더 노력할 필요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약 3,0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에 비해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이 미흡,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보다 하향하여 보수적으로 설정됨.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률 및 연계율, 구직 의욕 및 자신감 변화 정도 등과 같은 결과지향적 지표로의 전환과 도전적 목표 설정 필요

○ 주요 제언

- 재정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실집행 관리 체계 개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결과지향적인 성과관리 체계로의 고도화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상위 정책 목표(단위사업, 프로그램, 국정과제, 대통령 공약 등)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직업계고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을 개선하고 고졸 취업이라는 정책 아젠다를 실행하기에 적절한 사업이라 평가됨 - 본 사업은 높은 취업률과 모집 경쟁률을 통해 사업성과가 어느정도 입증되었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모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상위 정책 목표(단위사업, 프로그램, 국정과제, 대통령 공약 등)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정 92-3) AI 인재 양성과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연계하여 본 사업은 효과가 있음

- 본격적인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고교 재학 3년간 단계별로 체계적인 신기술 훈련을 제공하여 직무·취업역량을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형 실무 인재를 노동시장에 배출하여 국가 성장 동력 확보하고 있음

  * ①A고 AI로봇학과: 사업 참여 전후 취업률 30%→65.7% 향상 ②B고 반도체케미컬과: 오퍼레이터 뿐 아니라 신소재 연구직 등 취업의 질 향상 ③C고 항공모빌리티과: 창업, 특허출원을 통한 경력개발 경로 다각화

○ ’25년 대비 지원 학과가 확대되었음

- 민간 전문훈련기관과 연계하여 학년별로 단계적 실습 훈련과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학과당 연 8천만 원을 지원함

  * 훈련운영 및 사업관리, 교원 신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비용으로만 편성

○ 보조금 집행률

- 최근 3년간의 집행률 100%로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설정하였음

- 단, 현장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 매년 신규 학과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26년 10개 학과 선정 안내를 위한 설명회에 75개교가 참여하는 등 현장 반응이 높은 사업임

- 모집 경쟁률 또한 매년 증가 추세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참여학과 모집경쟁률: (’25) 6.7:1 (‘26) 6.5:1

○ 국가 및 고졸 취업 활성화·공정 성장(국정96 A-14-6) 이행 노력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었음

- 사업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취업률 측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남

○ 우리나라 직업계고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을 개선하고 고졸 취업이라는 정책 아젠다를 실행하기에 적절한 사업이라 평가됨

- 본 사업은 높은 취업률과 모집 경쟁률을 통해 사업성과가 어느정도 입증되었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모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사업추진 성과가 높은 편이며, 예산 책정 기준 및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을 '25년 218백만원에서 '26년 283백만원으로 29.8% 증액하였는데, 예산 증액폭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지원인원과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책정은 적절하다고 평가함. 특히 '25년 본예산과 2차추경을 합한 예산총액이 34,561백만원보다는 적은 규모의 예산이 책정됨 - 최근 3년간 지원 인원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책정하는 논리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25년 2-7월 월평균 지원인원(1,602명)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책정하였다는 점에서 사업 예산 책정 논리는 비교적 간명함 - 단순 출산급여 지원 이외에 지원 이후의 노동시장 복귀율 등 핵심성과를 반영한 정책 개선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의 지속 증가, 특고·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순수 지원 금액만 사업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별도 홍보·운영비 등이 없어 사업 감액은 곧 지원 대상의 축소로 이어져 저출생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성의 출산보호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 사회안전망 정책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비정형 고용 여성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단절 위험이 높아 국가 재정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

- 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활동 지속이라는 국가 핵심 과제와 연계된 정책으로 인구정책 및 고용정책 측면에서 정책 타당성이 높음

○ 집행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재정집행 구조를 확보함

- 신청·지급 절차가 단순하고 전산시스템 기반 자격확인 구조를 통해 집행지연 및 불용 발생이 낮은 안정적 집행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출산 전후 소득공백을 보전하는 구조로 정책 설계는 전반적으로 적절함

- 임신·출산 전후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은 모성보호 정책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며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설계임

- 신청절차 간소화와 온라인 신청체계 도입 등 이용자 접근성을 개선하여 정책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구조로 평가됨

○ 지원인원 및 단가를 기준으로 한 예산 책정 구조는 비교적 합리적임

- 최근 지원 인원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산정한 점은 정책수요 기반 예산 편성 원칙에 부합함

- ’25년 대비 29.8%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수급 기준 인원(1,602명)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하여 지급단가 기준에 따라 예산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예산 산정이 객관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이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연계된 정책 수단이라는 점 이외에도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의 지속 증가, 특고·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수요 증가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정책의 중장기 효과 검증과 유사사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함

- 현금지원 중심 구조로 인해 노동시장 복귀 효과 등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중장년층취업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타당성이 높고 사업성과가 높은 편이나, 예산효율화 가능영역에 대한 분석 강화가 요구됨 - 사업의 성과지표인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자 수와 전직지원서비스 수혜자 취업률 모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성과기반 예산 편성의 관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인 중장년내일센터의 사업 성과는 우수하며, 향후에도 면밀한 성과관리를 통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 중장년 특화 고용 인프라 예산은 동 사업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예산 삭감시 중장년 대상 고용서비스 위축이 불가피하여 보조사업으로 운영중인 중장년내일센터 등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중장년층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

- 구조적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력전환·재취업 지원 정책은 노동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정책수단으로 평가됨

-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자 수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중장년 수요를 반영하여 타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및 질적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함

- 지자체 중장년 일자리 사업, 민간 재취업 프로그램 등과의 기능 중복으로 정책수단간 분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중장년내일센터에 구직등록한 중장년 등에 심층상담, 생애경력설계 교육 등을 통해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 다른 고용서비스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함

- 사례 관리 중심의 사업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경력이음형(기존 직무에 대한 업·리스킬링), 경력전환형(기존 직무에서 새로운 직무로 전환) 등 사례 관리형 중장년 취업지원이 필요함

- 단기 취업성과 중심의 정량지표 외 중장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 질적 지표의 반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집행률 100%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혜자 증가폭과 사업성과를 고려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짐

- 최근 3년간 집행률이 10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고용센터 인프라와 민간기관 연계 전달체계를 통해 정책 접근성과 서비스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음

- 중장년내일센터 구직자 수 증가폭 및 서비스 수혜자 증가폭이 제한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성과기반 예산조정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중장년층 취업 지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중장년 내일센터의 사업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에 의한 사업 개선 노력의 강화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상생협력 확산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노·사 및 노·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도모하는 중장기 정책수단으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예산 측면에서는 2024년 결산(약 204억 원) 이후 2025년에 대폭 감액(△58%)되었다가 2026년에 일부 회복(+37.6%)되는 흐름을 보이며, 이는 단순 확대·축소라기보다는 내역사업 조정 및 구조 재편 과정으로 해석됨 · 성과 측면에서는 지역·업종 단위 상생협약 체결, 협력사 근로환경 개선 사례 축적 등 일정 수준의 정책 성과가 확인됨 - 다만 고용·임금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정성적 사례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어, 사업의 실질적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 사업 참여기관과 미참여기관을 엄밀히 비교·분석하여 객관적 성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감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자료를 활용해 임금체계 변화 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존재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노·사 및 노·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도모하는 중장기 정책수단으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정상적인 추진이 타당함

-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이 높고, 단기 고용창출이 아닌 구조적 노동시장 개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책 목적이 분명함

- 상생임금 도입, 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은 민간 자율만으로 확산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재정의 촉진적 개입 필요성이 인정됨

○ 예산은 2024년 이후 2025년에 대폭 감액되었다가 2026년에 일부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며, 이는 단순한 축소라기보다는 내역사업 조정 및 구조 재편 과정으로 해석됨

- 일부 사업 종료 및 재편을 통해 핵심 사업 중심으로 구조를 정비한 점은 효율화 노력으로 평가됨

- 현 수준의 예산 규모는 정책 목표 대비 과도하지 않은 범위로 판단됨

○ 집행률은 최근 연도 90% 중·후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규모 불용이나 반복적 이월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 중앙 - 전문기관 - 지자체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는 기능 분담이 비교적 명확하나, 수행주체 다수에 따른 관리 부담은 상존함

- 향후 성과 분석 결과가 차년도 사업 설계에 보다 체계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함

○ 성과 측면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및 협력사 근로환경 개선 사례 축적 등 일정 수준의 정책 성과가 확인되나, 정성적 성과 중심의 제시로 인해 고용·임금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향후 사업 참여기관과 미참여기관을 엄밀히 비교·분석하여 객관적 성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감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자료를 활용해 임금체계 변화 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존재함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취약노동자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기존 사업의 집행 안정성은 인정됨 - 다만 2026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일부 항목은 정책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단계임 - 이에 따라 신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후 성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감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에서 제한적인 감액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취약노동자 보호 및 고용 안전망 보완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인정됨

- 다만, 2026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된 세부 항목은 2025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기존 사업과의 역할 구분 및 추가적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 사업 목적과 기본 구조는 타당하나, 신규 도입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 단계로 성과와 효과를 판단하기에 이른 측면이 있음

- 신규 항목의 경우 단계적 도입과 성과 확인을 전제로 한 신중한 사업 운영이 필요함

○ 전반적인 예산 집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신규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및 효과 측정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현시점에서의 예산 확대는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기존 사업 중심의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취약노동자지원 사업은 노동시장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기존 사업의 집행 안정성과 기본적인 성과는 확인됨

○ 그러나 2026년에 새롭게 편성된 일부 예산 항목은 정책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단계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신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후 성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감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에서 제한적인 감액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노사발전재단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사업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규사업 추진과 사무실 이전 비용 등 예산 편성 논거를 명확하게 제시함 - '26년 예산에서 기존사업의 예산은 동결하고 신규사업의 예산을 추가하는 형태의 예산 책정이 이루어졌으며,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비용 및 사무실 이전비용,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신규사업인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과 일반관리비에 대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의 경우 코칭과 프로그램 각각의 건수에 단가를 곱한 것으로 예산 편성의 논거가 비교적 간명하고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일반관리비 예산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과 신규 사업 추진 및 정원 증원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실질 운영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운영비 정체로 발생하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정 재원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관 내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면서 중복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추진 효율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다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업별 목표지표,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별 정책효과 검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국가 책무 이행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임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사상생협력 교육, 노사협의회 활성화, 글로벌 노사관계 지원 등을 수행하며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사안정에 직접 기여함

- 노사갈등 예방·조정,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구조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노동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가치가 인정됨

○ 취약근로자 보호와 전직지원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성격의 사업으로 정책추진 가치가 큼

- 산업전환·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재취업과 전직지원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고용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수단임

- 상생협력 교육, 제도개선 컨설팅 등은 수익창출 구조가 약해 안정적 재정투입이 필요하며, 수행기관이 전액 보조·위탁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도 재정지원 필요성을 뒷받침함

- 다만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사업, 갈등조정 사업과 일부 기능적 중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목적과 수혜 대상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 집행률 100%로 재정집행 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예산 집행계획, 정기 점검, 실적관리 체계가 운영되어 집행관리의 안정성이 확인되며 불용률 감소 등 집행 측면의 성과도 양호함

- 집행속도 관리와 예산 통제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됨

○ 고정비 성격의 경상운영비 및 노동 관련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 ’26년 현재 고정비 비율은 88.6%이며, 기관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됨.

- 원·하청 간 사회적 대화,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실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신규사업이 재단에 집중되고 있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 효율성 강화를 통해서 예산 효율성을 확보 방안 강구가 필요함

- 사업비 책정의 근거가 명확하고 신규 사업추진에 따른 실질 운용 수요를 감안할 때, 경상운영비 정체로 발생하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함

- 다만 기관 내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면서 중복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추진 효율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목표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정책효과 검증체계 강화가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내역사업 중 '총괄관리'는 민간경상보조(320-01) 형태의 보조사업으로,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 100% 국고 보조율로 지원되며 법적 근거에 따른 수행기관 지정, 다층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정수급 이력 부재 등 관리 체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임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내역사업 중 '총괄관리'는 민간경상보조(320-01) 형태의 보조사업으로,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 100% 국고 보조율로 지원되며 법적 근거에 따른 수행기관 지정, 다층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정수급 이력 부재 등 관리 체계가 양호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6년 예산 요구서상 운영비 증액(5억 → 6.7억) 요구가 확인되는바, 단순 행정비용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을 조건으로 연장을 승인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확정 예산 5억 원은 전액 사업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집행 가능 비목은 「노사발전재단 예산운용가이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됨

- 일반수용비 (210-01): 심사위원회 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우편료, 송금수수료 등
- 임차료 (210-07): 심사 및 평가장소 대관료 등
- 여비 (220): 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을 위한 국내 출장비
- 업무추진비 (240): 회의 및 행사 관련 식대 (집행 제한적)

* 인건비는 별도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으로 편성되므로, 본 보조비목(총괄관리)에서는 순수 사업관리비(운영비)만 집행 가능함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전문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에 따른 수행기관 지정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

- e나라도움 활용: 월별 집행상황 점검 및 증빙서류 검증을 상시 수행함
- 다층적 점검: 집행부서-회계부서-감사부서-고용노동부로 이어지는 4단계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검증을 실시함
- '25년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계획(7월, 12월)을 수립하여 서면 및 현장 점검 병행

○ 본 보조금은 연간 400억 원 규모, 4,800여 개 사업장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본사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필수 행정비용으로 보조사업(총괄관리) 중단 시 컨설팅

품질 관리, 수행기관 평가,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핵심 관리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므로 사업 연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 전체 사업비 대비 총괄관리비는 과도하지 않지만, 관행적인 운영비 증액이 되지 않도록 집행 내역(특히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밀 정산을 지속하여 경비 절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2026년 예산에서 주거 지원뿐 아니라 지역정착 지원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가파르게 순증한 점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 전반에 대한 급격한 예산 감액은 현재 추진 중인 기숙사 건립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음. 다만,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에 지원되는 2,0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은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매칭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담센터의 추가 확충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존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와 생활·정착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본적인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은 유지되고 있음

- 기존 사업 집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26년 예산에서는 지역정착 지원 및 공공주거시설 지원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확대됨

- 다만 확대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및 효과 검증 체계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임
- 특히 신규·확대 사업의 경우 정책 효과를 단기간 내에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사업 전반에 대한 급격한 예산 감액은 현재 추진 중인 기숙사 건립 사업 등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에 지원되는 2,0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은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매칭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효율화 노력이 필요함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중요한 영역임

-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상담센터 추가 확충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중앙정부 재정 부담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사업 확대 및 재정 투입은 성과관리 체계와 역할 분담 구조를 보다 체계화한 이후, 정량적 성과와 정책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보조사업은 지방소멸·수도권 집중·5극3특 전략과 연계된 필요성은 크지만, 2006년 이후 유사 프로그램 확대 중심으로 운영되어 2026년부터는 5극3특·초광역 노동시장 통합에 부합하는 일자리 이음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조 재편이 필요함 ·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39.1% 증액되었으나 일부 내역(지역상생형 일터조성·산업인자위 지원 등)은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약하고 타 사업과 기능 중복 소지가 커 신규·증액분 전면 재검토 및 통합·이관, 전체 예산의 '기존 수준 유지 또는 일부 축소' 관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실집행률·부정수급 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지자체 간 집행·성과 편차와 절차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성과지표도 거시·참여자 지표 중심으로 한계가 있음 · 지역상생형 일터조성·산업인자위 지원 등은 유사사업과의 통폐합·이관을 전제로 재편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지방소멸·수도권 집중 대응 및 5극3특 전략과 연계된 지역일자리 수단으로서 정책 필요성은 있으나, 장기간 사업에도 불구하고 향후 일자리이음프로젝트 성과 분석·환류 체계를 통해 실제 균형발전·노동시장 통합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음

○ 국가 고용책무와 국정과제를 근거로 재정투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2026년 39% 증액 후 중기적으로 다시 축소되는 예산 구조는 안정성과 설득력이 떨어지며, 특히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는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만큼 현 수준 재정투입의 유지·증액 필연성은 제한적임

○ 자치단체가 자체 설계하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직접 중복 위험은 크지 않으나, 사업유형 간 대상 중복 가능성이 있고, 2026년부터 일부가 균특 포괄보조로 전환되는 만큼 자율계정·지원계정 간 기능·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관리가 필요함

○ 5극3특 전략과 연계한 일자리이음프로젝트, 초광역 연계, 지역일자리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향은 타당하지만, 세부 실행 로드맵·대상선정·종료기준 등은 지자체 컨설팅을 통해 보완해야 하고, 일부 내역(지역상생형 일터조성, 산업인자위)은 상위 전략과의 연계성이 약함

○ 2026년 예산이 39% 이상 급증했다가 2027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구조는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국정과제 관련 자치단체 지원은 소폭 증액에 그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성격의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는 향후 타 사업 이관·구조조정을 전제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3년 총괄 집행률은 99% 내외, 자치단체 실집행률은 평균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자치단체 간 집행률 편차가 큰 만큼 향후 지원 대상 선정 시 전년도 실집행률 등 지표를 반영해 집행역량을 고려한 배분이 필요함

○ 공모 - 심사 - 교부 - 집행의 표준 구조와 상향식 설계, 전문기관 참여 등 전달체계는 체계적이나, 자치단체 역량 차이로 성과 편차가 큰 만큼, 보조율(국비 비중)을 일률 유지하기보다 평가결과·실집행률에 따라 지방비 매칭을 차등화하는 방식의 보완이 요구됨

○ 부정수급 비율은 0.1% 미만으로 낮지만, 집행기준·절차 위반 사례는 다수 적발되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 대상 집행 교육과 자율점검·현장점검 강화로 1건당 규모가 큰 부정수급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평가에서는 대체로 양호 평가를 받았으나, 이는 기존 구조 전제 지표에 기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어, 국회 지적 이후에야 일부 감액·기준 상향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성과지표 개편·정산기한 단축 등 향후 개선 계획의 실제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함

○ 고용률·고용창출·만족도 지표는 목표를 상회하나, 거시 고용률은 개별 사업 기여도를 분리하기 어렵고, 취업자 수는 최근 감소 추세여서 예산 확대보다는 질 중심·선택적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균형발전 효과를 보여주는 성과지표는 여전히 미흡함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차년도 예산에 대해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 완화와 보험 제도 접근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는 인정되나 책임 주체가 분산되어 정책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또한 26년 예산에서 감액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지속적인 불용액이 발생하여 왔으며, 현재 성과목표의 설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성과 달성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종합평가 의견

○ 현재 사업의 추진구조는 고용노동부 → 예산 교부, 근로복지공단 → 산정·지급 관리, 보험사무대행기관 → 신청 및 현장 업무로 이어지는 3단계 위임 구조임

-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대행기관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는 분명하며, 특히 e나라 도움을 통한 예산 관리와 실적 기반 지급 방식은 행정 절차의 표준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3단계 위임 구조를 가지는 만큼 책임의 주체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지원금의 정책효과가 낮을 때 어느 단계의 책임인지를 명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단가 인상 조치 역시 '25년에 신설되었으나, 정책성과와의 직접적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사무 대행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단순 신청 건수 증가 중심 운영, 실제 보험 적용 확대와의 괴리, 형식적 업무 증가 가능성 등이 우려됨

- 행정비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하는데, 특히 지원금이 대행실적에 연동되는 방식은 정책목표 달성보다 업무량 확대 중심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어 성과관리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은 법령에 따른 지정형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부정수급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 수행이 다층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실적의 실질성 검증과 사후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됨

- 특히 자부담 검토가 제외된 정액 보조 구조는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의 내실화, 효과적인 활용 지원을 위한 사업 방식 변경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험사무 대행지원금 지급 고시 개정으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 보수원클릭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였음

- 구체적인 방안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지원단가를 상향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이 부분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제도 접근성 유지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단가 인상이 '25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만큼, 실제 보험 적용 확대나 정책성과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추후 환류 및 관리가 필요함

○ 성과지표의 측면에서 5개년 실적으로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산정하나 후에 β분포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치를 산출하여 달성도를 도출한 결과 2024년 108.3, 2025년 109.0%로 제시되었으나, 제시된 성과목표치 산출 방식은 통계적으로 정교하게 보이나 성과관리의 본질적 목적인 도전적 목표 설정과 지속적인 개선 유인 제공에 실패할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소표본(n=5)에 기반한 분포 추정은 통계적 신뢰성이 낮으며 이상치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과거 실적의 분포를 목표의 기준으로 삼는 구조는 래칫 효과를 내재화하여 부처의 실적 억제 유인을 제거하지 못함. 셋째, 추세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지속적 성과 개선을 유도하는 목표 설정 원칙과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외형상 계량적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표치는 사실상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음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판정결과: 사업개선 - 본사업은 「고용보험법」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여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목표는 적정하다 판단됨 - 단, 중소기업이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성과지표 발굴 필요 - 성과지표 달성도는 200프로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바,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됨 - 보조금 사업 3개년 예산 집행률 100% 달성 - '27년 사업 계획시 재정의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일부 조정하기 바람

□ 종합평가 의견

○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보조)은 「고용보험법」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여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목표는 적정하다 판단됨

- 국정과제 번호: 92번 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3~'27) 등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음

- 또한, 중소기업이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새로운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있음

○ 새정부 기조(노동시장 AI인재양성) 및 AI훈련 확대에 따른 새로운 평가지표 발굴 필요성이 제기됨

- 중소기업AI훈련확산센터의 민간AI전문가를 통해 AI훈련 로드맵 수립(2,000개소) 및 현장문제해결을 위한 AI훈련(600개소)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 목표달성도 관리할 예정임

○ 단, 보조사업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확인한 결과, AI 훈련 체계 수립 단가 등 일부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점검결과 적발 이력은 없음

- 보조 사업 부정수급 관련 증빙 확인 결과, 특이 사항은 없음

- 연중 현장점검,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부 지원금 집행 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음

- 민간경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관리 노력 이외에 예방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고 관리하고 있음.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음

○ '24년 보조사업평가 결과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과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편하여 성과 환류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함

- 단, 중소기업이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성과지표 발굴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판정: 감액 - 본 사업은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 훈련 모델로 민간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을 공급하고 있음.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참여 기관 간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대정부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컨소시엄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점은 우수함 - 단, AI 직업훈련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사업이라는 고비용 훈련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관리 방안과 적극적인 사업개선 노력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대중소상생현형 공동훈련센터 훈련 모델로 민간 훈련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을 공급하고 있음.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담됨

- 참여 기관 간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대정부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컨소시엄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점은 우수함

- 공동훈련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 신설과 관련하여 AI 기반 직무·공정 전환(AX) 훈련 수요 등을 기반으로, 기존 공동훈련센터와의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음

○ 공동훈련센터 축소로 인해 사업의 직접수혜자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적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공동훈련센터는 없는지 검토 필요

- 컨소시엄 사업 내실화를 통해 절감한 비용으로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확충 등 고숙련·첨단 인프라 집중 투자 검토 필요

- 운영 프로세스 점검·개편 및 부실기관 정비를 통한 훈련품질 제고 및 예산 절감으로 확보된 재원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확충 등 고숙련·첨단 인프라에 재투자 필요

○ 부정 수급 관리를 위해 정기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중임. 특히 원격훈련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활동 계획 마련이 중요할 것임

- 전담자 인건비 부정 수급에 대한 반환 명령, 출결관리 부정에 대한 해당 직종 6개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과기부 감사 결과 보조금 지급 목적 외 사용으로 보조금 반환 처분을 이행한 부분은 적정하다 판단됨

○ 하지만, AI 직업훈련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사업이라는 고비용 훈련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성과관리와 사업 개선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판정: 정상추진 - 동 사업은 기업이 청년을 선채용 후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을 양성하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지역 정착률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하는 측면에서 우수함 - 대통령 공약인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를 위해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산 지원하는데 기여함 - 학습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음. - 단, 일학습병행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정부주도 보다는 산업계와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산의 효율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 바람 - 본 사업은 "청년"의 도약을 위한 숙련 향상 및 지역 정주화 지원을 위하여 도제훈련부터 경력개발고도화까지 비수도권 운영기관 확대를 통해 지역 완결형 후학습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노력하는 점에서 우수함

□ 종합평가 의견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 사업은 기업이 청년을 선채용후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을 양성하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지역 정착률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였음

- 대통령공약인 청년의 일할 권리과 기회 강화를 위해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산 지원하고자 노력함

- 학습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음

- 단, 일학습병행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정부주도 보다는 산업계와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의 효율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검도 요구됨

- 재직자 훈련 유형의 일학습 병행에 대한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보조사업)

- 부처가 소명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대한 20%의 자부담 비율은 타 사업 등 현황을 감안하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

  * 예) 정부R&D사업 중소기업의 경우, 자부담 20% 등

○ ’23년 국회지적사항

- 일학습병행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은 일부 유사성 있으므로 공동훈련센터 인프라 공유 등 필요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과 소명내용은 확인하였음

○ ’25년 대비 보조금 사업이 축소되었음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지원 전년도 대비 예산 관련 특이사항 없음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판정: 감액 - 동 사업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첨단뿌리 산업에 대한 산업인력양성, 대상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과 AI 기초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에게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재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유사 중복을 방지하고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훈련과정을 재구조화하고자 노력 중이며, 실제 여성재취업과정의 경우 타 훈련과의 유사성, 현장 수요,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점차 축소 운영 중임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첨단뿌리 산업에 대한 산업인력양성, 대상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과 AI 기초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에게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5년 대비 '26년 훈련 인원 증가를 기준으로 증액된 상황임

- ('26년) 훈련인원 15,250*명의 훈련장려금 반영

* ('25) 10,130 → ('26안) 15,250명(5,120명↑)

- 다만 '25년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재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본부 대학의 학사종합모니터링 진행 시 훈련장려금 지급 관련 항목을 점검한 결과, 사업 사후관리는 적절한 수준임

- 훈련장려금 증빙서류를 매월 확인하고 있으며, 훈련장려금 지급 관리를 지속하고 있음

-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위해 부정수급 요인 모니터링, 운영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은 적정함

○ 유사 중복을 방지하고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훈련과정을 재구조화하고자 노력 중이며, 실제 여성재취업과정의 경우 타 훈련과의 유사성, 현장 수요,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점차 축소 중

- 지역사회 연결, 대상 특화 등 폴리텍만의 고유의 공공 기능인력 양성모델을 개발하여 독자적인 우수성을 도모하기를 권고하는 바임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고용안정장려금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되어 사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의 알선 채용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1차적 산출 지표를 넘어선 사업의 궁극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발굴과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인재채움뱅크 사업은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알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1년 단위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며, 선정 단계에서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수행 배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또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 안내와 더불어 집행내역에 대한 월별 점검, e-나라도움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 등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실제 구성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체계 도입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함. 다만, 대체인력 풀(pool) 구축, 구인기업과의 관계 형성 등 누적적 역량이 매년 초기화될 위험이 있으며, 기관 변경에 따른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확인하기 어려움

○ 예산의 구성이 인재채움뱅크 운영비로 개소당 지원금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민간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집행률이 높다는 것이 곧 성과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정책 목적 달성으로 이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음

○ 성과의 측면에서 알선채용 실적(23년 3,811명 → 24년 5,914명 → 25년 7,961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전형적인 산출(output) 지표로 볼 수 있음

- 해당 지표를 통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인재채움뱅크 운영을 통한 해당 기업의 고용유지율, 대체된 인력의 직장 복귀 등과 연결되는 추가적 지표에 대한 개발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직장어린이집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재정지원의 정책적 타당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부정수급 관리 방식, 성과지표 설정 등 운영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요소가 확인되었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감소라는 외부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중장기적인 구조 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저출생 심화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며, 높은 설치비용과 외부효과를 고려할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은 정책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 다만, 사업의 추진체계나 부정수급 관리 방식, 성과지표 설정 등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고용보험법」상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공모절차가 없는 것은 제도적으로 이해 가능한 측면은 있음

- 하지만 재정사업의 일반적 원칙인 경쟁성·투명성 확보 측면에서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동일 기관에 장기간 집행 기능이 집중됨에 따라 성과 기반 관리 및 외부 견제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도점검 실시, 지도점검 결과 확인된 부적절한 사례 및 유의사항 전파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지도점검 실시와 부적절 사례 전파는 보조사업 관리의 기본적인 사후통제 수단으로서 적정성이 인정되나, 현재 관리방안은 사후관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예방적 통제 기능은 다소 제한적으로 보임. 다만,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예방적 통제 기능도 일부 작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집행 기능이 동일 기관에 집중된 구조에서는 지도점검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어, 위험기반 모니터링이나 사전 검증 절차 등 보다 체계적인 부정수급 예방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개소수 중심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집행 안정성을 보여주는 참고 지표로 판단되면, 직장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6개월 고용유지율은 학부모의 6개월 고용유지율: '22년 98.1%(평균 80.2%), '23년 98.3%(평균 78.1%), '24년 95.7%(평균 82.9%)로 나타나 양호한 편으로 확인됨

- 다만, 인건비 사업은 보육교사 고용유지율로 인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정액제) 방식은 국공립(정률제)과 달리 보육교사

의 호봉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의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로 인한 측면이 있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임

○ ’26년 예산의 경우 개소 지원 개수 감소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출생율 하락으로 인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수요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의 민간 및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연계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고용노동부
사 업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 완화와 보험 제도 접근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하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견되어 감액을 권고함 - 다층 전달체계로 인해 정책부처·집행기관·민간 대행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분산되어 정책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보험사무 대행실적 연동 지급 구조는 신청 건수 중심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실제 보험 적용 확대와의 연계성 검토가 필요함 - 다층 구조를 고려할 때 부정수급 관리와 사후 점검 체계의 보완이 요구됨 - 자부담 없는 정액 보조 방식과 산출 중심 성과지표로 인해 재정투입 증가가 실질적 정책성과로 이어지는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성과 목표의 설정이 다소 보수적이어서 목표 달성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바,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종합평가 의견

○ 현재 사업의 추진구조는 고용노동부 → 예산 교부, 근로복지공단 → 산정·지급 관리, 보험사무대행기관 → 신청 및 현장 업무로 이어지는 3단계 위임 구조임

-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대행기관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는 분명하며, 특히 e나라도움을 통한 예산 관리와 실적 기반 지급 방식은 행정 절차의 표준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3단계 구조를 가지는 만큼 책임의 주체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지원금의 정책효과가 낮을 때 어느 단계의 책임인지를 명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또한 보험사무 대행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단순 신청 건수 증가 중심 운영, 실제 보험 적용 확대와의 괴리, 형식적 업무 증가 가능성 등이 우려됨

- 행정비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하는데, 특히 지원금이 대행실적에 연동되는 방식은 정책목표 달성보다 업무량 확대 중심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어 성과관리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정수급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 수행이 다층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실적의 실질성 검증과 사후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됨

- 특히 자부담 검토가 제외된 정액 보조 구조는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여 실집행률이 90.9%로 나타남

○ 24년도에 지적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의 내실화, 효과적인 활용 지원을 위한 사업방식 변경 필요에 대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고시 개정으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강화, 보수원 클릭 서비스 제공을 조치하였음

- 구체적인 방안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지원단가를 상향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이 부분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제도 접근성 유지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단가 인상이 실제 보험 적용 확대나 정책성과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 내실화 또는 방식 개선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실적 기반 지급 구조 하에서 단가 인상은 재정지출 확대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성과지표와 연계된 효과성 검증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측면에서 5개년 실적으로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산정하나 후에 β분포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치를 산출하여 달성도를 도출한 결과 109.0%로 제시되었으나, 제시된 성과지표가 사업의 산출에 해당하는 지표에 그치고 있어 결과변수와 그 영향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목표의 설정 역시 한계가 존재하는 바, 제시된 성과목표치 산출 방식은 통계적으로 정교하게 보이나 성과관리의 본질적 목적인 도전적 목표 설정과 지속적인 개선 유인 제공에 실패할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소표본(n=5)에 기반한 분포 추정은 통계적 신뢰성이 낮으며 이상치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과거 실적의 분포를 목표의 기준으로 삼는 구조는 래칫 효과를 내재화하여 부처의 실적 억제 유인을 제거하지 못함. 셋째, 추세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지속적 성과 개선을 유도하는 목표 설정 원칙과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외형상 계량적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표치는 사실상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음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여성사전시관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아이돌봄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전반적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성과지표 상으로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나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 부정수급 방지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책무 사항

○ 성폭력 범죄가 비록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강간·강제추행 비중이나 아동·청소년 피해자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은 확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할 의무

○ 전반적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성과지표 상으로 목표치 상회하는 실적 달성하였으나 보다 도전적인 성과지표 설정 필요

- 이용자 만족도는 2025년 93.2로 목표치 92.5 상회,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건수는 48,700건(잠정치)으로 목표치 46,000건 상회

-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실제 보호 및 지원 수준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적인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며,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건수의 경우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으나, 부정수급 발견시 사업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협조 현장점검에서 점검 대상 중 일부 시설에서 업무 관련 거짓 보고, 회계처리 관련 서류 미비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법 및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 적발

-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로부터 관련 추가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 진행하고 해당 시설 점검결과 보고서는 각 기초 지자체에서 해당 시·도를 성평등가족부로 제출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성인지정책 분석평가운영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대체로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업이 20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임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를 2억 내외의 자금 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국가와 함께 법적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시도의 재원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지침이나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이 사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 현행과 같이 모든 자치단체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당근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뒤처지는 자치단체에게 집중적인 지원 혹은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의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대체로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업이 20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임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를 2억 내외의 자금 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 지금 단계에서는 국가와 함께 법적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시도의 재원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는 이 사업을 폐지하고, 관련 지침, 평가 또는 제재 등의 방법으로 이 사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사업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현행과 같이 모든 자치단체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등지원의 형태로 부진 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별영향평가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정책반영 개선율 산식에서 분자의 '자체 개선안 건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여성사전시관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여성사전시관의 콘텐츠 생산기능 강화 필요 -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현재의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지표를 콘텐츠 생산·확산 기능을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자, 여성사에 특화된 문화유산을 수집·보존·전시·연구·교육하는 사업임

- 여성사 기록 자료는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연구와 발굴 비용이 높은 편이나 상업성은 낮아서 시장에서 투자되지 않음. 또한, 교육·전시 프로그램도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적 지원 필요한 사업임. 현재 운영중인 전시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낮은 등의 기능적 한계가 있어서, 박물관 건립에 따라서(28년) 이전될 예정임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여성사전시관 운영은 여성 역사와 성평등 문화의 국가적 기록·교육·확산 기반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임. 여성사전시관은 특별기획전, 찾아가는 여성사전시관 등의 교육 개발 및 운영, 홍보 및 교류협력전(순회전) 등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사전시관은 1종 전문박물관으로서 전시 기능을 넘어 자료 수집·보존, 학술 연구, 교육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라 여성 인물 및 여성사 연대기 연구, 유물 수집·관리 체계 구축, 전시 콘텐츠 및 공간 구성 전략 마련 등 중장기적 기반 조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집행 효율성

- 사업의 3년 평균 집행률은 99.7%(2023년 99.8%, 2024년 99.3%, 2025년 100%)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성과지표는 여성사전시관 고객만족도(점)과 여성사전시관 관람객 수(명)으로 산출지표 위주이며, 성과 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함

○ 평가결과의 주요 근거 및 지적사항

- 성과지표는 단순 이용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기관의 콘텐츠 생산 및 연구 기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관의 “콘텐츠 생산기관”으로서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신규 전시 콘텐츠 개발 건수, 자체 연구 기반 콘텐츠 개발 비율 등 콘텐츠 기획·개발 역량을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타 기관 공동 활용 요청 건수, 순회전시 운영 실적, 외부기관 공동기획 전시 건수 등 콘텐츠 확산성과 활용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여, 단순 운영 실적을 넘어 콘텐츠의 질적 수준과 정책 파급효과를 평가·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점 정책 대상의 지역별 규모를 고려할 것을 권고함 - 중점 교육대상 인구집단의 분포에 따라 지역별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 인구비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권고함 · 중점 정책 대상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제안함 - 연도별로 설정한 중점 정책 대상의 교육 만족도와 인식개선 정도를 전체 평균과 별도로 집중 관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됨
- 사업의 추진 주체가 반드시 중앙정부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내용 및 질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중장기적인 추진체계 아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지역별 전체 인구 규모와 비례하여 사업 목표와 인건비를 설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서 강조한 '취약' 정책대상(도서벽지, 문화예술인, 체육인, 이주민, 초중고생, 가구방문노동자 등)의 지역별 현황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집행 효율성)

- 실집행률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
- 본 사업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 수행을 위한 강사료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미치지 못하며, 기관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나 현재의 인력 규모 및 처우를 고려할 때 예산 절감의 실익은 제한적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의 공모 절차, 보조사업자의 상황, 부정수급의 위험성, 자체 관리 노력 등 보조사업 전반의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성과지표는 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식 개선도'로, 인식 개선도 자체의 의미는 있음
- 다만 현재와 같이 인식 개선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더라도, 취약계층 등 중점 정책 대상 인구집단의 인식 개선도와 만족도를 전체 평균과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성과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함
- 교육에 대한 만족도 또한 조사하지만, 만족도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기대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서비스 유형별 운영체계 정비 및 정책성과 중심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중앙–지방 간 기능 분담과 재정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원스톱지원형과 밀착지원형은 수행 기능과 서비스 범위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재는 유사한 인력·운영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향후에는 지역별 피해 규모와 서비스 수요, 고위험 사례 비중 등을 반영한 지역센터 평가체계 및 차등 지원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는 피해지원 건수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 수행 규모는 확인 가능하나, 정책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피해회복 수준, 서비스 연계 수준 등 정책성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근거하여 각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방사무 성격이 있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서비스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운영 모델 정립을 위해 일정 기간 재정 지원이 필요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기관 및 법원 동행, 의료·법률 지원 연계,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 이후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성됨. 삭제지원 시스템 구축, 중앙센터 기능 강화, 타 피해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고려할 때 지역센터의 역할 범위와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원 규모 산정의 객관적 근거 또한 다소 제한적임. 센터별 인력 배치 기준 및 지역별 수요 차이를 반영한 지원 규모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

○ 집행 효율성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2023년 94.1%, 2024년 98.2%, 2025년 96.8%로 높은 수준이며 이월액, 불용액 등이 없어 집행 수준 양호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2025년까지는 성과지표를 미설정하였으나, 「성폭력방지법」(시행 2025.4.17.)에 지역 디성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지원 건수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2026년부터 적용함. 사업 수행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 가능하나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등 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평가결과의 주요 근거 및 지적사항을 작성

- 원스톱지원형 센터와 밀착지원형 센터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밀착지원형 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등 핵심 기능 수행 역량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과도기적 단계에서 중앙센터와의 역할 분담 및 기능 연계 체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센터별 인력 및 운영 규모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로 인해 지역별 피해 규모 및 수요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다소 미흡하여 개선 필요
- 성과지표가 피해지원 건수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음. 피해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등 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관리 체계의 고도화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청소년의 달 행사는 청소년 정책제안, 정책토론, 정책 피드백 수렴 등 정책참여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기반 구축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정책 확산 및 환류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 - 현재 성과지표는 참가자 만족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소년 정책제안 반영률, 정책제안 채택 건수, 정책개선 반영 사례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성과 중심의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에 근거한 사업으로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 보장 및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사업임.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를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청소년의 달 행사는 대형 박람회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행사장 구축, 무대 설치, 공연 및 부대행사 운영 등 행사비 비중이 높은 구조로 상시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

○ 집행 효율성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의 실집행률이 약 88% 수준으로 다소 낮은 반면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활동지원 사업은 99% 수준임. 사업별 집행률 차이가 있으나, 집행은 적정한 수준임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청소년의 달 참가자 만족도가 유일한 성과지표로 성과지표의 정책목표 정합성이 낮음. 청소년 참여사업에 대해서도 청소년 정책제안 반영률, 정책제안 채택 건수, 정책 개선 반영 건수 등. 프로그램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참여율, 청소년 활동 참여율 증가율 등을 관리할 필요

○ 평가결과의 주요 근거 및 지적사항

- 청소년의 달 행사는 기념·홍보 중심 운영에서 나아가 청소년 정책제안, 정책토론, 정책 피드백 수렴 등 정책참여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정책 기반 구축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단순 행사 운영을 넘어 청소년 정책 의제 발굴, 정책 확산 및 환류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사업은 참여 인원 및 운영 횟수 등 단순 활동 실적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참여를 통해 제안된 정책의 실제 반영 비율, 제도 개선 사례, 정책 반영 이후 효과 등 정책성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자체별 참여기구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반영 실적 및 운영 내실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등 성과 기반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이 단순한 참여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 개선과 정책 수용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인력 운영체계 검토 및 관리 강화 필요 - 상담 인력의 잦은 이직과 공백 발생은 서비스 연속성 저하, 이용자 신뢰 약화, 상담 효과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안정적 인력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개선,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치유서비스 제공 사업은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담상담사(54명)를 배치하여 개인·집단상담, 병원 연계, 심리검사 및 해석, 부모교육, 치유캠프 등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은 청소년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각종 유해환경에 대해 감시·계도·고발을 수행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신·변종 유해업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점검·단속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유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집행 효율성

-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90%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94% 이상으로 집행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치유서비스 지원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의 재발 방지 여부나 지속관리 효과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재발률 감소, 지속관리율 등 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 역시 감시·점검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정책성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의 주요 근거 및 지적사항

-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은 인건비 예산에서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상담사의 잦은 이직 및 퇴직, 출산휴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인력 운영 구조와 관련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반복적인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은 단순한 집행 문제를 넘어 실제 서비스 제공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실제 채용률·이직률·상담 수요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인력·예산 연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수준과 예산 집행 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 기능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 사업 내 정책 수행 기능과 현장 지원 기능의 역할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 기능별 성과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함 - 현재 성과지표는 기관 운영 및 활동 실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소년활동 활성화·안전 강화·취약계층 참여 확대 등 정책성과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사업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에 근거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 안전관리, 지도자 양성, 국립청소년시설 운영 등 공공성이 높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활동 정책의 기획·관리, 현장 지원, 인력 양성, 시설 운영 등 청소년활동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중앙지원기관으로서 정책 수행 및 현장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사업계획은 전반적으로 적정함

○ 집행 효율성

- 최근 3년 실집행률은 모두 99.9%으로 적정함.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 1회를 제외하면 반복적인 이·전용, 과도한 이월, 목적 외 사용 등 재정운영상 주요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사업의 성과지표는 고객만족도, 인증 청소년활동 참여 비율, 취약계층 청소년활동 지원 비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성과목표 대비 실적이 전반적으로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성과달성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현재 성과지표는 기관 운영 성과 및 일부 활동 실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기획·조정, 현장 지원, 안전관리, 인력 양성 등 사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 기능과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평가결과의 주요 근거 및 지적사항

- 공모사업, 현장 컨설팅, 네트워크 운영 등 일부 기능은 정책 기획·관리 기능과 현장 지원 기능이 함께 수행되고 있어, 중앙기관의 정책 수행 기능과 현장 집행 지원 기능 간 역할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하나의 사

업 구조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정책사업별 기능과 성과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양호한 수준이나, 현재 성과지표는 기관 만족도 및 일부 활동 실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 기능과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가족역량강화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사업 규모 조정 및 성과관리 고도화 필요 - 사업의 3년 평균 집행률은 71.6%(2023년 70.7%, 2024년 76%, 2025년 68.2%)이고, 청소년 부모 가구 수 감소 등으로 아동양육비 신청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구조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 만족도 중심의 단일 지표로 성과지표가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부모의 자립 지속 여부, 양육 안정성 등 중장기 정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부모는 일반 가구 및 한부모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고 학업·직업훈련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현금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고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청소년 부모(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사업 지원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형성이라는 사업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성 있음

○ 집행 효율성

- 최근 3년 평균 사업의 실집행률은 71.9%(2023년 70.7%, 2024년 76.9%, 2025년 68.2%)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초기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생했던 과다 추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실제 집행 실적과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 규모를 조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80% 미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개선추세도 보이지 않아 사업 규모 및 지원 수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성과지표 달성도 자체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과지표가 만족도 중심으로 단일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사업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목표치가 최근 실적 수준을 기준으로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어 목표 초과 달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목표의 도전성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평가결과의 주요 근거 및 지적사항

- 청소년부모 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청소년부모 가구 수 감소 등으로 실제 수요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사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수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사업 구조를 재조정할 필요

- 성과관리 체계도 만족도 중심의 단일 지표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부모의 자립 지속 여부, 양육 안정성, 복지서비스 연계 수준 등 중장기 정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아이돌봄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 운영 구조 개선 및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 - 집행률이 개선되었지만, 과거 집행 부진의 원인이 인력 채용 부진, 돌보미 공급 부족 등 구조적 요인과 연계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요 예측의 정교화와 인력 확보 전략 보완 필요 - 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돌봄 인력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집행 실적과 수급 여건을 반영한 사업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함 - 성과지표가 이용자 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접근성·품질·인력 운영 안정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보완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임.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에 정책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국정과제(88)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지원'(아이돌봄지원 확대)의 실천과제임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이용가구 증가 속도(2023년 85,000가구에서 2025년 120,000가구로 41% 증가)에 비해 돌봄 인력 증가 속도(2023년 29,000명에서 2025년 36,000명으로 24%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인력 공급 증가 속도가 수요 증가보다 낮아서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어서 지속적인 점검 필요. 또한, 광역지원센터 확대 등 전달체계 확충 과정에서 행정비용 증가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집행 효율성

- 실집행률 기준으로 보면 2023년 광역지원센터 운영 71.1%, 2024년 서비스지원 78.9% 등 일부 내역사업에서 집행부진이 있음. 이후, 2025년에는 서비스지원 94.5%, 광역지원센터 운영 96.8%로 개선되는 등 주요 내역사업 집행 수준은 전반적으로 제고된 것으로 보임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성과지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천명) 하나만 설정되어 있고, 측정 방식도 서비스 이용 실인원 합계를 집계하는 방식임. 서비스 확대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돌봄 공백 해소나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움. 또한, 최근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목표 수준의 도전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 필요

○ 평가결과의 주요 근거 및 지적사항

- 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돌봄 인력 공급 확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집행 실적과 수급 여건을 반영한 사업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함

-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성과지표가 서비스 이용자 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규모 확대 수준은 확인 가능하나, 돌봄 공백 해소 정도, 서비스 품질, 인력 안정성, 안전관리 수준 등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용자 수 외에도 서비스 접근성, 품질, 안전성, 인력 운영 안정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함께 관리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보조사업은 구조적 문제 대응 필요성은 크지만, 15년 이상 지속되며 전국망·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단순 물량 확대보다 30~40대 재직·경단위험 여성 중심의 경단예방·고용유지와 지역 유형별 차등 설계 등 구조조정·효율화가 필요한 단계로 평가됨 · 2026년 예산 증액(14% 이상)에도 불구하고 취·창업 실적 증가는 제한적이고, 경력단절 사회적 비용 추계는 과거 수치에 의존하며, 집단상담 이관에 따른 유사·중복 기능과 불용·반납·관리 한계가 존재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편·통합, 기능별·지역별 예산 재배분, 집행·관리 강화, 고용유지율·정규·상용직 전환율 등 질적 성과 중심 지표로의 개편을 통해 '기능 개편·효율화 지향형'으로 전환하는 예산 설계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저출생·고령화·경력단절 등 문제의식은 타당하고 새일센터는 전국망 인프라를 갖춘 만큼 필요성은 유지되지만, 여성고용률·경단여성 지표 개선 속에서 단순 센터·물량 확대보다는 30 - 40대 핵심 노동연령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고용유지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경단 비용 추계 등 과거 논거는 현재 개선된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은 14% 이상 증액되는 반면 취·창업 실적 증가는 완만하므로, 동일 구조의 예산 확대보다는 사업 효율성을 측정할 지표를 보완하고 성과와 연계된 재정지원 설계가 필요함

○ 직업센터·훈련·인턴·창업 등 타 고용서비스와 목적·수단이 일부 중첩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관으로 기능 중복 가능성이 커진 만큼, 새일센터 고유 기능(경력개발·경단예방·여성 특화 고용유지 지원)을 명확히 하고 중복 영역은 구조조정하는 방향이 요구됨

○ 상담 - 훈련 - 인턴 - 취·창업 - 사후관리 - 경단예방의 전형적 고용서비스 구조를 15년 이상 유지·확대해 온 만큼, 여성고용지표 개선과 경단 감소 추세를 반영해 센터 기능·대상·지역전략을 재설계하는 등 구조 재편이 필요하며, 전국 동일 모델에서 지역별 특성·격차를 고려한 차등 설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센터 지정·운영 예산이 집단상담 이관과 운영비 증액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직업훈련 예산은 일부 감액되는 등 총규모는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단순 총액 확대보다는 기능별 성과와 수요를 반영해 센터운영·집단상담·훈련 간 재배분과 효율화가 필요함

○ 실집행률은 94~95% 수준이며, 반복적인 낙찰차액·잔액 발생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단가·물량 조정 노력은 미흡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설계 개선이 요구됨

○ 성평등가족부 - 지자체 - 159개 새일센터 - 중앙지원센터의 다단계 구조는 전국망 운영에는 유리하나, 행정·운영비 비중과 센터별 역량 차이 등을 고려해 필수 서비스와 행정·지원비를 구분하고, 목표 대비 비용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점검에서 위반 사례는 있으나 대부분 '부정수급 아님'으로 처리되고, 매년 상당한 반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예산 과다편성·집행 비효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 기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인턴·훈련은 우수·양호 평가를 받는 반면 센터운영은 개선 필요 지적이 반복되고 있고, 국회 지적에 따라 일부 지표·과정·장려금은 개선되었으나, 이는 주로 센터운영비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신규 이관 사업 통합·기능 정비와 연계된 보다 구조적인 환류가 필요함

○ 취·창업 건수·상용직 비율은 목표를 소폭 상회하고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취·창업 건수는 정체 국면에 있고 상용직 비율도 추가 개선 여지가 제한적인 만큼, 단순 규모 확대보다 경단예방·질적 고용성과·지역 간 격차 완화 등 구조적 성과를 보여줄 지표로 전환해 예산 확대 근거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후 재정관리 강화 및 성과관리 체계의 고도화 필요 - 지자체 보조사업의 정산·환수 절차의 적시성 확보와 지자체별 관리 현황 점검 등 사후 재정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과지표는 참여 전·후 변화 등 단기적 효과 측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 등 정책 목표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비스 질 개선 정도 등 전달체계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지표를 함께 마련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4장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사업의 근거 규정이 있고, 국정과제 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종합형 서비스로 355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약 1.5만명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운영지원단의 교육·컨설팅·평가 기능은 다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

○ 집행 효율성

- 최근 3년간 아카데미 운영 및 운영지원단 사업의 실집행률은 전반적으로 95% 이상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집행잔액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최근 2년간 미반납금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후 정산 및 환수 관리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국고 환수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산·환수 절차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청소년들의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전·후의 변화도를 비교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의 효과성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 수준을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과 평가는 참여 기간 중 변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적응 유지, 학업 지속, 진로 형성 등 장기적 성과 또한 반영할 필요

○ 평가결과의 주요 근거 및 지적사항

- 성과 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목표 관리 필요하며, 현재 성과지표는 참여 전·후 변화 중심의 단기적 효과를 측정하고 있는데, 돌봄

사각지대 해소,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 장기적 변화 등 정책 목표를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또한 전달체계 기반 사업이라는 점에서 운영지원단의 지원 성과, 서비스 질 개선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요청됨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전국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서비스 지속 여부가 달라져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단일 전달체계인 청소년성문화센터만으로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지역 내 각급 학교를 적극 활용하고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 및 학교 등과 협업하여 교과수업내에 교육을 편성하여 현장중심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필요 · 보조사업 미반납액 정산 필요('23년 2백만원, '24년 20백만원) · 현행 성과지표와 함께 지역 내 각급 학교 연계율(%) 등의 보조적 성과지표 도입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업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따라 발달단계에 맞는 체험형 성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지원과 성범죄 예방을 지원하고 있음

- 관련 법령상 지자체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성교육·성폭력 예방은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취약지역 아동·청소년의 위험이 확대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으로 균등한 수준의 성보호 안전망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세부사업의 최종목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각 추진전략과 사업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통한 성범죄 예방교육은 중요하나 향후 사업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이하의 사업개선이 요구됨

- 중장기적으로 전국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서비스 지속 여부가 달라져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성범죄 예방체계 약화 및 수사·사법·치료·피해지원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단일 전달체계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 - 지방 -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이어지는 3단계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센터만으로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지역 내 각급 학교를 적극 활용하고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학교-교육청 등과 연계로 교과과정 내 교육 편성을 통한 현장중심형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 미반납액 정산 필요('23년 2백만원, '24년 20백만원)

- 성과지표는 사업내용 전반을 포함해야 하므로 현행 성과지표인 아동·청소년 성교육 참여인원(단위: 천명)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인식개선 변화율(단위: %)도 적정하나 지역 내 각급 학교 연계율(%) 등의 보조적 성과지표 도입도 고려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고립·은둔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매우 낮고, 재고립·은둔 비율도 높아 장기적인 심리·정서 지원 및 성인기로의 장기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개입 필요 · 본 사업이 당초 취지에 더욱 부합하고 성과를 향상시키려면 사업내용, 전달체계, 환류 및 개선, 성과지표 등의 부문에서 일부 개선이 요구됨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 최소화 노력 필요 · 차년도에는 세부사업에서 보조사업비 미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을 통한 청소년의 자살·자해, 우울·불안 최소화는 매우 중요함.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매우 낮고, 재고립·은둔 비율도 높아 장기적인 심리·정서 지원 및 성인기로의 장기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개입이 필요함

○ 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굴·발견하여 긴급구호와 전문상담을 실시한 이후 사후관리 부문을 더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이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사후추적을 통해 이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현편, 향후 효율적 사업시행과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이하 내용의 사업개선이 필요함

- 사업의 추진 및 전달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사업수행시설을 선정하고 수시 지도·점검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고립·은둔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는 평면적인 조사도 중요하나 청소년 고립·은둔의 근본적 원인(사회경제적 구조, 사회적 관계, 심리정서 등)에 대한 인과관계 또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위기나 은둔·고립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구조, 사회관계, 가족 및 개인 심리정서 등으로 다양할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 진입 이후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보조적 성과지표(예: 학교 복귀 후 학업유지 기간, 취업 후 유지기간 등) 도입 검토 필요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 최소화 그리고 평가를 위한 평가지양 등의 노력도 요구됨

○ 다수 세부사업에서 보조사업비 미반납이 발생하는 등 예산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차년도부터는 집행효율과 예산관리에 특별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 안전망 운영('23년 2.2억, '24년 13.3억), 학교 밖 청소년 지원('23년 0.4억, '24년 4.2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23년 0.2억, '24년 2.6억),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24년 0.3억원) 미반납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가정 내 폭력·학대 등으로 인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보호·지원을 넘어서 이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과 관련한 수요 대응 강화 필요 · 지자체의 역할이 관할 시설 사업 예산집행·관리, 지도·점검만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까지 확대하도록 유도 필요 · 복귀율(%) 단일 성과지표로는 전체 사업내용 성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조적 성과지표 추가 도입 검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대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은 가출을 전후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학업이 중단되거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 우울·불안 등 정서·행동적 문제를 경험하는 등 경제·학업·근로·정서·사회적지지 등 모든 부문에서 취약한 사회적 약자로서 가정 밖 청소년이 범죄피해·비행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가 필요함

- 가정 밖 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자살·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게 나타나며 우울감 경험률도 타 청소년기관을 이용한 청소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을 이탈하여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온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중요함. 다만, 본 사업이 성과개선을 위해서는 이하 내용의 사업개선이 필요함

- 청소년쉼터 입소한 다수 청소년은 원가정으로 돌아가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보호·지원을 넘어서 이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과 관련한 수요에 합당한 대비가 필요함

- 청소년쉼터 등 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 여건을 갖추지 못한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전국 지자체의 인프라 확대 및 지원이 필요함

- 지자체의 역할이 관할 시설 사업총괄(예산집행·관리, 지도·점검 등) 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자립률(%)' 성과지표는 핵심지표이기는 하나 사업내용 전반을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보조적 성과지표 도입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성매매 피해자 자립·사회복귀를 위한 필수 보조비목으로 구성됨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항목을 포함함 · 보조사업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연간 다수의 상담·지원 실적을 통해 정책 목적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 높은 성과 달성률에도 반복되는 예산 반납 및 집행 잔액의 지속적인 감소 노력이 필요함 - 집행 계획 정밀화로 실적 괴리를 해소하고 미반납액 정산을 철저히 해야 함 · 중앙–지자체 협업을 통한 사업관리 및 환류 노력이 확인됨 - 실적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운영의 완성도를 제고함			

□ 종합평가 의견

○ 연장평가의 실효성 및 보조비목 타당성

-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시설 운영비와 구조 지원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자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비목을 포함함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은 피해자의 탈성매매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실효성이 높은 항목으로 판단함

○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통해 매년 약 15만 건 내외의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심리치료, 의료·법률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확인됨

○ 지원규모 및 집행의 적정성

- 매년 발생하는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소요에 기반한 정밀한 집행 관리를 실시하고, 최근의 실집행률 개선 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우수한 성과 달성도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과거 보조사업 미반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반납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재정 환류 체계의 내실을 기해야 함

○ 사업관리 적정성 및 환류 노력

- 중앙정부(성평등가족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 체계를 통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 실적을 점검하여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하고 있음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며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는 등 외부 의견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확인됨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가정폭력·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근거한 사업으로, 보조 방식이 현장 대응과 연장평가에 적합함 - 운영비·소송대리비 등 보조비목이 사업 성격 및 추진 주체에 부합함 · 국정과제 핵심 사업으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시급성이 큼 - 상담·보호·법률·의료 지원이 연계되어 회복을 지원함 · 정산 관리 체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 비용 추계 정교화 및 미집행 잔액의 환류 체계 내실화가 필요함 ·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 및 환류가 이루어짐 - 외부 지적 반영 및 성과관리 고도화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연장평가의 실효성 및 보조비목 타당성

- 「가정폭력방지법」 및 「스토킹방지법」에 근거한 법정 사업으로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 지자체, 민간 전문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현장 대응력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음

- 지자체 대상의 운영비 보조와 민간 대상의 소송 대리비 지원 등 사업의 성격과 추진 주체에 부합하는 보조비목으로 적정하게 구성됨

○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최근 급증하는 스토킹 등 강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의 정책적 시급성이 인정됨

- 보조사업을 통해 상담-보호-법률-의료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지원규모 및 집행의 적정성

- 미집행 예산이 차년도 사업에 적기 환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속한 정산 및 회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함

- 매년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집행 잔액은 편성 단계에서 실제 소요와 집행 여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특히 무료법률지원 낙찰차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과목 구조 개편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재정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 집행 관리의 정밀도를 높여야 함

○ 사업관리 적정성 및 환류 노력

-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엄격한 사후관리와 함께, 단순 만족도 평가를 넘어 최근 도입된 사전·사후 비교 평가와 같은 질적 성과 관리 체계를 사업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시켜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전문적인 성과 측정 지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자립지원금 기준 완화 등 현장 중심의 지침 개선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이 필요함 - 상담·보호·법률 지원 등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보조비목이 구성되어 있음 · 다문화 가족 증가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보호 수요에 직접 대응함 - 12만 건 이상 지원 실적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됨 · 불용 최소화 등 견실한 집행 실적을 유지하되, 예산 편성의 정밀도 제고가 필요함 - 지자체 추경 유도 등 미반납액 회수 대책을 이행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내실화해야 함 · 능동적인 사업 운영 및 지침 개선을 통한 환류 노력이 확인됨 - 홍보 강화 등 사업 활성화 및 데이터 정교화를 통해 환류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연장평가의 실효성 및 보조비목 타당성

- 지원 대상인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특성상 민간의 자발적인 구호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음

- 보조비목이 상담·보호·법률 지원 등 피해자의 직접적인 회복과 자립에 필수적인 서비스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조금 지급 목적에 부합함

○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 다문화 가족 증가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라는 사회적 현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며, 12만 건 이상의 지원 실적을 통해 정책적 필요성이 입증됨

- 이주여성의 언어 장벽과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을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로 보완함으로써, 폭력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큼

○ 지원규모 및 집행의 적정성

- 예산 집행이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이행되어 불용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집행 실적이 견실함. 다만, 향후에도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교한 수요 예측과 단가 산정 체계 검토를 통해 예산 운용의 정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함

- 지자체 추경 편성 유도 등 기관이 제시한 회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미집행 잔액이 적기에 환류되는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함

○ 사업관리 적정성 및 환류노력

- 의료비 지침 보완 및 수습기간 확대 등 부처 스스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실무 지침을 개선해 온 환류 노력은 긍정적임. 이러한 성과가 실제 집행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체 점검 체계를 상시화해야 함

- 다만, 실효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단순 건의를 넘어선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잠재적 피해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선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객관적 데이터를 예산당국과의 협의 논거로 활용하여 환류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함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공공서비스로, 보조사업 유지의 실효성이 충분함 -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항목 중심으로 보조비목이 구성되어 있음 · 위기 한부모에게 주거와 보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함 - 입소자 만족도와 자립 활동률은 목표치를 상회하나, 일부 지표는 전년 대비 둔화됨 ·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및 확대에 따른 수요 예측 및 예산 산정 체계 정교화가 필요함 - 지자체 미반납액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정산 환류의 적시성을 기해야 함 · 지자체 점검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 구조 조정에 반영함 - 대상 특성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운영과 성과지표 고도화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연장평가의 실효성 및 보조비목 타당성

-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에 특화되어 있어 국가적 공공서비스로서의 유지 실효성이 충분하며, 보조비목 또한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항목들로 적절히 구성됨

- 다만, 2025년 실적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며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정밀한 항목별 분석을 통한 성과 저하 요인의 보완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 위기 상황의 한부모에게 주거·보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높은 만족도와 자립 활동률을 통해 정책적 효과가 입증됨

- 시설 입소자 중 경계선 지능인 및 지적장애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인바, 기존의 표준화된 지원 체계를 세분화하여 수혜 대상별 맞춤형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정밀도를 높여야 함

○ 지원규모 및 집행의 적정성

- 매년 발생하는 집행잔액 추이를 고려할 때,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 및 단가 산정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향후 실집행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예산 운용의 정밀도를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해야 함

- 지자체 정산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정산 지연을 방지하고, 잔액이 차기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관리해야 함. 이를 통해 재원이 현장에 적기 투입되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해야 함

○ 사업관리 적정성 및 환류노력

- 현재의 자립 활동 참여율 중심의 관리를 넘어, 취업 지속성, 소득 변화, 주거 독립 성공률 등 정책의 실질적 파급효과를 장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심화 지표 도입이 필요함

- 이를 통해 도출된 정교한 성과 분석 결과를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안착을 돕는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별 인프라 확충 전략과 병행하여 정책의 포용성을 제고해야 함

평가요약표

부 처	성평등가족부
사 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법정 근거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속적 사업 유지가 필요함 - 지자체와 민간 기관이 결합된 가족센터 운영 방식은 지역 밀착형 서비스에 효율적임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시급성이 높고, 서비스 만족도도 높은 수준임 - 이용 효과성 및 공동육아나눔터 만족도가 정책 효과를 뒷받침함 · 전반적인 예산 집행은 원활하며, 수요 기반의 예산 배분으로 형평성을 기함 - 단, 일부 사업의 실집행률 및 미반납액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및 사후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짐 - 정기·수시 점검으로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법적 근거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함			

□ 종합평가 의견

○ 연장평가의 실효성 및 보조비목 타당성

-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법정 사업으로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응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업 유지가 필수적임

- 지자체 전달체계와 민간 위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은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추진 체계로 판단됨

○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 저출생 및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가구의 양적 확대 등 급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시급성이 매우 높음

-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96.2점) 및 공동육아나눔터 만족도(92.6점)가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지원규모 및 집행의 적정성

- 최근 수년간의 집행률 추이를 고려할 때 전반적인 예산 운용은 원활한 수준임. 다만, 일부 내역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잔액에 대응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지자체별 실제 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실집행 가능성에 기반한 정교한 자원 배분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보조율 적용을 통해 재정 운용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다만, 일부 사업에서 정산 및 반납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여, 미집행 재원이 적기에 환류되고 필요한 곳에 재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관리 적정성 및 환류 노력

- 상·하반기 정기 현장 점검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센터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환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철도핵심인력양성
PSO보상
물류산업지원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정보화)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
건설및지하안전관리
교통사고예방지원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지적관리
건축문화진흥
건축안전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
첨단도로교통체계
서울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택시산업지원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공항소음대책
항공산업발전지원
도심항공교통산업활성화지원
친환경물류지원
전환교통지원사업
재정비촉진사업지원
환승센터구축지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스마트시티확산사업(지원)
도시재생사업
부처연계형노후산단개발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국민임대출자
행복주택출자
통합공공임대출자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청년월세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사업은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에 해당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사업인 점에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 초기 낮은 실집행률 및 사업규모 과다 추정과 관련하여 국감 지적 사항이 있었으나 청년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인정되어 기예처와 증액하는 방향으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대면실사 과정에서 집행률 저조 해소, 타 부처나 지자체와 사전에 중복지원 배제,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축소의 곤란 사유 등에 확인함 · 다만, 차후 집행과정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 규모가 과다하게 추정된 것이 아닌지 객관적인 검증 -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 규모 축소 - 타 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 대상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성 재확인하여 중복가능성이 있는 대상 사전 배제 - 지역 간 임대료 차이를 감안하여 실질적 지원액 차등			

□ 종합평가 의견

○ '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는 대부분 임차(82.6%)로 거주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8.2%로 전년(6.1%)대비 2.1%p로 증가한 것은 물론 일반가구(3.8%)보다 높아 주거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사업은 이러한 필요성과 공약사업과 국정과제 60과 89에 해당하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및 교육부 주거안정 장학금 사업과 지원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교육부 등의 사업과 중복이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되어 배제하고 있음을 확인함

○ 본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독립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함

- 독립 청년이라는 지원 요건과 달리 2차 사업 수혜대상자의 경우 미혼&부모 동거 101.3만 중 잠재수요 3%를 가정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지원시점에서 독립 여부를 점검하는 있음을 대면 실사 과정에서 확인함

- 월세 수준이 지역마다 상이하고 특히 서울과 비서울, 서울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간 격차가 매우 큼에도 이를 반영하여 차별화하지 않은 것은 일부 부적절할 수 있으나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원액을 감액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대면 실사 과정에서 확인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토연구원이 추출한 수혜대상자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가 관건이므로 예산 배정 시점에서 매년 적절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수혜자 수를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22~'23년은 목표 대비 미달, '24년은 초과 달성, '25년은 일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임

○ 수혜자 지원효과로 2차 지원의 경우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이 평균 2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정상추진으로 하되, 향후 실집행률 및 사업규모 추정의 객관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됨 · 그러나 HUG의 대위변제액이 계속 증가(22년 1조 581억원 → 23년 4조 9,229억원 → 24년 6조 940억원)하는 등 전세시장 불안은 여전한 반면, 동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부족과 신청 어려움 등으로 실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세시장 안정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전체 대상자 규모의 정확한 추정, 지원횟수 및 지원기간 제한의 필요성, 지원대상자 소득 및 전세보증금·보증료 한도의 적절성, 월세 가속화에 따른 전세물량 감소, 보증해지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 누수 및 부정수급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보증금 지원과 대위변제 증가가 악순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보완대책 마련이 요청됨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은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수의 임차인들이 주거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해 전세보증 가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증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을 지원하는 동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하되, 소득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큰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함

- 보다 많은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참여토록 추진체계를 설정함

○ 국회에서 주로 사업 지연 및 세부 추진방안에 관련한 지적사항이 많았고 이에 대한 환류를 위해 HUG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정책 안내 알림톡 발송 및 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사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증 가입 서식 개정 등을 추진함

- '24~'25년 자율평가 결과는 미흡이었고 역시 집행률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됨

- 그러나 전세시장 불안은 여전한 반면, 동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부족과 신청 어려움 등으로 실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세시장 안정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전체 대상자 규모의 정확한 추정, 지원횟수 및 지원기간 제한의 필요성, 지원대상자 소득 및 전세보증금·보증료 한도의 적절성, 월세 가속화에 따른 전세물량 감소, 보증해지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 누수 및 부정수급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보증금 지원과 대위변제 증가가 악순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보완대책 마련이 요청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보 조 유 형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노후 출자역사 중 안전취약(피난·방재·구조 등) 해소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등 공익개선을 위한 보조 지원의 정책적 타당성을 갖으며, 동 부처내 사업과의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강화노력이 필요함 - <노후출자역사 개량사업>의 3년평균 실집행률은 55.6%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함 - 매년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함에 따라, 장기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예산계획 필요함 ·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 제시된 '개량 개소 수' 중심 KPI를 지양하고, 안전성능 개선(피난·방재 성능, 안전취약 해소율 등)과 유지관리 및 하자 책임을 포함한 성과·정산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노후출자역사 개량을 추진중인 한국철도공사를 '민간자본보조'하는 사업('26년, 15,847백만원)으로 노후 출자역사의 안전취약(피난·방재·구조 등) 해소는 공공 안전과 직결되어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출자역사는 수익구조가 존재하므로, 운영주체의 자기부담과 수익구조에 대한 합리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철도공사 자산의 환경개선에 대한 보조는 공공안전개선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

○ 52개 대상 역사중 공사중 9개소, 설계 28개소, 기획 11개소, 예정 4개소에 대한 사업진행중이며, 3년평균 실집행률은 55.6% ('23년 39.8%, '24년 53.8%, '25년 73.1%)로 저조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관리 개선노력 필요함

- 부진사유는 지자체 협의 지연, GTX-C 역사통합, 제4차 국가철도망 경유 미확정 등 사업계획 및 기획절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매년 과도한 이월/전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장기 진행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계획 및 집행률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함

연 도	예 산			집 행			잔 액	
	교부금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실적 (D)	교부금대비 집행률 (E=D/A)	예산현액 집행률 (F=D/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	16,000	14,133	30,133	12,006	75.0	39.8	18,127	-
2024	13,990	18,127	32,117	17,290	123.6	53.8	14,814	13
2025	13,840	14,814	28,654	20,947	151.4	73.1	7,707	-

- '26년과 '27년은 공사개소가 증대(8개→21개)됨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분화하고, 합리적 예산배분을 통한 집행률 개선 및 사업관리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 제시된 '개량 개소 수' 중심 KPI를 지양하고, 안전성능 개선(피난·방재 성능, 안전취약 해소율 등)과 유지관리 및 하자 책임을 포함한 성과·정산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노후 출자역사 중 안전취약(피난·방재·구조 등) 해소에 한해 보조 지원의 정책적 타당성을 갖으며, 사업관리 강화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철도핵심인력양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기준단가 등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실집행율(58.9%) 제고가 필요함 - 1인당 4천만원을 상회하는 기준단가 산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 '25년 기준 집행률은 79%이고 실집행율은 58.9%로 확인되어 실집행율 제고가 필요함 · 단기·집중 연수, 연수 규모의 조정, 일부 자부담 확대 등 다양한 사업방식의 검토를 통한 사업방식 변경 및 적정 사업수요 관리를 권고함 - 보조사업으로 구성되나, 별도 선정한 위탁기관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체계상 비효율이 발생함

□ 종합평가 의견

○ 국토교통부의 '철도핵심인력양성' 보조사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법적 추진 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평가됨

- 국가가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측면에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 확보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목표에 따른 사업목표와 사업내용 간 정합성이 인정됨. 다만, 본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는 효과성과의 연계성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직·간접 수혜자 또한 특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직접 수혜자는 해외 연수생 32명으로 한정되는 반면, 간접 수혜는 국내 철도기업 및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외교적·산업적 파급효과로 관리되고 있어, 재정 투입 대비 수혜 규모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1인당 4천만원을 상회하는 고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집중 연수, 연수 규모의 조정, 일부 자부담 확대 등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를 통한 사업방식 변경 및 적정 사업수요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5년 기준 집행률은 79%이고 실집행율은 58.9%로 확인되어 실집행율 제고가 필요함

- 국가별 항공권 단가 차이 및 방학 중 일시귀국에 따른 체재비 감소 등 불용 사유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낮은 실집행율(58.9%)은 익년 사업기간(8월 기준) 미도래에 따른 집행 불가 등 구조적 요인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현행 성과지표는 '간담회 개최 횟수' 등 단편적 지표에 한정되어 있어, 석사학위과정 지원이라는 사업의 성격 및 재정 투입 규모와 연계된 성과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부처에서는 연수생 지원에 따른 기업의 수주실적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효과를 누적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의 실질적 성과범주로 판단하기 모호한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본 보조사업은 기준단가 등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실집행율(58.9%) 제고가 필요함. 특히 단기·집중 연수, 연수 규모의 조정, 일부 자부담 확대 등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를 통한 사업방식 변경 및 적정 사업수요 관리를 권고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PSO보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산정체계의 단계적인 합리화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수혜자 증가에 따라 보조금이 확대되는 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이 지속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지방권의 중·간선 교통 대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벽지노선 운영 대상의 재정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익분담율(30%)은 경영 개선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단계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국토교통부의 'PSO 보상' 보조사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에 근거하여 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업으로 평가됨

- 벽지노선 유지와 공공운임 감면은 시장 원리에만 맡길 경우 공급 축소 또는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통약자 및 지역 주민의 이동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본 사업은 철도 공공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규정된 공익서비스비용 범위에 부합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구조는 법률상 목적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음. 다만, 철도공사의 경영 여건 변화 및 정부의 자본적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산정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체 교통수단 활성화 시책 및 추진 현황, 대체 교통수단의 중·간선 교통 대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벽지노선 운영 대상의 재정립이 필요함

- 공익분담율(30%)은 SRT와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 등 철도공사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무경영 개선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단계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집행률은 100% 수준으로 양호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구조적 집행 부진이나 부적정 집행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또한 행정비용 또한 사업 규모 대비 매우 낮은 수준(약 0.02%)으로, 전달체계의 효율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벽지노선 여객수송 실적 증가('23년 대비 '24년 약 9% 증가), 열차 지연시간 감소(약 32% 감소) 등 운영 성과는 일정 부분 확인됨. 다만, 다만, 이용자 수 증가는 고령화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정책 효과로써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본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단순 이용 규모 외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한 성과관리 체계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본 보조사업은 산정체계의 단계적인 합리화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물류산업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세부사업은 재정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등이 적정하며, '정상 추진' 필요 - 정부 지원의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영세한 물류업계들이 선진화된 물류체계로의 개선·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본 세부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 실집행률은 100% 수준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은 '물류산업 지원' 사업으로 내역사업이 '물류산업의 효율화를 통한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상위 단위사업의 목적에 부합함

- 국가는 민간 물류기업이 제3자물류, 공동물류, 스마트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 물류비를 절감, 민간기업의 물류 경쟁력 제고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한 수혜대상이 명확함

- 「물류정책기본법」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범위를 적절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함

○ 본 세부사업은 열악한 물류업계의 산업체계 및 환경을 개선해 궁극적으로는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재정 지원규모가 적정함

- 본 세부사업은 화주기업의 제3자물류, 스마트물류, 공동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3자·스마트·공동물류 컨설팅 내역사업과, 화물·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제3자·스마트·공동물류 컨설팅,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모두 기준보조율은 소요비용의 50%로 적용되고 있으며, 타 정부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과 유사한 수준임

○ 최근 3년간 예산 실집행률이 적정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주체, 지원방식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프로세스는 잘 구축되어 있음

○ 사업의 추진주체는 국토교통부, 대행기관(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기업으로 구성되어, 각 기관의 역할이 잘 구분되어 있음

- 비용 분담기관(국토교통부, 민간기업), 대행기관(한국통합물류협회), 컨설팅기관 간의 보조금 집행체계에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 본 세부사업의 성과달성도·우수성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3자물류 활용률'을 설정하고 있으며, 본 세부사업의 목적을 설명하기에 적정함

○ 종합적으로 재정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등이 적정하며, '정상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정부 지원의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영세한 물류업계들이 선진화된 물류체계로의 개선·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정보화)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
1-2. 재정지원 필요성		○
1-3. 유사중복		○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
2-2. 지원규모 적정성		○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
3-4. 환류 및 개선노력		○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내역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집행 실적이 '23년 91.8%, '24년 89.6%, '25년 88.7%이며 불용액 '23년 443백만원, '24년 544백만원, '25년 590백만원이 발생함 -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에 대한 예산 효율화 및 일정 수준의 감액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세부사업 내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내부사업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0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조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수도법에 따라 상·하수도 관리기관이므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의사결정을 위해 지자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됨

○ 본 ‘지하시설물전산화’ 세부사업은 지자체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를 통한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및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른 직접 수혜자는 상·하수도 관리기관인 지자체이며,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으로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기관,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지하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편익을 받는 수혜자는 광범위하다고 평가됨

- 내역사업인 ‘지하시설물전산화(보조)’의 경우 상하수도 관련 환경부 등 타 사업 국고보조율과 사업참여가 가능한 국고보조율에 대한 지자체 유선 설문조사(’21.4～’21.5)를 반영하여 보조율 30%를 지원하고 있어 적정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내역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집행 실적이 ‘23년 91.8%, ’24년 89.6%, ‘25년 88.7%이며 불용액 ‘23년 443백만원, ’24년 544백만원, ’25년 590백만원이 발생함

- 실집행기관(지자체)의 사업발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낙찰 차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10% 이상의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에 대한 예산 효율화 및 일정수준의 감액이 요구됨

○ ’26년 재난안전평가 성과목표·지표 행정안전부 검토결과 확정된 성과지표(수정 및 갱신된 지하정보에 대한 지하공간통합지도 반영률)를 반영하여 지하시설물전산화(보조)사업의 결과물인 수정갱신된 지하정보를 지하공간통합지도에 30일 이내 100% 반영하는 목표치 설정하였으며, 최근 2개년 동안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 확인됨

○ 본 보조사업은 지하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관리 강화를 목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반침하(싱크홀), 도로굴착에 의한 지하시설물 파손의 위험을 예방하므로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지속적 불용액 발생함에 따라 예산 효율화와 일정수준의 감액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과 건설기계 조종사와 대여업자의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은 직결되는 사안임 - '25년 국정감사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제안될 만큼 체감도 높은 사업임 · 보조사업 단계적 폐지계획에 따라 관련법안 개정 진행 중이며, 소액사업인 만큼 감액보다는 사업개선을 통해 과도기를 넘기는 것이 타당함			

□ 종합평가 의견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과 건설기계 조종사와 대여업자의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은 직결되는 사안임

- ‘25년 국정감사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제안될 만큼 체감도 높은 사업임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센터운영경비를 민간보조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22년 예산지원 축소 이후에 회수율이 실제 감소한 만큼 국가 재정 지원이 중요함

○ 국정과제 3-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사업임

- 건설기계 대여 시장의 건전성 확보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전략과 사업내용을 충실히 구성하였음

○ 수혜대상을 대한건설기계협회(직접)와 건설기계사업자(간접)으로 설정하였는데, 건설기계사업자를 직접수혜자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수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21년까지 100%였던 보조율을 90%로 조정한 것은 지원규모를 고려할때 타당성에 의구심이 듦

○ 부정수급 등 관리에 특이사항 없음

○ 국회지적사항 등에 대한 환류 및 개선 노력을 충실히 하였음

- 보조사업 단계적 폐지계획에 따라 관련법안 개정 진행중으로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성과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건설기계임대료 체납건수회수율을 설정하였음

- 성과지표와 목표치 그리고 달성도 모두 합리적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건설및지하안전관리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
1-2. 재정지원 필요성		○
1-3. 유사중복		○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
2-2. 지원규모 적정성		○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
3-4. 환류 및 개선노력		○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반탐사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62.8%로 매우 저조하나, '25년 추경에 의해 신설된 내역사업이므로 향후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본 내역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관련 예방 활동 및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26년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 개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 내 지반탐사 지원(보조) 내역사업은 서울 명일동('25.3), 광명 신안산선('25.4) 등 연이은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예산·인력·장비가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용역비를 지원(국비:지방비 1:1매칭)하는 사업으로 최근 대규모 지반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탐사를 위한 지자체 지반탐사 용역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25년 국회 예결위)

- 지반탐사 지원 내역사업의 지자체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를 통해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 지반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탐사를 위한 지자체 지반탐사 용역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25년 국회 예결위)

○ '25년에 시작된 '지반탐사 지원(보조)' 내역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62.8%로 매우 저조하고, 이월액이 1,624백만원 발생함

- 다만 '25년 추경으로 신설된 보조사업(보조율 50%) 특성상, 지자체 또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 실집행이 부진하였으며, 실집행 부진 지자체의 사업비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향후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반탐사 지원사업의 '26년 사업의 성과지표는 지방정부의 지반탐사 용역 사업을 통한 탐사연장이며, 목표는 지방정부가 선정한 지반침하 우려구간 4,360km에 대한 탐사 완료 등 성과지표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내용으로 성과지표 및 목표로 설정되기에 부적합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지반탐사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운영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배분의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부정수급 관련 예방 활동 및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25년 및 '26년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를 개선하여 제시할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교통사고예방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통합)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업은 타 부처(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사업의 통합 및 성과 기반의 차등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함 - 보조금의 90% 이상이 사무실 임차료 및 상근 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성격으로 지출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사업 본연의 성과 지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임 - 기존의 단순 상담 업무를 지양하고, 교통체험체험 센터 교육 업무와 연계 또는 '현장 실무형 사업'으로 재설계 검토 필요함 - 사업 수행 주체를 다각화하기 위한 경쟁형 공모제 와 성과기반평가를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종합평가 의견

○ 한국교통장애인협회지원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확대 강화를 통해 인적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정책에 기인하는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인 교통장애인(한국교통장애인협회)이 직접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 지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발생 방지를 위한 목적의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일부 인정됨

- 본 사업은 교통안전법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의거한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원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사업내용에 적합한 성과 검증을 통한 선별적 지원 가능함

○ 본 사업 보조금의 90% 이상이 운영비 성격으로 지출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사업 본연의 성과 지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판단됨. ('24 기재부 보조사업평가위원회)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 (300백만원)은 예산의 93.4%가 일반관리비(인건비, 임차료)로 구성됨. 이는 실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사업 목적에 투입되는 실효 예산이 2천만원이하 (장애예방실천사업(17백만원), 장애예방홍보사업(3백만원))임을 의미하며, 재정 지원의 정당성이 매우 낮음

- 타 부처(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사업의 통폐합 또는 성과 기반의 차등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타당함

- 국고보조율은 100%로 지급하고 있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자체적으로 공동모금 및 지정기부금을 통해 자부담 비용(3억원)을 추가적으로 사용 중

○ 본 사업은 피해당사자 참여형 캠페인 취지는 공익성이 있으나, 장기 계속 편성 특성상 성과 측정이 약하면 관행적 보조금으로 고착될 우려가 큼. 성과지표를 재설계하고, 사업 수행 주체를 다각화하기 위한 경쟁형 공모제와 성과기반평가를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31. 미래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에 부합되는 정책성 타당성이 충분한 사업임 · 보조사업으로서 부정수급 등 관리를 매우 충실히 시행하였으며, 부적절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상위 정책목표 달성기여도는 높이 평가하지만,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달성도를 정량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31. 미래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에 부합되는 정책성 타당성이 충분한 사업임

-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사업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기업체가 원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스마트시티 산업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충실히 이행해 왔음

- 지속 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및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전략과 사업내용을 충실히 구성하였음

○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많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을 보조·지원할 필요성이 상당함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 50% 설정은 스마트서비스 개발 등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업무를 고려하고, 사업 내용, 사업 규모,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 비율로 판단되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은 유사업을 고려할 때, 국비 75%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최근 3년간(2023~2025)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였음

-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은 3년 평균 52.9% ('22년 75.0%, '23년 25.0%, '24년 58.8%)로 저조하나 「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실행을 고려하여 '25~'27년의 실집행률을 검토 후 '28년 예산감축을 재검토 하기로 결정하였음

○ 보조사업관련 제반의 업무를 매우 충실히 이행하여 부적절 사례가 없었음

- 재무안전성, 자부담능력, 사업추진능력, 부정수급 등 검토결과 모두 적정하였며, 월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전수 점검, 월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수행하였으며, 점검결과 적발사항이 없었음

- 부정수급 등 외부적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액도 100% 반납하였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방지 관련 예방활동 및 추진계획 또한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계획하였음

○ 성과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교육생 수를 설정하였음

- 달성도가 최근에는 200%를 상회하는 등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상위 정책목표 달성기여도는 높이 평가하지만,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달성도를 정량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지적관리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기술 발전에 따른 단가 인하 및 합리적인 사업수요 산정을 통한 재정 수요 합리화가 필요함 -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요인을 반영하여 기준단가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경상 비목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속지적도 구축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대상 필지와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업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산출지표 기준의 성과관리체계는 정책 성과지표 설정 등으로 개선이 필요함 - 실질적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당해연도 재정 투입과 실질 성과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국토교통부의 '지적관리' 보조사업은 각종 인허가, 용도·보상 등 행정업무와 민간 부동산·건축·토목 분야에서 활용되는 연속지적도 정확도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위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의 정책목표와 높은 정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지적자료의 정확도 제고와 체계적 관리라는 사업 목적은 국토정보관리 체계 고도화 및 국토정보제도 선진화를 지향하는 상위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구조로 평가됨

○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상위 법령 및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기술 발전에 따른 단가 인하 및 합리적인 사업수요 산정을 통한 재정 수요 합리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연속지적도' 내역사업의 경우, 전산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요인을 반영하여 기준단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상 비목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속지적도 구축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대상 필지를 제외하여 추진하고, '지적재조사'의 사업범위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사업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의 실집행률 수준과 이월 발생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집행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23~2025년 최근 3년간 집행률은 99.9%로 확인되며, 체계적인 재정수요 조사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연차별로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실집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토지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통해 토지평가·거래·과세 등에 필요한 기준자료를 제공하고, 토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업으로,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정책 성과가 확인됨. 다만, 성과지표가 '연속지적도 정비수량'이라는 단일 산출지표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재정 투입에 따른 품질 개선 효과 등 실질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보조금이 지자체 단위로 집행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보조사업은 기술 발전에 따른 단가 인하를 통한 재정 수요를 합리화하고, 산출지표 기준의 성과관리체계를 정책 성과지표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건축문화진흥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건축서비스법 및 한옥등건축자산법에 근거하여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와 미래 인재 육성을 수행하는 핵심 사업으로, 최근 3개년 집행률이 99% 이상을 유지하는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확인되었음 · 과거 부정수급 발생이 있었으나 해당 내역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중 점검체계 마련을 통한 자구노력이 확인되었으며, 국회 등에서 제기된 사업 실효성 우려에 대해 부처 전수조사 결과 해외 연수자 취업률이 66.3%로 확인되었고, 국제 공모전 13건 수상 등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있었음 · 이에 '23년 대비 예산이 57% 수준으로 이미 축소된 소액 사업임을 고려하여 추가 감액보다 내실화를 추진하고 공공건축 지원 단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해외 연수·교육 사업은 취업률·공모 수상·국민 체감도 등 성과지표와 연계한 성과기반 차등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이 타당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건축문화진흥사업은 공공건축 품격 제고와 한옥·전통건축 활성화, 건축설계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경관 개선과 건축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공공성이 매우 높음. 다만 인재·교육 부문은 다른 인력양성 사업과의 유사성이 일부 존재하므로, 건축설계·공공건축 특화 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공공건축 기획검토, 한옥·건축자산 활용, 인재육성 등으로 구성된 사업 구조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높고 내용도 대체로 적정함. 그러나 연간 800건 수준의 검토 물량에 비해 인력·단가가 부족하고, 한옥·인재육성 일부 프로그램이 매년 유사하게 반복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가 필요함

○ (집행 효율성) 최근 3개년 집행률이 99% 이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은 매우 우수하며 예비합격자 제도 등을 통해 구조적 불용을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 과다 집행을 적발하고 환수 조치한 점은 긍정적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한 바가 있으므로 사전심사·표준단가 검증 등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국제 설계공모 수상과 연수생 만족도 80점대 달성, 연수생 취업률 등 성과는 우수하나, 건축문화 향상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국민 체감도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건축제전·대국민 홍보, 인재육성의 실제 취업·정착률 등 결과지표를 보완해 예산 대비 정책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및 제언) 공공건축 품질 제고와 건축문화 진흥이라는 정책 필요성은 높으며 집행관리 및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과거의 부정수급 사례와 단순 만족도 중심 지표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실효성이 낮거나 부정수급이 발생한 건축설계 인재육성·해외연수 예산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성과(취업·수상·프로젝트 참여 등)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성과기반 보조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건축 지원·민간전문가 제도 등 핵심 기능은 검토 단가의 단계적 현실화와 인력 운영 안정화를 통해 내실화하되, 성과·집행 실적을 반영해 내역별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건축안전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예산구조 및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센터의 질적수준 향상이 필요함 -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147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총 0.9억 원으로, 센터당 지원액이 0.6백만원 수준에 불과한 상징적 예산으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함 - 3건의 부정수급 (265.3백만원)과 1건의 부정수급의심(105백만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산 및 행정관리 강화 노력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건축안전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 사업과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높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건축안전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임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자체자본, 보조율33%)사업은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3년 법개정을 통해 '25년 종료된 사업임

-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기한종료에 맞춰 미보강자에 대한 1:1 밀착 독려 및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을 종료하였음

- 3건의 부정수급 (265.3백만원)과 1건의 부정수급의심(105백만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산 및 행정관리 강화 노력 필요함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자체경상, 보조율100%)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점검, 전문인력 자문, 교육, 안전홍보 등을 위한 센터 설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147개소 설치 완료, 의무대상중 12개소 미설치)

- 중앙정부(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가 수행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과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가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혼재되어 있어, 재정 지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됨

-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스스로 관내 건축물을 점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운용할 법적 근거가 있음

-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147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총 0.9억 원으로, 센터당 지원액이 0.6백만원 수준에 불과한 상징적 예산으로 실효성 논란있음 ('24 언론보도)

○ 따라서 본 사업은 지자체별 소액 배분 방식이 안전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므로, 수혜 규모를 권역별 거점 센터당 합리적으로 현실화하거나, 지자체의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기술 지원으로 전환하여 수혜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함

- 모니터링 확대의 성과는 점검건수가 아니라, 사후조치와 재발방지를 관리하도록 지표개선 필요함

-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지표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현황을 제시 하였으나, 운영방식 및 성과에 따른 지속적인 논란에 따라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 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보조사업]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ZEB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를 중장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적다는 것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는 국정과제(2-2-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로 지정되었으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한 탄소중립 촉진이 국정 목표로 정해짐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됨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을 30% 이상 감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건축 기술이지만 일반 건축물 대비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존재하므로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세부 사업은 ZEB 보급확대를 위한 확산사업과 ZEB 인증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운영 사업으로 구성되어 내용적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확산사업) 최적화 컨설팅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으로 구성됨

- (제도운영) 유사 인증제와의 통합, 본인증 건축물의 성능유지 여부 현장확인,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등으로 구성됨

○ 지원규모 적정성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수혜대상을 컨설팅 수혜 기업 수, 양성교육 수료자 수, 예비인증 건수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목표나 전체 모수를 고려한 연간 필요 내지 적정물량이 구체화되지 않아 지원규모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함

○ 최근 3년 간 집행률은 100%이나 실집행률은 '23년 77.7%에서 '25년 89.8%로 증가한 수준이므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집행 부진 사유는 선정 사업자의 자금부족 및 공사중단, 공사지연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노력이 요청됨

○ 성과달성도를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생 인원수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건수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목표치를 대폭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당초 목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졌을 것임에도, 초과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실적 증가를 위해 예산이 증액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 동 사업은 NDC 감축을 위한 사업임으로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26년에도 전년 대비 16.3%(578백만 원)가 감액된 바 있음

- ZEB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를 중장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적다는 것을 감안할 때 특히 전년 대비 증액 내지 동일한 예산 항목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첨단도로교통체계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첨단도로교통체계'의 내역사업 중 '지자체 ITS 지원')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78.5%로 저조하며, 이월예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액 등을 통한 예산구조의 효율적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목적은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국가 교통정책과 정합성이 높고, 교통혼잡 비용 및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 본 세부사업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6조(지능형교통체계계획의 수립 등) 및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자체 ITS 지원' 사업은 최근 3년간('23~'25) 평균 집행률이 78.5%로 타 내역사업에 비해 실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연도별 집행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1~'25년 부처의 성과지표 분석 결과, 교통정보 서비스 이용건수, 만족도, 우회도로 정보 정확도 등 주요 성과지표가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운영 고도화 및 AI 기반 효율성 제고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자체 ITS 지원'은 정책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26년 이후에는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민간의 교통정보수집에 대한 중복을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의 선순환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추진이 필요함

○ 향후 사업은 '확대 구축'에서 '고도화 및 운영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차세대 AI 기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서울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폐지)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부재, 매우 저조한 실집행율 등에 따라 본 세부사업은 즉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실집행율은 '24년 집행률 0%, '25년 16.93%로써 매우 미흡함 - '24년 사업 추진에도 불구, 여전히 국고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부처가 교부한 예산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열차 제작 공정은 매우 미진함 · 본 세부사업의 계속 추진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회 차원의 국가 재정지원 근거 및 타당성 등이 마련된 이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종합평가 의견

○ 국토교통부의 '서울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보조사업은 서울 도시철도 4·7·9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동차 8편성(62칸)을 증차하는 사업으로, 열차 혼잡 완화 등의 공공적 목적은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의 전동차가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열차의 혼잡도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나,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병행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혼잡도 개선 통계만으로 본 사업을 유사중복으로 보기는 어려움

-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 9호선 4단계 개통('28.7.)에 따른 연계 수요 증가 등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전동차 증차는 열차 혼잡도 완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 대책으로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당시 지하철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혼잡노선에 대해 지원 타당성이 있어 재정당국에서 보조금법에 따라 한시지원으로 수용되었으나, 의원입법 법안의 입법화 이후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국회에서 법안 발의(박상혁의원, 24.6.7, 이해식의원, 24.6.28)되었을 뿐, 여전히 입법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총사업비 102,512백만원 중 25%를 4년간 균등 지원하는 방식은 차량 제작 공정 및 납기 일정과 연계되어 설계된 구조로 보기 어려우며, 7호선은 발주 준비 단계, 9호선은 제작사 납기 지연 등으로 실질적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규모의 예산을 반복 편성하는 것은 재정 측면에서 부적절함

○ 본 사업은 '24년 집행률 0%, '25년 16.93%로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예산 편성 시점에서 사업 준비와 발주 일정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됨

○ 본 사업은 혼잡도 완화를 목표로 하나, 전동차 제작 및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 성과는 극히 제한적임. 성과지표 또한 보조금 교부율과 같은 단순 집행 중심 관리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효과성의 확인할 지표는 부재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본 세부사업은 계속 추진할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재정지원은 즉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 차원의 국가 재정지원 근거 및 타당성 등이 마련된 이후 추진할 것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가 인정되나 지속적인 집행 부진이 개선되지 않으면,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속 집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실집행 실적이 '23년 54.2%, '24년 63.8%, '25년 75.9%로, 상당규모의 이월 및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24년, 25년 국회 결산 감사에서 집행 부진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은 노후시설물 적기개량 및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내역사업)',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지원(내역사업)','초고속 무선통신망 기술기준 마련(내역사업)'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도시철도법」 제22조를 통해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인됨

○ 본 세부사업은 노후화되고 안전이 취약한 도시철도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량함으로써, 철도사고를 예방하여 열차운행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적하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지원', '초고속 무선통신망 기술기준 마련'을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절히 연계된 것으로 판단됨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은 서울 30%, 부산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지원은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광역시에 50%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실집행 실적이 '23년 54.2%, '24년 63.8%, '25년 75.9%로 실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이월 및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도시철도 운영 특성상 작업 가능 시간(야간 2.5시간) 제한되어 추진 기간이 장기화되는 특성을 가진 것은 인정되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도출과 실행이 필요함

- 국회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부진에 따른 집행률 제고 관련 지속적 지적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보조사업 집행계획 및 실적점검 외에 해당 연차에 실행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기존 성과목표 철도사고 사고율 감소였으나 성능평가지수로 성과지표 변경하여 자본 투입에 대한 성과를 정량화하고 있으며, 연 2%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본 보조사업의 중요성과 효과가 인정되나 지속적인 집행률 부진이 개선되지 않으면,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속 집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철도차량 입찰담합과 납품지연 반복 등으로 인한 사업관리 미흡으로 감액하고, 조달·검수·정산 체계 개선을 제도화하는 사업개선 필요함 - 납품지연 관련 제재 강화, 선금 사용내역 점검 강화 등 사업 개선이 필요함 - 국토부 → 지자체 → 도시철도공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가격 협상력 저하 및 납품 지연 반복에 따라 관리강화 노력 필요함 -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 298칸 사업의 선금 588억 원에 대한 선금 반환 청구를 진행중임 · 상태 기반 유지보수(CBM)가 가능한 차량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요 예산 절감 검토 필요함 · 단순히 '차량 교체 대수'를 지표로 삼고 있어, 실제로 교체가 필요한 상태의 차량을 교체하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재난안전 지표 제시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철도차량 입찰담합과 납품지연 반복 등으로 인한 사업관리 미흡으로 감축하고, 조달·검수·정산 체계 개선을 제도화하는 사업개선 필요함

- 납품지연 관련 제재 강화, 선금 사용내역 점검 강화 등 사업 개선이 필요함

-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 298칸 사업의 선금 588억 원에 대한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선금 반환 청구를 진행중임

○ 본 사업은 지자체(서울, 부산)에서 운영중인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를 통해 사고예방과 운행장애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타당성은 비교적 명확함

○ 지자체·운영기관·제작사·감리/검수 등 이해관계자 다층 구조로 구성되어있음

- 국토부 → 지자체 → 도시철도공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가격 협상력 저하 및 납품지연 반복에 따라 집행 관리강화 노력 필요함

○ 도시철도 관련 안전투자 항목중 노후차량교체 비용으로만 집행되고 있어서, 중복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철도 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나, 재정 지원 중단시 노후화된 도시철도 차량 교체가 지연되어 철도 안전 저해 우려됨에 따라 제한적 지원 필요성은 일부 인정됨

- 지원규모는 서울 25%, 그 외 30%의 차등지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차량 단가가 급등하여 국고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임

- 운영기관의 만성적자(요금동결·부채 등)반복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노후차량 교체유도 필요성은 인정됨

○ 상태 기반 유지보수(CBM)가 가능한 차량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요 예산 절감 검토 필요함

○ 국회(상임위, 예정처)로부터 국비지원기간 조정('23회계 결산), 납품지연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비 교부시점 조정('24회계 결산)함

- 납품지연 관련 조치방안 마련('26예산 국회)을 지적받았고, '26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선금 집행내역 확인·반환청구, 지체상금 부과, 차량 입찰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게하고, 납품 지연 사업에 대해 '26년 예산 미배정 조치하였음

○ 본 사업은 직접적인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재난안전 관리 지표는 추가 필요함

- 단순히 '차량 교체 대수'를 지표로 삼고 있어, 실제로 교체가 필요한 상태의 차량을 교체하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재난안전 지표 제시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택시산업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세부사업은 '택시산업 지원' 사업으로 재정사업의 필요성은 적정하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우수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 감액' 요구 -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택시감차 보상' 사업의 재정 지원규모 산정시 지자체가 계획한 택시 감차규모뿐만 아니라 이전연도 예산 실집행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재정 지원규모를 산정 필요 - 택시감차보상 내역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3년 87.4%, '24년 89.1%, '25년 71.6% 수준이며, 운송플랫폼사업 지원 내역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3년 80.5%, '24년 79.0%, '25년 60.7% 수준 - 본 세부과제의 성과지표 설정은 적정하나, 성과 달성도 관리를 위해 예산계획과 연동된 성과목표 설정 필요 · 택시감차보상 내역사업의 경우, 정부보조사업 이외에 비재정 정책의 새로운 감차 수단을 발굴하여 국가 재정 절감 및 감차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은 '택시산업 지원' 사업으로 국정과제 실행에 부합하며,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상위 단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등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

- 지자체별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된 자체 감차계획에 대해 국가가 감차예산과 업계 부담금의 일부를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근거가 사업추진의 범위를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지원이 필요함

○ 자체 택시감차 보상비를 보조하여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상위 단위사업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의 목표에 부합하며 세부 사업내용이 적정함

- 기준보조율은 업계 감차보상비의 30%로 설정되어 있어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재정분담 비율이 적정함

○ 택시감차보상 보조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 실집행률은 82.7% 수준으로 집행의 적정성이 매우 미흡함

- 택시감차보상 내역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3년 87.4%, '24년 89.1%, '25년 71.6% 수준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발생사례가 없으며,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3년간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및 개선노력이 미흡함

- '23년~'25년 3년간 국회로부터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택시감차를 위한 총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높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예산 실집행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정부 보조사업의 성과달성도 우수성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택시 자율감차대수(대)로 설정하여 적정하나, 예산계획과 연동된 성과목표 설정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재정사업의 필요성은 적정하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우수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 감액'이 요구됨

- 택시감차보상 내역사업의 경우, 정부보조사업 이외에 비재정 정책의 새로운 감차 수단을 발굴하여 국가 재정 절감 및 감차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평가 결과 : 사업개선 - 본 사업은 정책적 타당성은 우수하나 업계의 자생적 노력 유인 기전 미흡 및 성과지표의 실적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개선' 권고함 · 평가 개선 사항 - 지자체-업계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여 양성된 인력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필요 - 최소한의 고용 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단계적 도입 필요 -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노선에 탄력적으로 배정하여 한정된 재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종합 의견) 본 사업은 노선버스 운전인력의 고령화와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은 우수하나 지자체 협력 모델 구체화, 질적 성과 모니터링 도입, 지역별 탄력 배정 등을 위해 '사업개선' 권고함

○ (지자체 협력 모델의 구체화) 보조금 규모가 소액이라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확보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부처가 제시한 '지자체-업계 고용유지 장려금'이 본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표준 협력 모델을 수립하여 양성된 인력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질적 성과 모니터링 도입) 현재의 취업률을 유지하되, 고용보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고용 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사업의 장기적 실효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 탄력 배정)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지역이나 노선에 교육 쿼터를 탄력적으로 배정하여 한정된 재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세부사업은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으로 광역권의 출퇴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나, 예산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개선 요구 -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내역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3년 84.3%, '24년 89.2%, '25년 83.7% 수준 -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내역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3년 100.0%, '24년 96.0%, '25년 65.8% 수준 -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내역사업의 회계연도 내 예산 실집행률은 미흡하나, 원인이 정산과정의 불가피한 시간 소요문제 등으로 파악되며, 정산을 반영한 예산 실집행률은 우수 -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 내역사업은 지자체 예산확보 지연으로 '25년 예산 실집행률이 미흡하나, 회계연도 이후에 모두 집행 완료 · 본 세부사업의 일부 내역사업은 지자체 정산과정의 불가피한 시간 소요문제로 차년도 이월이 발생하므로,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은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으로 국정과제 실행에 부합하며,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상위 단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등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

- 국민이 대도시권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노선 및 운행대수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범위를 적절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함

○ 내역사업의 목적과 세부 사업내용 모두 상위 단위사업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의 목표에 부합하며 재정지원규모가 적정함

- 기준 보조율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50%,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이 30%,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이 30%로 법적 근거에 준하고 타사업과 비교할 때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재정분담비율이 적정함

○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2개의 내역사업은 최근 예산 실집행률이 다소 미흡하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주체, 지원방식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프로세스는 잘 구축되어 있음

-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내역사업은 지자체 정산과정에 약 1~2개월 가량 소요됨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산 실집행율이 저조하나, 실제 12월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한 정산 이후 예산 실집행률은 '23년 95.1%, '24년 96.7% 수준임

-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 내역사업은 지자체 예산확보 지연으로 '25년 예산 실집행률이 미흡하나, 회계연도 이후에 모두 집행 완료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발생사례가 없으며,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적정함

○ 성과달성도·우수성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 목표설정 및 달성도 등이 적정함

○ 종합적으로 본 세부사업은 광역권의 출퇴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나,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부 사업개선이 요구됨

-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내역사업은 지자체 정산과정의 불가피한 시간 소요문제로 회계연도 내 예산 실집행률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세부사업은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사업으로 성과달성도·우수성에 대한 '사업개선' 요구 - 최근 3년간 예산 실집행률은 '23년 98.2%, '24년 100%, '25년 100% 수준으로 집행 효율성이 적정 - 성과달성도·우수성 관리를 위해 본 세부사업의 사업내용과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수소충전소의 이용수요에 기반한 적정 기준보조율 조정을 위한 도구(위원회 혹은 연구용역 수행)를 마련하여 수소차 보급확대에 따른 기준 보조율 조정 검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은 국정과제 실행에 부합하여 정책적 타당성이 있으며,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상위 단위사업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음

- 지자체의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가가 구축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이 명확·타당하며, 세부사업 및 국정과제 등의 정책목표와의 연관성·정합성이 높고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개입이 타당함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범위를 적절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함

○ 환경부의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세부사업 중 수소충전소 설치 내역사업과 유사하나, 환경부 정부보조사업과 달리 환승센터, 화물차 공영차고지, 산업단지 등 주요 교통물류거점에 대용량 광역 수소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내용이 본 세부사업의 목적과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상위 단위사업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 등 사업계획이 적정함

- 현재 기준 보조율은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비용(60억원)의 70%, 부대시설 구축비용의 30%로 적용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규모가 적정함

○ 본 세부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적정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주체, 지원방식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프로세스가 잘 구축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발생사례가 없으며,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적정함

○ 본 세부사업의 성과달성도·우수성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사업의 목적을 설명하기에 미흡하며, 수소충전소 확대 및 수소차 보급 확대라는 사업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성과달성도·우수성 등에 대한 '사업 개선'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예산 실집행률은 '23년 98.2%, '24년 100%, '25년 100% 수준임

-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수소충전소의 이용수요에 기반한 적정 기준보조율 조정을 위한 도구(위원회 혹은 연구용역 수행)를 마련하여 수소차 보급확대에 따른 기준 보조율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세부사업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재정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이 적정하며, '정상 추진' 요구 - '국민의 생활비 절감' 국정과제를 실현을 위해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고, 국민 체감도 및 만족도가 매우 우수 - 최근 2년간 예산 실집행률은 '24년 99.9%, '25년 85.8%(정산 완료시 95%) 수준 - '26년 새로운 정책인 '모두의 카드' 추진시 지속적인 가입자 수 및 예산 실집행률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실집행률 미흡 혹은 예산 부족 문제에 대응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상위 단위 사업의 목적과 국정과제에 부합함

-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K-패스 제도 이외에 ’26년부터 ‘모두의 카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사회적 문제해결의 목적과 이로 인한 수혜대상 등이 명확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범위를 적절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함

○ 지역 및 계층별 차별화된 환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계획이 적정하며, 사업목표, 추진전략 및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합성이 있음

- 대중교통비 환급 기준이 지자체의 경제적 자립도, 계층별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준 보조율은 서울 40%, 기타 지역 50%로 설정되어 적정함

- ‘모두의 카드’라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는 ’26년 소요예산이 ’25년 대비 약 135% 증가함에 따라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25년 예산 실집행률이 미흡하나 이는 본 세부사업의 특성상 약 2개월 가량의 환급비용에 대해 지자체의 정산과정의 소요됨에 따라 11월 이후의 집행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며, 정산결과를 반영하면 예산 실집행률은 95%를 초과함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주체, 지원방식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프로세스가 잘 구축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발생사례가 없으며,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적정함

○ 본 세부사업의 성과달성도·우수성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K-패스 전체 가입자수’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성과달성도가 우수함

- 기존 K-패스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새로운 정책(모두의 카드)을 도입하는 등 성과달성도, 국민 체감도 및 만족도가 우수함

○ 종합적으로 재정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이 적정하며, ‘정상 추진’이 요구됨

- ‘국민의 생활비 절감’ 국정과제를 실현을 위해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세부사업은 예산 실집행률과 성과달성도 관리가 미흡하며, '예산 감액' 요구 - 내역사업 중 저상버스 도입보조, BF인증사업,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최근 3년간 예산 실집행률이 미흡하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높은 공급목표치에 따른 공모참여 저조 등의 원인으로 배분잔액 발생 - 4개 보조사업의 차년도 예산계획 수립시 지자체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이전연도의 예산 실집행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저상버스 도입 내역사업의 경우에 운수사가 차량 교체를 계획했으나 미집행하거나 차년도에 집행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 실집행률 제고 필요 - 각 내역사업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관리를 위한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필요(예, 저상버스 도입율,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율 준수 지자체 비율 등) ·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등의 보조사업에 대해 현실적인 도입목표 설정 및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으로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상위 단위사업의 목적과 국정과제에 부합함

- 국가와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본 세부사업은 이러한 법적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익적 사업으로 사회적 문제해결의 목적과 수혜대상 등이 명확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여객자동차법」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범위를 적절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함

○ 저상버스 도입보조,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BF인증사업,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등의 내역사업의 사업목표, 추진전략 및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합성이 있음

- 저상버스 도입보조,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40%, 기타 50%이며, BF인증사업은 공영터미널 50%, 공용터미널 45%를 적용하고 있으며, 타 정보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과 비교하여 적정함

- 이전연도의 실적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된 목표를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재정 지원규모 산정시 현실적인 조정이 요구됨

○ 저상버스 도입보조, BF인증사업,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은 지자체 예산 미확보, 높은 공급목표치에 따른 공모참여 저조 등으로 최근 3년간 예산 실집행률이 매우 미흡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주체, 지원방식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프로세스는 잘 구축되어 있음

- '25년 4개 보조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83.0% 수준임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발생사례가 없으며,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적정함

○ 본 세부사업의 성과달성도·우수성 관리가 미흡하며, 각 내역사업별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판단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함(예: 저상버스 도입율,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율 준수 지자체 비율 등)

○ 종합적으로 예산 실집행률과 성과달성도 관리가 미흡하며, '예산 감액'이 요구됨

-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등의 보조사업에 대해 현실적인 도입목표 설정 및 성과 제고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공항소음대책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평가 결과 : 사업개선 - 본 사업은 법정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은 매우 높지만 주민의 정성적·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 지표 도입을 위해 '사업개선'을 권고함 · 평가 개선 사항 - 주민 체감형 보조비목 지원의 영속성을 확보하여 주민 만족도 저하를 방지해야 함 - 단순 성과 지표에서 벗어나서 보조금 집행에 따라 실제 피해 주민의 정성적·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 도입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종합 의견) 본 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법정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은 매우 높지만 성과 지표 개선을 토대로 '사업개선'을 권고함

○ (보조금 지원 규모 및 산출 근거 확인) '26년 예산안 내의 냉방시설 지원 물량(700호 → 1,810호) 및 방음시설 지원 물량(13호 → 40호)의 증가는 활용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대상 범위 설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보조사업 성과지표의 질적 고도화) 현재 성과지표는 단순 '시설 설치 세대수'와 같은 공급자 위주의 양적 지표에 치중하고 있는데, 보조금 투입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 정주 만족도 개선율'이나 '전기 요금 지원 수혜율' 등 실제 피해 주민이 체감하는 정성적·질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전환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항공산업발전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정과제 및 상위계획의 정책 목표와 부합하며 항공산업 일자리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로 추진 및 지원이 필요함 - 예산집행률 양호하며, 목표 대비 성과가 매우 우수함			

□ 종합평가 의견

○ 국정과제에 해당하여 취업기회 확대 및 청년 고용 및 일자리 확대 등 상위 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이 있음

- 국정과제 번호 : 96번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 「항공사업법」 제69조(항공 관련 기관·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 「항공사업법」 제69조(항공 관련 기관·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에 근거,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함

- 항공산업 인력 수요 확대와 구조적 고용 미스매치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목표 달성이 어려워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 사업내용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및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25~'29) 등 국정과제, 상위계획과 부합함

- 사업내용인 항공산업 JOB FAIR,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 기업탐방 및 후속 채용 연계 지원 등이 사업목표와 적절히 연계되어 있음

○ '25년 시작된 사업으로 예산집행률 99.1%로 적정함

○ '25년 목표치 상회 달성함(100%)

- 2025 항공산업 JOB FAIR 참가자 수 14,851명(목표 10,000명)
- 2025 제1회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자 수 14,779명(목표 7,000명)

○ 국정과제 및 상위계획의 정책 목표와 부합하며 항공산업 일자리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로 추진 및 지원이 필요함

○ 예산집행률 양호하며, 목표 대비 성과가 매우 우수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도심항공교통산업활성화지원사업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평가 결과 : 감액 - 본 사업은 신산업 육성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 관리의 엄밀성, 환류 체계 강화 및 성과지표 고도화를 토대로 '감액' 권고함 · 평가 개선 사항 - 관성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실제 공정 계획에 맞춘 예산 규모의 정상화 선행 필요 - 대규모 시설 구축 후 운영 중심으로 사업 구조 조정하고, 일부 운영이 산정에 대한 도출 필요 - 예산 집행 실적과 차녀도 예산을 연동하는 환류 체계 강화 권고함 - 민간 컨소시엄의 실질적 기술 진보나 투자 유도 실적 등 보조금 투입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성과 지표로의 전환 시급

□ 종합평가 의견

○ (종합 의견) 본 사업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민간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신산업 육성 산업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조금 연장평가 관점에서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 관리의 엄밀성, 환류 체계 강화 및 성과지표 고도화를 토대로 '감액' 권고함

○ (보조금 집행율 부진) 보조금 항목의 실집행액을 확인한 결과, 교부된 예산 대비 실집행율이 0%로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사업 계획 자체가 현장 상황과 동떨어져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2025년부터 시작된 사업인 관계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추진 병행을 위해 실제 공정 계획에 맞춘 예산 규모의 적절화(감액)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시설 구축 후 운영 중심 체계 전환) 글로벌 기체의 안전성 인증 지연 등 대외 여건 변화와 실증 단계 전환을 고려할 때, 실증 인프라 구축 이후 운영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조정하고 인프라 구축 예산 규모는 축소하고, 실증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시설 유지관리 공백 방지를 위한 표준 운영비 산정 등 일부 보완은 필요해 보임

○ (환류 체계 고도화) 예산 집행 실적과 차년도 예산을 연동하는 환류·관리체계에 대한 강력한 고도화 권고함

○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 체계 고도화) 현재 성과지표는 '인프라 구축 완료' 등 투입 대비 결과물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보조금이 실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컨소시엄의 실질적인 기술 진보나 투자 유도 실적 등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로의 전환이 시급함

○ (제언) 향후 보조사업 연장을 위해서는 실집행 실적을 반영한 예산 규모의 현실적 조정(감액), 공정계획의 정밀도 제고를 통한 이월·불용 최소화 방안 마련, 민간 주도 전환을 위한 자부담 비율 확대 등 결과 중심 지표로의 재설정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친환경물류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친환경물류지원(출자)) - 녹색물류전환사업은 매년 예산 감액에 따라 집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집행률이 100%에 가깝게 달성되도록 지속적인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사업 개선 노력이 요구됨 - 국회 지적에 따라 성과지표를 보조사업 실집행액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변경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조사업 실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이 사업은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 촉진을 위해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에 근거한 보조사업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영세한 화물운송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을 환경친화적 수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무시동히터·에어컨, 에어스포일러 등 시스템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예산의 지속 감액에 따라 수혜대상인 노후 경유차량을 운행하는 물류·화주기업, 개인화물자동운송사업자 등이 지속 감소

○ 매년 예산 감액에 따라 집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처 의견을 수용하나 집행률이 100%에 가깝게 달성되도록 지속적인 집행 실적 관리 필요

○ 2023년 국회가 녹색물류전환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적함

- 기존의 성과지표인 보조사업 실집행률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변경 절차 진행 중이며,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우수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개선 검토 중이라는 조치계획을 보고함

- 그러나 성과달성도 관련 지표로 여전히 보조사업 실집행률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보조사업 실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전년 목표대비 1% 향상된 목표치를 설정하 설정하고 있으나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므로 국회 지적에 따라 부처가 변경하겠다고 제안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변경할 필요

○ 녹색물류전환사업은 매년 예산 감액에 따라 집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집행률이 100%에 가깝게 달성되도록 지속적인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사업 개선 노력이 요구됨

○ 국회 지적에 따라 성과지표를 보조사업 실집행액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변경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조사업 실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전환교통지원사업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평가 결과 : 감액 - 본 사업은 탄소중립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은 우수하나 보조금의 자생력 유도 기전 미흡, 집행 관리 및 환류 체계 강화 및 성과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감액' 권고함 · 평가 개선 사항 - 단순 운영비 보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자생적 철도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비목의 지원 구조 근본적 전환 필요 -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협약 물량 기준 상향 등 집행 관리 및 환류 체계 강화가 필요함 - 단순 물량 중심 성과 관리 체계를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하여 고도화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종합 의견) 본 사업은 도로운송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은 우수하나, 보조사업 연장평가 관점에서 보조금의 자생력 유도 기전 미흡, 외부 변수에 취약한 집행 구조와 단순 물량 중심의 성과 관리 등으로 '감액' 권고함

○ (보조금 의존 구조 탈피 및 지원 방식 다각화 필요) 현재 보조금 지급을 통한 인위적 물량 유인에 치중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 범위가 기존 철도운송 품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도로운송 품목 가운데 철도로 변경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 중단시 다시 도로 운송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 운영비 보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철도 하역 장비 현대화나 인입 철도 확충 등 민간의 자생적 철도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비목의 지원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외부 변수에 대응하는 집행 관리 및 환류 체계 강화) 철도 및 화물연대 파업, 경기 변동 등 보조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로 인해 협약 대비 전환 물량이 미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실집행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만 협약 해지 및 집행 잔액 재배분이 가능한데, 절반의 실적만으로도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철도 파업 등 외부 변수를 상습적인 집행 부진 면죄부로 활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 협약 물량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임

○ (성과 관리 체계 고도화) 단순 물량 중심의 성과 관리 체계에서 물류 품목, 경로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재정비촉진사업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 평균 41%로 예산 편성이 과다하고, 3년 연속 동일한 집행 부진 사유가 반복되어 예산 감액이 필요함 - 실집행률이 개선 실적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사업 시행 18년째 2026년 지원 대상이 4개 지구에 불과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제도는 2013년 이후 사실상 폐지 방향으로 전환됨

- 지원 대상 지자체(김포시, 대전 유성구, 대구 서구, 부산 금정구)는 모두 광역시 또는 수도권 지역으로 자체 재정 여력이 있으며, 민간 개발사업자 주도 사업으로 국비 지원 없이도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함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평균 41%(2023년 38.0%, 2024년 42.4%, 2025년 42.6%)로 극히 저조하며, 매년 대규모 이월이 반복됨(2023~2025년 평균 3,165백만원)

- 2026년 지자체 신청액 7,110백만원 대비 예산 3,831백만원(53.9%)만 편성되었으나, 평균 실집행률(41%)을 적용하면 실제 집행액은 1,571백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집행 효율성

- 집행률은 양호하나(99~100%) 실집행률이 극히 저조하여 지자체에 전액 교부되나 실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구조가 반복되며, 집행 부진 사유가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어 사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판단됨

- 국회에서 2년 연속(2023~2024년) 보조금 이월 방지를 지적받았으나 실집행률은 38.0%→42.4%→42.6%로 큰 개선이 없으며, 조치 내용이 형식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 개선 부족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사업 시행 18년째임에도 성과지표가 전무하여 사업 효과를 전혀 측정할 수 없으며, 예산 투입 대비 달성 성과(기반시설 설치 면적, 주거환경 개선 정도, 주택 공급 실적 등)를 전혀 알 수 없음

○ 총평

- 본 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 평균 41%로 예산 편성이 과다하고, 3년 연속 동일한 집행 부진 사유가 반복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의 예산 감액이 필요함

- 실집행률이 80% 이상으로 개선될 때까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개선 실적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식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환승센터구축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광역교통 환승체계 개선을 통한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라는 정책목표 및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마산역 지방비 미확보 문제, 구리역 저조한 실집행률 등을 고려해 볼 때 감액이 필요함 - 향후 저조한 집행률 개선을 위해 ①국고보조율 상향 검토, ②지방비 확보 사전점검 강화, ③사업 공정관리 고도화 등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근거하며, 국정과제 57번(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과 연계되어 정책적 타당성이 높음

- 환승센터는 광역교통시설로서 국비 지원이 타당하나, 국고보조율 30%는 광역철도(70%), 광역도로(50%) 대비 낮아 적기 구축 및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율 상향 검토 필요함

○ 사업계획의 적정성

- '25년 평가대상 5개 내역사업(북정역, 구리역, 삼성역, 마산역, 계룡역)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제3차 환승센터 기본계획과 부합하며, GTX·광역철도 연계 환승체계 개선이라는 사업목표와 정합성이 높음

- 각 환승센터 사업비는 공정에 따라 산출되었으나, '25년 마산역 환승센터는 지방비 미확보로 국고보조금 420백만원 불용 처리되어 사업추진 체계 점검 필요함

- 수도권 지원이 많은 편이므로 지특회계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집행 효율성

- '24년 집행률 100%, 실집행률 99.4%로 우수하나, '25년 구리역 실집행률 8.9% 및 마산역 불용(420백만원) 발생으로 개선 필요함

- 국토부→지자체→사업시행 전달체계가 간명하나 마산역 환승센터 사례처럼 지방비 확보가 부족 혹은 국토부-지차체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 부정수급 무(無), 국가회계시스템(디브레인, e-나라도움) 및 지자체 회계시스템(e-호조) 체계적 관리가 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환승센터구축 지원이 많은 바, 지특회계 보다는 일반회계 사업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성과 달성도·우수성

- 환승서비스 수준 지표 5개년('21~'25) 모두 100% 달성, 환승센터 구축 사업공정률 '25년 54.8%(목표 56.5% 대비 97%, 마산역 불용이 주요 원인)

- 운정역('24), 사상역('25), 북울산역('25), 태화강역('24) 준공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며, 국정과제 57번 달성에 명확히 기여함

- 광역버스 환승시설 시범사업('23) 만족도 조사 결과 12개 항목 모두 개선(평균 1.0점 이상 상승)으로 국민 체감도 높으나 더 나은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함

○ 총평

- 광역교통 환승체계 개선을 통한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라는 정책목표 및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마산역 지방비 미확보 문제, 구리역 저조한 실집행률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감액이 필요함

- 향후 저조한 집행률 개선을 위해 ①국고보조율 상향 검토, ②지방비 확보 사전점검 강화, ③사업 공정관리 고도화 등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개발제한구역관리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집행률이 부진하고 성과지표 달성도가 미흡하여 감액 사유는 있으나 법적 근거에 의한 사업 필요성이 있는 바, 사업개선을 통한 사업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평균 66.0%로 저조하고, 3년 연속 동일한 집행 부진 사유가 반복되고 있음 - 성과지표 달성도가 미흡하고,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과도하여 사업 관리 및 예산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실집행률 저조 및 연례적 이월 발생,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과도한 국고지원 축소, 성과지표 달성 미흡 및 지표의 부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자체의 일반적 책무인 생활기반시설 설치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만을 위한 별도 특별지원의 타당성이 불명확함

- GB주민지원사업(도로, 상수도, 배수로 등)은 전형적인 지자체 고유사무로 자체 추진 가능성이 높음

-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약 8만명)에게만 1인당 약 91만원 지원은 타 농촌·낙후지역 주민과의 지원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국고보조율(70~90%)도 과다함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 구조는 명확하나, 사업목표-추진전략-사업내용 간 정합성이 부족하며, GB관리보조(불법행위 단속)와 GB주민지원(생활편익 증진)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66.0%로 저조하며, 매년 평균 38,663백만원(전체 예산의 34.0%)이 이월되고 있어 예산 편성이 과다함을 명백히 보여줌

- 지자체는 약 2,000억원을 신청했으나 예산은 647억원만 편성되었고, 실제 집행은 423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산출 근거의 합리성이 부족함

○ 집행 효율성

- 교부율은 양호(99~100%)하나, 실집행률이 3년 연속 65% 수준으로 저조하여 예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월액이 매년 27,316~46,904백만원 규모로 발생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극히 낮음

- 집행 부진 사유가 3년 연속 "지자체의 실시설계,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의 민원 발생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동일하여 사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임을 의미함

-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4년 국회 지적 이후에도 2025년 실집행률이 65.3%로 오히려 악화됨

○ 성과 달성도·우수성

- 주민지원사업 만족도가 67.0%('25년)로 목표치(69.1%)에 미달하였으며(달성도 97.0%), 최근 3년간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임(71.8%→69.4%→67.1%→68.3%→67.0%)

- 연간 7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만족도가 67% 수준에 불과하며, 기반시설 확충률은 단순 누적지표로서 당해연도 사업 효과를 측정하기 부적합함

○ 총평

- 본 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평균 66.0%로 저조하고, 3년 연속 동일한 집행 부진 사유가 반복되며, 성과지표 달성도가 미흡하고,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과도하여 사업 관리 및 예산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사업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스마트시티확산사업(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26년부터 회계 이관(일반→지특)되어 세부사업 변경(스마트시티확산사업 → 스마트시티확산사업(지원))이 되어 내역사업 스마트시티 조성(지원)으로 추진중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국정과제 31-4 K-AI시티 선도모델 국내외 확산,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4~'28) 등 정책과 직결된 과제로 수행중으로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음 · 지원규모의 산출근거가 내역별로 충분히 확인되나, 종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서 부정징후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관리에 일부 미흡함이 확인되어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26년부터 회계 이관(일반→지특)되어 세부사업 변경(스마트시티확산사업→스마트시티확산사업(지원))이 되어 내역사업 스마트시티 조성(지원)으로 추진중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국정과제 31-4 K-AI시티 선도모델 국·내외 확산,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4~’28) 등 정책과 직결된 과제로 수행중으로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음

- 스마트시티확산사업(일반회계)에서 수행중인 ‘국가시범도시 내역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이 신도시 부지에 20종 이상의 스마트 기술을 집약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인 반면, 본 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존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 현안을 기존도시 인프라의 물리적·제도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AI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로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인정됨

○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점 정책과제이며, 법률에 근거한 국가 재정사업으로, 효과적인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서는 단계적·지속적 사업 추진이 수반되어야 함

○ ‘25.12. 기준 본예산현액 대비 99.3%의 우수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교부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3%이며, 이월사유는 용역 과업기간 준공 미도래로 제시하고 있음

○ ‘26년부터 회계 이관(일반→지특)됨에 따라 세부사업 변경(스마트시티확산사업→스마트시티확산사업(지원))이 되어 ’25년에 대한 부정수급 등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 세부사업 변경 전에 대한 부정징후 및 수급현황 조사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시티 챌린지(지자체자본보조) 사업에서 2024년 2건의 부정수급(총액 약 70백만원)이 적발되었으며, 스마트챌린지 사업에서 2023년, 2024년, 2025년 각각 1건의(총액 약 300백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음. 2024년에는 스마트시티조성 사업에서 1건(26백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음

○ 지원규모의 산출근거가 내역별로 충분히 확인되나, 종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서 부정징후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관리에 일부 미흡함이 확인되어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도시재생사업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 내역사업 모두 국정과제 및 법령에 따른 정책적 필요성이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적정하나, 도시재생은 실집행률 저조하여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므로 실집행 가능 수준을 감안하여 감액이 필요함 - 소규모주택정비는 지역자율계정 이관으로 인한 감액 판정이 가능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도시재생) 국정과제 49번(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노후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개선 필요, 도시재생법 근거 명확
- (소규모주택정비) 국정과제 10, 62, 63번(자치분권,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과 연계되며, 소규모주택정비법 근거 명확
- (특별재생) '25.3월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안정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높음, 도시재생법 근거 명확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세 사업 모두 상위계획·국정과제와 부합하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차등보조율이 과학적 근거로 재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도시재생(도시기능 복합 개발), 소규모주택정비(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조성), 특별재생(주거·기반시설 정비, 심리치유,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으로 각각 사업내용이 적절함. 사업목표-내용 간 정합성은 양호하나, 성과 가시화 전략 보완이 필요함

○ 집행 효율성

- (도시재생) 최근 3년 평균 실집행률 56%로 집행 부진이 지속되어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
- (소규모주택정비) 공모 선정 절차 투명하고 분기별 점검으로 관리 적절하며, '26년 지역자율계정 이관으로 집행률 제고 예상
- (특별재생) 도시재생법에 따른 절차 준수하며, '25년은 특별재생계획 수립 등 초기단계
- 세 내역사업 모두 부정징후 모니터링으로 부정수급 무(無)

○ 성과달성도

-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만족도 94.5점으로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이는 산출지표에 가까워 실질적 성과(outcome) 측정에는 한계가 있음
- 사업의 실제 목적인 '도시 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예: 사업지구 인구 변화율, 사업체 수 증가율, 노후주택 개선 호수 등)가 부재하여 실질적 정책효과 판단이 곤란한 상태임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부처연계형노후산단개발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노후산단 증가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은 명확하나, 실집행률이 3년 연속 하락('23년 77.7%→'25년 55.3%)하고 핵심 성과지표(계획수립) 달성률이 40%에 불과하여 예산 감액이 필요함 - 중점관리대상 사업 예산 감액, 월별 집행점검 강화 등 개선노력을 추진 중이나, 계획수립 단계 지연이 반복되어 제도 개선 및 집행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국정과제 49번(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및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핵심과제로 정책적 타당성이 높으며, 노후산단법 및 산업입지법에 따른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노후산단이 가파르게 증가('20년 453개→'35년 995개 예상)하여 기반시설 낙후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함

- 노후공단재정비지원 사업과는 선정시기·대상이 구분되어 유사중복 문제 없으나, 두 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예산 편성·집행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운영 또는 단일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재편성 검토가 필요함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국정과제 및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부합하며,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첨단업종 유치를 통해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재생사업지구 면적별 국비지원 한도(100만㎡ 미만 100억원~330만㎡ 이상 500억원) 설정은 적정하며, '19년 사업 시작 이후 선정된 29곳 중 대부분이 여전히 계획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어('25년 계획수립 목표 5곳 대비 실적 2곳, 달성률 40%) 사업 추진 속도가 매우 느림

- 계획수립 지연 사유로 제시된 '제영향평가, 경관·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토지소유주 보상 협의 난도'는 사업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절차 간소화, 보상 기준 명확화 등)이 시급함

- 수혜자 산출에 따르면 수혜자는 '23년 19.7만명에서 '26년 42.7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을 통해 직접 혜택을 받는 수혜자 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에 따라 지원규모의 적정성 판단에 한계가 있음

- '25년 국회 지적사항대로 국토연 컨설팅을 통한 계획수립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 성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집행 효율성

- 최근 3년 평균 실집행률 67.5%('23년 77.7%→'25년 55.3%)로 계획수립 단계 행정절차 지연, 토지보상 협의 등으로 집행 부진 발생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대상 사업 지정(실집행률 30% 미만 또는 2년 연속 이월 시 차년도 예산 50~70% 감액), 월별 집행점검 강화 등 개선 추진 중

- 국토부 공모·선정→지자체 계획수립·사업시행 구조로 추진체계 적절하며, 부정수급 무(無). 국회 지적사항(한도 상향, 계획수립 관리)에 대해 국비 한도 상향(150→500억원) 및 국토연 컨설팅 등으로 적극 환류함

○ 성과달성도

- 신규사업 선정 5곳(목표 4곳 대비 125% 달성)하였으나,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은 2곳(목표 5곳 대비 40%)으로 미달성함

- '25년 문화선도산단 3개 지역(구미·창원·완주) 선정으로 부처 협업 추진 중이며, 신규 재생사업 2개(김해·동두천)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대됨. 총 29곳 선정으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함

○ 총평

- 노후산단 증가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은 명확하나, 실집행률이 3년 연속 하락('23년 77.7%→'25년 55.3%)하고 핵심 성과지표(계획수립) 달성률이 40%에 불과하여 상당한 수준에서의 예산 감액이 필요함

- 중점관리대상 사업 예산 감액, 월별 집행점검 강화 등 개선노력을 추진 중이나, 계획수립 단계 지연이 반복되어 제도 개선 및 집행 관리 강화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다가구매입임대(출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다가구매입임대(출자)) - 다가구매입임대를 하는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해 출자하는 이 사업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율 지표를 보면 90% 미만이나, 실제 미임대율이 3% 수준으로 낮아 긴급 주거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그러나 지역별 지역·유형별 수요 불균형에 따른 공가와 매입 후 입주 대기·리모델링으로 인한 공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이 필요함 - 2025년 매입임대주택 고객만족도와 매입임대주택 미임대율 자료 제출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이 사업은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 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43조에 근거한 출자사업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수혜대상자의 수가 2025년 대비 2026년 감소하였고 성과달성도 항목의 매입임대주택 미임대율 지표를 보면 90% 미만이나, 실제 미임대율이 3% 수준으로 낮으며 긴급 주거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수요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사회 안정망 확충 등을 위하여 동 사업을 지속할 필요

- 다만 부처가 지역별 지역·유형별 수요 불균형에 따른 공가와 매입 후 입주 대기·리모델링으로 인한 공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 개선 의견을 제시함

- 최근 3년 예산 집행률은 96%로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있으며, 실제 미임대율이 3% 수준으로 극히 낮은 상황을 고려함

- 부처가 제출한 양식 표 3-2, 3-3, 3-4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내용은 부처 제출 자료로 이상 없음을 확인함

- 2023년과 2024년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부처 제출 자료를 통해 이행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 성과달성 우수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매입임대주택 고객만족도와 매입임대주택 미임대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적정함

- 2025년 매입임대주택 고객만족도와 매입임대주택 미임대율 자료를 제출할 필요

○ 다가구매입임대를 하는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해 출자하는 이 사업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율 지표를 보면 90% 미만이나, 실제 미임대율이 3% 수준으로 낮아 긴급 주거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그러나 지역별 지역·유형별 수요 불균형에 따른 공가와 매입 후 입주 대기·리모델링으로 인한 공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이 필요함

○ 2025년 매입임대주택 고객만족도와 매입임대주택 미임대율 자료를 제출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통합(전세매입임대경상보조) -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기금을 보조하는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규모의 적정성, 집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거나 미흡함 -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는 국토부 동일 소관과에서 각기 다른 예산으로 들어와 LH에서 통합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지원 항목도 유사하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혜대상이 겹치는 두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집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경상보조 사업 관리 시에도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이 사업은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임대하는 사업의 주택 관리·운영 등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이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43조, 제45조의2에 근거한 보조사업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음

○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는 국토부 동일 소관과에서 각기 다른 예산으로 들어와 LH에서 통합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지원 항목도 유사하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혜대상이 겹치는 두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와 최근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근 3년간 예산편성액과 집행액, 전세임대주택 공급 현황과 미임대율 등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함

- 대구도시공사의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의 경우 기타거래 과다에 따른 부정수급이 의심되었으나 부처가 제출한 양식 표 3-2, 3-3, 3-4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상 없음을 확인함

○ 성과달성 우수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전세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실적은 전세임대 전체에 대한 공급실적이지만, 전세임대의 경우 사업자 모집공고 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순위에서 전체 모집 물량이 마감되어 해당 실적을 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실적으로 보더라도 된다는 부처 의견을 수용함

- 전세·매입임대 사업 예·결산 시 만족도 조사를 성과지표로 추가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 경상보조 사업 관리 시에도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관리하겠다는 부처 의견을 수용

○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기금을 보조하는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규모의 적정성, 집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거나 미흡함

○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는 국토부 동일 소관과에서 각기 다른 예산으로 들어와 LH에서 통합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지원 항목도 유사하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혜대상이 겹치는 두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집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경상보조 사업 관리 시에도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국민임대출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통합(국민임대(출자)) -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인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은 신규사업은 없어 이미 승인된 사업의 착공·준공분에 한해 예산 집행 중이라 계획 대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 통합공공임대융자사업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처도 이에 동의함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율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최신 자료 제출이 요구되며, 이 성과지표는 상향지표이므로 국민임대주택 임대율로 추후 대체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소득 4분위 이하 무주택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과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1의2호에 근거한 출자사업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의 수혜 대상을 무주택의 저소득층으로 하고 국민임대 사업준공호수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인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은 신규사업이 없어 이미 승인된 사업의 착공·준공분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사업준공호수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지원규모가 실적 대비 과다함

-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통합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합친 사업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처도 이에 동의함

○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인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은 신규사업은 없어 이미 승인된 사업의 착공·준공분에 한해 예산 집행 중이라 계획 대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이 낮다고 판단됨

-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자료가 필요함

- 이 사업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대상이나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됨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임대율을 고려하여 매년 신규 설정하고 있으나 이 성과지표는 상향지표이므로 국민임대주택 임대율로 추후 대체하고, 최신 성과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인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은 신규사업은 없어 이미 승인된 사업의 착공·준공분에 한해 예산 집행 중이라 계획 대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 통합공공임대융자사업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처도 이에 동의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율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최신 자료 제출이 요구되며, 이 성과지표는 상향지표이므로 국민임대주택 임대율로 추후 대체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행복주택출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통합(통합공공임대 출자·보조사업으로 흡수 통합) -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있으나, 2022년 이후 행복·국민·영구임대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 통합되면서 별도 행복주택 승인 물량이 없고 사업도 기존 승인분의 착공·준공·정산 위주로 축소되어, 기능은 통합공공임대 내 청년·신혼부부형 세부유형으로 승계하고 세부사업은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임 - 2024년 예산 528,783백만원 중 101,438백만원만 집행(집행률 19.2%)되고 427,345백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134,594백만원에서 2026년 9,775백만원으로 △92.7% 감액되었음 - 25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한 기획재정부 상위평가에서도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 및 재정집행 미흡으로 인하여 70.5점(미흡) 판정을 받은 바, 독자적 사업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잔여 정산·지방보조 소요는 통합공공임대 출자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고 2026년 이후 행복주택출자 예산편성은 종료하는 방향으로 세부사업 폐지·통합하는 것이 타당함			

□ 종합평가 의견

○ 행복주택출자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 및 주거비 경감 관련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시세 60~80% 수준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주거복지 수단임. 다만 2022년 이후 행복·국민·영구임대가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승인·관리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별도 '행복주택' 유형을 유지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상당 부분 약화된 상황임

○ 사업 목적과 대상, 임대조건 자체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대체로 부합함. 그러나 실제 승인·집행은 통합공공임대 체계 하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계획·지표·문서상에서는 여전히 독립된 행복주택 유형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에는 통합공공임대 내 청년·신혼부부형 세부유형으로 사업을 일원화하는 방향의 재설계가 필요함

○ 재정집행 측면에서 2023년에는 예산 461,607백만 원 중 421,615백만 원 집행으로 집행률 91.3%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예산 528,783백만 원 중 101,438백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19.2%에 그치고 427,345백만 원이 불용으로 남는 등 과다계상과 집행부진이 구조적으로 드러난 상황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 최근 3년 평균 실집행률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되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권고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134,594백만 원 대비 2026년 9,775백만 원으로 약 92.7%를 감액되었음.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수요조사 계획의 정교화가 필요함

○ 성과지표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율'은 2023년 96.5%, 2024년 95.9%로 목표(95.0~95.5%)를 상회하여 공실 관리 측면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지표가 행복·국민·영구·통합공공임대를 모두 포괄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행복주택출자 사업의 독립적인 기여도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 효과, 입주 지속률·만족도 등 핵심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체계로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행복주택출자 사업은 정책 목표와 공공성 자체는 인정되나, 통합공공임대 체계 도입 이후 기능이 중복·축소되고, 2024년 대규모 이월·불용 및 낮은 실집행률로 재정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행복주택출자 세부사업은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며, 잔여 정산·지방보조 소요는 통합공공임대 출자·보조사업 내 청년·신혼부부형 세부유형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통합공공임대출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보조사업]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유사 사업인 영구·행복주택 출자를 본 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유형 통합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함 - 통합공공임대 정책의 중요성과 유형 통합 기조를 고려하여 사업을 유지하되, 만성적인 집행 부진과 대규모 이월을 감안하여 부실·지연 사업장 정리와 공실 해소, 입주계층 재편 등 구조개선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는 방향으로 재정구조 개선 필요 - 승인 위주의 성과지표를 실제 입주 및 주거복지 효과 중심의 질적 지표로 고도화하고, 지연 사업장의 물량을 회수하여 실집행지로 재배분하는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고 중산층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음. 특히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분절되었던 공급체계를 본 사업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주거복지 체계의 기반 사업으로서 위상이 강화되었음. 향후 별도 세부사업으로 존재하는 영구·행복주택 출자 사업을 본 사업으로 완전 통합하여 재원 배분의 유연성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를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실적(만호)'로 설정해 2022~2024년 승인 실적이 0.8→2.9→4.2만 호로 증가하는 등 양적 공급계획과 추진 체계는 비교적 정비되어 있음. 다만, 단순 승인 관리 위주의 체계에서 벗어나 승인-착공-준공-입주 전 과정을 연계 관리하는 '전 생애주기 관리 체계'를 사업 계획에 구체화해야 함. 이를 통해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는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미임대(공실)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업 구조의 질적 내실화가 요구됨

○ (집행 효율성) 실집행률이 점진적으로 개선('24년 85.2%)되고 있으나, 매년 대규모 불용액('24년 1,802억 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 편성이 실제 공정 속도를 상회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음. 시행자에 대한 일괄 교부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제 공사 진척도(기성)와 연동된 분할 출자 체계로 전환해야 함. 또한,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탈피하기 위해 영구·행복주택 출자 사업을 본 사업으로 통합하여 집행이 빠른 지구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통합 전달 체계 구축이 시급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주택 공급 호수 기준 성과지표는 2024년 목표를 상회하는 등 '수량' 측면 성과는 양호하나, 대규모 불용을 수반한 결과라는 점에서 재원 투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현재의 수량 중심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입주 계층의 다양성, 주거비 부담 경감 실적, 정주 만족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결과지표를 도입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우수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통합공공임대 정책의 중요성과 유형 통합 기조를 고려하여 사업을 유지하되, 만성적인 불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실집행 가능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사업개선이 필수적임. 동시에 별도 운영 중인 영구·행복주택 출자 사업을 본 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성과 우수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 기반 예산 배분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토교통부
사 업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지자체경상,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노후 공공임대의 에너지 성능·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필요성은 높으나, 국민임대 등 시설개선 내역에서 2025년 대비 51.3% 증액을 요구하는 등 사업 물량이 과거 집행 실적과 현장 착공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됨. 2024년 대비 2025년 총사업 예산은 18.9% 감액되었지만, 영구·국민임대 시설개선은 오히려 증액된 반면 일부 내역은 지자체 매칭 실패·이주대책 미비로 집행률이 9월 기준 1.9%, 14.3% 수준에 머무는 등 예산–집행 간 괴리가 지속됨 - 이에 따라 시설개선 부문 중 착공·집행 가능성이 낮은 물량을 집행 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큰 서비스 개선(주거복지사 배치·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에 재배분하며, 지자체 수요·재원 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물량 조정과 이주·임시거주 대책 강화 등 집행 구조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15년 이상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주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취약계층 보호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은 높음. 노후 국민임대가 공공임대 재고의 과반(52%)을 차지하며 수선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 필요성은 크나, 급증하는 노후 물량에 대비하여 단순 시설 보수를 넘어선 '중장기 노후주택 관리 로드맵' 및 '단지별 관리 우선순위' 선별 체계 구축이 정책적으로 요구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에너지 성능 향상과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수요자 맞춤형 계획은 적정함. 부처 소명대로 자연 공가를 활용하여 이주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은 타당하나, 시설개선 예산 규모의 단순 증액보다는 실기성 및 현업의 집행 역량을 고려한 내역 사업 간의 최적 재배분 중심의 사업 구조 설계가 필요함

○ (집행 효율성) 결산상 집행률은 대체로 양호하나, 지자체 매칭 예산 미확보 및 행정 절차 병목으로 인한 일부 내역 사업의 집행 지연이 확인됨. 향후 지자체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한 물량 배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자체 확약서를 확보하는 등 집행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리스크 분담 설계 보완이 요구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2024년 입주자 만족도 82.2점(목표 60점), 리모델링 전·후 거주 만족도 5.68→7.01 등 체감 개선 효과는 뚜렷함. 다만, 만족도가 높은 주거복지사 배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난방비 경감 등 객관적 결과 중심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함

○ (종합평가 및 제언) 노후 공공임대의 안전·에너지·서비스 개선 필요성과 상위계획 정합성을 감안해 사업은 유지하되, 중장기 물량 산정 체계 구축과 서비스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사업개선'이 필요함. 집행이 정체된 시설개선 예산은 실기성 기반으로 현실화하되, 확보된 재원을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 등 서비스 질 제고에 재투입하여 입주민 체감도를 높여야 함. 또한, 공공임대 생애주기 통합관리 DB 구축을 통해 유사 사업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제언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해양수산부

해양해운목표관리제
우수해양생태계 보호
어업협정이행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선원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전환교통지원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친환경 항만하역장비 구축 지원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운영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해양정책및문화육성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천일염산업육성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산물 위생관리
수산생물질병관리
수산종자산업육성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자율관리어업육성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삶의질향상
원양어업활성화
연안국과의 협력(ODA)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어선청년임대
양식장임대
수산 공익직불제
기타항만 재개발
여객터미널 운영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
물류기업유치지원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해양수산부

표지시설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연안화물선유류비보조(에특)
연안정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산지유통시설지원
내수면자원조성(지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어촌소멸대응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해양관광육성(지원)
해양폐기물정화사업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수산식품산업육성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수산물자조금지원
수산관측
피해보전직불금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해양해운목표관리제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정책 필요성은 인정되나 '25년 집행·성과가 현저히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동일 규모 편성은 재정 효율성에 부합하기 어려움 - 따라서 낮은 집행률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하고 성과관리, 공정·계약 지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항만 하역장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항만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됨

- 국정과제 및 항만 대기질 개선 관련 법·제도 취지와의 정합성이 있고, 민간 터미널 운영사가 전기 YT 도입 시 장비 단가 부담과 충전 인프라 구축, 운영 전환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 논리도 존재

○ 사업계획은 '26년에도 전기 YT 33대 보급을 전제로 예산규모를 유지하는 구조이나, 지원규모의 적정성은 집행가능성 및 확정 수요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

- '25년 집행실적에서 본 보조사업은 목표(약 30대 내외) 대비 실적이 2대 수준에 그쳤고, 실집행률도 매우 낮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음

- 이는 장비 제작 리드타임, 터미널별 맞춤사양, 운영사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이번 연도에도 계약·납품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동일 물량·동일 규모를 반복 편성하는 것은 이월·불용의 구조화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예산 규모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집행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전달체계는 해수부 - 항만공사(간접보조) - 터미널 운영사로 다단계이며, 사업 초기에는 공모, 선정, 정산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의 핵심 리스크는 수요 미달에 따른 불용, 계약 지연, 성능 및 운영효율 검증 부족에 있으므로, 관리의 초점도 집행가능성 관리와 실증 성과 검증으로 전환될 필요

○ 성과 측면에서도 1차년도 실적이 목표 대비 매우 낮아 보급효과를 주장하기 어렵고, '도입 대수'만으로는 운영 전환의 성과를 설명하기에 부족

○ 종합하면, 본 보조사업은 정책 필요성은 인정되나 '25년 집행·성과가 현저히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동일 규모 편성은 재정 효율성에 부합하기 어려움

- 따라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집행률 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하고 성과관리, 공정·계약 지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우수해양생태계 보호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24년 자율재정사업평가결과 '미흡'을 받았으나 개선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평가 의견

○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수행하기는 어려움

- 「해양생태법」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됨

-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보조사업 폐지 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가 어려우며 국제협약 불이행으로 대외적 신뢰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보조율이 책정됨

- 45.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따라 기준보조율 70%로 책정

○ 실집행률이 미흡하며 예산투입에 따른 재정효과나 성과 파악이 어려움

- 해양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지표는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는 상위목표 달성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부족하다고 보임

- 실집행률이 '25년 52.9%로 집행률이 낮아 집행률 관리가 필요함

○ 해양보호구역 지정만 되고 관리 기본 계획만 수립된 경우가 많아 실제로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보조사업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매년 보조금 정산 중이며 부정수급 방지 관련 자체점검 실시 중임

- 동 보조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실적이 없음

○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임

- 다만, 2년 연속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바 보조금교부에 관한 이월·불용 발생 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어업협정이행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인 '민간어업협력'에 대해 성과지표 개선 - '민간어업협력'의 세부사업들은 다른 사업과 내용상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민간의 어업협력을 통해 어업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차별성이 인정됨 - 성과지표인 어장환경개선(폐어구 수거) 실적은 목표가 도전적이지 않고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적절하지 않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정부간 입어교섭'과 '민간어업협력'(민간경상, 지자체경상)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보조사업은 '민간어업협력'(민간경상, 지자체경상)임

- '민간어업협력'은 한·중·일 협정수역의 어업자원 보존 및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장청소 실시 등 민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민간어업협력'의 근거는『수산업법』제93조(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보조 대상사업)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민간어업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일/한·중 중간수역 어장청소,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 수산종자방류사업은 타 사업과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민간의 어업협력을 통해 한·일/한·중 중간 수역의 자원관리 및 조업질서 유지 등 어업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 사업과의 차별성이 인정됨

- 한·일/한·중 중간수역 어장청소 및 불법어구 철거는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지원 사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 국가어항 관리사업,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등 해양환경 개선의 목적을 지닌 사업들과 유사함

- 수산종자방류사업은 수산종자 및 수산자원의 회복과 보존을 지원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사업과 '수산종자산업육성' 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 '민간어업협력'은 보조사업(민간경상, 지자체경상)으로 보조율은 100%로 설정되어 있음

-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장청소, 수산자원조사 등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100% 정부보조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대체어종 자원동향조사는 지자체에 소속된 어업인을 보조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어업협정에 따른 이행조치로 100% 정부보조는 타당성이 있음

○ 최근 3개년 동안 실집행률은 '23년 92.6%, '24년 96.0%, '25년 95.9%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어장환경개선(폐어구 수거) 실적'은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대표하기에 부적절하며, 목표설정의 도전성이 부족해 보임

- '26년 '어장환경개선(폐어구 수거) 실적'의 목표치(568톤)는 과거 5년간 실적의 최하단 수준으로 설정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현 시점에서 지원규모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혜 어선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이 점을 반영하여 적절한 지원 규모에 대한 검토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지속적인 발굴이 권장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안전설비의 강화는 어업 관련 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 설정과 수단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됨
- 어선 안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이 존재하지만, 본 사업과의 유사중복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내용의 적정성)

- 어업인 안전 강화라는 사업의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사업 내용은 목표에 부합함
- 수혜대상 어선 규모에 일정 금액을 곱하는 간략한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임
- 지원규모 및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전체 사업 대상 연근해어선 대비 사업의 수혜 어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에 따라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가늠함과 동시에 동시에 현황을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부담 수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어민들의 세대교체에 따른 경제적 상황 변화와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국비: 지방비 비중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수행해야 함

○ (집행 효율성)

- 적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어 보이나 어업인들의 안전장비 설치 및 활용 등에 대한 부정수급 감독은 필요함
- 예를 들어 실제 어업인이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내용연수 동안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임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인명피해 명수는 어선의 안전장비 장착 수준에 영향을 받을 것임이 인정되나, 특정 시기 재난의 정도, 어업의 활성화 정도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지표로 판단됨
- 어선 사고 대비 사망자·중상자 수, 사고 대비 적기 출동율 등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 개발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어선원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성과지표와 관련한 사업개선 - 성과지표인 '매년 어선 인명 피해(사망·실종)(단위: 명)'는 본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 목표치 설정에 있어 보다 안정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중대재해 대응 지원', '안전보건 체계 마련',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보조사업은 '중대재해 대응 지원(민간경상)'과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민간경상, '26년 신규)'임

- '중대재해 대응 지원'은 현장 컨설팅 지원 및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어선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본 사업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해율이 높은 어선어업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대재해 대응 지원'과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은 보조사업(민간경상)으로 보조율은 각각 100%와 70%로 설정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육상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현장 컨설팅(국비 100%)과 클린사업장 조성(국비 50%~80%)에 대한 보조율을 고려하면, 본 사업의 보조율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중대재해 대응지원'의 2차 집행의 경우 실집행률은 84.1%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 이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컨설팅 전문가 채용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현재는 컨설팅 전문가 채용계약이 완료되어 '26년 4월까지 이월예산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의 추진·전달체계의 효율성은 현장 전문인력의 역량과 활동 수준에 크게 좌우되므로, 우수한 인력풀 확보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는 매년 어선 인명 피해(사망·실종)(단위: 명)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여, 이를 통해 본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변동성이 높은 단년도 수치보다는 최근 5년간의 어선 인명피해와 같이 보다 안정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사업은 '2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의 시행기간이 짧아 현재로서는 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의 보조비목(7개 내역사업)은 수협법에 근거한 법적 필요성이 인정됨 · 면세유공급시설지원 실집행 부진은 사업기간 변경 후 2025년 실집행률 100%로 해소되었으나, 성과지표 부재(7개 중 5개), 외부평가 환류 미흡 등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하여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종합평가 의견

○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의 전 내역사업은 보조비목으로 편성되어 수협중앙회에 교부되고 있으며, 법정 위탁사업과 국가승인통계 조사 등 사업의 고유한 성격상 보조사업으로서의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그러나 이하의 사유로 '사업개선'을 권고함

- (성과관리체계 전면 개편) 7개 내역사업 중 5개 사업에 성과지표가 부재하며, 신규 설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결과지표로의 고도화가 필요함. 시정명령이행률 목표치(80%) 상향도 검토 필요함

- (국고보조율 근거 구체화) 바다로시스템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소명되었으며, 정부 정책지원 기능(52%)이 과반을 차지하여 국비 투자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국고보조율(50%) 설정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기능별 비용 배분 근거의 구체화가 필요함

- (환류 실질화) 면세유공급시설지원은 사업기간 변경 후 실집행률 100%로 개선되었으나, 2024년 '사업운영개선' 판정에 대한 체계적 후속 조치의 구체화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의 보조비목은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비 50%·지방비 50% 매칭 구조로 7개 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보조사업으로서의 집행 및 관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함 - 실집행률: 2023년 99.2%, 2024년 99.7%, 2025년 99.5%로 매우 높은 수준 유지 - 이월·전용 없음, 불용액 극소(연간 15~40백만원 수준) - 부정수급 적발이력 없음, 현장점검 연 2~3회 실시 - 운영지침에 기반한 체계적 보조금 관리 시스템 운영 - 보조사업의 성과 측면에서도 지원기업 매출액증가율 5년 연속 목표 초과달성, 신규고용창출 연간 1,600~1,800명, 만족도 4.49점(5점 만점) 등 우수한 실적이 확인됨 - 보조사업자(시·도) 선정 시 공모 절차를 거치고, 성과평가에 따라 계속/중단을 판정하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환류체계가 작동하고 있어 보조사업 관리의 효율성이 높음 · 이상의 사유를 종합할 때, 보조비목(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축 또는 개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 종합평가 의견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분야 창업자·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보조율(50%)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음

○ 보조금 관리 측면에서, 운영지침에 따른 보조금 정산·사후관리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실집행률이 3년 연속 99% 이상을 유지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보조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성과평가 연동형 관리체계(센터 운영 계속/중단 판정, 사업비 차등지원)는 보조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환류 메커니즘으로 평가됨

○ 다만, 통합 성과평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26년 센터 확대(7→8개소)에 따른 750백만원 증액분은 성과평가 기반 차등 배분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신규 설치 지역이 미확정되어 있고 기존 7개 센터 간 성과 편차(지역별 지원기업 수 43~78개소)가 존재함

- 대면평가에서 중기부 사업과의 중복 수혜(8건)가 확인된 바, 기존 센터 성과 격차 해소 및 중기부 사업과의 차별성 입증이 선행된 후 증액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적으로, 보조비목(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은 집행률·성과·관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 방식의 경상보조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상 지속적 확대 기조가 설정되어 있음 - 최근에는 신규 확대 사업이 병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확대가 서비스 질 향상이나 고용 성과 개선으로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검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단일 위탁기관 중심의 고정적 보조 구조는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효율성 제고 유인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내부통제 기능의 작동이 매우 중요 - 내역 사업간의 기능 중복가능성, 일반 행정 체계와의 통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구조의 재설계 검토 필요 - 성과지표는 달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목표 설정의 도전성과 질적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구조 조정이나 기능 재설계로 구조적으로 환류되는 체계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선원법」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8조에 근거하여 선원의 직업안정, 고용촉진 및 복지증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된 법정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국고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 동 법령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한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존치 필요성은 인정됨

○ 선원은 장기간 해상근무와 고위험 작업환경 등 특수한 근로여건을 가지며, 일반 고용서비스 체계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직군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일정 수준 재정지원은 타당

- 특히 해양 원격의료 지원 및 선원 전용 취업정보망 운영 등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기능으로 정부 개입의 기본적 필요성은 인정됨

○ 사업 구성은 직업안정, 복지증진, 원격의료, 정보망 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목표와의 기본적 정합성은 유지되고 있음

- 최근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중대한 부정수급 사례도 확인되지 않아 기본적인 집행 관리 체계는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 방식의 경상보조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상 지속적 확대 기조가 설정되어 있음

- 최근에는 신규 확대 사업이 병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확대가 서비스 질 향상이나 고용 성과 개선으로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검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단일 위탁기관 중심의 고정적 보조 구조는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효율성 제고 유인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내부통제 기능의 작동이 매우 중요

- 내역 사업간의 기능 중복가능성, 일반 행정 체계와의 통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구조의 재설계 검토 필요

○ 성과지표는 달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목표 설정의 도전성과 질적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구조 조정이나 기능 재설계로 구조적으로 환류되는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핵심 위탁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자본보조사업은 최근 실집행 추이와 이월 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및 일부 연차 조정을 통해 집행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위의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예산규모는 일부 감액 또는 연차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근거하여 해기사 국가자격검정, 선원 재교육훈련 및 국제협약(STCW) 이행 등 국가 위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본 사업은 국가 위탁기능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와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로 구분되며 두 사업이 국가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최근 예산 구조를 보면, 경상보조는 유지 또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 자본보조사업은 대규모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실습선 건조, 극지해기사 시뮬레이터 구축 등 대규모 투자 성격의 사업이 병행 추진되고 있음

- 최근 2차 실집행 실적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민간자본보조의 실집행률은 최근 3년간 61.2%, 39.5%, 56.3%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5년에는 약 54.5억원의 이월이 발생하는 등 자본사업에서 집행 변동성과 이월이 구조화되는 양상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본보조를 큰 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는 대규모 자본사업의 동시 추진은 위탁기관의 집행 역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월 누적과 재정 비효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경상보조의 경우, 인건비는 임직원 19명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탁기능 수행을 위한 인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인건비는 구조적으로 경직성이 높은 항목이므로 조직 확대의 속도와 중기 인력 운영계획의 정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또한 연구용역비는 정책기획 기능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국가위탁 핵심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항목은 아니며 긴급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가짐

○ 종합하면, 본 사업은 핵심 위탁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자본보조사업은 최근 실집행 추이와 이월 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및 일부 연차 조정을 통해 집행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위의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예산규모는 일부 감액 또는 연차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전환교통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정상추진 - 동 사업은 육상 화물의 해송 전환 지원을 통해 육상기인 Co2 발생 및 도로혼잡 등 사회비용 절감과 운용 수단 다양화 차원에서 정책 지원 필요성 인정되며, 도로 운송 대비 장기간 소요, 운송 완결성 부족 등에도 사업 효과성 높은 편임 - 또한, 해송운송은 장시간 소요 등 큰 단점에도 불구하고 해송 유인을 위해 보조금 40%(연 50억) 확대 타당하며, 50% 이상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전환교통 지원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2009년 기준 현행화('09년 55.36원 → '18년 112.17원)가 필요함 - 한편, 해송운송 장점(온실가스 배출량 도로의 1/6, 단위수송비(톤·km) 1/18, 사회환경적 비용 30% 절감 등) 등을 살려 지속적인 유인책 발굴과 노력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동 재정사업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제3항(전환교통 지원)에 법적 추진 근거가 있음. 육상 화물의 해송 전환 지원을 통해 육상기인 Co2 발생 및 도로혼잡 등 사회비용 절감과 운용 수단 다양화 등 국가물류 효율성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인정됨

- ‘25년 실집행률 경우 99.9%로 양호하나, 사회적 절감 비용이 ‘09년 기준인 55.36원/톤km를 아직도 적용 중인 바, 현행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만약 ’18년 사회적 비용을 현행화 시 112.17원/톤km으로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여 현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재정지원 규모 적정성 판단인 수혜 대상자 수는 최근 3년간 ’23년 13업체, ‘24년 12업체, ’25년 12업체로 화물량 수송 여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이 큼

- 중기재정계획은 해송운송 장시간 소요 등 적기 운송에 대한 단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해송 유인 차원의 보조금 40%(연 50억 원) 확대는 적정함

○ 동 사업은 자체 점검 및 관리 등으로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은 발견되지 않았음

- 환류 및 개선 노력으로는 ’24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환 물량 당 온실가스 감축량 현행화, 물류 부분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행화함

<물류 부문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톤CO2eq / 백만톤 · km)

구분	도로	해운	차액
원안	209	33	176
현행화	218	41	177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은 재원 27억원 투입 대비 40만톤 이상 온실가스 감축량이 합당함. ’24년 목표량 40만 톤 대비 85.0% 수준인 34만 톤의 경우 일부 감소했지만 비용투입 대비 사업성과 우수성 인정됨

- 해송운송의 경우 여러 가지 장점(온실가스 배출량 도로의 1/6, 단위수송비(톤·km) 도로의 1/18, 사회환경적 비용 30% 절감 등)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운송은 매우 큰 단점에도 해송운송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유인책 발굴과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산업정책적 기반 투자로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내역사업에서 실집행률이 지속 하락하는 등 집행 비효율성이 확인되고, 일부 세부 프로그램은 타 부처 사업과의 기능적 중복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와 구조조정이 요구됨 - 재정사업평가를 위한 성과체계에 과정별·내역사업별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향후 예산 조정이 성과·수요·집행 실적에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 및 국가 물류 및 공급망 역량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확인됨

- 또한 산업 환경의 다양화·복잡화·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실무인재 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타당성도 인정됨

○ 해운물류는 수출입 경제에서의 중요성과 해당 산업의 디지털 전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인력양성은 산업기반 투자로서 공공지원의 정당성이 존재

- 다만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지원은 경쟁력 제고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영역에 우선 배분되어야 하며 집행 안정성이 낮거나 일반 창업·사업화 지원과 유사해 대체 가능성이 큰 구성요소는 지원 범위·규모 조정이 필요

○ 사업내용의 큰 틀은 해운물류 전문역량 및 스마트 전환 대응이라는 정책목표와 부합하며, 인턴십 등 현장연계 및 연구역량 강화는 인력양성 수단으로 적정성이 인정됨

○ 지원규모는 '24년 이후 급격히 축소되는 추세이나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내역사업을 폐지한 결과이며 현재 내역사업의 규모는 유지되고 있음

- 전문인력 양성지원의 실집행률이 하락 추세이며 '25년에는 79.4%까지 낮아져 집행가능한 수준으로의 일부 조정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타 부처 유사사업 중복 리스크가 있는 창업지원 성격 프로그램은 특화성과 성과를 점검해 유사성이 높은 세부 프로그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달체계가 내역사업별로 시행주체가 다원화되어 기능별 전문성 활용의 장점이 있으나, 선정 및 평가 기준의 일관성, 간접보조 정산 표준화, 수혜자 중복 통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정수급 관리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으나, 사업 성격상 운영 비효율 리스크가 더 중요할 수 있으며 간접보조기관이 이러한 비효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이행실적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과는 '해운물류 전문인력 만족도' 중심으로 관리되나 사업의 내용·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과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해 관리할 필요

○ 본 사업은 산업정책적 기반 투자로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내역사업에서 실집행률이 지속 하락하는 등 집행 비효율성이 확인되고, 일부 세부 프로그램은 타 부처 사업과의 기능적 중복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와 구조조정이 요구됨

- 재정사업평가를 위한 성과체계에 과정별·내역사업별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향후 예산 조정이 성과·수요·집행 실적에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친환경 항만하역장비 구축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27년까지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도 전환율 중심에서 유지보수 단계 성과로 보완하여, 종료 전까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타당함 - 전달체계는 비교적 명확하고 부정수급 사례도 없으나, 리스크는 부정수급보다 집행지연, 낙찰차액, 대상/단가 산정 오류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리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성과지표도 신규부착 단계의 전환율 중심에서 벗어나 유지보수 완료율, 성능유지, 이월 최소화 등 유지단계 지표로 보완해 종료 전까지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항만 하역장비 배출가스(PM·NOx 등) 저감을 통해 항만·배후도시 대기질 개선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며, 관련 법령 근거와 공익목표가 명확해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24년 신규부착 종료 후 '25-'27년은 의무사용기간 경과 장비 1회 유지보수 후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지원 필요성은 종료까지 잔여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한적 지원으로 좁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본 사업의 예산규모는 '24년에 신규부착 종료 및 향후 3년간 유지보수 중심 전환에 따라 규모가 축소된 뒤 고정된 상태임

- 이 사업이 '27년 말 종료를 위해서는 잔여 유지보수 물량에 대해 유지보수 완료를 하여야 하며 '26년 규모가 필요 물량의 연차 배분과 정합해야 하며, 실집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런데 '25년 2차집행 실집행률이 74.4%로 낮고 차년 이월 88백만원이 발생하여, 유지보수 대상, 단가, 부품수급 과정 측면에서 연차 계획 대비 집행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DPF 신규 부착은 '24년 종료, 이후 '27년까지 1회 유지보수 후 단계적 폐지로 환류·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점은 명확한 개선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국회의 항만하역장비의 저탄소 전환을 지속 도모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통해 저탄소 전환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점도 환류 및 개선노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성과지표로 전국 YT·TC 저공해 전환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다만 '25년부터는 신규부착이 종료되고 '유지보수'로 전환되었으므로, 기존 전환율 지표가 유지보수 단계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음

- 유지 단계에서는 유지보수 완료율, 장치 성능유지 이행률, 이월 최소화 등이 성과달성도와 우수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업은 '27년까지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도 전환율 중심에서 유지보수 단계 성과로 보완하여, 종료 전까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타당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종합하면, 본 보조사업은 항만서비스 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시장질서를 개선하려는 정책목표 자체는 타당하고, 시범 단계에서의 추진 성과도 일부 확인됨 - 다만 '26년 예산과 중기계획은 자본보조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이며, 현 단계에서 정책효과의 실증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확대에 수반되는 점검 체계의 성숙도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사업은 점검 및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의 구체화, 투입 중심 성과관리 체계에서 결과 중심으로 성과지표 보완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항만서비스 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항만 경쟁력을 높이고, 면세유 불법유통·탈세 등 시장 왜곡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임

- 특히 선박연료 공급 과정에서의 계량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항만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며, 제도 정착 시 분쟁 감소, 시장 질서 확립, 공정경쟁 기반 조성 등 공익적 효과가 기대되어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정량공급 장비(질량유량계) 설치 지원은 공익적 목적을 수반하며, 영세한 업계구조를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은 정량공급 장비 설치 지원과 모니터링·운영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정책목표와의 정합성은 인정됨

- 현재 사업은 장비 설치지원의 비중이 높아, 설치 확대와 함께 검수, 운영 표준 및 검증체계가 병행되어야 정책목적 달성에 적합한 구조로 작동할 수 있음

○ '26년 예산은 민간자본보조 중심으로 전년 대비 급격히 확대되었고, 중기계획에서도 2027년에 100% 이상 증액한 후 유지되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음

- 시범 단계에서 축적된 실증 수준이 확대 규모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태이며, 현재 성과지표가 설치 척수 중심의 투입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투입의 정책효과를 확인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임

- 또한 장비 설치사업은 단가, 납기, 검수 등에서 집행 효율성 측면의 리스크가 존재하여, 물량이 급증할수록 불용·이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집행가능성과 효과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

○ 종합하면, 본 보조사업은 항만서비스 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시장질서를 개선하려는 정책목표 자체는 타당하고, 시범 단계에서의 추진 성과도 일부 확인됨

- 다만 '26년 예산과 중기계획은 자본보조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이며, 현 단계에서 정책효과의 실증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확대에 수반되는 점검 체계의 성숙도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사업은 점검 및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의 구체화, 투입 중심 성과관리 체계에서 결과 중심으로 성과지표 보완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민해양안전관 운영사업의 집행률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함 - `23년 개관 이후 운영 초기단계인 점이 인정되나, `24-`25년 연속 실집행률이 86% 수준으로 나타나 실집행률이 낮은 편이었음 - `26년의 중간 집행률 및 관람객 수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예산규모를 검토해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전기차 장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원론적으로는 운송료 인상을 통한 선사의 자체적인 장비 구입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1) 전기차의 운송을 선사가 거부할 수 있다는 점, (2) 전기차 차주 개개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 섬 지역 화물운송의 필요성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감안할 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내역사업들은 대체로 핵심 정책 및 상위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개최 지원사업은 '모빌리티'의 비중이 높아 프로그램·단위사업과의 일치성이 부분적으로 우려됨

- 지원규모는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집행 효율성)

- 국민해양안전관 사업의 실집행률은 일시적 문제로 사료되는 '23년의 저조한 집행률을 제외하더라도 '24-'25년에도 86% 수준으로,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주무부처는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26년 예산 내역 구조화를 통해 예산 집행률을 높일 계획임을 밝혔으나, 집행률은 '공급' 측면의 변수라는 점에서 관람객 수요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여 향후 예산 배정의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의 공모 절차, 보조사업자의 상황, 부정수급의 위험성, 자체 관리 노력 등 보조사업 전반의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예방적 사업의 특성상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행안부 실태점검에서 중앙부처 중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민 체감·만족도의 수치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안전감독 강화, 전기차 화재관련 장비 확충 등은 재난 시 사고 및 피해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e-Nav 단말기 보급) 법상 지원근거는 있으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전제 아래 e-Nav 단말기의 도입은 선박소유자의 자부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일부 여력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자부담율의 조정 등을 통한 감액 검토를 권고함 - 대다수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대상자들 및 공익적 목적으로 정부개입이 정당화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사업 대상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어선, 영세 연안여객 사업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정부개입이 정당화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되, 선박의 규모 또는 선주의 보유 척수등을 고려하여 단말기 구입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상자들에 대한 국비 지원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은 상위계획과 연계되어 있으며 사업 목적과 부합함
- 다만 각 내역사업의 정책적 목표는 해양사고 예방(e-Nav 단말기 보급)과 선원의 건강상태 증진(내항선 원격의료)으로 상이한 측면이 있음
- 앞서 재정사업 필요성에 대한 종합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자력으로 단말기 구입이 가능한 계층에 대한 자부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 (집행 효율성)

- 실집행률이 우수하고 사업의 추진·전달체계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보조사업의 공모 절차, 보조사업자의 상황, 부정수급의 위험성, 자체 관리 노력 등 보조사업 전반의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e-Nav) 실집행률을 성과로 측정하였는데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지만 사업의 성과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 성과 측정 측면에서 단말기 설치 선박의 사고율, 구조의 신속성 개선 등의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내항선 원격의료) 성과지표인 의료지원 서비스 이용 건수에 대해 서비스 이용 유형(건강상태 악화, 일상적 문진)에 따라 구분된 지표를 구축해야 하며, 유형별 경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일상적 문진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건수 증가는 긍정적이나, 궁극적인 효과성과의 연결 강화를 위해 만족도 등의 지표에 대한 관리도 의미 있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자본보조사업은 실집행이 저조하고 이월·불용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4·16재단 운영 및 인천 추모관 운영 등 경상보조는 상대적으로 집행 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지원규모 적정성 측면에서 낮은 집행률을 감안할 때 문제제기가 가능한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집행률 관리가 필요 - 부정수급 자체의 리스크보다 공정 지연, 설계변경, 낙찰차액, 이월·불용이 핵심 리스크이므로 관리의 초점도 집행가능성·공정관리로 전환할 필요 -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와 목표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기억과 안전문화 확산, 피해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보조 내역은 성격이 상이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안산 추모시설 건립,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와 경상보조(4·16재단 운영,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 등)로 구성됨

○ 사업계획 측면에서 추모시설·기억공간 조성 및 재단·추모관 운영은 공익목표와의 정합성이 있으나, 자본보조사업은 인허가, 설계변경, 지반·환경 여건 등 외생변수에 크게 좌우되는 공정의존형 사업임

- 최근 연도 집행에서 자본보조 내역은 실집행이 저조하고 이월·불용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4·16재단 운영 및 인천 추모관 운영 등 경상보조는 상대적으로 집행 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자본보조 확대가 곧바로 성과(준공·가동)로 연결되지 못하고 재정 비효율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본 보조사업은 낮은 집행률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한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집행률 관리가 필요

○ 부정수급 자체의 리스크보다 공정 지연, 설계변경, 낙찰차액, 이월·불용이 핵심 리스크이므로 관리의 초점도 집행가능성·공정관리로 전환할 필요

○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와 목표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종합하면, 일부 내역사업의 집행 불안정과 이월·불용 위험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집행률 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고 성과지표와 관련된 개선이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내항선박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 연도별 집행·성과 변동성이 존재하고, 선가·공정에 좌우되는 구조에서 이월·불용 위험이 상존하며, 결과지표(감축량) 산정·검증 체계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집행률 관리를 위한 노력과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내항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친환경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2050 탄소중립 및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이 확인되어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친환경선박 전환은 초기 투자비 부담과 기술·연료 전환의 불확실성으로 민간이 투자를 지연할 유인이 있어, 보조금은 전환 촉진의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음

○ 사업내용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와 연동하여 예비인증 - 지원대상 선정 - 1차 교부 - 정식인증 - 2차 교부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정책목표와 수단 간 정합성이 높음

- 2차 집행 실적은 최근연도에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과거 연도에는 이월·불용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제시되어 연도별 변동성이 존재하며, 성과지표(CO2 감축 예상량) 달성도도 연도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전달체계는 해수부 - 위탁기관(KOMSA) - 보조사업자(선사)로 비교적 명확하고, 예비/정식 인증과 지급을 연계하여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갖춘 점은 긍정적임

- 다만 선가 적정성, 장비 사양 및 인증요건 충족 여부, 공정·납기 지연 관리가 핵심 리스크이므로, 단순 증빙 중심의 관리보다 전문가 검증, 표준단가·사양 DB 구축, 이상치 점검 등 사전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 부정수급 측면에서도 전형적 현금성 부정수급보다는 선가·사양·공정과 연계된 과다계상 및 요건 미충족 위험이 본질적이므로, 선정 단계에서의 심사 강화와 사후 모니터링 고도화가 필요함

○ 종합하면, 본 보조사업은 내항선박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1) 연도별 집행·성과 변동성이 존재하고, (2) 선가·공정에 좌우되는 구조에서 이월·불용 위험이 상존하며, (3) 결과지표(감축량) 산정·검증 체계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집행효율성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관리 및 검증체계의 개선이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해양정책및문화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예산 조정 및 공모 절차 도입 검토가 필요함 - 100% 기준보조율 사업에 대해서 사업 책임성 및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정 비율(또는 정액)의 자부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모를 하지 않는 사업은 공모 절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의 해양영토 의식 제고, 해양 관련 학술대회 및 국제포럼, 해양수산업 통계생산 등 해양정책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해양정책지원’은 정책적으로 타당함

○ ‘해양정책지원’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해양교육문화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것으로, 그보다 좀 더 범위가 넓은 해양정책지원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양정책지원’은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고유하여 타 재정사업 등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이 매우 약함

○ 기준보조율 100% 사업의 경우, 해양산업 및 기업이라는 민간부문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으며, 포럼을 통한 편익이 정부뿐만 아니라 해양산업 및 기업에도 발생하고, 토론대회, 포럼과 같이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책임성 및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보조율 하향 및 일정 비율(또는 정액)의 자부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체관리 노력, 외부적발, 보조사업자 실적보고 등 부정수급 관련 사업 사후관리와 부정수급 방지 관련 예방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짐. 부정수급 발생이 없음

○ 해양수산부는 세계해양포럼과 인천해양포럼을 공모 절차 없이 추진하는 사유로 사업수행 경험, 국제적 네트워크, 기존 협력 관계 유지 필요성 등을 제시함. 그러나 이는 해당 기관이 수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지, 해당 기관이 아니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네트워크 및 협력관계는 공동주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유지·이전이 가능한 요소임. 제시한 사유는 공모 절차를 통한 평가·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 가능한 요소임에도 공모 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 목적 달성, 계획한 사업 내용의 수행, 예산 집행률 제고, 성과목표 달성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

○ 해양 교육 및 문화 정책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예를 들어,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해양(환경)관련 활동 참여율 등) 발굴 및 포함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 - 세부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세부사업 단위의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방지 관련 추진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독도 기반시설 건립·운영을 통한 독도 영토주권 수호활동 지속, 민간단체 독도 관련 학술·홍보사업 지원을 통한 민간역할 확대라는 사업목적은 영토관리 측면에서 명확하고 타당함.

○ 독도 영토주권 수호 관련 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정부개입은 타당함. 또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므로 지자체 또는 민간 자체 추진보다는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추진이 보다 적절함

○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는「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12조에 근거하며, 해당 법률은 독도의 보전·관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독도 관련 사업 시행 등 사업 추진 범위를 적절히 규정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배려층에 대한 독도탐방 지원은 타당성이 있음. 문화·예술인과 외국인에 대한 독도탐방 지원은 독도에 대한 국내외 인식 확산 측면에서 타당함

○ 시설건립·운영과 홍보·학술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및 민간보조사업자 간 사업 추진·전달체계가 효율적이며, 역할 분담이 적절함

○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부정수급 등 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 부정수급 방지 관련 예방 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짐

○ 독도 종합해양과학연구 수행, 독도 방문객 편의 확대 및 교육·홍보 활동 확산, 독도 법정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해양영토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해양 경제영토의 유용성을 확대하는 등 상위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함

○ 단,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

○ 세부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독도탐방객 만족도 조사 점수, 독도탐방객 수, 독도박물관 방문객 수, 일반국민의 독도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등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세부사업 단위의 성과지표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방지 관련 향후 추진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내용이 적절하고 사업 추진·전달체계는 효율적임. 단, 성과지표 개발을 통한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함 - 본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있으며 해양주권 강화, 국제적 영향력 강화 측면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명확한 사업임 - 사업목적과 관련된 결과 및 영향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세부사업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의 내역사업 '기지 주변 해역 연구 및 알리기(이어도연구회 지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있으며 해양주권 강화, 국제적 영향력 강화 측면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명확한 사업임. 따라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음

- 정부가 '이어도 수호와 이어도의 자연, 해양, 문화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홍보활동 추진'을 목적으로 이어도 홍보를 위한 관련 학술사업, 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식기반 구축사업 등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행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임

○ 해양수산부와 이어도연구회의 사업 추진체계는 적절함

○ 실집행 실적은 2023년 98.9%, 2024년 99.1%, 2025년 96.9%로 상당히 양호함

○ 관할권을 둘러싼 마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공모 사업 추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내용은 ① 이어도 관련 학술연구, ② 해양전문가 국제학술세미나, ③ 해양교육프로그램 운영, ④ 해양주권 교육프로그램, ⑤ 대국민 해양주권 홍보활동 등 공공성이 큰 활동으로 100% 국고보조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 대상과 교육 방식을 변경하여 '26년 사업계획을 수립('26.2)하여 추진 중임

-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이어도 교육의 파급효과가 미미하였던 일반인과정 해양아카데미를 폐지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신설함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최소 연 1회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며, e-나라도움 상 정산증빙서류에 대해 상시 검토 및 보완을 통해 철저하게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리하고 있음

○ 사업목적과 관련된 결과 및 영향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천일염산업육성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품질 좋은 천일염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업편성규모의 근거가 미흡함 · 실집행률이 `25년 58.7%로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부정징후 점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이 존재함

□ 종합평가 의견

○ 「소금산업진흥법」 따라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하기는 어려움

- 동법 14조 제1항에 따른 소금시설 등의 현대화·규모화·자동화 시책에 따라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 천일염은 국민의 주요 먹거리로 공급 및 가격 안정 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보조사업 폐지 시 천일염 생산, 품질관리 미흡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사업시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로 보조되고 있으며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임

- 기준보조율 30%로 책정되어 보조

○ 실집행률이 미흡하며 예산투입에 따른 재정효과나 성과 파악이 어려움

-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품질좋은 천일염을 공급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는 부재하며 '염전 안전성 조사 건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지표는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에 부족해 보임

- 보조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천일염 유통저장시설 지원은 실집행률이 '25년 58.7%로 집행이 적절하게 되고 있지 않음

○ 보조사업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매년 보조금 정산 실시.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 시, 부정수급 방지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 중이나 부정징후 점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이 있음

○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임

- 다만, 2년 연속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바, 보조금교부에 관한 이월·불용 발생 시,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3년 국회지적사항 및 보조금평가 권고사항에 따른 개선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산물해외시장개척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과오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정수급은 아니었으나 시스템 정산 누락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사업목적 및 재정규모에 맞는 성과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국정과제와 연관이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하기는 어려움

-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국정과제(71-2)와 연관되어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 폐지 시 수출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등 세계 무역환경 변화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유지는 필요함

○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수출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이나 재정규모 대비 관리지표가 적음

- 목표치 달성을 초과하고 있으나 목표치 설정근거가 미흡하며 도전적이지 않음

- 추후 사업효과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보임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의 내역사업에 대해 법령상 명시적인 기준보조율은 없으며 사업에 따라 보조율 50~100%로 차등 지원하고 있음

- 타산업 대비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산식품 수출업계 특성을 고려 시 80~100% 해당하는 보조율이 적정한 수준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부정수급 점검을 추진중임

- 과오수급 의심되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시스템 정산 누락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25년 보조사업평가 결과 사업방식변경을 권고받았으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됨

- ′26년부터 국내물류망 구축 사업 내 저온저장 창고, 저온수송차량 등 수출업체 선호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물류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산물 위생관리
보 조 유 형	민간자본,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 내용 및 성과지표 개선 등 필요 -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자율적 안전관리 모델이 가시적 결과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체계 강화 - 민간 위탁에 의한 방사능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실적 관리 강화

□ 종합평가 의견

○ 생산단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불안 해소 및 수출 시장 확보 필요

- 일부 사업은 지방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어 지방 정부에 국비 일부(50%)를 교부하여 운영하는 구조임

-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방사능 분석장비 지원 사업의 경우 일종의 인프라 사업으로 지자체 재원에 한계가 있는 경우 국비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주된 사업 내용은 생산부터 유통과 수출 전 단계까지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사업목표에 부합

- 다만,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대체로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향후 이러한 자율적 안전관리 모델이 실질적인 오염원 차단 등 가시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민간기관 활용 방사능 모니터링의 경우에도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

○ 2025년 부처 차원의 집행률은 92.0%이며,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예산현액 대비 2차집행 실적(실집행률)은 95.5%로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임

- 다만 지자체 보조사업(50%)인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의 경우 2차 집행 관련 실집행률이 '23년 90.5%, '24년 89%, '25년 87%로 다소 저조하나, 나라장터 입찰을 통한 적정가격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불용액임

○ 수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향후 가시적인 성과 확산과 운영체계의 정교한 고도화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

-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자율적 안전관리 모델이 실질적인 오염원 차단 등 가시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또다른 내역사업인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사업 내 민간기관 활용 방사능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민간기관 활용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

- 또한, 수산물 안전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지표를 추가 발굴하고,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견인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산생물질병관리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성과지표는 보조사업의 직접적 효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국정과제와 연관이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하기는 어려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수산업법」 제93조(시행령 58조), 「양식산업발전법」등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내역사업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임

○ 사업 폐지 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생물 질병에 대응이 어려워 수산생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사업의 유지는 필요함

○ ‘25년 95.8% 집행되어 집행률은 양호함

○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어업인 소득향상 기여를 목표로 ‘양식장 법정 전염병 모니터링율’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지표는 세부사업의 직접적 효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목표치 달성을 초과하고 있으나 목표치 설정근거가 미흡하며 도전적이지 않음

- 추후 상위목표달성을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수산생물 질병관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12개 시·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시행은 사업자는 지침에 따라 지자체 세부계획 수립, 공고 등 행정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있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임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처 내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부정수급 점검을 추진 중이며,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산종자산업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집행률 저조, 환류 및 개선노력, 성과지표의 부적절성 등의 사유로 감액이 필요함 -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의 '24년 실집행률이 0%이고, 종자중간육성단지 시범조성의 '25년 실집행률은 4.8%로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가 부족하였음 - 성과지표(수산종자관측 수요자 만족도)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목표수준이 도전적이지 않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연구·개발, 생산정보 표시제, 실태조사, 종자관측 및 컨설팅 등 산업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양식산업의 기초가 되는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6개 내역사업 중 보조사업은 '수산종자산업 진흥지원'(민간경상),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지자체자본), '종자중간육성단지 시범조성'(지자체자본, '25년 종료), '굴 스마트 인공채묘장 조성'(지자체자본)임

○ 수산종자산업은 고위험-고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초기 진입장벽이 높은 반면, 수산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구조를 갖고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 정부의 재정지원은 종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수도 있을 것임

○ 일부 내역사업에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은 '24년 인허가 절차지연으로 2차 집행 실집행률이 0%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25년 시설완공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음

- '종자중간육성단지 시범조성' 사업은 2회에 걸친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 매칭의 문제로 사업 신청자가 부족하여 예산이 이월되었음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전체 성과를 대표하기에 부적절하며 목표설정의 도전성이 부족함

- 성과지표인 수산종자관측 수요자 만족도는 6개에 달하는 다양한 내역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 성과지표 목표치가 과거 실적 대비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이의 달성 여부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 미흡함

○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및 개선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성과지표 개선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치화 가능한 실적 중심의 지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원규모의 과다산정, 저조한 집행률, 성과지표의 대표성 등의 사유로 감액 -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은 2년 연속 목표(26개소) 대비 실적('24 13개소, '25 15개소)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 '23년 27.1%, '24년 45.2%, '25년 36.0% -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양식전략품목 생산금액은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 한계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의 7개 내역사업 중 보조사업은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지자체자본), ‘스마트수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민간자본, 민간경상), ‘스마트아쿠아팜 혁신 선도지구 조성’(지자체자본)의 3개 사업임

- 3개 보조사업 중 ‘스마트수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아쿠아팜 혁신 선도지구 조성’은 ’26년 신규사업임

○ 본 사업은 세계 수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핵심 양식 품목의 전주기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수산업에 대한 친환경·스마트화 및 대규모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내역사업들이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과 유사·중복성이 있음

- 본 사업은 농특회계 사업이고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은 ’26년부터 지특회계 사업으로, 두 사업이 통합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계의 조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 ’26년부터 시작되는 ‘스마트수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아쿠아팜 혁신 선도지구 조성’,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내역사업들은 모두 스마트 수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내역사업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은 목표 대비 실제 지원 개소수가 부족하여 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과도한 부분이 있음 (’24년 개소수 목표: 26개소, 실적: 13개)

○ 최근 3개년 집행률이 50%를 하회하는 등 집행 효율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예산 집행률: ’23년 27.1%, ’24년 45.2%, ’25년 36.0%

○ 성과지표인 ‘양식전략품목 생산금액(백억원)’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여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26년부터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여러 내역사업들이 시작되어 성과지표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목표치가 최근의 실적상승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목표설정이 도전적이라 평가하기 어려움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보조율 설정 근거 불명확, 성과지표의 한계 등의 사유로 감액 - 자원순환 인프라구축 보조율(20%~70%)의 설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목표치 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내역사업 중 '자원순환 인프라구축'은 보조사업(지자체자본)으로 이는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수산부산물의 발생, 처리, 재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임

○ 본 사업은 부정적 외부성을 교정하는 성격이 있어 이를 민간의 자율에 맡길 경우 수산부산물이 방치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자원순환 인프라구축'의 보조율은 세부 항목별 20~70%로 설정되어 있음

- 지자체 자본보조로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 보조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보조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총괄 주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 등을 통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굴 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 사업의 실집행 부진을 사유로 감축(일정수준)의 평가를 받아 예산이 50% 삭감되었음

- 사업의 내실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수산부산물 재활용 비율(%)은 본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성과지표로서 한계가 있음

-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비율의 목표치 설정 기준이 인위적으로 보이고 과거의 실적 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도전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자율관리어업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재정지원의 필요성, 사업구성, 실집행률 저조, 성과지표 미흡 등의 사유로 감액 - 공동체운영은 원칙적으로 어민들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업구성에 있어 '유해생물구제(해파리)'는 다른 내역사업들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음 - '유해생물구제(해파리)'의 '25년 실집행률은 73.7%로 나타났음 -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비율(%)'은 성과지표로서 한계가 있으며, 대표성이 부족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및 유해생물구제활동을 지원하여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육성사업비'(지자체자본), '활성화지원'(민간경상), '운영비', '유해생물구제(해파리)'(지자체경상)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불법어업 등으로 인한 자원남획 등의 문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

- 그러나 자율관리어업은 원칙적으로 어민들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체 운영이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유해생물구제(해파리)'는 자율관리 어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내역사업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 내역사업들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함

○ 내역사업인 '유해생물구제(해파리)'의 '25년 실집행률은 73.7%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 '활성화지원'(민간경상보조)은 '24년 e-나라도움(한국재정정보원)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고, 이에 대해 보조금 반납 및 사업계획서 수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

- 부정수급 관리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만큼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비율(%)는 본 사업의 성과평가에 적절하지 않음

- 본 사업의 4개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기에는 해당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부족함

- 우수공동체의 선정이 본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운영주체의 의지에 따라 성과지표 실적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보조사업으로서의 부적절성, 실집행률 저조, 성과지표 미흡으로 감액 -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일부 시설 조성 사업에 있어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건설비: '24년 0.0%, '25년 4.3% /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 '24년 0.0%, '25년 13.3%) - 연안 생태계 건강성 회복(연안 생태계 종다양도 지수)는 본 사업의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및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등에 의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정과제 71(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과 관련성을 지님

- 내역사업: 인건비(민간경상), 경상운영비(민간경상), 건설비(민간자본), 바다숲 조성(민간자본), 수산자원 증대(민간자본), 수산종자 자원관리(민간자본), 총허용어획량(TAC) 운영(민간자본), 환동해블루카본 센터 건립(지자체자본), 낚시관리 강화

○ 수산자원은 이동성·공공재 성격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요구되어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수산자원 감소 및 회복 문제는 특정 해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가 대상이 되므로 지자체 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구성에서 인건비와 경상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들을 각각 하나의 단일 내역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이 아닌 위탁사업비나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건설비와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건립의 2차 집행 단계에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여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 건설비 실집행률: '24년 0.0%, '25년 4.3% / 환동해 블루카본센터건립 실집행률: '24년 0.0%, '25년 13.3%

- 사전 행정절차에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센터 등 시설조성 사업에 있어 사업 계획단계부터 사업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연안 생태계 건강성 회복(연안 생태계 종다양도 지수)은 본 사업을 비롯하여 해양 생태계를 회복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본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원규모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적격성, 성과지표 미흡으로 감액 - 조직화지원의 예산 산정의 구체적 근거가 불명확함 - 자조금단체 조직화 지원을 담당하는 공주대 산학협력단의 적격성에 대해 확인이 어려움 - 투입지표 성격의 성과지표와 주관성에 의존하는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영세한 어선어업인을 조직화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본 사업의 내용은 자조금단체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화지원과 자조금단체에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자조금단체 지원으로 구성됨

○ 연안어선 어업은 영세한 자본과 가족 중심의 소규모 인력에 의존하는 열악한 경영 여건으로 인해 개별 어업인의 노력만으로는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

- 농업과 축산업에서도 농축산업 자조단체에 대해 자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됨

○ 어업생산자 단체에게 자조금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이 있으며, 이는 자조금단체의 성격과 지원방식에 있어 본 사업과 차이를 지님

○ 본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자조금단체가 해당 산업의 어민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자조금단체가 수산물 수급조절이나 안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분담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지원금의 수혜가 전체 어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자조금단체에 대한 평가에 사업집행 목적 달성도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조직화 지원(150백만원)은 자조금단체 설치 지원 및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비 100%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규모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함

○ '24년부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자조금단체 조직화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움

○ 최근 3년간 2건의 부정수급(임직원 직계 존비속 거래, 예치형 경상보조 학습모델)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환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투입지표 성격의 성과지표와 주관적 설문에 의존하는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임의적이며 도전적이라 평가하기 어려움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사업은 어촌개발사업의 전주기 관리(선정·집행관리·성과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성과관리 및 예산 편성의 구조적 문제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2024~2029년까지 6년간 동일 금액(385백만원) 편성은 관리 대상 지구 수 증가(2018년 8개→2026년 89개) 등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소요 기반 예산 재산정이 필요함 - 보조금 집행은 양호하므로, 성과지표 체계 구축 및 실소요 기반 예산 재산정 등 구조적 개선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어촌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촌개발사업의 전주기 관리를 지원하는 본 보조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됨. 농어촌정비법 제75조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도 확인되지 않음

- 다만, 본 보조사업은 어촌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편익이 없는 간접 관리·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관리 대상인 어촌개발사업의 규모·추진 상황 변화에 연동한 보조금 규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24~2029년까지 6년간 385백만원 동일 편성은 실소요에 기반한 재정지원 규모 재검토가 부재함을 보여줌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규사업 선정·계획심의, 현장점검·집행관리,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이며, 보조금 전액(385백만원) 중 행정비용(인건비·임대료 등)이 263백만원(약 68%)을 차지하나, 인력 3명 기본 경비 중심의 구성으로 소액 관리사업 특성상 과다 편성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직접 수혜 범위와 간접 수혜 범위를 구분한 적정 수혜 규모 재산정이 필요함

○ (집행 효율성) 최근 2년간(2024~2025) 실집행률 100%를 유지하고 있어 집행 자체는 양호함. 2023년 예산 640백만원은 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일시적 증액이며 통상 예산은 340~380백만원 수준으로, 감축 이전 예산이 과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23년 보조사업평가 지적사항(성과지표 개선, 빈집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행하였으나,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

○ (종합 판단) 본 보조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① 성과지표 목표 설정의 비합리성 및 관리사업 핵심기능에 대한 성과 미측정, ② 6년간 동일 금액 편성에 따른 경직적 보조금 운영, ③ 경상경비 주기적 점검 체계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개선을 권고함. 구체적으로 실소요 기반 예산 재산정, 성과지표 체계 구축, 경상경비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의 보조비목(수산계학교 지원, 일자리창출 및 기술지원, 어업인역량강화)은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그러나 2025년 실집행률이 전 내역사업에서 전년 대비 하락(수산계학교 78.8%, 일자리 91.7%, 역량강화 86.7%)하여 보조사업 집행관리가 부진하며, 2024년 보조사업평가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지적에 대한 실질적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실집행률 부진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액'으로 판정함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은 어촌 고령화·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수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정책목적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됨. 관련 법적 근거도 다수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민간 주도로 대체하기 어려운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국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다음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으로 판정함

- (전 내역사업 실집행률 하락에 따른 감액) 2025년 실집행률이 수산계학교 지원 78.8%, 일자리창출 및 기술지원 91.7%, 어업인역량강화 86.7%로 전 내역사업에서 전년 대비 하락하여, 현행 예산 규모가 실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산계학교 지원의 민간자본보조 실집행률 75.5%는 공동실습선 건조 한시사업('22~'25) 종료에 따라 향후에는 영향이 없으나, 4년간 공정관리 미흡의 문제는 지적됨

- (외부평가 '감축' 지적 이행 미흡) 2024년 보조사업평가에서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지적을 받았음에도 실질적 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집행률은 오히려 하락하여 외부평가 환류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성과지표 부재에 따른 성과 검증 불가) 내역사업별 고유 성과지표가 전무하여 약 79억원 예산의 개별 사업 효과성을 입증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사업구조 복잡성) 9개 유형의 개별 추진체계가 혼재되어 있어 사업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유사 성격 사업의 통합 관리 방안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어업인삶의질향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4개 보조 내역사업(전문지원기관운영, 어업활동지원, 외국인복지회관, 여성특화검진)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외국인복지회관의 실집행률이 3년 연속 50% 미만(44.2%→39.7%→23.3%)으로 극히 저조함 · 여성특화검진의 지자체경상보조에서 2년 연속 대규모 불용('24년 657백만원, '25년 462백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외형적 행정비 비중 47%는 내역사업 통합에 따른 것이며 특화검진 자체 행정비는 12.5%이나, 어업안전보건센터의 별도 분리가 필요함 · 보조사업 4개 중 2개(전문지원기관, 외국인복지회관)에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보조금 투입 대비 성과를 검증할 수 없음 · 외국인복지회관의 집행 부진이 심각하여 보조사업 예산의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동 세부사업의 4개 보조 내역사업(전문지원기관운영, 어업활동지원, 외국인어업근로자복지회관, 여성어업인특화검진)은 어촌 취약계층의 건강·복지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등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정과제(71번)에도 부합하여 보조사업으로서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 보조사업 구조는 사업목적에 부합함. 여성특화검진의 외형적 행정비 비중 47%는 '24년 기재부 내역사업 통폐합에 따라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비가 통합 편성된 결과이며, 특화검진 자체 행정비는 12.5%로 확인됨. 다만,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비가 검진사업 내에 혼재되어 있어 별도 내역사업 분리를 통한 예산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재무안정성·사업추진능력에 대한 사전검증이 전 내역사업에서 미실시되고 있어, 보조금법 취지에 맞는 선정 절차 개선이 필요함

○ (집행 효율성) 외국인어업근로자복지회관의 실집행률이 3년 연속 50% 미만으로 하락(44.2%→39.7%→23.3%)하고 있어,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 대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여성특화검진에서도 지자체경상보조의 반복적 대규모 불용(2024년 657백만원, 2025년 462백만원)이 발생하여 수요 추정과 집행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 부정수급 관리 및 정산 체계는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며(미반납액 0원),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노력도 확인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성과지표가 설정된 2개 사업(어업활동지원 만족도, 특화검진 수검인원 증가율)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보조사업 4개 중 2개(전문지원기관운영, 외국인복지회관)에 성과지표가 부재함

- 특히 외국인복지회관은 보조사업 예산의 최대 내역사업(1,200백만원)임에도 성과를 측정할 수단이 없어, 보조금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종합) 보조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부정수급 관리 체계는 인정되나, 외국인복지회관의 3년 연속 심각한 집행 부진(실집행률 23.3%)은 예산 감액의 명확한 사유에 해당함

- 여성특화검진의 행정비 구조 재편, 전 내역사업 성과지표 신설, 보조사업자 사전검증 절차 마련 등 사업운영 개선과 함께, 외국인복지회관 중심의 보조사업 예산 감액이 필요하여 '감액'으로 평가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원양어업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보조비목에 해당하는 5개 내역사업(원양어업 국제규제 대응, 해외어장 자원조사, 한·러 어업협정 이행, 원양산업 통계조사, 해외선원 묘지관리)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성과지표의 결과지표 부적정성, 내역사업별 KPI 부재, 연수생 추적관리 체계 미흡 등 구조적 개선과제가 잔존하므로 '사업개선'으로 평가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의 보조비목(민간경상보조)은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양어업 국제규제 대응을 위한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외어장 자원조사 민간보조, 한·러 어업협정 이행 경비, 원양산업 통계조사, 해외선원 묘지관리 등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보조율 50%)은 옵서버의 조업선사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조 구조이며, 정액보조 방식의 해외어장 자원조사·한·러 명태 공동조사도 수익성이 낮은 공익적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타당한 방식으로 판단됨

○ 해외어장 자원조사의 보조사업 실집행률이 2024년 77.1%로 부진하였으나, 중도포기 사유(기니비사우 현지 어구 물자 투입 지연)가 확인되었고, '25년 사업시행지침 개정(재정평가 구비서류 의무화,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삽입)으로 재정평가 미달 업체가 실제 미선정되어 '25년 실집행률 98.3%로 개선됨. 개선 조치의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평가함

- 한·러 어업협정 이행 보조금의 급증은 한·러 명태 공동자원조사 본격 추진에 기인하며, 척당 약 39억원의 어업비용 중 10~12%(약 11.6억원)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비용의 적정성이 소명됨. 한·러 경제협력 채널 유지, 명태 경제안보품목 지정(수입의존율 90% 이상) 등 정책적 타당성도 확인됨

○ 부정수급 관리는 e나라도움을 통한 상시 점검, 연례 서면·현장 점검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조비목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부정수급 관리 체계의 적정성이 인정됨. 다만, 다음의 개선과제가 잔존하므로 '사업개선'으로 평가함

- (성과지표 체계 개선) '원양정책 서비스 만족도'는 수혜자 대상 자기 평가적 성격이 강하여 결과지표로 부적정함. 보조비목 내역사업별 고유 KPI(쿼터 확보량, 규범 이행률, 조사성과 등)를 설정할 것

- (해역별 성과 개별 평가) 해외어장 자원조사 민간경상보조의 3개 해역별 조사성과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개별 평가를 강화할 것

- (연수생 추적관리) 원양협력국 연수생 배출 인력의 활용 현황에 대한 전산화된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연안국과의 협력(ODA)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해양수산부의 고유한 ODA 전략 없이 백화점식으로 다양하고 많은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의 방향성이나 성과를 파악하기가 곤란함 - ODA 사업의 전략적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투입이 요망되는 사업임

□ 종합평가 의견

○ 본사업의 보조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수원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해외 어장을 확보한다는 목표는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ODA 사업으로 특성상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짐

- 다만, 민간보조율이 100%인 점은 수원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수원국과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매칭펀드나 현물출자 등의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이 수원국의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내용이 너무 많은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본 사업의 사업목표로 내세우는 '해외 어장 확보' 혹은 다른 종류의 국익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탄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특히, KOICA가 수행하는 범정부적 지역개발 ODA 사업이나 기후변화 대응 사업과 내용적으로 중복될 소지가 있는 사업이 다수 존재함

  * (예) 피지 남태평양대학교 그린캠퍼스 시범사업, 인니 국가해양관리 위성활용시스템 구축,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 사업 등

- 향후 사업 발굴시 일반 ODA와 차별되는 해양수산 고유의 ODA 사업발굴 필요

○ 본사업의 전반적인 집행률은 집행률이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23년 92% → '25년 77.9%로 낮아지고, 이 중 보조사업의 집행률도 차년도 이월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 추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

- 개도국인 수원국의 문제로 집행지연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수원국과의 사전 협의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본 보조사업은 백화점식 다양한 사업의 추진으로 일반 ODA와 차별화되는 해양수산부 특유의 ODA 전략적 방향성이 부족함

- 특히,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성과지표 설정과 이를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및 환류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업개선 및 감액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내용과 성과지표 측면에서 사업개선 - 연근해어선감척에 대한 보상은 특정 시기에 한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전체 수산자원량과 전체 어획량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연근해 어선 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구조조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정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경상), '연근해어업실태조사'(지자체경상)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사업목적에 부합함

○ 연근해어선감척은 연근해 수산자원에 대한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폐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연근해어선감척을 통해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어업 전반의 비용절감과 생산성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실제로 집중감척이 이루어진 '00~'09년도 이후, 전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수산자원량이 유지되고 척당 어획량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음

○ 연근해어선감척에 대한 보상은 항구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한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어선감척에 대한 보상이 항구적으로 이루어지면 어업인들이 감축을 지연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산자원의 회복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 연근해어선감척 내역사업의 '25년 실집행률은 50.1%로 감척어선에 대한 과세문제로 저조하였음

- 이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의 개정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였음

○ 본 사업의 성과지표인 척당 생산금액 증가율(%)은 수산자원이 황폐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어 성과지표로서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량과 전체 어획량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어선청년임대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집행률 저조 및 성과지표 등에 대한 사업개선 - 최근 3개년 동안 실집행률은 '23년 95.3%, '24년 46.1%, '25년 77.5%로 저조함 - 성과지표인 '청년어업인 양성(명)'은 본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 본 사업은 사업의 시행기간('22년~)이 짧아, 현재로서는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청년어업인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이는 국정과제 71호와 연계성이 높으며, 고령화된 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음

○ 지원규모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함

- 어선임대지원의 기준보조율('25년 50%, '26년 70%)은 예산규모 및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 사업의 수혜 범위가 제한적이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연간 수혜자 수가 20여 명 수준에 불과하여 전체 어업인 규모 대비 사업의 수혜범위가 넓지 않음

- 본 사업의 수혜를 받은 청년들 중 지원기간 종료 후 어선어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면 본 사업의 실효성은 더욱 낮게 평가되어야 함

○ 내역사업인 '어선임대지원'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집행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24년 46.1%, '25년 77.5%의 낮은 실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지연 및 목표 미달로 인한 것임

○ 성과지표 체계가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반영하기에 부적절하며, 성과달성도 또한 하락하고 있음

- 성과지표인 '청년어업인 양성(명)'은 단순 수혜자 수를 집계하는 산출지표에 불과하여, 본 사업이 청년의 어업 안착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

- 단, 본 사업은 '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4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업의 시행기간이 짧아,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양식장임대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양식장임대 보조사업은 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근거가 명확히 인정되며, 양식장임대 내역사업의 집행 실적이 양호함. 다만, 양식단지 조성의 수요 검증 보완 및 성과체계 정비가 필요하여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양식단지 조성의 실집행률 40%는 신규 건축사업의 공모·설계 기간 소요에 따른 구조적 사유로 인정되나, 2026년 하반기 편중 집행에 따른 재이월 방지를 위한 분기별 집행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임대형 사업 특성상 시설 반복 활용에 따른 장기 수혜 가능성은 인정되나, 구체적 수요 검증 자료 보완 및 양식단지 성과지표 사전 설계가 필요함 - 양식장임대와 양식단지 조성의 사업 성격이 상이하므로, 보조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 구조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양식장임대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71번과 연계하여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유사·중복 사업이 없으며, 양식업의 높은 초기 투자금(약 599백만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 양식장임대(민간경상, 832백만원)와 청년 창업·임대형양식단지 조성(지자체자본, 6,0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양자의 사업 성격이 상이(기존 양식장 임대·운영 vs. 대규모 신규 시설 건설)하여 별도 세부사업 분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집행 효율성) 양식장임대 내역사업은 2024~2025년 전액 집행(100%)으로 양호함. 청년 창업·임대형양식단지 조성은 실집행률 40%이나, 신규 건축사업 특성상 1차년도 공모·설계 기간 소요에 따른 구조적 사유로 인정되며, 2026년 착공 시 해소될 전망임

-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으며, 2024년 이자발생액 7백만원은 정산 확정 후 조속 반납처리 예정임. 사업기간 연장('24.12→'25.12)은 양식 품종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성과지표('임대 계약건수 누적')는 2024년 10건, 2025년 20건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이는 산출지표에 해당하여 보조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지 못함

- 임차인의 정착률·소득 변화·양식 생산량 등 결과지표를 추가 개발하고,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를 사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종합 판단)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및 제5차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상 핵심 추진과제로서의 정책적 중요성이 크고, 양식장임대 내역사업의 운영 실적이 안정적이며, 양식단지 조성의 1차년도 이월이 신규 건축사업의 구조적 사유에 기인한 일회적 성격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개선'으로 평가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산 공익직불제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수산공익직불제의 보조사업(4개 내역사업: 소규모어가·어선원,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경영이양 직불)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어업인 소득안정 및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보조 목적이 타당함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보조사업 실집행률이 전반적으로 80% 내외에 머물러 있으나(소규모어가·어선원 83.2%,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82.1%, 수산자원보호 87.2%), 이는 직불금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 교부 후 지급요건 미충족자 발생에 따른 자연발생적 결과로 일반 사업의 집행 부진과 구조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으며, 보조금 교부 규모와 실제 집행 간 괴리에 대한 수요추계 개선이 필요함 - 부정수급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23년 49건 → '25년 210건), 보조금 정산 후 미반납액도 증가 추세('23년 47.6억 → '24년 80.5억)이나, '26년 시범운영 예정인 사전검증시스템 구축 등 부정수급 방지 노력이 진행 중이며, 시범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수산공익직불제의 보조사업(소규모어가·어선원,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경영이양 직불)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직접 지급하여 소득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보조사업의 추진·전달체계는 해양수산부 → 지자체(시·도·시·군·구) → 어업인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경비(직불금의 1.7%)도 적정한 수준임. 유관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전산 자격검증 등 효율화 노력도 확인됨

○ 다만, 보조사업 운영에서 다음의 개선사항이 확인됨

- 보조금 실집행률이 80% 내외로 지속되어 교부 규모 대비 실제 집행 간 괴리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수요추계 시 탈락률·미신청률 등을 반영한 현실적 교부 규모 산정이 필요함

- 부정수급이 3년간 누적 422건(4.3억원) 적발되었으며, 이행점검 과정에서 적발이 아닌 신청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 강화가 필요함. '26년 시범운영 예정인 사전검증시스템의 조속한 가동이 중요함

- 보조금 정산 후 반납 관리에서 미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별 정산 독려 및 환수 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실집행률 저조는 제도설계의 구조적 미비에 주로 기인하고 개선 추세가 확인됨. 다만, 수요추계의 실적 기반 현실화, 사전검증시스템 조기 가동, 성과지표 목표 합리화, 미반납액 환수 강화 등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하므로 '사업개선'으로 평가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기타항만 재개발
보 조 유 형	민간자본,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민간 또는 지자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국비 집행도 자동적으로 지연되는 구조로, 중앙정부가 집행 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움 · 최근 수년간 총사업비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민간사업 순연 등의 사유로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었으며 사업 구조상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임 · 민간투자 활성화 및 기반시설 지원 필요성은 제시되어 있으나, 민간사업 지연 리스크 관리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개선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기존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일정 수준 감축 필요 및 지연요인 사전 차단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나, 해당 지적사항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지표가 전 항만의 하역능력으로 측정하고 있어 개별사업의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보조사업 예산은 감액하고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기타항만 재개발 보조사업은 「항만재개발법」에 근거한 항만 재생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항만 배후지역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선행 인프라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은 타당함

- 특히 묘도 폐수종말처리시설(민간자본보조 50%), 인천 1·8부두 및 동해·목포 소규모 항만재생(자치단체자본보조 70-80%)은 민간·지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성격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본 보조사업은 민간 및 지자체 일정에 연동되는 구조로, 국비 집행이 상대방의 사업 추진 속도에 종속되는 특성을 가지며, 정책 필요성과는 별개로 집행통제력 및 재정 효율성 측면의 검토도 병행되어야 함

○ ’26년 보조사업은 확대 편성되었는데 그러나 실 집행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본 사업의 집행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계획의 현실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집행률: ‘23년 0%, ’24년 0%, ‘25년 61.5%

○ 보조사업은 민간자본보조(50%) 및 자치단체자본보조(70-80%) 구조로 운영되는데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상존

- 민간 또는 지자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국비 집행도 자동적으로 지연되는 구조로, 중앙정부가 집행 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움

- 최근 수년간 총사업비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민간사업 순연 등의 사유로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었으며 사업 구조상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임

- 기존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일정 수준 감축 필요 및 지연요인 사전 차단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나, 해당 지적사항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지표가 전 항만의 하역능력으로 측정하고 있어 개별사업의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보조사업 예산은 감액하고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여객터미널 운영
보 조 유 형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공익목표 측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연도 수요부족으로 인한 실집행 없음 및 이월·불용 발생이 확인됨 - 수요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설치 확대, 표준 사양·유지관리 체계 마련, 가동·이용 중심 성과지표 도입 등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여객선 이용 과정에서 선착장 - 선박 간 높낮이 차이, 협소한 승하선 통로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교통약자의 승하선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단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국가의 책무와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익목표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연안여객선 업계의 영세성·수익성 한계로 인해 민간 자발적 투자만으로 편의시설이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 수준의 보조 지원 논리도 존재

- 다만 본 사업은 수요형 보조사업으로서 실제 신청·설치가 이루어져야 성과가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필요성 인정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지원규모 적정성 측면에서 2025년에는 예산현액 1,110백만원 대비 실집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행부진 사유도 수요 부족으로 명시되어 있음

○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전달체계는 공모 - 신청 - 평가/선정 - 교부 - 설치 - 정산의 일반적 구조로 복잡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신청 자체가 저조"하여 절차가 작동해도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1) 설치공간·선박 사양의 제약, (2) 설치 후 운영·유지관리 부담, (3) 선사의 투자 여력 및 운항 일정과 설치 일정의 충돌 등 구조적 요인이 수요를 제약했을 가능성이 높아 집행부진이 반복될 경우 '항목 확대'나 '보조율 조정'만으로는 불용을 해소하기 어렵고, 집행 가능한 사업 구조로의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함

○ 종합하면, 본 보조사업은 공익목표 측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연도 수요부족으로 인한 실집행 없음 및 이월·불용 발생이 확인되어 현재 사업구조를 유지하기는 곤란함

- 따라서 수요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설치 확대, 표준 사양·유지관리 체계 마련, 가동·이용 중심 성과지표 도입 등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해외항만개발 협력 정책의 일부로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고, 지원국 확대(예: 2개국 → 3개국)는 정책 의지는 인정되나, 정책효과 달성 여부, 기업수요와의 연계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 - 지원국 확대 중심 편성 방식인 반면 성과 연계성의 정량적 검증 부족, 사업규모 확대 시 비효율성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현 편성 규모는 다소 확대된 측면이 있음 - 사업의 기능과 구조는 유지하되, 성과 중심·선별 중심 구조로 전환을 전제로 예산의 감액이 필요 - 성과지표도 본 사업에 적합한 지표로 개선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해외 항만개발 협력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항만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임

- 개발도상국의 항만 인프라 개발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정부 간 협력사업과 연계될 경우 초기 진입 장벽 완화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

- 다만 산업지원, 시장개척 지원 성경이 강한 보조사업으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사업성과가 의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정밀한 접근이 필요

○ 본 사업은 건별 정액 지원 방식(1개국당 약 300백만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국가 수 확대를 통해 예산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임

- 형식적인 산출근거는 제시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우선순위 판단 근거, 기대 성과(수주·투자 연계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인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지원국 확대(예: 2개국 → 3개국)는 정책 의지는 인정되나, 정책효과 달성 여부, 기업수요와의 연계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

○ 본 보조사업의 규모가 9억원('23)에서 6억원으로 감액('24, '25)된 후 9억원('26)으로 다시 증액된 상황이며, '23년의 경우 15% 수준의 반납이 발생하였으나 '24년에는 거의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음

- 명확한 근거 없는 증액은 지양해야 하며, 본 사업이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 지원국 수 확대가 곧 집행 안정성 또는 성과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과 검증 체계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계획한 사업 규모만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입 측면에서의 성과는 있으나 지원후 실제 수주 성사, 협력체계 유지 지속성 등의 성과로 연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예산유지 및 확대를 정당화할 우수성을 제한적임

○ 본 사업은 해외항만개발 협력 정책의 일부로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산업지원 성격이 강한 보조사업 구조, 지원국 확대 중심 편성 방식인 반면 성과 연계성의 정량적 검증 부족, 사업규모 확대 시 비효율성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현 편성 규모는 다소 확대된 측면이 있음

- 사업의 기능과 구조는 유지하되, 성과 중심·선별 중심 구조로 전환을 전제로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고 성과지표도 본 사업에 적합한 지표로 개선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물류기업유치지원
보 조 유 형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스마트공동물류센터와 스마트물류시스템 전환지원 사업은 정책 핵심 영역으로서 기본 방향은 타당하나, 재정집행 안정성과 중기 재정관리 측면에서 보수적 접근이 필요 - 공동물류센터는 준공까지 일정 범위 내 지원을 유지하되, 공정 진도에 부합하는 집행 관리가 요구되며, 스마트물류시스템 전환지원은 단계적 확대와 엄격한 성과관리 체계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에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과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지원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로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지원 사업은 '26년 신규로 편성됨

○ 물류센터 사업은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 집적화 및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전환지원 사업은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스마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항만물류단지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적합함

- 특히 중소 물류기업의 공동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전환을 통해 물류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화주의 물류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대규모 시설 건립을 전제로 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설계·계약·공정 관리, 물가 상승, 자재 수급, 공정 지연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집행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24년도에 집행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25년도에 100% 집행으로 개선되었으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안정적인 집행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사업자의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국고 집행이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연차별 예산 편성은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물류시스템 전환지원 사업 역시 개별 기업의 신청, 선정, 계약 및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집행이 분산되는 구조이며, 기업별 준비도와 수행 역량에 따라 사업 지연 가능성도 존재

- 70%라는 높은 국고보조비율, 첫 사업에서 3개 업체 추진,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정도에 따라 소요 비용의 변동 가능성 등 사업규모에 대해 재검토할 사항이 다수 있음

- 따라서 '26년도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향후 사업유지, 확대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공동물류센터와 스마트물류시스템 전환지원 사업은 정책 핵심 영역으로서 기본 방향은 타당하나, 재정집행 안정성과 중기 재정관리 측면에서 보수적 접근이 필요

- 공동물류센터는 준공까지 일정 범위 내 지원을 유지하되, 공정 진도에 부합하는 집행 관리가 요구되며, 스마트물류시스템 전환지원은 단계적 확대와 엄격한 성과관리 체계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국내 무역 의존도 87%로 높지만, 15개 우리 기업 운영 해외 물류센터 자가비중(8.8%) 낮고, 대부분(91.2%) 임차임. 특정 시장(미국 및 동남아시아) 편중, 우리 해운물류기업들 세계시장 점유 확대를 위해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지원규모 판단 근거인 수혜 대상자 수가 대체로 적다고 판단되나,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경우 '23년 12건, '24년 10건, '25년 8건의 초과 달성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사업개선 등을 통해 상향될 필요가 있음 - 북방물류 교육 협력 및 인력양성 2차 실집행률 '25년 63.8%로 낮지만, 실집행률 저하 주요인인 2025년 본 사업 2차 연속성 공백 재발 방지와 관리 감독 강화 및 제도적 보안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일것으로 보여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종합평가 의견

○ 동 재정사업은 국내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비용, 화주물류기업 해외사업 동반진출 등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국적선사 북극 진출을 위한 우호 세력 형성으로 국정과제 정책 방향과 부합하여 정책적으로 타당함

- 국내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87%로 높이나, 15개 우리 기업 운영 해외 물류센터 자가비중(8.8%)이 낮고, 대부분(91.2%) 임차임. 또한, 특정 시장(미국 및 동남아시아)에 편중되어 우리 해운물류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정지원이 필요함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등 발표('25.12.6)

○ 동 재정사업 지원규모는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경우 '23년 12건, '24년 10건, '25년 8건 모두 초과 달성함. 이에 당초 계획이 낮게 설정된 점등을 감안하면 사업 개선 등을 통해 상향이 필요함

- 북방물류 교육협력 및 인력양성 '23년 3명, '24년 4명, '25년 4명으로 초과 달성했지만, 북동항로 진출 시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적정 사업 규모를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북방물류 교육협력 사업 '25년 간접집행사업 2차 실집행률은 '25년 63.8%로 낮지만, 실집행률 저하 주요 요인인 2025년 본 사업 2차 연속성 공백 재발 방지와 관리 감독 강화 및 제도적 보안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 사업 개선으로 판정함

○ 환류 및 개선 노력, 성과달성도, 우수성 계획 중, 정량 수치 확인 불가해 사업개선 필요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25.12.16.),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지원방안 마련, 사전·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추가 등, 북방물류 교육협력 및 양성사업은 '26년 장학생 선발 2명 한시 증원, 한국 적응 지원을 위한 언어·문화프로그램 추가 운영 예정임

- 친한 세력 확보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홈커밍데이 도입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내역 사업 모두 계획 중인 만큼 사업 지속성을 담보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작성 등이 필요함. 연속성 공백 최소화 및 환류 개선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근거자료 확보 노력 등이 지속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표지시설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 중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은 본 세부사업의 본질적 목적인 '해양 안전'과의 연결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판단됨 - 법상 해수부의 역할이 존재하나, 문화진흥·관광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됨 · 등대해양문화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여를 늘려 중앙정부 기여분을 일부 감액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함 - 관광 인프라의 일종으로, 소재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명확하다고 판단됨 - 특히, 항로표지기술원이 위탁 수행하는 '운영' 에 대해 지자체 기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전체 예산에 비해 감액 권고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으로 '사업개선'으로 평가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대체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나, 등대해양문화공간 내역사업은 내역사업의 목적과 해양 안전성 확보·강화와의 연결성이 다소 약하다고 판단됨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은 주무부처의 업무에는 해당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만약 보조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낮게 나타난다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될 것임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술 및 인프라 관련 사업, 항행정보서비스 확대사업, 항로표지 관련 제도개선 및 국제협력 사업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등대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은 등대의 문화적 가치 제고라는 점에서 표지시설과 관련성이 있으나, 근본적인 사업 목표인 '초연결 항행정보로 안전한 바다 실현'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음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이 아닌 '운영' 사업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대한 민간보조 형식으로 지출되는데,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에 기여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여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제안함

○ (집행 효율성)

- 실집행률, 추진체계 측면에서 두드러진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음
- 보조사업의 공모 절차, 보조사업자의 재무 안전성, 부정수급 측면에서 우려가 크지 않고 분할교부 등 자체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항로표지시설 확충률은 공급 진도에 대한 진단 성격의 지표로서 궁극적인 성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검의 의미가 있음
- 이용자 만족도는 지표로서 의미 있고, 최근 3년간 실적치를 목표 설정에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적 외항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책수단으로서 기본 방향은 타당함 · 본 사업은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국적 외항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수단으로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예산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6년 예산은 외항선 친환경선박 신조 지원의 보조율 상향(2.8%→3.4%)과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의 신설로 크게 확대되었음 - 집행의 안정성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계획, 성과관리체계, 위험관리체계를 정교화하는 등의 사업추진체계 개선이 필요 - 동시에 성과지표를 규제비용 회피, 온실가스 감축 성과 등 결과지표를 포함하도록 보완하고, 성과와 예산규모를 일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 및 EU 등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적 외항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책 타당성 인정됨

- 신규로 추가된 쇄빙, 내빙선 신조지원은 해운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나 기존 사업의 정책 목표와 다소 상이한 측면에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설계가 필요

○ 지원규모는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26년에 69.2% 증액되었으며, 중기로도 확대되는 추세로 계획되어 있음

- 내역상으로는 '26년에 외항선 친환경선박 신조 지원이 21.5%,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이 순증되었고, 보조율 상향(2.8%→3.4%) 및 신규 사업이 증액의 사유임

- 이 규모 확대가 정책의 시급성만으로 설명되기에는, 사업성과 체계가 척수로 투입지표로만 구성되어 있고, 신규 내역은 본래 사업의 핵심 목적과 다른 전략 목적을 포함해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보조사업의 특성상 '신조발주/계약금 지급 확인→정산' 등 절차가 수반되는데 '26년처럼 규모가 확대될 경우 집행, 정산 관리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집행 적정성 관점에서는 예산 규모의 확대추세를 보수적으로 감액 또는 연차분할 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예산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6년 예산은 외항선 친환경선박 신조 지원의 보조율 상향(2.8%→3.4%)과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의 신설로 크게 확대되었음

○ 집행 측면에서 '25년에는 증빙 이슈로 실집행이 차년도에 완료된 사례가 있으며 사업규모의 확대 국면에서 정산·검증체계의 부담이 커질 때 집행 안정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전달체계는 단순하지만, 확대된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가 및 계약의 적정성 검증, 성과지표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으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본 사업은 집행의 안정성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계획, 성과관리체계, 위험관리체계를 정교화하는 등의 사업추진체계 개선이 필요

- 동시에 성과지표를 규제비용 회피, 온실가스 감축 성과 등 결과지표를 포함하도록 보완하고, 성과와 예산규모를 일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연안화물선유류비보조(에특)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예산 편성체계가 외생변수에 취약하여 집행부진-과다편성 또는 예산부족을 반복하고 있고 국회 등으로부터 부처간 협의를 통한 예산 편성을 지속 지적받고 있음 - 따라서 예산 편성 원칙을 상한·정산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보수적 한도를 두고 연중 변동은 별도 정산·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지원업체 수 중심 지표에서 운임, 물동량, 도서지역 공급안정 등 정책목표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보완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법령 근거가 명확하고 연안화물선이 국가 물류·산업 활동과 도서지역 생활물자 공급 및 비상시 운송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과 유사한 정책 맥락이 존재해 운송수단 간 형평성 측면의 필요성도 일부 존재함

○ 다만 예산편성이 '유류 사용량(ℓ)×단가에 연동되는 구조여서 비용절감·효율화 유인이 약하고, 정책성과가 '산업 안정'으로 포괄적으로 흡수되어 지원의 한계와 범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제도 설계의 명료성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 및 유류세 인하율이 반복 조정되는 환경에서 보조단가가 크게 변동해 예산 추계가 불안정함

- 집행률의 지속적인 변동은 세제 변화에 따른 단가 변동으로 인한 것으로, 외생변수에 취약한 구조에서 과다편성-불용 또는 예산부족을 반복되고 있어 명확한 편성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집행체계는 단순하고 관리체계도 구축되어 있어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과의 중복으로 이중지원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성과지표는 지원업체 수와 만족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원행위' 자체를 측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정책목표와의 직접 연결이 약하므로 운송물동량 유지, 운임 안정, 도서지역 공급 안정 등 결과지표로의 확장이 필요함

○ 종합하면, 본 사업은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외생변수에 취약한 편성·집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편성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고 성과지표의 결과지표 보완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연안정비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연안침식 대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도사업으로 법적 근거 및 정책 정합성이 명확하나, 집행 가능성과 추진체계 보완이 필요하므로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25년 실집행률이 47.3%로 저조하여 토지 보상, 민원 협의 등 집행 지연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 향후 ①사업 착수 전 민원 가능성 사전 점검 강화, ②토지보상 절차 신속화, ③지자체 사업관리 역량 제고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연안관리법 제21조 및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에 근거하며, 국정과제 3-4-71번(어촌·연안 경제 활성화)과 연계되어 정책적 타당성이 높음

- 연안침식 및 재해로부터 국토 보전 및 주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며, 토지매입을 통한 친환경 완충구역 확보는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한 선도사업으로 국가 지원이 타당함. 보조율 70%는 보조금법 시행령 기준보조율로 적정함

○ 사업계획의 적정성

- 2개 지구(강릉 순긋~사근진, 고창 명사십리) 대상 토지매입 완충구역 조성으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과 부합하며, 기존 구조물 방식 대신 자연기반해법 적용으로 환경친화적 연안정비 도모함

- '26년 예산 2,000백만원('25년 대비 50% 감소)은 사업공정에 따른 연차별 소요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으나, '25년 실집행률 47.3%는 개선 필요함

○ 집행 효율성

- 실집행률이 '23년 0% → '24년 101.9% → '25년 47.3%로 연도별 편차가 크며, '25년 저조한 실집행률은 토지보상 절차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지자체의 적극적 사업관리 필요함

- 해수부→지자체(강릉시, 고창군)→사업시행 전달체계 명확하고, 기본계획→설계→보상→공사 절차 체계적이나 토지보상 단계 민원 발생 시 사업 지연 가능성 있어 사전 협의 강화 필요함

- 최근 3년 부정수급 무(無), 정산보고서 적기 제출로 사후관리 적절함. 국회('23~'24) 및 감사원('25) 지적사항(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업 착수 전 장애요인 파악)에 대해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 현장평가 강화 등으로 적절히 대응함

○ 성과 달성도·우수성

-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5개년 연속 목표 100% 달성('21년 9.1% → '25년 26.0%), 국민안심해안사업이 전체 성과지표 달성에 기여함

- 토지매입 완충구역 조성이라는 자연기반해법 도입 선도사업으로 해양환경보전 및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하며, 연안침식으로 백사장 감소(축구장 300배, 가치 약 4,300억원)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
- 비수도권(강릉, 고창) 예산비중 100%로 균형발전 기여하고, 환경보전과 재해예방을 동시 달성하는 혁신적 사업모델임

○ 총평

- 본 사업은 자연 기반 해법을 활용해 연안 침식과 재해에 대응하는 선도 사업으로, 법적 근거와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나 '25년 실집행률이 47.3%로 저조하여 토지 보상, 민원 협의 등 집행 지연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 향후 ①사업 착수 전 민원 가능성 사전 점검 강화, ②토지보상 절차 신속화, ③지자체 사업관리 역량 제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2050 탄소중립 및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법적 근거 및 대통령 공약·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이 명확하고, IPCC 총회의 신규 블루카본 항목 인정으로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기조에 부합하는 선도적 사업이나, '25년 실집행률 77.8%는 개선이 필요하므로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①설계 단계 신속화, ②지자체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③사업 초기 이해관계자 협의 강화로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갯벌법에 근거한 법정사업으로, 대통령 공약(탄소중립 정책추진) 및 국정과제 3-4-71-5번(블루카본 확대)과 연계되어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음

- 갯벌복원의 공익적 편익(기후변화 대응, 재난예방, 수질정화, 생물다양성 보전)은 광범위하나 시장에서 투자가치 인정이 어려워 재정지원이 필수적임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갯벌복원(6개 지구), 식생복원(6개 지구), 생태관광활성화(신규) 등 3개 보조사업은 제1차 갯벌기본계획의 5대 추진전략과 정합성이 높음

- '26년 예산 20,728백만원('25년 대비 34.4% 증가)은 계속사업 12개 지구의 사업공정에 따른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여 적정하나, '25년 실집행률 77.8%는 개선 필요함

○ 집행 효율성

- 실집행률이 '23년 90.8% → '24년 86.4% → '25년 77.8%로 하락 추세이나, 예산집행률은 '23년 96.0% → '25년 99.5%로 우수하여 전반적 집행관리는 양호함. '25년 저조한 실집행률은 설계 지연, 지자체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가 주요 원인임

- 해수부→지자체 전달체계 명확하고, 갯벌복원사업 지침에 따른 신청→검토·선정→사업계획→승인→실시계획→사업추진→모니터링(5년) 절차가 체계적으로 확립됨

- 최근 3년 부정수급 무(無), 집행점검 시 자체점검 실시 및 실적보고서 제출로 사후관리 철저함. '23년 자율평가 '우수' 등급, 국회·감사원·언론 지적사항 없어 사업관리 체계적임

○ 성과 달성도·우수성

- 갯벌복원사업 추진율 5개년 모두 초과 달성('21년 114.0% → '25년 129.0%), 만족도도 5개년 모두 초과 달성('21년 135.0% → '24년 100.4%)로 성과가 우수함

-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복원(단위사업), 해양환경보전(프로그램), 탄소중립 추진(국정과제), 블루카본 감축(대통령 공약) 등 모든 상위 정책목표에 기여하며, '25.10월 IPCC 총회에서 비식생갯벌 등이 신규 블루카본 항목 인정으로 정책적 중요성 증대됨

- 70~80년대 파괴된 갯벌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수산자원 생산, 수질정화, 기후변화 대응 등 공익적 기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 효과 창출함

- 다만,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적정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음. '갯벌복원사업 추진율'은 "실집행액 / 교부액 × 100"으로 측정되는 투입지표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갯벌 복원 면적, 탄소흡수량 증가, 생태계 다양성 개선 등)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보조금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복원사업의 효과가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갯벌 복원 면적, 블루카본 확보량 등 결과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총평

- 2050 탄소중립 및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법적 근거 및 대통령 공약·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이 명확하고, IPCC 총회의 신규 블루카본 항목 인정으로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기조에 부합하는 선도적 사업이나, '25년 실집행률 77.8%는 개선이 필요하므로 감액 조정이 필요함

- 향후 ①설계 단계 신속화, ②지자체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③사업 초기 이해관계자 협의 강화로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산지유통시설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산지 저온유통체계 확립 필요성은 명확하나, 실집행률이 3년 연속 극히 저조('23년 0%→'25년 7.6%)하고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지연·사업자 미선정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어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①사업자 공모 시기 전진(연초), ②지자체 본예산 편성 원칙 수립, ③지속가능성·자담능력 검증 강화, ④선정 후 포기 시 페널티 부과 등 강력한 개선 및 위생등급·유통비용 절감률·생산자 소득 증대율 등 산출·결과 중심 지표 보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 제49조 근거, 국정과제 71-2-1번(경쟁력 있는 수산업)과 연계되어 정책적 타당성이 명확하며, 연근해 수산물의 80% 이상이 산지위판장을 통해 유통되어 산지 저온유통체계 확립이 필수적임

- 경영 부실한 산지 수협·생산자단체의 자담만으로 FPC 건립이 어렵고, 시설사업 특성상 많은 예산(80억·40억원, 전남권 184억원) 필요하며, 보조율 30~40%는 보조금법 시행령 기준으로 적정함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수산물FPC·전남권FPC 2개 내역사업은 '수산물 생산지 고부가가치화 및 안전 생산유통시설 건립' 목적에 부합하며, 국정과제·프로그램·단위사업과 높은 연관성을 가짐

- '26년 예산 6,390백만원('25년 대비 100% 증가)은 신규 4개소 및 전남권FPC 2년차 소요 반영으로 적정하나, 실집행률이 '23년 0%, '24년 48.8%, '25년 7.6%로 매우 저조함

○ 집행 효율성

- 예산집행률 '23년 65.5%→'25년 44.6%, 실집행률 '23년 0%→'25년 7.6%로 매우 심각하며, 주요 원인은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지방재정투자심사 지연 및 사업자 미선정임

- 해수부→지자체→보조사업자 전달체계 명확하고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으로 체계적 관리되나, 사후관리 현황 자료 미제출로 평가 곤란함

- 최근 3년 부정수급 무(無), 국회 지적사항('23년)에 대해 조기 공모·지속가능성 검토 강화로 대응하였으나 실질적 개선 효과는 미미함

○ 성과 달성도·우수성

- 수산물FPC 공정률 지표 '21~'24년 목표 100% 달성하였으나, 투입 중심 지표로 한계가 있으며 실집행률 저조에도 목표 달성은 성과지표 적정성 재검토 필요함을 시사함

- 산지 원료 수산물 전처리·가공·상품화로 산지 가공·유통 역량 강화하여 수산물 유통 개선·안전관리·경쟁력 있는 수산업에 기여함. 현재 9개 FPC 운영, 6개소 건립 중임

○ 총평

- 산지 저온유통체계 확립 필요성은 명확하나, 실집행률이 3년 연속 극히 저조('23년 0%→'25년 7.6%)하고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지연·사업자 미선정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어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①사업자 공모 시기 전진(연초), ②지자체 본예산 편성 원칙 수립, ③지속가능성·자담능력 검증 강화, ④선정 후 포기 시 패널티 부과 등 강력한 개선 및 위생등급·유통비용 절감률·생산자 소득 증대율 등 산출·결과 중심 지표 보완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내수면자원조성(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구성의 이질성과 성과지표에 대한 사업개선 - 정보시스템 운영, 손실보상, 대규모 시설 건립 등 정책적 지향점과 수혜 대상이 이질적인 내역사업들이 혼재하며, 성격이 다른 사업들은 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지표인 기능상실 어도의 정상화율(%)과 내수면 수산물 생산금액(억원)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내수면 양식어업 지원 등을 통해 내수면 어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어도종합관리체계구축(어도실태조사, 국가어도정보시스템운영(민간경상)),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보상, 충남 당진 간척지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지자체자본), 전북 김제 내수면창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지자체자본)의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내수면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타당성이 있으며,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내역사업인 국가어도종합관리체계구축(국가어도정보시스템운영)은 다른 부처나 다른 재정사업에서 수행하지 않는 고유 영역으로 유사·중복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정보시스템 운영, 손실보상, 대규모 시설 건립 등 정책적 지향점과 수혜 대상이 이질적인 내역사업들이 혼재되어 있어 전체적인 사업구성의 체계성이 낮음

○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과거 실집행률 실적이 일시적으로 저조한 경우가 있었으나, '25년에는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음

- 간접집행사업의 2차 실집행률: '23년 91.6%, '24년 36.6%, '25년 88.9%

- '24년 실집행률 저조는 충남 당진 간척지스마트 양식단지 조성과 전북 김제 내수면창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해당 사업들에 대해 '25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

○ 국가어도종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14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내수면 수산물 생산금액(억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본 사업이 해당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기능상실 어도의 정상화율(%)은 단순 개보수 실적을 나타내는 산출지표에 불과하며, 어류의 이동통로로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 종료, 실집행률 저조, 환류 및 개선 부족, 성과지표의 부적절성 및 성과의 불명확성 등을 사유로 감액 -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내역사업은 '26년 종료 예정 - 다수의 내역사업에서 실집행률 저조가 나타남('25년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55.2%,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 40.6%, 품종별 산업화 시설지원 44.1% 등) - '25년 연장평가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성과지표인 국내양식생산량(만톤)을 통해 본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양식어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내역사업: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지자체자본보조),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지자체자본보조), '품종별 산업화 시설지원'(지자체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은 '26년 사업종료 예정임

○ 수산업에 대한 친환경·스마트화 및 대규모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내역사업들이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과 일부 유사·중복성이 있음

- 본 사업은 '26년부터 지특회계 사업이고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은 농특회계 사업으로, 두 사업이 통합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계의 조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 최근 3개년 동안 전체 사업의 집행률은 '23년 99.7%, '24년 98.4%, '25년 81.1%로 나타났음

- 각각의 내역사업들의 2차 집행 과정에서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25년 실집행률: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55.2%,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 40.6%, 품종별 산업화 시설지원 44.1% 등)

○ '25년 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 감축의 결과를 받았으며,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내역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타 세부사업으로 이관의 지적사항이 있었음

-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 성격상 이관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 부재하여 최종 미이관하였음

○ 성과지표인 국내양식생산량(만톤)은 본 사업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 단순히 양식생산량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목표인 첨단 친환경 양식시설 기반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 또한, 제시된 성과지표를 통해서도 국내 양식생산량은 '21년 대비 감소('21년 233만톤 → '25년 225만톤)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기 어려움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어촌소멸대응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정책적 타당성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점은 좋으나 실집행률 감안하여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어가인구 지속 감소('15년 138천명→'24년 89천명) 및 고령화율 심화('15년 30.5%→'24년 50.9%)에 따른 어촌 소멸위기 대응 사업으로, 수산업법 제21조, 귀농어·귀촌법 제7조,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도농교류법 제6조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음

- 국정과제 71번(어촌·연안 경제활성화)의 어가소득 7천만원, 해양관광 1,700만명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높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어촌에서 살아보기, 도시민 기술교육,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어촌관광홍보, 어업유산 지정·관리)은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및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과 정합성이 높으며, 사업목표-추진전략-사업내용 간 논리적 연계성이 확보됨

- 국고보조율 50~70%는 보조금법 시행령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며, 어촌 지역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43.18%) 대비 낮은 23~34% 수준임을 고려할 때 보조율 설정은 적정하나, 2026년 예산 급증에 대한 검증이 필요. 직접 수혜자 42만명(귀어·귀촌인), 간접 수혜자 182만명(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으로 수혜 범위가 광범위함

○ 집행 효율성

- 예산집행률 '23년 99.3%, '24년 98.8%, '25년 100.0%로 안정적이며, 실집행률은 귀어귀촌촉진 '23년 74.1%→'25년 97.9%, 어촌자생력강화 '23년 87.3%→'25년 88.0%로 양호함

- 해수부-지자체-한국어촌어항공단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효율적이며, 보조사업자 선정은 보조금법 및 사업지침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짐. 정기 점검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며, 최근 3년 외부기관 부정수급 적발 사례 무(無)

- '24년 국회 지적사항(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잔액 카카오톡 알림톡 캐시 국고 반납 및 관리 강화)에 대해 즉시 국고 반납 완료 및 관리체계 구축('25.11.5)으로 개선 조치 완료함

- 다만, 정산 후 반납액 미회수가 상당히 있어서 누적 미반납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달성도

- 귀어학교 수료생 '24년 364명(목표 366명, 99.5%), '25년 395명(목표 382명, 103.4%), 귀어귀촌 종합센터 교육 수료생 '24년 16,151명(목표 16,000명, 100.9%)으로 목표 달성함
- 관광소득 5억원 이상 어촌체험휴양마을 '23년 9개소→'25년 15개소로 증가하여 목표 100% 달성, 어촌 소득 다각화 성과가 뚜렷함
- '25년 균형발전평가 '우수' 등급, 비수도권 사업비 비중 65.3%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

○ 총평

- 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정책적 타당성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상위계획과 부합하며 집행이 안정적이고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하는 점은 좋으나 실집행률 측면에서 감액을 판단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청년어촌정착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주거·일자리·어촌계 가입 패키지 지원을 통한 청년 귀어 단계별 장벽 해소 및 성과지표 매년 100% 이상 달성으로 사업 성과는 우수하나, '25년 청년바다마을 조성 실집행률 0.3% 및 부정수급·정산보고서 지연 제출 등 관리 미흡으로 감액이 적절함 - 향후 ①청년바다마을 조성 수요 확대 방안 마련·공모 절차 개선·홍보 강화, ②부정수급 예방 모니터링 체계 강화, ③정산보고서 제출 기한 엄수 독려 및 미이행 시 엄격한 행정조치 시행 등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청년 귀어인 수 급감('15년 207명→'24년 83명) 및 어촌 고령화율 심화('24년 50.9%)에 따른 어촌 소멸위기 대응 사업으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21조, 귀농어·귀촌법 제7조, 후계농어업인법 제8조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나 정책 시급성은 제한적임

- 국정과제 71-3 연계성은 인정되나, 본 사업이 어가소득 7천만원·해양관광 1,700만명 목표에 기여하는 정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

- 청년 귀어인 수가 2015년 207명에서 2024년 83명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 정착자금 지원으로 해결 가능한지 근거가 미흡함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와 내용 간 논리적 연계는 인정되나 구체성이 부족함

-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에 비해 단순 정착자금 지원(월 0.9~1.1백만원)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는 경로가 불명확함

- 사업운영 및 평가(36백만원)의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평가 결과가 사업 개선으로 환류되는 구조가 미흡함

○ 집행 효율성

- 청년바다마을 조성의 집행 실패가 심각하며 전체 예산집행률도 저조한 편임

- 해수부-지자체-한국어촌어항공단 추진체계 명확하나, 부정수급 의심 9건, 공시 불이행 4건 발생하여 환수조치 및 교육 실시함. 정산보고서 지연 제출 다수 발생하여 보조금 삭감 및 주의 조치 시행함

○ 성과달성도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실적 '23년 227명→'25년 355명으로 매년 목표 100% 달성하고 종합만족도 '23년 77.4점→'25년 80.3점으로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가 투입·산출 중심으로 실질적 효과 측정이 불가능함

○ 총평

- 주거·일자리·어촌계 가입 패키지 지원을 통한 청년 귀어 단계별 장벽 해소 및 성과지표 매년 100% 이상 달성으로 사업 성과는 우수하나, '25년 청년바다마을 조성 실집행률 0.3% 및 부정수급·정산보고서 지연 제출 등 관리 미흡으로 감액이 적절함

- 향후 ①청년바다마을 조성 수요 확대 방안 마련·공모 절차 개선·홍보 강화, ②부정수급 예방 모니터링 체계 강화, ③정산보고서 제출 기한 엄수 독려 및 미이행 시 엄격한 행정조치 시행 등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 일부 내역사업이 집행부진, 불용이 반복되고 있고, 일부 정책수단 중첩 가능성으로 인해 집행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요건 강화·정산검증 고도화·성과지표 보완조치를 제안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 보장이라는 공익목표를 위해 ①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②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③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으로 구성되며, 「해운법」에 근거한 보조항로 지정·운영 및 결손 보전 체계로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3개 내역사업 모두 보조사업임에도 집행성과와 사업관리의 성숙도가 내역별로 크게 상이하고, 특히 '집행 안정성 부족 - 불용 반복 - 환류 미흡 - 정책수단 중첩'이 동시에 확인되어 현행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움

- 2차 실집행 기준으로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은 최근연도 99%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은 2025년 86.0% 수준,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은 2025년 65.8%로 낮아 규모 조정 필요성이 큼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은 최근 3년 실집행률이 각각 35.8%, 40.7%, 55.9%로 개선 중이더라도 절대수준이 낮고 유보액 불용이 반복되어 구조적 집행부진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지자체 시행 구조에서 선박확보, 운항개시 준비도, 실행가능성 사전검증, 집행 및 정산 역량 편차 등 전달체계 한계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은 운임할인 정책의 영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내역조정을 통해 결손보상금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으며, 정책수단 간 중첩과 외생정책 변화가 집행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음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도 비용-수익 차액 방식의 결손액 산정 구조상 비용계상 과다, 수익누락 등 정산리스크가 내재하므로, 비용절감을 위한 유인구조 설계, 결손 산정의 교차검증 강화, 성과-예산 연계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

○ 종합하면 본 사업은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내역사업이 집행부진, 불용이 반복되고 있고, 일부 정책수단 중첩 가능성으로 인해 집행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요건 강화·정산검증 고도화·성과지표 보완조치를 제안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지원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물류지원 및 신규내역사업의 집행·성과 불확실성이 있으며, 감액과 함께 표준지침, 정산검증, 중복통제 강화, 절차 간소화 및 고령자 친화적 운영체계 구축과 같은 개선이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 보장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①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②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③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구성되며, 도서지역의 구조적 교통·물류비 불리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운임·물류비 가격보조 성격이 강해 제도 설계가 미흡하면 상시·보편 보조로 고착되거나 지자체 할인 등 유사 수단과 기능이 중첩될 우려가 있어, 역할분담과 중복지원 통제가 필요함

○ '26년 예산은 16,99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고 중기적으로 증액 기조가 계획되어 있으나, 내역별로 집행성과가 상이함

- 도서민 운임지원은 안정적 집행이 가능하나, 생활물류 운임지원은 예산액 조정과정에서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으며 예산 감액을 통해 집행률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집행체계가 완비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26년부터 이관된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도 집행·정산 체계가 안정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 운영이 타당함

○ 전달체계는 지자체 경상보조(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로 간접집행이며, 도서민 직접 지급 방식인 만큼 신청·증빙 간소화, 고령층 접근성, 지자체별 운영 편차 최소화가 집행효율을 좌우함

- 부정수급 관리도 대상 적격성, 증빙 신뢰성, 중복지원 차단이 핵심이며, 생활물류·생필품 운송비는 산정·증빙이 복잡해 통제장치와 이용자 친화적 시스템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는 내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생활물류 분야는 목표 하향에도 '25년 달성도 53% 수준으로 성과·집행체계 재점검이 요구됨

○ 종합하면, 본 사업은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물류지원 및 신규내역사업의 집행·성과 불확실성이 있어, 표준지침, 정산검증, 중복통제 강화, 절차 간소화 및 고령자 친화적 운영체계 구축과 같은 개선이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해양관광육성(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실집행률 미흡, 미반납액 발생, 공모 시행 필요성이 있어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함 - 지자체 자본보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설계, 사전 준비 점검, 교부 시기 설정, 일정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함 - 과거 사업 수행 경험 또는 수행 능력은 공모 절차를 생략하는 근거로는 미흡하므로 비공모 사업의 공모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반납액이 발생한 보조사업자의 경우, 연내 반납을 완료하고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불이익 조치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해양관광육성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국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관광과 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연안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정부개입의 타당성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별도의 해양수산부 사업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단,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소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개별 사업을 추진·시행하기보다 우리나라 전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사업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부처 소관 관광산업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사업예산을 책정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자본보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설계, 사전 준비 점검, 교부 시기 설정, 일정 관리 등 해양수산부의 전반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함

○ 해양수산부는 “(특)한국마리나협회”는 ‘18년~’25년 간 경기보트쇼를 개최해온 기관이고 세계해양협회(ICOMIA)회원사로서 해양레저 관련 업·단체와 네트워크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모 방식은 부적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시하였음

○ 그러나, 과거 사업 수행 경험 또는 수행 능력은 공모 절차를 생략하는 근거로는 미흡하므로 공모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정산보고서 포함) 제출을 지연한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평가 감점 등의 불이익 조치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별 보조사업 반납을 위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정산보고서와 시스템상의 금액 차이로 정산 확정 및 반납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등을 사유로 제시하였음

○ 미반납액이 발생한 보조사업자의 경우, 연내 반납을 완료하고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평가 감점 등의 불이익 조치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 연장평가(사업운영 개선)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짐

○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및 영향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집행실적 및 성과를 지금보다 제고할 필요 - 전반적인 집행실적은 양호하지만, 일부 내역사업(어구보증금제, 침적폐기물 수거 등)의 집행률이 저조 - 중장기적 예산 확대가 예상되므로,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한 집행실적 및 성과 제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해양폐기물은 광역 단위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지방 정부 간 분쟁 및 수거처리 역량 약화 등이 우려되므로 중앙정부의 개입 필요

- 지방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어 지방 정부에 국비 일부(50-70%)를 교부하여 운영하는 구조임

○ 주된 사업 내용은 발생예방 사업군과 수거·처리 사업군으로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라는 사업목표에 부합함

- 발생예방 사업군으로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생분해 어구보급,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해양쓰레기 발생예방, 육상기인 해양폐기물 관리가 있음

- 수거·처리 사업군으로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자연재난 쓰레기 피해복구, 국공유 무인도서 해양 쓰레기 관리,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등이 있음

○ 전반적으로는 집행이 양호하지만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

- 2025년 부처 차원의 집행률은 98.9%이며,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예산현액 대비 2차집행 실적(실집행률) 역시 90.6%로 전반적으로는 양호

-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은 86.5%, 생분해 어구보급은 82%, 국공유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는 75.8%임

- 다만,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은 '24년 통발 어구 우선 도입에서 '26년부터 자망, 부표, 장어통발로 확대 시행되며 집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집행실적 및 성과를 제고할 필요

-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국공유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 사업을 비롯하여 현장 수요에 반응하여 적시에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 및 관리감독 필요

- 생분해 어구보급,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사업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 부여 및 구체적 성과 점검 필요

○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인원이나 침적폐기물 수거실적과 관련하여 목표치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보다 도전적 목표치 설정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서식처 기능개선이라는 동 사업의 사업목적과 실제 내역사업의 내용이 부합하지 못하며, 해양생태계 보전을 표방한 다른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도 점검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유사업과의 조정 및 역할분담 등을 위해 사업의 감액, 관련 사업과의 조정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사업의 보조사업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하여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유해해양생물 관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 다양성 보전이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정부의 역할과 재정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됨

- 특히, 해양생태계 훼손 행위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전문기관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에 활용되는 구조도 적정하다고 보여짐

○ 사업계획 적정성 측면에서 동 사업의 목적인 '해양 생태계 서식처 보호'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생태계 조사, 교육, 서식지외 보전 기관 지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

- 직접적인 서식지 보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동 보조사업의 예산은 '25년 예산 52.6억원 중 5억원에 불과하여 사업목표와 실제 사업 내용상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갯끈풀 발생·확산이 일어나는 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후 대처방식으로 추진중인 바, 이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됨

- 유사한 유해해양생물인 해파리 폴립 제거 (전문기관 위탁사업)와 갯끝풀 제거(자치단체보조)를 이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집행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매년 교부된 예산액의 10%가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함

- 중장기적으로 사후 대응방식에서 사전 발생 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달체계 및 사업추진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임

○ 다른 세부사업인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의 내역사업과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간 유사·중복이 있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역할 설정 및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성과 측면에서 갯끈풀 제거 사업의 목표치와 달성도는 지난 5년간 100%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성과지표가 한계치에 다다른 지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갯끈풀 제거라는 사후 대응방식의 사업계획에서 벗어나 발생을 방지하는 환경 구축, 여타 유해 해양생물 관리 등으로 사업을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본 세부사업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사업목표와 실제 사업내역이 상응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며,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여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여부도 상당부분 존재함

○ 동 사업에 대해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며, 유사사업과의 역할 조정을 통해 '서식처 기능 개선 사업'이라는 목표에 맞도록 전반적인 사업 재구성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산식품산업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재정지원규모의 설정 근거가 미흡함 - 일부 내역사업은 매년 유사하게 단가가 책정되고 있음 ·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속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간접집행사업인 경우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낮음 ·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민간위탁 수행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동 보조사업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임

- 수산식품산업통계조사 사업 등은 민간위탁 수행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 폐지 시 수산식품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로 보조되고 있으며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임

- 기준보조율 30%로 책정되어 있음

○ 재정지원규모의 설정 근거가 미흡함

- 일부 내역사업은 매년 유사하게 단가가 책정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미흡

○ 실집행률이 '25년 95.9%로 집행률이 개선되었으나 새싹기업도약지원의 경우 집행률이 85.9%로 낮음

○ 보조사업 지원의 성과 파악이 어려움

-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보조사업의 지원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는 부재하며 '수산가공식품 수출액'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지표는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에 부족해 보임

- 보조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처 내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부정수급 점검을 추진 중이며,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은 세부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업내용 가운데 편성의 근거가 미흡함 · '25년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70%로 집행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를 관리하는 지표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국정과제와 연관이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하기는 어려움

- 「수산물유통법」 제 47조에 따라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내역사업이 세부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며 상위목표와 정합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업 폐지 시 수산식품산업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판로 다각화, 수산물 온라인 유통 기반의 안정적 구축과 성과 확산 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직매장 창업 희망자와 어업인이며, 직매장의 경우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라 수혜규모를 산정하였으나 온라인 구매시스템 확충은 수혜규모 산정의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예산은 '26년 기준 2,16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내용 가운데 편성의 근거가 미흡함

-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등은 매년 유사하게 단가가 책정되고 있으므로 단가책정의 근거가 필요함

○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를 관리하는 지표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부정수급 점검을 추진 중이며,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

-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감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부정수급 징후가 발생하여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한 사례는 없었음

○ 사업시행 연도마다 보조사업자(수협중앙회)를 통한 간접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하고 있으며, 연 2회 간접보조사업자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 중임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의 성과목표가 도전적이지 않아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 위생적 유통환경 및 유통비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효과 검증이 어려움			

□ 종합평가 의견

○ 국정과제와 연관이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하기는 어려움

- 동 사업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지원 근거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 폐지 시 개별 위판장 및 유통업체는 물류기기 교체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식품위생 및 물류 표준화 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동 사업예산은 2026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 참여 업체를 54개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며, '26년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참여 업체를 전년보다 2개소 증가함

-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생산자단체, 유통사업자 등으로 직접적 수혜자의 범위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25%로 국고의 지원 보조율을 책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률'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성과목표가 도전적이지 않고 위생적 유통환경 및 유통비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효과 검증이 어려움

- 동 사업의 경우 전년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률은 낮은 수준임

○ 동 사업의 '25년 실집행률은 높다고 판단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부정수급 점검을 추진 중이며,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

-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감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서면·현장 점검 등을 통해 관련 내용 확인 및 조치 중

○ 사업시행 연도마다 보조사업자(수협중앙회)를 통한 간접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하고 있으며, 연 2회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임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내역사업 중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높다고 판단되어 보조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가운데 편성의 근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 · '25년 보조사업평가 결과 감축을 권고받았으나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종합평가 의견

○ 국정과제와 연관이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하기는 어려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국정과제(71-2)와 연관되어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전년도 대비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매년 유사한 금액으로 책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내역사업 중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높다고 판단되며 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자생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집행률이 90.6%에 해당하여 집행률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본 사업은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를 통해 수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확인을 목적으로 '수산대전 할인 행사에 대한 인지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지표는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에 부족해 보임

- 목표치 달성을 초과하고 있으나 목표치 설정근거가 미흡하며 도전적이지 않음

○ '25년 보조사업평가 결과 감축을 권고받았으나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 내부 공모 시 사업자의 자부담능력, 사업추진능력, 사업관리체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자를 평가·선정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부정수급 점검을 추진 중임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산물자조금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원규모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수행기간이 20년 이상 되었으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있음 · 성과지표가 사업의 효과를 관리하기 어려우며 '25년도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종합평가 의견

○ 국정과제와 연관이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근거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 폐지 시 양식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품목 업계 발전과 수요 증대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의 경영 안정화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내역사업의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원률이 과하다고 보임

- 자조금 지원금액의 단가 선정근거가 미흡

- 50% 보조율로 지원되나 사업수행기간이 20년 이상 되었으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부정수급 적발 시 예산 배정액 삭감, 사업배제, 보조금 교부 중단, 집행 중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25년부터 강화하고, 보조사업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사례' 추가하였으나 확인하기 어려움

○ 보조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실적이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생산자 스스로 조성한 자조금을 활용해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자조금 인지도 및 만족도' 및 '자조금 집행 목적달성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지표는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에 부족해 보임

- 관리지표들은 산출지표에 해당되며 상위목표 달성을 직접적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직접적 관련 지표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음

○ '25년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25년 보조사업평가 결과 사업방식 개선을 받았으며 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수산관측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보조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지원규모의 산정근거가 미흡함 · 보조금 관리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움

□ 종합평가 의견

○ 수산관측사업은 수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급등락 문제를 완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보조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매년 유사하게 단가가 책정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미흡하며 최신기술 활용 시 재정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됨

- 지원 규모의 산정근거가 미흡함

○ 본 사업은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관측정보 이용률'과 '주요 양식수산물 가격 변이계수'를 사용하고 있어 비교적 적정하다고 판단됨

- '관측정보 이용률'은 관측정보가 어업 현장과 정책 과정에서 실제 활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책 정보의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임

- '주요 양식수산물 가격 변이계수'는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관측정보 제공을 통해 생산 및 출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세부 사업이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성과지표들이 목표치 달성을 초과하고 있으나 목표치 설정 근거가 미흡하며 도전적이지 않음

○ 부정수급 관리 적절성은 자료 부족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수산부
사 업	피해보전직불금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피해보전직불금(자치단체경상보조)은 「FTA 농어업법」 제6조에 근거한 보조사업으로,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가 명확함. 국비 100% 보조율은 국가 정책(FTA)에 기인한 피해 보전이라는 성격에 부합함 · 보조사업으로서의 정당성은 인정됨. 실집행 지연은 사업 특수성(피해 발생 예측 불가, 법정 절차)에 기인하나, 성과지표 한계·예산 산출 방식 개선·실집행 지연의 제도적 해결 등 사업운영 개선과제가 잔존하므로 '사업개선'으로 평가함

□ 종합평가 의견

○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어업인에게 직접 보전하는 유일한 보조사업으로, 법적 근거·지원 요건·운영 체계가 명확하고, 누적 13,115어가에 약 279억원을 지원하여 FTA 피해 보전 기능을 수행해 왔음

○ 그러나 보조사업으로서의 운영 측면에서 다음의 개선이 필요함

- (실집행 지연 구조) 보조금 교부 후 지자체 추경 일정과의 불일치로 실지급이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문제가 상시화. '24년 교부금의 99.9%가 이월된 것은 보조사업의 적시 집행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이며, 품목 고시 조기화, 지자체 추경 사전 협의, 교부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

- (정산관리 미흡) '24년 정산보고서 약 5.5개월 지연은 보조금법 취지에 비추어 개선이 불가피하며, 이월 시에도 중간 보고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

- (환류의 한계) '23년 '감축' 판정 후 예산 축소에만 그쳤으며, 실집행 지연·성과지표 한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자체 개선이 미흡함

- (사업 일몰과 예산 정합성) '26년 종료 예정 사업이나 중기재정계획('27~'29)에 편성이 이루어져 있어, 법 개정 여부에 따른 명확한 방침 수립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보조사업으로서의 법적 정당성과 피해 보전 기능이 인정되며, 실집행 지연은 사업 특수성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정됨. 다만, 실집행 지연의 제도적 개선, 성과지표 보완, 예산 산출 방식 개선 등 사업운영 개선과제가 잔존하므로 '사업개선'으로 평가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중소벤처기업부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국제 중소기업 협력ODA(ODA)
창업저변확대
창업사업화지원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중소기업 재기지원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벤처기업경쟁력강화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기술혁신기반조성
지역특구제도 운영
대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
여성기업육성
장애인기업육성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마케팅지원사업
공공구매제도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산학협력인력양성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창업인프라지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창업인프라지원(제주)
창업인프라지원(세종)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성장지원
소공인특화지원
소상공인재기지원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사 업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중기부)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재정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나,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심층진단-인증 연계 및 중기부 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사업개선 고려도 필요함 - 집행률 제고 및 예산이월 축소 노력이 필요하고,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 보조사업 추진과 추진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법 제정 완료를 통한 근거보완이 필요하며, 부정수급 등 사업 사후관리 관련 문제없음			

□ 종합평가 의견

○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의 경우에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세부사업과 ‘중소기업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에 지원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동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개입의 법적근거가 명확하며, 탄소중립 무역장벽은 개별 중소기업이 대비하기에는 정보부족 등으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 도입 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법적 근거가 존재하나,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 통과를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정 및 상위계획에 연계성이 존재함

○ 수출중심 국가경제 구조와 EU 수출비중, CBAM 확대 등 국제적 규제, 중소기업의 개별적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해 보임

- 사업 효과가 높은 기업 중심 집중 지원 및 심층컨설팅-중기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지원 강화 등

○ 보조금을 통한 사업 추진상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조사업자 근거 규정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법적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재정지원과 관련된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재정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보조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계류 중인 관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조사업자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탄소중립 및 탄소무역규제 대응 관련 업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CBAM 대응 사업의 경우 유사중복성은 없으나, ESG 관련 컨설팅의 경우, 심화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됨

○ 사업일원화 등으로 전체 사업규모는 줄어 적정하나, '26년 '실사대응 기반구축' 사업의 사업조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26년 사업 종료 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단가(MRV 도입 사업)가 적정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티링이 필요함

○ 보조사업 보조율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보조율은 적정하나, 심층진단 사업의 경우 인증지원 등과 연계해 지원단가를 확대하고 자부담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 최근 2년간 예산집행률 100%이나, 실집행률은 94.3%임, '25년 실집행률은 89%로 집행률 제고 및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6.3.20일 기준 이월예산 집행으로 실집행률을 99.1%로 제시함

○ 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하며, 부정수급 등 사업 사후관리 관련 문제없음

○ 최근 3년간 사업평가 및 국회 등 지적사항이 없어, 환류 및 개선노력은 적정함

○ 최근 2년간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결과지표 중심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며, 적정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수출지원기반활용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통합 - 유사 플랫폼에서 작동 중인 타 부처의 사업(산업통상부 산업글로벌진출역량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해양수산부 수산식품기업바우처 등)을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 규모의 재검토 고려 및 효과 개선 - '25년 대비 '26년 특별 지원이 추가(증가)되었음에서 일반 지원 기업 수는 유지되고 기업당 지원금은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원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등 재정 규모의 재검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행의 성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의 효과 개선을 위한 조정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은 정책적 타당성이 존재하며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벤처기업부 이외에 산업통상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에서 동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하나의 부처(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부(산업글로벌진출역량강화)는 소부장, 소비재, 서비스 등 산업별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는 농식품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수산물해외시장개척-수산식품기업바우처)는 수산식품 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짐

- 각 부처 간 사업 공동운영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중복지원을 제외하여 지원대상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동일·유사 플랫폼과 공급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지원의 일관성과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재정수요 대비 지원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경쟁률이 '23년 3.8대 1, '24년 4.2대 1, '25년 2.5대 1, '26년 1차 3.5:1로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테크서비스와 물류서비스 지원이 증가·신설되었으나 일반 지원은 기업 수는 유지되고 지원금은 증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타 사업의 보조율 등을 고려할 때, 기업 규모별 50%~70%의 보조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규모 대비 크지는 않지만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3년간('23~'25년) 부정수급 확정기업 수는 46개사(자체 41개사, 외부 5개사)로, 부정수급기업 비율은 '23년 0.8%, '24년 0.6%, '25년 0.2%로 나타남

○ 성과지표로 지원기업의 수출액 증가율과 미지원기업과의 차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성과가 우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지원기업과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액 차이는 '24년 2.0%p로 목표치 5.4%p에 미달함

-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른 분석 등을 통해 개선 및 환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 목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신규 시장 개척, 기존 시장의 확대를 구분하여 사업의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적정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제언함			

□ 종합평가 의견

○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됨

○ 사업 내용이 상위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목표-추진전략-사업 내용 간 정합성이 갖추어져 있으나, 성과 창출 강화를 위해 사업 구조의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신규 해외시장 개척, 기존 시장 확대 등을 구분하여 사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지표 또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재정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 온라인수출 2,932개사×10.1백만원×60% = 17,771백만원
  온라인수출패키지 13개사×65백만원×60% = 507백만원

-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타 사업의 보조율과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른 차별적 보조율 적용 등을 고려할 때, 보조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실집행률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사업 추진·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는 등 부정수급 등 관리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 실집행률: ('23)98.0% → ('24)98.4% → ('25)95.6%

○ 최근 3년간 외부 지적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사업평가 지적 또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내역사업별로 적절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의 성과는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온라인 수출실적과 사업 참여기업의 온라인 수출실적 증가율 차이('22년 20%p → '23년 31%p)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국제 중소기업 협력ODA(ODA)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방식의 변경 - ODA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탁사업 등의 방식을 도입하거나 전문적인 통합 추진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 · 예산 규모의 적정성 강화 및 성과지표 개선 - ODA 특성 상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나,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혜택이 직접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27년에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등 상위 사업의 목적과 관련한 성과관리 지표 마련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하며, 국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 중소·벤처 기업 현지 시장진출 지원의 목적은 직접적인 성과가 아닌 것으로 여겨짐

○ 동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조사업 비목으로의 지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ODA 사업의 특성 상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사전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나 우리 국민이 직접적인 수혜자로 볼 수 없으며, 특정 기업만이 간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한계가 있음

- 직접 수혜자는 콜롬비아 IT 분야 전공자 및 기업과 인도네시아 국민임

○ 관련 절차(중기부→외교부→기획예산처)에 의해 '27년 예산규모가 확정되는 등 '27년 예산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단,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산의 확대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우리 국민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사업이 아니므로, '27년 예산은 '27년에 계속 수행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업만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실집행률의 측면에서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았음

○ 최근 3년간 외부 지적 사항은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평가 지적의 반영 내용은 일부 미흡함

- 세부사업단위 자체의 성과관리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보조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성과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ODA 사업의 특성상 수원국과의 관계 개선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관리지표가 부재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창업저변확대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의 지원규모 조정 - 일부 내역사업(창업관리시스템, 공공구매 규제해소 지원)의 지원규모 조정이 필요함 - 창업관리시스템 관련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사업구조 변경 및 보조율 조정 - 비즈쿨 사업 특성상 지자체의 참여 강화와 타 부처와의 협력 강화, 법률지원의 자부담 강화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개선 및 후생효과 확인 - 동 사업의 목표를 정확히 반영하는 성과지표의 마련 및 운영으로 후생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국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사업의 큰 틀에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사업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며, 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도전! K-스타트업, 창업관리시스템 등, 공공구매 및 규제해소 지원 내역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업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음

- 청소년 대상 사업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교육이 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지원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짐

○ 동 사업만의 특수성이 인정되나 일부 지자체 등과 타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 방안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직접 수혜자의 범위는 넓으나 사업의 후생효과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각 내역사업별 지원규모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다소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목표와 수혜자의 요구에 기반하여 자원 배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조율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법률지원 등의 사업은 자부담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비즈쿨 운영은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실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내역사업(창업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추진체계 및 프로세스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부정행위 관련 관리지침 등의 운영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며, 각종 개선요구에 대한 개선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를 전체 창업기업 수 대비 기술기반 창업기업 비중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목표를 정확히 반영하는 성과지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내역사업별 성과지표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창업사업화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성과지표의 고도화 - 내역사업 및 내내역사업별 매출기여에 대한 확인과 목적에 적합한 특화된 지표 등을 개발하고 목표치를 설정하여 운영·환류할 필요가 있음 · 지원규모의 지속적 조정 - 정부정책의 변화, 각 내역사업(또는 내내역사업)의 정책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기술창업기업과 관련한 환경, 상위 과제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볼 때 재정지원의 필요성 또한 전반적으로 인정됨

○ 사업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환류할 필요가 있음

- 정부정책(균형발전, 신산업육성 등) 및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비율, 정책수요(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지원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과 유사사업을 살펴볼 때, 보조사업(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보조율 70%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집행 및 부정수급 등의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추진·전달체계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은 발생하지 않음

○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있으나, 사업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추가적인 환류 검토가 필요함

- '25년 보조사업평가 지적사항인 기업별 지원규모의 산정 적절성에 대한 추가 이행이 필요함

○ '25년 성과지표인 창업지원기업의 평균매출액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매년 지표가 달라 일관된 성과확인이 어려우므로 내역사업별 성과 확인이 가능한 추가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는 매년 다르게 설정되고 있어 사업의 일관된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내역사업별 창업지원기업의 매출액 상승 기여도 등 특화된 지표의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민관협력창업자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이 사업목표 달성과 직접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내역사업의 목표에 따른 사업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활동의 강화가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창업 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위축 가능성, 상위 과제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재정지원의 필요성 또한 인정됨

○ 사업 내용의 구성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나, 목표 대비 실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재정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경쟁률이 ('25)3.1:1 → ('26)3.5:1 → ('27)4.0:1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 관련 규정 및 유사 사업의 보조율 등을 고려할 때, 70%의 보조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 추진·전달체계도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 99.1%

○ 부정수급 등의 관리는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부정수급의 발생을 볼 때 예방 및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평가 대상 내역사업은 아니지만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총 3건의 발생 사례 중 한 건은 약 2.3억 원 규모임

○ 동 보조사업에 대한 국회 등의 외부 지적사항은 없으나, '25년 보조사업평가의 지적 내용(성과관리 및 재정수요 근거 보완)의 반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매년 다르게 설정되어 성과분석의 일관성이 낮으며, 내역사업의 목표에 따른 사업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중소기업 재기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예산 규모 조정 - 예비재창업자의 지원 타당성은 명확하게 인정되나, 이미 재창업한 기업의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수혜자의 수가 200여 명으로 적정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25년은 '24년 대비 28.7% 감소함 - 성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사업개선 - (단기) 예비창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 타 창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전반적인 사업 규모에 대한 검토 및 타 사업과의 연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종합평가 의견

○ 사업목적이 명확·타당하고 국가정책 상 국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재정지원의 필요성 또한 인정됨

○ 재창업자의 특성(채무조정, 신용회복 등) 상 재창업자와 신규 창업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일부 적정하나, 창업 이후의 별도 사업화자금 등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일반 창업기업과 달리 동 사업은 채무조정, 신용회복, 사업 실패 경험 등의 복합적 특성을 가진 정책 대상군으로 인해 특화된 접근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단, 예비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집중하고 이후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타 창업지원 사업에 재창업자에 대한 특별 지원을 포함시켜 전반적인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동 사업의 일부 내용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함

- 동 사업의 내용이 폐업한 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인지, 재창업한 기업에 다시 폐업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함

○ 재정수요와 지원규모 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수혜자가 200여 명에 그치는 등 수혜자의 규모가 크지 않음

- 관련 규정에 따라 창업기업 등의 경우 사업비의 70% 이상의 보조가 가능하며, 동 사업은 75%의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어 보조율은 적정함

○ 사업비 집행 및 부정수급 관리, 사업 추진·전달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조사업평가 결과의 지적 내용은 일부 반영하였으나 추가적인 반영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재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3년 차 생존율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으며, 성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성과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23년 84.6% → ’24년 81.4% → ’25년 80.9%

- 재창업자의 생존율 이외에 창업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보조 지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단기 사업개선 - 각 내역사업 혹은 센터별로 혁신성장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지표를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 사업개선 - 지역창업특화지원센터의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각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사업목적이 명확·타당하고 국가정책 상 국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재정지원의 필요성 또한 인정됨

○ 일부 유사중복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의 운영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혁신성장의 지원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적절한 조화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사업과의 유사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됨

- 해당 인프라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각 인프라별로 운영비를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재정지원 규모 및 지방비 매칭 정도 등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

○ ’25년도부터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를 ‘창업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액’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목표를 정확히 반영하는 성과지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역창업특화지원센터의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과거 ’18년 창업보육업무의 지방이양 논의를 진행하였고 일부 지자체의 공식적인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지역창업특화지원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현재 건립 중인 지역의 건립이 완공되는 '27년 말까지만 진행하고, 이후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함 · 이에 따라, '27년 사업비의 감액(건립비 잔여분과 경상보조비목만 반영)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목적은 명확하고 동 사업은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친환경 전력 인프라, 정주여건 등 다양한 목적이 결합된 복합시설 중 창업지원 인프라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단위사업(창업생태계기반조성) 및 프로그램(창업환경조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법적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나, '22년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 폐지가 권고되어 '24년부터 신규 조성지를 선정하지 않았고, '27년까지 이미 착수된 사업이 종료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없음

○ 창업허브 및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는 창업생태계활성화 사업 및 창업보육센터지원 사업과의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그린스타트업 타운 건립을 위해 조성지별로 정액(설계·조성비 14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타트업파크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사업 폐지에 따라 '27년 잔여 사업비만을 지원하여 사업비의 감축이 필요함

- 단, 민간경상비 지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단위: 백만원)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예정)
예산	13,505	22,500	3,700

○ '23년도 실집행 부진 이력으로 인해 전체 실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사업 추진·전달체계 및 부정수급 등 관리와 환류 및 개선 노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지속적으로 집행률 부진이 지적되었으나 '23년부터 분기별 현장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24년 이후에는 집행률 99% 이상으로 개선한 점이 인정됨

○ 동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지표가 설정되어 성과가 관리되고 있으며, 성과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예산 조정 - 여성창업활성화지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미흡, 수혜자 수 부족에 따른 파급효과 미흡, 행정비용 과다(예산의 17.9%)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일자리지원은 타부처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인프라 지원은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에서 감액의 필요가 있음 · 사업 재구조화 - 사업평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근본적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국가정책 상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국정과제와의 연관이 높은 등 국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어떠한 측면의 경쟁력 강화인지, 이를 통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등이 불명확한 점이 있음

-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여성벤처 활성화지원'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각 내역 사업의 내용은 공약과제 등의 목표를 일부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벤처기업과 관련한 근본적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모호한 측면이 있음

○ 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나 수혜자 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특히 여성벤처 활성화 사업의 수혜자('24년 56개사, '25년 84개사)는 소수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및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타 사업의 보조율 등을 고려할 때, 보조율 100%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벤처기업 인프라지원의 실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행정비용 또한 과다한 것으로 여겨짐

○ 사업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사업구조 및 사업비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여성벤처 활성화 사업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타 사업에서 여성 기업 우대를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 등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센터 사업 등과 연계하여 벤처기업 채용 사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인프라 지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점에서 사업비의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중소 및 중견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스마트공장 구축비 재검토 - 생산공정 등의 규모를 고려한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의 차별적 적용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성과지표 개선 - 운영관리 측면 지표들의 단순평균으로 이루어진 성과지표를 재검토하고 이러한 성과의 궁극적 목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 개선 - 사업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등에서 매년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바, 절차, 규모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하며, 국가 정책상 국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중복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7년 기준 사업목표는 스마트공장 도입률 20%, 중소AI도입률 5%,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수 200개, 제조데이터 표준화수 500개 등으로 사업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음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타 사업의 보조율과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보조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단, 동 사업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생산공정 등의 규모를 고려한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의 차별적 적용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실집행률 등을 고려할 때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24년도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가 요구됨

○ 사업 추진·전달체계 및 부정수급 관리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및 사업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 매년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절차 및 사업규모, 품질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의 구축 전 대비 구축 후의 개선율을 산술평균한 값을 핵심성과지표로 삼고 있으나 해당 값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단순평균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다소 모호함. 또한, 이러한 경쟁우위 요소 확보의 궁극적 목표(매출 등)에 대한 관리 또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기술혁신기반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보조율 조정, 내역사업 폐지 - 컨설팅 관련 사업의 보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지원 폐지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함 · 혁신형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은 보조비목으로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하며, 국가 정책 상 국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내용은 대체 정책수단의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혁신형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은 보조비목으로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 ‘혁신형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은 관련 협회 등에서 자발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기술탈취근절’과 관련한 사업은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등의 정책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사·중복 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세부사업 내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의 내역사업은 성격에 유사한 면이 존재하고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바, 중장기적으로 내역사업의 통합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지원규모가 적정하나, 일부 사업의 보조율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컨설팅 및 교육 관련 사업의 보조율을 85%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 추진·전달체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정수급 등 관리, 환류 및 개선 노력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내역사업의 성격에 따른 별도의 지표를 마련하여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성과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과지표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과지표는 단순 숫자 이외에 추가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각종 지원에 대한 총합적인 만족도를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6년 종료되는 사업의 예산 미배정 및 내역사업 보조율 조정으로 소액 감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지원 폐지: 2,936백만 원 예산 미배정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지역특구제도 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부정수급과 관련한 예방 및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5년 1.9억 규모의 과오수급 발생 · 중장기적으로 수출지원사업에 근거한 현재 국비 보조율 70%의 조정이 필요함 - 실증 R&D에 사업비의 7/12(58.3%) 이하로 국비 보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지역 주력산업 및 지방 소멸 위기 타파와 신산업 규제 철폐 및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 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국가 정책상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 또한 인정됨

○ 전반적으로 지원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으로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실증 R&D에 사업비의 7/12(58.3%) 이하로 국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70%를 보조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비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때, 수출지원사업에 근거한 현재 국비 보조율 70%는 비교적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단, 실증 R&D 성격도 존재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국비 보조율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집행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사업 추진 체계 및 환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부정수급과 관련한 예방 및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오수급 적발 건수 1건(1.9억 원 규모)

○ 성과평가지표가 사업 목표에 적절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 또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대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대·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은 성과관리 강화와 사업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사업재구성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지출 조정 노력을 권고함 - 내·내내역사업의 구성이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복잡함에 따라, 성과관리 강화와 사업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사업재구성을 권고함 - 내내역사업 '소모성자재납품중소기업지원'은 내역사업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와는 목적이 달라, 근거법률 성격에 맞춘 사업 재구성(타 세부사업 '공공구매제도운영사업' 또는 '마케팅지원사업'으로 이관)을 권고함 - 내역사업 '상생거래 환경조성'의 내내역사업 '기업간 거래공정화'의 내내내역사업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은 적정 예산의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반복 추진에 따른 운영 효율화를 적극 모색하여 지출을 조정 방안이 우선 필요함 - 동 사업의 특성상 특정 성과지표만으로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개별 사업관리 측면에서 재정투입 대비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세부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은 3개의 내역사업(상생거래 환경조성, 동반성장 문화조성,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 차이로 공정한 해결에 한계가 있어, 분쟁 예방·조정 및 동반성장 문화 안착을 위해 정책 지원의 타당성이 매우 높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은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목적이 명확함

○ 내역사업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는 ‘적합업종 보호 및 육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유지하되, 그 외의 사업(소모성자재납품중소기업지원)은 폐지하거나 사업개선(타 세부사업으로 이관)이 타당함

- 내내역사업 ‘소모성자재납품중소기업지원’은 내역사업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와는 목적이 달라, 근거법률 성격에 맞춘 사업 재구성(타 세부사업 ‘공공구매제도운영사업’ 또는 ‘마케팅지원사업’으로 이관)을 권고함

○ 내내역사업별로 적정 예산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일정 수준 지출 조정 노력을 권고함

○ 동 사업의 보조율은 100%이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지원하는 성격을 고려할 시, 현재 보조율의 설정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2025년 기준으로 내역사업별 집행률은 97.5-99.3%로 높은 수준임

- 2025년 기준 부정수급 발생 사례는 없음

- 보조사업 연장평가, 국회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절하게 조치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성과지표는 기금,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사업 전반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 관리 측면에서 재정투입 대비 효과성이 부족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여성기업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여성기업육성'은 과도하게 세분화한 사업 구성에 따른 제한된 예산의 분산 투입(예: 미래여성경제인육성) 보다는 창업 촉진과 여성기업확인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한 사업 재구성을 권고함 - 동 사업은 내역사업 4개, 내내역사업 12개 등 예산 규모에 비해 사업 내용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구성하고 있어, 재정 투입의 분산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제한적이고 세분화된 사업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성과관리 문제가 있음 - 여성기업 성장지원은 여성기업 확인제도 이용에 따른 혜택(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쟁입찰 가산점 등) 확대 혹은 강화와 같은 기회 제공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외 지원은 창업 촉진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함 - 특정 내내역사업만으로 성과관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외 사업들의 재정효과 파악이 곤란하며, 매출액 변화율 외에 자체적으로 관리 중에 있는 성과지표는 결과가 아닌 산출에 해당함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은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판로, 수출, 인력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여성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와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여성기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여성기업 육성은 창업지원에 무게를 두되, 여성기업 성장지원은 여성기업 확인제도 이용에 따른 혜택(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쟁입찰 가산점 등) 확대 혹은 강화와 같은 기회 제공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외 지원은 단계적 축소가 타당함

○ 예산 규모에 비해 사업 내용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구성하고 있어(내역 4개, 내내역 12개), 재정 투입의 분산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제한적임에 따라, 불요불급의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기회를 갖도록 유인하는 사업 재설계를 권고함

- 특히 미래여성경제인육성은 실효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다른 수단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폐지를 권고하며, 이 외의 여성기업 인력지원 관련 내내역사업들 또한 지출 구조조정이 요구됨

○ 직전(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사업운영개선(사업효율화) 조치(여성기업 인력지원사업의 2026년 예산 감축)가 일부 확인되나, 그 외의 내용은 제한적임에 따라 부분적인 개선 노력이라 할 수 있음

○ 특정 내내역사업만으로 성과관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외 사업들의 재정효과 파악이 곤란하며, 매출액 변화율 외에 자체적으로 관리 중에 있는 성과지표는 결과가 아닌 산출에 해당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장애인기업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장애인기업육성'은 예산 규모 대비 사업 내용을 과도하게 세분화하여 구성하고 있음에 따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정수요가 큰 사업을 위주로 한 재구성과 사업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며, 성과를 특정 내내역사업(컨설팅 프로그램 참여자 창업률)만으로 관리하는 한계가 있는바, 그 외 사업들의 성과 또한 파악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마땅함 - 동 사업(장애인 창업육성과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은 장애인창업률만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어, 내역사업 '장애인기업성장기반구축' 관련해서는 예산투입에 따른 재정효과를 가늠하기가 어려움 - 부정수급 관리 관련하여 '점검기한 미준수' 2건이 존재함 - 장애인기업 육성 방향은 수혜대상만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통상적인 사업 내용의 확대가 아닌 수혜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방식으로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종합평가 의견

○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자립하고, 장애인의 창업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선순환 구조와 연관이 높은바, 대상, 목적, 내용 모두 타당성이 높음

-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기업육성에 대한 재정지원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지원 없이 해당 사업의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은 희박함

○ 수혜대상만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통상적인 사업 내용의 확대가 아닌 수혜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방식의 선택과 집중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재 과도하게 세분화한 개별 내·내내역사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통합하여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사업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를 권고함

- 직접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사업에 따른 후생효과 또한 존재함

- 보조율이 100%이나 동 사업의 수혜자 특성과 취지(수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을 통한 복지예산 절감 등) 감안 시 적정성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2025년 3개의 내역사업 실집행률은 98.5-99.7%로 적정함

- 다만, 2025년 기준 부정수급 발생 사례는 없으나, 부정수급 관리 관련하여 '점검기한 미준수' 2건이 존재함

- 직전(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사업운영개선(성과관리)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 내내역사업 수준에서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사업의 특성으로 모든 내내역사업 혹은 이를 포괄하여 대표하는 성과지표 마련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과지표 체계 등 투입 대비 효과성에 기초하여 성과관리 정교화가 요구됨

- 동 사업(장애인 창업육성과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은 장애인창업률만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어, 내역사업 '장애인기업성장기반구축' 관련해서는 예산투입에 따른 재정효과를 가늠하기가 곤란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중소기업혁신바우처지원사업'은 직전 연장의 평가의 지적 사항의 조치 이행을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 온전한 수준이 아닌바, 이행 완료를 권고함 - 직전 연장평가 및 컨설팅(재기바우처의 내역사업 분리, 세부사업과의 정합성 강화,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신규 제시 등)에 따른 조치가 현재 시점으로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내역사업 분리 작업 추진 내역(담당 부서 간 협의 완료 및 '27년 예산 요구 시 내역사업 분리 추진 계획)이 확인되는바, 지적 사항의 조치 이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최근 실적 추이 반영을 위해 3년 가중평균 방식 도입 검토와 도전적 목표치 설정 강화를 위한 산출 근거 마련을 권고함 - 또한, 내역사업으로 추진 계획인 재기지원 사업의 특성상 성과지표 마련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이상,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신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혁신바우처(기술지원, 컨설팅, 판로지원)를 중소기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상당함

- 사업 내용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수혜 대상이 비교적 명확함

- 동 사업은 비용뿐만 아니라 정보탐색 측면에서 재정지원 필요성이 상당하며, 거래비용 측면에서 비용과 비효율이 수요기업인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수혜기업의 개별적 접근 대비 효율성과 효과성이 모두 높음

○ 일부 내역사업이 세부사업 목적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이는 직전 보조사업 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갈음함), 이와 관련하여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사업내용의 적정성 관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 실수혜자 구분이 명확하고 향후 예상되는 직접 수혜자의 수를 고려한 지원규모의 적절성은 수혜 경쟁률에 기초한 판단이 합리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는바, 현재의 경쟁률은 지원규모의 적정성 인정에 있어 큰 무리가 없음

○ 최근 3년간(2023년, 2024년, 2025년) 실집행률이 95.0%, 96.2%, 97.5%로 적정함

- 3년 평균 실집행률이 96.2%이며, 매년 실집행률이 높아지고 있어 집행률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긍정적임

○ 직전(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사업운영개선(내역사업 분리, 성과지표 관리 강화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이 현재 완료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 인정되는바, 지적 사항의 이행에 무리가 없을 것을 판단됨

○ 바우처 사업 외에 재기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해당 사업의 경우 특성상 성과지표 마련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이상,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신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마케팅지원사업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마케팅지원사업'의 효과는 '전년도 수혜기업 매출액'과의 비교가 아닌 '당해연도 수혜기업의 전년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기초한 성과 파악이 곤란한바, 사업관리 강화를 권고함 - 내역사업 '판로진출지원'은 내내역사업(5개)별로 사업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투입 대비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대한민국 동행축제'의 성과 목표치의 설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 파악이 곤란함

□ 종합평가 의견

○ 세부사업 “마케팅지원사업”은 판로개척 역량 미흡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통환경의 복잡다기화, 유통망 독점화 등 판로 애로의 해소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동 세부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판로진출지원, 대한민국동행축제, 공동A/S지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역사업 ‘공동A/S지원’은 ’26년 종료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및 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는 않음

○ 다만, ‘대한민국 동행축제’의 성과 목표치의 설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 파악이 곤란하여 지원규모 적정성 또한 평가가 곤란함

○ 2025년 기준 부정수급 발생 사례는 없으나, 직전(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의 지적사항(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내내역사업 ’27년 예산까지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에 대한 조치 여부의 판단이 제한적임

○ 세부사업 ‘마케팅지원사업’은 기존 성과지표(참여기업의 판매증가율 = 당해연도 지원기업의 판매액 - 전년도 지원기업의 판매액 ÷ 전년도 지원기업의 판매액 × 100) 기준으로 역성장함(- 34.7%이며, 외부적 요인의 작용을 감안해도 성과 달성도가 매우 미흡하고 목표치 설정 또한 도전적이지 못함)

- 기존 성과지표에서는 ‘지원기업의 전체 판매액’으로 계산한바, 예산 축소 등으로 지원기업 수 감소 시, 기업당 실질 매출이 증가해도 총 성과가 낮게 왜곡되는 문제 발생함에 따라, 실질적 판로지원 효과 측정을 위해 지원기업당 매출액으로 지표를 변경하여 분석한 결과, 사업예산 감소(△24.2%), 지원단가 상승 등으로 지원기업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기업의 전체 매출은 감소하였으나(△34.7%), 기업의 실질적 지원체감효과인 지원기업당 매출액은 증가함

- 그러나, ‘지원기업당매출액’으로 변경한 방식 또한 동 사업의 지원 효과 파악에 한계가 있어, 사업관리 강화를 권고함(동 사업의 효과는 ‘전년도 수혜기업 매출액’과의 비교가 아닌 ‘당해연도 수혜기업의 전년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 내역사업 ‘판로진출지원’은 내내역사업(5개)별로 사업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투입 대비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공공구매제도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공공구매제도운영'의 내역사업 '공공기관문제해결매칭지원'은 현행 개별기업 대상 실증비 재정지원에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기회를 연결 제공하는 비예산 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이 타당한바, 폐지를 권고함 - 내역사업 '공공기관문제해결매칭지원'은 수혜자의 범위가 좁고 실제 실수혜자수 또한 소수인바, 폐지하여도 동 세부사업의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개별기업 보다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기회 자체의 연결에 초점을 둔 비예산 방식의 지원을 권고함) - 성과 달성도 파악이 제한적임에 따라,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제품 등을 구매하도록 각종 법적 제도 운영 및 구매 촉진 강화 지원으로, 3개의 내역사업(공공구매제도 이행력제고,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공공기관문제해결매칭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공공기관문제해결매칭지원'만이 보조 형태이고 그 외는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정부가 시행중인 제도 및 사업으로 민간 운영이 불가능하며, 유사중복 문제는 내역사업 수준에서 적용 시 해당 없음에 따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내역사업 '공공기관 문제해결 매칭지원'은 공공기관에 국한된 혹은 특화된 문제해결이 아닌 이를 포함하여 민간까지 적용이 가능한 제품의 실증은 일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차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함

- 또한, 내역사업 '공공기관 문제해결 매칭지원'은 개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 대신 기회 제공 자체에 초점을 둔 비예산 방식의 추진이 타당함

○ 세부사업 기준으로 수혜자 범위가 상당하나, 내역사업별 수혜기업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내역사업 '공공기관 문제해결 매칭 지원'은 수혜기업 수가 지난 3년간 23-30개에 불과한바, 동 내역사업 추진으로 동 세부사업의 목적 달성 기여에 실효적인 역할이 매우 제한적임

- 내역사업 '공공기관문제해결매칭지원'은 수혜자의 범위가 좁고, 실제 실수혜자수 또한 소수인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도 동 세부사업 추진에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라는 현행 방식을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기회 자체를 제공하는 비예산 지원 방식이 타당함)

○ 집행 적정성과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모두 내역사업 수준에서 타당함

- 부정수급 발생 건이 없으며, 자체 관리 노력이 적정함

○ 외부 지적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나, 실질적인 조치라 보기가 곤란함

○ 성과 달성도 파악이 제한적임

- 목표치 산출 근거 등을 사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되, 동 세부사업을 아우르는 포괄성과 더불어 개별 내역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은 내·내내역사업별 전반에 걸쳐 성과관리의 정교화를 권고함 - 내역사업별로 산재한 정책개발의 성과를 구분하여 관리하되, 정책과제 건의 건수 중심의 현재 성과지표에 질적 요소(채택, 입법 등) 지표를 보완지표로 추가하여, 성과의 양과 질 관리를 병행하는 균형적 노력을 권고함 - 일부 사업의 성과가 3년 연속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원부자재 공동구매 거래금액) - 내역사업 '가업승계지원' 내내역사업(인식개선, 정책개발)의 경우 결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3개의 내역사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개별적 현장 애로 전달, 민간 자율만으로 공동사업 활성화 한계, 가업승계 문제 등을 종합하여, 정책적 타당성이 상당함

- 동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보조가 명시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 또한 상당하며, 3개의 내역사업 모두 유사중복 문제는 없음

○ 공약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내용이 정책목표·사업목적과의 부합도가 상당하고 상위계획과 연계성 또한 높음

○ 산업·업종별 구분 없이 전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이 직·간접 수혜자임을 고려할 시, 재정수요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보조율 100%는 무리가 없음

- 다만, 내역사업 '가업승계지원'의 내내역사업 '인식개선, 정책개발'의 경우 결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 평균 실집행률이 100%이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체 재정수입 부족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 보조율의 적정성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최근 부정수급 발생 사례는 없으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자체감사도 실시 중으로 향후 발생 가능성 역시 낮음

○ 직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사업운영개선의 조치 내용이 현재까지는 제한적임

- 기존 산업보다는 신규 협동조합에 무게를 둔 예산 투입 등 조치 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인정됨

- 다만, 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 내역사업별 특화된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효과를 반영하고 수혜 대상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화하여 성과관리 개선을 권고하였고, 실질적 사업효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내역사업별로 산재한 정책개발의 성과를 구분하여 관리하되, 정책과제 건의 건수와 더불어 반영된 건수와 같은 질적 요소(채택, 입법 등)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내·내내역사업별 성과관리는 사업내용의 취지에 입각하여 사업 경쟁력과 실질적 사업 효과를 반영하는 지표 마련이 우선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및옴부즈만운영'의 내역사업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는 성과지표를 보완 개편하여 관리하는 사업개선을 권고함 - 내역사업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는 현재의 성과지표 '의견제출규제건수' 외에 '반영한건수'를 성과지표로 추가하여 질적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다만, 법령 제·개정 완료 등 '의견반영률'이 당해연도 즉시 측정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지표로서 적용하여 당해연도 업무 활동성·노력 및 의견제출의 적절성 등 상호보완을 기대함) - 3년 평균의 점진적 상향치 적용을 권고함 - 부정수급 관련하여 점검 기한 미준수(1건)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동 세부사업(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은 2개의 내역사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규제 관련 대응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이 상당함

- 부처와 관련된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사중복의 문제는 없음

○ 상위계획과의 상호 연계성이 높고 사업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적절하며, 내역사업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수행에 있어, 현재의 방식과 함께 AI를 점진적으로 보조 병행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함

○ 잠재적 수혜기업이 광범위하며, 이 사업의 경우 특정 업종이나 혹은 소수의 기업에게 국한되어 제공되는 수혜가 아닌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수혜임에 따라 재정수요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보조율 100% 또한 직접 수혜가 아닌 간접 전달임을 고려할 시, 무리가 없음

○ 2025년 기준으로 실집행률은 100.0%이고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부정수급 관련한 점검 기한 미준수(1건)가 있음

- '25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간 국회, 감사원,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이 없어, 환류 문제점 또한 해당 없음

○ 동 사업의 성과는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으나, 목표 설정치 근거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계획 중임('26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의 결과를 반영하여 의견제출율 4.0%, 의견반영률 47.4%로 설정하였음). 다만, 목표치를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점진적 상향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의 성과지표 '의견제출규제건수' 외에 '반영한건수'를 성과지표로 추가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질적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현행 성과지표(의견제출비율)'와 함께, 질적 성과 평가를 위한 '의견반영률'을 성과지표로 보완 개편하여 적용할 예정임(의견제출비율 = 의견제출 건수 / 평가건수 × 100; 의견반영률 = 반영건수 / 의견제출 건수 × 100)

- 다만, '의견반영률'이 당해연도 즉시 측정에 한계(법제운영 규정 등에 따라 법령 제·개정 완료까지 통상 6개월이상 소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지표로 관리하고, 기존 '의견제출비율'는 대표 성과지표로 이원화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함(의견제출 비율과 반영률을 동시에 성과지표로 적용하여 당해연도 업무 활동성·노력 및 의견제출의 적절성 등 상호보완을 기대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에서 내내역사업 '현황조사 및 활용'과 내내역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는 현재의 보조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비목전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이 외에 면밀한 산출 근거 마련(내역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분석'), 대안적 성과지표 마련(세부사업)과 같은 사업개선이 필요함 - 내역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분석'에서 내내역사업 '지원정책 총괄·조정'은 현재와 같이 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보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외의 내내역사업(현황조사 및 활용, 성과분석 및 평가)은 관련 법(「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 ①항)에 의거하여 국가의 사무에 해당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이 가능한바, '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비목 전환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 내역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분석'에서 조사를 제외한 분석은 지속 추진에 따른 효율화 노력이 요구되는바 면밀한 산출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동 세부사업의 성과 파악을 위해 포괄성 측면에서는 현 성과지표(중소기업 지원사업 만족도)가 가능하나 내용 타당성 측면에서 동 사업과 지원사업 만족도 간 거리가 있어 대안적 지표 마련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동 세부사업(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은 3개의 내역사업(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중소기업지원사업분석, 중소기업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은 보조, 중소기업지원사업분석은 직접과 보조, 중소기업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은 직접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 내역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분석'의 내내역사업 '지원정책 총괄·조정'은 현재와 같이 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외의 내내역사업(현황조사 및 활용, 성과분석 및 평가)은 현재 보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에 의거하여 국가의 사무에 해당하는바, '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비목 전환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사업 내용측면에서 유사중복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음

○ 수혜자 범위가 상당하며, 동 사업의 내용이 정책 수립의 기반에 해당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가 개별보다는 전체이므로, 보조율 100%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함

- 다만, 내역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분석'의 내내역사업 중 조사를 제외한 분석은 지속 추진에 따른 효율화 노력이 요구되는바, 면밀한 산출 근거 마련을 권고하며, 그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92.5%-99.8%로 적정함

- 2025년 기준 부정수급 발생 사례는 없음

- 직전(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중소기업정책심의회 비목전환 변경)을 2025년도 예산 반영 완료하였으며, 이 외의 지적사항(2023년 국회)도 개선하였음

○ 세부사업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는 성과 달성도 파악이 제한적인 지표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성과 달성이 평가가 곤란함

- 동 세부사업의 성과 파악을 위해 포괄성 측면에서는 현 성과지표(중소기업 지원사업 만족도)가 가능하나, 내용 타당성 측면에서 동 사업과 지원사업 만족도 간 거리가 있는바, 대안적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산학협력인력양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산학협력인력양성'은 ① 대상이 다른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역별 성과관리가 마땅하나 일부만이 확인되는 점, ② 동 사업이 일자리사업 중 교육훈련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지표로 사업효과를 제시함이 당연하나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관점에 따라 유사중복 문제가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지출 구조조정을 권고함 - 내역사업별 성과 달성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음 - 취업률, 동일직종 취업률, 역내 취업률, 중도탈락률, 고용유지율 등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자리 관련 지표 활용이 매우 부족함

□ 종합평가 의견

○ 세부사업 “산학협력인력양성”은 2개의 내역사업(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을 구성하고 있으며, 산업 수요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현장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지원하고 있는바, 정책적 타당성이 존재함

- 동 사업은 아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역사업에 따라 법적 구속력의 차이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는 않음

○ 수혜대상 측면에서 유사중복 문제는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바,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지출 구조조정을 권고함(사업목적과 내용에서 부분적인 차이만으로 타 유사사업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당위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인력양성의 경우 동 부처는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타 부처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연계한 상호보완적 기능의 역할 수행이 합목적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에 해당되고 상위 정책목표와 연관성이 확인됨

- 내역사업별 구성 또한 세부사업과의 연계를 갖추고 있음

- 잠재적 수혜자 범위가 상당하고 실수혜자의 규모 또한 명확함

- 2025년 기준 부정수급 발생 사례는 없음

○ 외부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제도개선 조치가 있었으나, 제한적임(중장기적 사업방식 변경 검토 필요에 대한 조치로 관리지표(고용유지율) 신설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성과 달성도 부분에서 관리지표 신설 등이 발견되지 않음

○ 성과달성도가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 파악이 곤란함

- 대상이 다른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역별 성과관리가 마땅하나 일부만이 확인되며, 제시한 성과지표의 타당성 또한 부족함(예: ‘사업참여자 안전관리 노력도’는 보조지표로서는 가능하나 사업의 목표는 아님)

- 동 사업이 일자리사업 중 교육훈련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지표로 사업효과를 제시함이 당연하나 관련 내용이 부족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인력유입인프라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재정사업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함. 다만,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사업목적 명확화가 필요하며, 최근 정책방안에 사업추진방향 반영 노력이 필요함 - 환류 및 개선노력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추진과 실집행률 부진이라는 다소 상충되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관부처 자체적으로 사업범위 및 유형 등에 대한 적정수준 검토가 필요함 · 보조사업 추진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추진 주체 또한 법적 근거가 존재함. 부정수급 등 사업 사후관리 관련 문제 없음

□ 종합평가 의견

○ 내역사업들의 사업목적은 명확하나 세부사업 사업목적 일부 보완이 필요함

-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에 재직자 보상강화 또는 근로자 자산형성 등의 내용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상위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국정과제 및 상위계획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존재함

○ 정부개입의 법적근거가 존재하며,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측면에서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으며,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 가능함

○ 보조금을 통한 사업 추진상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수행 주체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어, 사업주체를 통한 보조사업 추진은 적정함

○ 재정투입이 없을 경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며, 민간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도 공제사업 대비 비용이 증가하여 재정지원이 더 적합함

○ 청년자산형성 사업의 경우 타 부처와 일부 유사중복성이 존재하였으나, 신규가입 종료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유사중복성은 없다고 판단됨

○ 사업 수혜대상자로 성과보상기금 참여자와 인식개선 등 교육 인력수를 제시하고 있어 수혜대상 제시가 적정함

○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 99.5%이나, 실집행률은 89.6%임, '25년 실집행률은 97.1%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행정비용 규모가 높으나, 신규사업 추진에도 불구 적정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보조사업자 공모 미진행 사유 또한 인정되고, 부정수급 등 사업 사후관리 관련 문제없음

○ 최근 3년간 사업평가 및 국회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성과지표는 적정하나, '25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목표치 설정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실현가능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창업인프라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 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 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 개선 - 중기부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과 유사중복 존재('23년 보조사업 평가): 유사중복사업 조정 관련 연구용역 추진 내용 및 구체적 방안 제시 필요 - 실집행률 3년 평균 99% - 창업보육센터 자진반납 원인 분석, 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향후 효과적인 정책 수립 필요('24년 국회지적 사항) - 졸업기업생존율 101.9%, 비수도권졸업기업 지역정주율 100.2%, 비수도권 비중 70%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은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기술 기반 창업을 확산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핵심 사업임

- 지역 내 핵심 인프라인 대학연구소 등을 활용해 창업보육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성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센터의 특화 역량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창업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 유지 및 확대 필요

○ 중기부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과 유사중복 조정 관련 연구용역 추진 내용을 기반으로 차별적 사업 내용 조정 방안 제시 필요('23년 보조사업평가 지적 사항)

○ 본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99%에 이르며, 부정수급 등의 관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본 보조사업의 대표 성과지표는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의 생존율과 정주율로 사업 운영 목표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성과를 보여줌

- 입주기업 만족도 지표를 졸업기업 생존율과 졸업기업 지역 정주율 지표로 개선함

- 운영비 지원 축소와 특화역량 중심 전환 과정에서 창업보육센터 자격 자진 반납이 발생하여 사업구조를 개선하였고 개선 결과 자진 반납이 감소하였고 졸업기업 생존율도 목표를 초과 달성함

○ 창업보육센터 자진 반납 원인 분석('24년 국회 지적 사항)

- 창업보육센터 자진 반납 원인 분석('24년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한 수요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차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편 중인 것으로 확인함

○ 비수도권 70%로 확대 방안 필요: 비수도권 창업 보육센터 지원을 위해 '26년도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공고에 '거점형' 및 '성장형' BI를 각각 비수도권 70%이상, 50%이상 의무선정으로 명시하고 '로컬형' BI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의 BI만 신청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확인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정상 추진 - 집행률 98.9%(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운영 미제시), 비수도권 비중 100% - 계획수립 성과지표 재검토 고려			

□ 종합 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은 12개 시도 지역중소기업 위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경기 동향 및 기업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 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등 긴급 처방 지원 및 자금 연계

○ 3단계 위기 대응 체계, 전국 단위 데이터 구축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소상공인 생태계 연계 등 불필요한 내역 사업 없음

- 위기 징후 포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위기 수준 평가 위한 현장 진단, 적시 지원을 위한 긴급 처방, 중앙-지역 정보 비대칭 해결을 위한 전국 단위 통합 데이터 구축 등 문제 원인과 정책 수단 연결이 적정함

○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적 사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위기 예방계획 수립 건수 지표 신설하였으나 계획수립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지표 개선 재검토 고려

○ 성과지표 및 목표 수준 재검토

- 지역중소기업 위기 예방 계획수립을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성과지표 재검토 고려

- Stand-up 맞춤 지원 결과 만족도 최근 2개년 평균 93.68인데 비해 목표치 90점 설정은 낮은 수준으로 도전적 목표 수준 고려

- 최근 내수 위축,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외부 경영 환경 악화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12개 시도당 1건은 너무 낮은 목표설정으로 적정 수준에서 목표 수준 재검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최근 2년(2024~2025년) 연속 불용 발생 - 과오수급 이상징후 발견 1건, 과오수급 방지 대책 필요 - 성과지표 목표치 도전적 설정 필요 - 비수도권 비중 100%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은 규제자유특구 혁신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기존 특구 관리, 신규 특구 발굴 등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본 사업은 신기술·신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파급효과를 얻기 위한 기반 조성에 정부 지원 필요

-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패키지 사업으로 중앙정부 컨트롤타워 필수적이며 세제금융 대체 불가함

- 매년 신규 지정, 한시 지원(2년), 명확한 종료 시점 있음

○ 8개 규제샌드박스 중 유일 패키지 지원, 안전성 검증 병행으로 불필요한 사업 내역 없으며 규제와 비용이라는 이중 장벽을 규제 특례와 재정지원 패키지 해결로 사업 내용이 적정함

○ 특구 사업자 수, 특구별 평균 사업자 수 등 수혜자 수, 특구 지정 상태별 단가, 과제 발굴기획 및 특구 활성화 단가 등 지원 규모 적정성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지원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2년(2024~2025년) 불용 발생

- 글로벌혁신특구사업육성 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발생

- 규제자유특구 사업 기간 만료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 등 외부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불용 발생

○ 1개 과제의 과오수급 의심사례 발견

- 과오수급 의심 건에 대한 전담 기관 점검 의견 작성제출 및 해당 과오수급 의심 건부터 검토위원회 추진 예정 및 교육 추진 예정

○ 성과달성도 결과 제시 필요

- 목표 수준 매년 3% 상향으로 적정하며 사업화 성공률 달성률 139.7% 달성

- 상위 목표 규제자유특구 제도, 지역중소기업육성,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기여

- 성과지표 목표치 도전적 설정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창업인프라지원(제주)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 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전국 단위 사업과 차별성 없어 제주 특화 근거 제시 필요 - 실집행률 100%, 비수도권 비중 100% - 유사중복사업 조정('23년 보조사업평가) 관련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필요 - 졸업기업생존율 118%, 비수도권졸업기업 지역정주율 113.1% - 성과지표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도전적 목표치 설정 필요

□ 종합 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은 제주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확산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핵심 사업임

- 제주 지역 내 핵심 인프라인 대학연구소 등을 활용해 창업보육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성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센터의 특화역량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창업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 유지 및 확대 필요

○ 본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99%에 이르며, 부정수급 등의 관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유사 중복 사업 조정 필요에 대한 조치(1인중장년센터-BI 일원화 추진) 진행 중으로 '25년 실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움

○ 본 보조사업의 대표 성과지표는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의 생존율과 정주율로 사업운영 목표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성과를 보여줌

- 입주기업 만족도 지표를 졸업기업 생존율과 졸업기업 지역 정주율 지표로 개선함

- 운영비 지원 축소와 특화역량 중심 전환 과정에서 창업보육센터 자격 자진반납이 발생하여 사업구조를 개선하였고 개선 결과 자진반납이 감소하였고 졸업기업 생존율도 목표를 초과 달성함

○ 본 보조사업은 '25년 졸업기업 20개 사 중 100% 제주 정주, 지역 인프라 활용 기술기반 창업 확산으로 지역 불균형 완화, 특화역량 중심 기업 육성, 인구감소지역 특화사업 운영, 지역 인프라 기반 창업기업 정착, 성장, 고용 촉진 등 상위 정책 목표에 기여

○ 본 보조사업은 사업 자체의 우수성은 인정되나, 전국 단위 사업과 차별성이 없고 '23년 보조사업평가에서도 유사중복성이 지적되었고 제주 특화 근거 부재, 제주 BI로 분리 비효율 등의 문제로 전국 단위 사업과 통합 검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창업인프라지원(세종)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감액 - 전국 단위 사업과 차별성 없어 세종 특화 근거 제시 필요 - 유사중복 사업 조정('23년 보조사업평가) 관련 구체적인 방안 제시 필요 - 졸업기업생존율 92.2%, 비수도권졸업기업 지역 정주율 157.6%, 비수도권 비중 100% - 성과지표 최근 3년 비해 목표치 설정 낮은 수준으로 도전적 목표치 설정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은 세종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확산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핵심 사업임

- 세종 지역 내 핵심 인프라인 대학연구소 등을 활용해 창업보육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성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센터의 특화역량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창업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 유지 및 확대 필요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창업인프라 활용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 특화역량 활용 선택과 집중, 인구감소지역 창업기반 유지 전략으로 지역 불균형, 인구감소 해소

○ 중기부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과 유사중복 조정('23년 보조사업평가 지적 사항) 관련 연구용역 추진 내용 및 구체적 방안 제시 필요

○ 본 보조사업의 대표 성과지표는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의 생존율과 정주율로 목표치 낮게 설정됨

- 졸업기업 생존율 전년도 실적 91.7% 목표치 86.8%

- 비수도권졸업기업지역정주율 전년도 실적 61.5% 목표치 57.1%

○ 본 보조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졸업 후 세종지역에 정주하여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루는 구조를 형성하여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목표에 기여하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은 사업 자체의 우수성은 인정되나, 전국 단위 사업과 차별성이 없고 '23년 보조사업평가에서도 유사중복성이 지적되었고 세종 특화 근거 부재, 세종 BI로 분리 비효율 등의 문제로 전국 단위 사업과 통합 검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재정사업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되며,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상위계획에 부합함 -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추진전략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규모는 동일하나 수혜기업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혜기업 수를 전년과 유사한 규모 (실적기준)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며,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확보 및 성과지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보조사업 추진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추진 주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어 적정함, 또한, 부정수급 등 사업 사후관리 관련 문제없음

□ 종합평가 의견

○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세부사업 내용 또한 적정함

○ 상위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국정과제 및 상위계획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존재함

○ 정부개입의 법적근거가 존재하며, 중소기업과 구직자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측면에서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음

○ 보조금을 통한 사업 추진상 법적 근거가 존재하며,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이 적정함

○ 국가 구인구직 사이트와 일부 유사하나, 기업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추진되어 일반적인 취업지원 사업과는 차별성을 가짐

○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사업목표 및 사업전략은 적정하나,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장 기반 구인기업 발굴', '청년층 및 지역 중소기업 집중 지원' 등의 내용은 사업내용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함

○ 사업 수혜대상자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제시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수혜자 수의 경우, 동일예산 기준 전년과 유사한 규모(실적기준)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전반적으로 전체 사업규모는 전년과 유사하며, 불용항목을 중심으로 소폭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 보조율과 관련해서, 대중소상생일자리 교육 사업단 운영과 프로그램 훈련수당으로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어, 직접적인 수혜자에 대한 비용 반영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100% 보조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 99.0%이나, 실집행률은 98.8%임, '25년 실집행률은 99.1%임

○ 사업추진체계 및 전달체계가 대체로 적정하며,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어 적정하고,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관련 문제없음

○ 최근 3년간 사업평가 및 국회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수도권 편중지원에 따른 비수도권 지원 강화 및 성과관리 강화 등

○ 최근 4년간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확보 및 성과지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일자리사업 기초평가 결과, 취업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 예산의 조정 - 사업의 목적 상 지자체와의 협업 및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혁신소상공인 도약지원의 1인당 지원금액이 매년 증가('23년 대비 '25년 50% 이상 증가)하나 사업성과가 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지는 못함 -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창업 이후에만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및 부정수급 관련 예방활동 강화 - 내역사업별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목표치를 유지 혹은 감소시키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과 관련한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국가 정책 및 관련 규정상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됨

○ 동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비목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내용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단, 창업 이후의 소상공인 육성 및 성장 지원에만 집중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정수요 대비 지원규모의 적절성 등을 살펴볼 때, 사업비의 감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혁신소상공인 도약지원은 매년 1인당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25년은 '23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지출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사업의 경쟁률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나, '25년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방 상권 강화 및 기업가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진체계 및 프로세스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지적사항은 없으나 사업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가 있음

- 보조율 하향 조정, 부정수급 관련 예방 활동 강화, 재정수요의 적정성에 대한 보완, 투자연계 사업의 성과 분석 등에 대한 환류가 필요함

○ 설정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한 성과는 미흡하지는 않으나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성과 목표를 유지하거나 하향 설정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로 정책수혜 소상공인의 3년 차 생존율을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실적은 ('23) 88.7% → ('24) 88.1%로 큰 변동이 없음

- 각 내역사업별로 목표하는 바가 다르므로 내역사업별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표치를 유지 혹은 감소시키는 것은 재검토해야 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소상공인성장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 구조 조정 - 재난지원금 사후관리와 손실보상금 사후관리는 별도의 내역사업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활동 강화 - 다수의 부정수급이 발생함에 따라 예방 및 관리활동의 강화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단, '소상공인역량강화'의 내내역사업인 재난지원금 사후관리와 손실보상금 사후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의 부정수급 및 오지급에 따른 환수조치 및 소송지원으로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불가피한 점이 인정됨

○ 사업의 내용은 상위계획의 목표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재난지원금 사후관리와 손실보상금 사후관리는 별도의 내역사업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재정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 및 사업 추진·전달체계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 중 '소상공인 역량강화(브랜드 소상공인 육성)'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25년 3,022명이고, 경영안정바우처는 311만 개사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26년 예산 기준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하는 경영안정 바우처는 시스템 관련 예산 43억 원, 바우처 지급 5,74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영안정 바우처의 산정 근거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부정수급 적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부정수급과 관련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일정 수준의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최근 3년간('23년~ '25년) 11건 약 22억 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음

○ 설정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한 성과는 미흡하지는 않으나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각 내역사업별로 목표하는 바가 다르므로 내역사업별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표치를 감소시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소공인특화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소공인특화지원'은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 재정투입 효과를 파악할 수 없으며,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의 일관성, 내역사업간 보완성에 기초한 사업 효율성 강화를 권고하며, 그 과정에서 일정수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함 - 동 사업의 지원 대상(소공인)과 성과 달성도(정책수혜 소상공인 생존율)의 정합성이 부족함에 따라, 성과 달성도 관련 타당성(대상자 일치, 생존율을 매출액 증가율로 대체 등) 확보가 우선 필요함(이와 별개로 목표치 설정 또한 도전적이지 않음) - 지원 대상 외에 지원 내용의 다름에 근거하여 복수의 내역사업으로 구성 시, 내역사업별 성과관리가 필요함 - 동 사업의 취지(도시형소공인, 공동 및 협업 등)에 충실하게 사업 재설계를 권고함 - 부정수급 관련하여, 점검기한 미준수 1건이 있음 - 타 세부사업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556건, 55.86억원) 중 1건(1.2백만원) 외 555건(55.85억원)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과 관련된 건으로 '25년부터 동 세부사업(소공인특화지원)으로 이관됨(554건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에 해당함)

□ 종합평가 의견

○ 세부사업(소공인특화지원)은 4개의 내역사업(지역소공인육성,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판로개척지원, 클린제조환경조성)을 구성하고 있으며,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해당함에 따라,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이 높음

- 동 사업은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 모두에 해당함에 따라, 재정지원 필요성이 상당하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는 않음

○ 내역사업 수준에서 일부 사업이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되는 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검토를 통해 중복을 최소화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의 일관성, 내역사업간 보완성에 기초한 사업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권고함

- 동 사업의 취지(도시형소공인, 공동 및 협업 등)에 집중하되, 현재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그 외의 사업은 폐지를 권고하여, 유사중복이 아닌 실질적인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는 특화 내용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잠재 수혜자는 광범위하며, 실수혜자수는 내역사업에 따라 편차가 큼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조율을 설정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음

○ 2025년 기준으로 4개의 내역사업별 집행률은 92.3-99.9%로, 집행 적정성이 상당함

○ 부정수급 발생은 없으나, 점검기한 미준수 1건이 있음

- 타 세부사업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2개의 내역사업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과 내역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으로 구성되어 있음)'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으나(556건, 55.86억원), 해당 사업의 자체 확인 결과 부정수급 556건(55.86억원) 중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관련은 1건(1.2백만원)이고, 나머지 555건(55.85억원)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과 관련된 건으로 '25년부터 타 세부사업(소공인특화지원)으로 이관함

○ 동 사업은 소공인만을 대상으로 특화한 사업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성과 달성도 또한 그에 부합하는 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며, 특히 사업 내용 측면에서 특화하여 지원하는 목적을 생존율 매출액 증가율과 같이 경쟁력 강화나 성장으로 무게를 두어야 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소상공인재기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소상공인재기지원'은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성과지표의 포괄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성과 달성도 파악이 제한적인 이유로 사업개선을 권고함 - 부정수급(과오수급의심 포함) 35건(43건) 및 2.56억(2.57억), 점검기한 미준수 1건이 확인되는바, 예방적 부정수급 방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성과를 신생률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창업에만 해당함에 따라, 취업까지 고려하여 재창업률과 취업률로 별도 관리함으로써 사업효과의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외 내역사업의 성과도 관리되어야 함 - 성과지표(재기지원 수혜자의 성공률) 목표치를 산출한 근거(기업생멸통계의 소상공인 신생률 대비 200%)에 한계가 있는바, 대안적 접근(예: 전년 대비 당해연도 재기지원 성공률의 변화 크기 정도 등)을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함			

□ 종합평가 의견

○ 세부사업 '소상공인재기지원'은 5개의 내역사업(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 손실보상한시지원,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개인의 회복을 넘어 사회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바,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은 매우 높음

- 법령상 근거가 확인되고,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이 존재함
- 민간의 어려운 현실에서 태생한 것으로, 사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및 경제적 혜택의 크기가 투입에 비해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정지원 필요의 사유가 상당함

○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에 모두 해당함

- 상위 정책목표와의 연관성 또한 높음
- 잠재적 수혜자의 범위가 상당하며, 실수혜자 또한 적정성에 큰 무리가 없음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은 41.97%이며, 그 외의 내역사업은 실집행률 수준이 높음

○ 부정수급 방지 관련하여 예방적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부정수급 43건(2.57억), 점검 기한 미준수 1건)

○ 지적사항(보조사업 연장평가, 국회 등)을 적절하게 조치하였고, 일부는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음

○ 내역사업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성과를 신생률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창업에만 해당함에 따라, 취업까지 고려하여 재창업률과 취업률로 별도 관리함으로써 사업효과의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외 내역사업의 성과도 관리되어야 함

○ 성과지표(재기지원 수혜자의 성공률) 목표치를 산출한 근거(기업생멸통계의 소상공인 신생률 대비 200%)에 한계가 있는바, 대안적 접근(예: 전년 대비 당해연도 재기지원 성공률의 변화 크기 정도 등)을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소상공인지원인프라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소상공인지원인프라'는 ① 동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성과달성도 파악이 곤란, ② 부정수급, ③ 사업 구성의 정합성 부족 등을 종합하여, 지출 구조조정과 성과관리 강화를 권고하며, 내내역사업 '현안개선방안연구'는 폐지가 필요함 - 동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기반에 해당함으로 결과 중심의 성과(생존율, 매출액 등) 창출에 직접적인 기여 효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바, 전체가 아닌 내역사업별 추진에 따른 고유 효과에 기초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내역사업 '정책조사연구'는 해당 내내역사업(불공정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상생이음센터 운영)과 정합성이 낮음 - 부정수급 관리를 실효적인 수준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부정수급 3건 및 1.69억원, 점검 기한 미준수 4건) - 내역사업 '소상공인연합회지원'의 내내역사업 '현안개선방안연구'는 폐지하고, 그 외의 내내역사업들은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투입에 따른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개선을 권고함

□ 종합평가 의견

○ 동 세부사업(소상공인지원인프라)은 4개의 내역사업(소상공인주간활성화, 정책조사연구, 소상공인연합회지원, 정책자금 운영지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에 해당함에 따라,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 모두에 해당하며,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비교적 명확함

○ 내역사업 수준에서 일부 사업이 사업취지, 수혜대상, 지원내용 등의 측면에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되는 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면밀한 비교 검토를 거쳐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강화를 권고함

○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에 해당되고 상위 정책목표와 연관성이 높음

- 다만, 내역사업 '정책조사연구'는 해당 내내역사업(불공정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상생이음센터 운영)과 정합성이 낮고, 동 내역사업을 구성하는 내내역사업간 상호연계성 또한 부족하여 연계 추진의 가능성이 제한적임

○ 보조율 100%로, 기반과 관련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부담 없는 전액 보조로 추진하여도 무리가 없음

- 다만, 내역사업 '소상공인연합회지원'을 세부 내내역사업 수준에서 재정투입 효과성에 기초하여 전면 재구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을 권고함

○ 최근 3개년간 실집행률은 98.9-99.9%로 집행 적정성은 높은 수준임

- 반면, 부정수급 관리는 강화할 필요가 있음(부정수급 3건, 점검 기한 미준수 4건)

○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제도개선 조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제한적임

- 현재 진행 중이어서 평가가 곤란하거나 조치한 내용의 적정성에 한계가 있음

○ 동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기반에 해당함으로 결과 중심의 성과(생존율, 매출액 등) 창출에 직접적인 기여 효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바, 전체가 아닌 내역사업별 추진에 따른 고유 효과에 기초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생존율은 통상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성과지표로서, 동 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성과에 기초한 사업관리 측면에서 실효적인 성과지표로는 충분하지 않음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은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사업개선을 권고함 - 부정수급 관리를 실효적인 수준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부정수급 1건이 발생하였으나 과오수급 금액 환수 조치함) - 내역사업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는 현 성과지표(e-커머스 활용 소상공인 양성 수)를 결과(매출액 변화 등)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업 취지와의 부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26년 사업 성과지표를 사업 참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매출 향상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에 초점을 둔 성과지표로 개편하고 있는바, '26년 사업부터 적용하여 사업 성과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종합평가 의견

○ 동 세부사업(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은 2개의 내역사업(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을 구성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양극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이 존재함

- 공약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있고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존재함(다만, 사업 추진 관련한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는 않음)

○ 상위 정책목표와 연관성이 있으며, 보조율은 직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혜자 책무성 강화 노력이 있었음

○ 본 사업은 목적(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과 지원 내용(온라인 역량강화, 채널진출 판매, 온라인진출 기반 제공, 스마트기술 보급) 측면에서, 수혜집단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내용만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음

○ 보조율은 내역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혜자 책무성 강화 노력이 있었음

○ 동 사업은 관련 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 추진하고 있는바, 전국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 기관의 전문성과 집행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달체계라는 점에서 적정함

○ 최근 3개년간 실집행률은 92.2-99.8%임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다만 현재의 수준보다 실효적인 수준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556건(55.86억원) 발생하였으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관련은 1건(1.2백만원)이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오수급 금액 환수 통보 및 환수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555건(55.85억원)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과 관련된 건으로 '25년부터 타 세부사업(소공인특화지원)으로 이관함

○ 내역사업 '온라인판로지원사업'은 '26년 사업 성과지표를 사업참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매출향상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에 초점을 둔 성과지표로 개편하고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재정지원 필요성, 지원규모 적정성,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감액이 필요함 - 사업의 특성 고려했을 때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오히려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 - 실제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 숫자가 아니라 플랫폼 이용 건수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수혜자 추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의 경우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지만 만족도 조사 등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도입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관련 법령이 아래와 같이 다소 포괄적이지만 이를 근거로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일정부분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제15조의6(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원칙), 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구성요소가 동 사업의 목적·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혜자 추정에 대한 정확성은 높지 않음

- 사업목표(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경영 개선을 위해 데이터 기반 상권정보 및 정책분석 지원) - 추진전략(소상공인 지원·상권 정보의 수집·융합·분석·제공을 통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지원) - 사업내용(365일 24시간 무중단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 데이터 및 서비스 개방을 통해 민관 서비스 활용 확대 지원, 분석 모델 정교화를 통한 이용자 정보접근성 및 활용 편의성 확대) 간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 숫자가 아니라 플랫폼 이용 건수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수혜자 추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집행 효율성) 본 사업은 최근 2개년 동안 불용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집행률은 '23년 100.0%, '24년 100.0%, '25년 100.0%로 양호함. 또한, '24년과 '25년에 발생한 불용액에 대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금액이 매우 작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집행 효율성) 사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부정수급 등 관리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고 감사원 및 언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성과지표의 경우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 건 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특성상 적절한 성과지표라고 판단되고 목표치도 초과하여 달성하였지만 만족도 조사 등 추가지표 개발·도입이 필요함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오히려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여 민간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 및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중소벤처기업부
사 업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부사업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은 재정투입 효과성 강화 측면에서 일부 내역사업 간 보완적 통합 설계가 필요함 · 보완적 연계가 가능한 내역사업 간 통합 설계를 통해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투입 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함 · 동 사업의 수혜 대상에 시장과 상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어, 전체 수혜 대상을 포괄하지 못함 - 집행 및 부정수급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다만 현재의 수준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점검기한 미준수 5건)

□ 종합평가 의견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을 대상으로 한 동 사업은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함

- 수혜대상 집단이 처한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시, 사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지원이 필요함

- 소상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나, 개별 지원이 아닌 전통시장 및 상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일부 지자체의 별도 사업 외에는 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음

○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에 해당되고 상위 정책목표와 연관성이 높으며, 내역사업별 구성 또한 세부사업과의 연계를 갖추고 있음

○ 다만, 보완적 연계가 가능한 내역사업 간 통합 설계를 통해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투입 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함

○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직접 수혜자의 수가 광범위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제외하고는 내역사업에 따라 보조율을 50%-80%로 정하고 있어 자부담 수준은 적정함

○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 집행 적정성에 큰 무리가 발견되지 않음

- 2025년 기준으로 내역사업별 집행률은 83.3-99.3%이고, 내역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적으로 점진적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집행 및 부정수급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다만 현재의 수준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점검기한 미준수 5건 확인됨)

○ 외부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제도개선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임

- 2025년 국회 지적사항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보조사업 평가 지적사항(다수의 내역,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지만, 하나의 성과지표로 관리 중이므로, 개별 사업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마련 필요)의 조치는 진행 중임

○ 성과 달성도가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 파악이 곤란함

- 동 사업의 수혜 대상에 시장과 상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어, 전체 수혜 대상을 포괄하지 못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제도 활성화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위생용품 안전관리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희귀 · 필수의약품센터 지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HACCP제도 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자본,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지표인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HACCP 인증률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HACCP 적용 사업장과 비적용 사업장 간 식품사고 발생률 격차, HACCP 적용 제품의 회수·리콜 발생률 감소 정도 등 인증사업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해당 사업은 세심하고 견고한 식품 안전망 구축과 먹거리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함

- HACCP 등 사전예방 관리의 내실화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인증업체 사후관리, 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스마트 HACCP 확대와 식품 방어·사기·알레르기 등 국제 식품안전 규격 반영을 통한 위해요인 관리체계 강화 등을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집행효율성 측면에서 잘 추진한 것으로 보임

○ 집행률이 과거 3년 99%를 넘어 매우 양호하며, HACCP 적용 법령 및 고시와 운영체계를 볼 때 사업추진과 전달체계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HACCP 인증 활성화를 위해 재정·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생산·공급 기반과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혜택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사업으로 판단됨

○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지표인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HACCP 인증률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HACCP 적용 사업장과 비적용 사업장 간 식품사고 발생률 격차, HACCP 적용 제품의 회수·리콜 발생률 감소 정도 등 인증사업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업인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부여한 보조사업으로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와 산업체가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제4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등에 의거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업임 · 식품 관련 문제점 발생 시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워 국고재정을 투입하여 규제 인프라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인정됨 · 추가적인 예산요구 없이 매년 증가하는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 '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적에 따라 '27년부터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제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의 성격상 적절한 조치로 보임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국정과제나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업인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부여한 보조사업으로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와 산업체가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제4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등에 의거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업임

○ 「식품위생법」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제68조(정보원의 사업),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지도·감독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68조(정보원의 사업) 제2항과 제85조(국고보조) 제5호에서 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기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던 기존의 지원 방식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전환하여 2027년부터 실시하게 됨

○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에 부합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먹거리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사업목표 아래 추진전략 및 사업내용이 적절히 구성되었음

- 본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지표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매년 설정하여 달성도를 제시함으로써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짐

○ 최근 3년간 평균 예상집행률은 100%이고 2차 집행실적도 100%로 재정건전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의 122(사업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액(100%)보조에 해당하여 보조율 변동 없음

- 지난 3년간 부정수급 관련 지적또는 적발사항이 없었고 '24년 부정징후 모니터링에 의거하여 자체조사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명됨

○ 사업의 성과지표가 기존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 수에서 '24년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업소 기술지원 개소수로 수정되었으며 달성도는 100%를 상회하였고 이는 지표의 질적 측면에서 기존 대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위생용품 안전관리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난 3년간 집행률이 부진하며 특히 '25년에 81.6%로 저조하여 감액이 필요함 -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산출 중심의 성과지표인 위생용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부적합률과 위생용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적합률로는 부족함 - 위생용품 관련 건강 위해 사례 발생률(인구 10만 명당)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새로운 성과지표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해당 사업은 위생용품의 안전성 제고와 안전한 공급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 증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내 제조 및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성 검증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국내 제조·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위생용품 관련 교육·홍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 등을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잘 추진한 것으로 보임

○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본 사업은 국내 제조·유통 및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점검·검사, 안전관리지침 마련, 협의체 운영,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교육·홍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한 위생용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또한 「위생용품 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전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위생용품 제조·수입 규모,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3년간 집행률이 부진하여 감액이 필요함

- ’23년 집행률 85%로 출장여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 불용이 발생함
- ‘24년 집행률 85%로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수행 잔액 불용이 발생함
- ‘25년 집행률 81.6%로 위생용품 전국 합동점검 등 기타 경비 잔액 불용이 발생함
-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산출 중심의 성과지표인 위생용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부적합률과 위생용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적합률로는 부족함
- 위생용품 관련 건강 위해 사례 발생률(인구 10만 명당)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새로운 성과지표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23년 이후에 광역시와 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서울 20%, 세종 30%, 광역시 40%, 자치도 및 그 외 지역 50%로 조정하여 예산감액을 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해당 사업은 식의약품 안전사고 대응과 신속한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실험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시험장비 취득 및 사후관리, 실험실 작업환경 개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첨단장비 도입 및 정기 유지보수를 통한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 안전한 실험실 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자 건강 보호와 재해예방,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첨단장비 자본보조를 통한 검사역량 강화 등을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집행효율성 측면에서 잘 추진한 것으로 보임

○ 과거 3년 집행률은 99% 이상으로 매우 양호하며, 효율성 관점에서 본 사업은 수요조사, 예산 확정, 심의·감사, 계약·집행의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시험장비 취득·임차·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있음

○ 보조율 산정 기준 및 적정성

- 23년 이후에 광역시와 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서울 20%, 세종 30%, 광역시 40%, 자치도 및 그 외 지역 50%로 조정하면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평가요약표

부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서울 30%, 세종과 광역시 40%, 자치도와 그 외 지역은 50%로 보조율을 조정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산출 중심의 성과지표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 및 판매업소 준수율은 사업효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부족함 - 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 내 업소의 위생 평균 점수에 대한 연도별 개선율을 새로운 성과지표로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해당 사업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통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관리하고 학교 내 식생활·영양 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식생활 안전 교육·홍보 등을 재정사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잘 추진한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 97.8%로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고, 지자체의 업무성과·관리업체 수·전담관리원 수·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확정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호에 따라 50% 정률보조를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택시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70%를 지원함

- 향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서울 30%, 세종과 광역시 40%, 자치도와 그 외 지역은 50%로 보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성과지표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준수율은 사업효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부족함

- 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 내 업소의 위생 평균 점수에 대한 연도별 개선율을 새로운 성과지표로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서울시 20%, 세종과 광역시 30%, 자치도와 그 외 지역 40%로 보조율을 조정하는 사업개선이 필요함 ·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지표인 식중독균 특성정보 건수와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 건수는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없음 - 중독 원인식품 규명 관리율 등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해당 사업은 식중독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핵심 전략으로 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교육·홍보 확대, 과학적 원인 규명 기반 구축,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등 주요 과제 등을 재정사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잘 추진한 것으로 보임

○ 집행률이 과거 3년 98%이상으로 양호함

○ 대규모 또는 전국 단위 식중독 발생 시 권역별 신속한 초기 대응과 관계기관 간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식중독 대응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비율:「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21조(국고보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조율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시 40%를 적용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30%를 적용하고 있음

-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서울시 20%, 세종과 광역시 30%, 자치도와 그 외 지역 40%로 보조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지표인 식중독균 특성정보 건수와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 건수는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없음

- 중독 원인식품 규명 관리율 등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세부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영양사 상시고용이 어려운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된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지원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의 보조사업이며 국정과제 44. 및 상위계획인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등 다수의 상위계획에도 부합함 ·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함 · 식생활 영양 및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정책연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조사업을 통한 형태가 적절한지에 대해 여전히 설득력이 부족하며 추가 소명을 통하여 추후 민간위탁 전환을 고려하기로 함 · 부처의 추가소명 결과, 매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급식관리지원센터 부정징후 의심사업에 대해 현장·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매년 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평가하고 있으나 확인된 바 없음을 소명함 · '22년 실적 49.7에서 '24년 65.2가 달성되었음에도 '24년 성과보다 13%가 낮은 목표 57을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며 매년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지원율보다는 전년 대비 "지원 급식소 수" 증가가 반영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기 바람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영양사 상시고용이 어려운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된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지원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의 보조사업임

- 전국적으로 14,000개소가 넘는 소규모 급식소가 있으며 전체 어린이집의 93%,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72%가 영양사 없는 소규모 시설인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중앙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됨

○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3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6조에 따라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식생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생활안전관리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3 제4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국고보조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식생활 영양 및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정책연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조사업을 통한 형태가 적절한지에 대해 여전히 설득력이 부족하며 추가 소명을 통하여 추후 민간위탁 전환을 고려하기로 함

○ 본 사업의 직접수혜자는 전국 시군구에서 설립한 급식관리지원센터 238개소 및 직원 2,500명, 그리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120만명을 지정하였으며 간접수혜자로 전국민을 상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3년 평균 100%, 그리고 2차 집행률 평균은 98.2%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본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부정징후가 포착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부정수급의 경우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보고됨

- 부처의 추가소명 결과, 매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급식관리지원센터 부정징후 의심사업에 대해 현장·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매년 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평가하고 있으나 확인된 바 없음을 소명함

○ ’22년 실적 49.7에서 ’24년 65.2가 달성되었음에도 ’24년 성과보다 13%가 낮은 목표 57을 제시한 것은 부적절함

- 매년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지원율보다는 전년 대비 “지원 급식소 수” 증가가 반영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기 바람

평가요약표

부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센터의 사업인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희귀·필수의약품의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등 수행은 국가정책상 근거 및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하며 내역사업 내 대부분의 추진 과제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희귀·필수의약품의 도입·공급 조정, 수급 모니터링, 배분, 정보 제공, 안전관리, 긴급 공급체계 운영 등이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책무를 대신 수행하는 성격이 있으나 희귀·필수의약품 구입비 및 주문생산사업 등의 경우 회전운용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간위탁으로의 전환보다는 현재와 같은 민간보조의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본 내역사업의 추진과제는 총 14가지로 다소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통합하거나 예산을 효율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실제 수혜자 수, 또는 의약품 수 등을 기준으로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측정하는 추가적인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국내 희귀질환자를 포함한 전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희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가재난상황(생물테러, 전염병 등)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총괄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임

○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 9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정과제(83.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핵심 추진과제(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으로 넓혀가는 환자 치료기회) 등과 연계되는 지원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하며 국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희귀·필수의약품의 도입·공급 조정, 수급 모니터링, 배분, 정보 제공, 안전관리, 긴급 공급체계 운영 등이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책무를 대신 수행하는 성격이 있으나 희귀·필수의약품 구입비 및 주문생산사업 등의 경우 회전운용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간위탁으로의 전환보다는 현재와 같은 민간보조의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본 내역사업의 추진과제는 총 14가지로 다소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통합하거나 예산을 효율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추진 과제 중 의약품 안전공급 체계 고도화 방안에 해당하는 1-4. 긴급도입의약품 안정공급 추진 체계 고도화, 1-5. 국내 미유통 희귀·필수의약품 전문공급체계 고도화, 1-6. 정부부처 등 요청 의약품 공급망 체계 개선과제의 경우 과제의 세부 실행 내용 및 목표가 불분명하였으나 부처의 추가자료 제출을 통하여 의문이 해소됨

○ 희귀·필수의약품센터지원사업의 집행률은 지난 3년 평균 95.1% 수준이며 타 사업에 비해 다소 낮은 집행률을 보임

○ 약사법 91조 및 92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지정된 보조사업이며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외부적발사례 등에서도 지적사항 없었음

○ 의약품구입비 예산의 회전비율을 12개월 기준 최대 6으로 목표치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24년 및 '25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두 해 모두 100%이상의 성과를 달성함

- 실제 수혜자 수, 또는 의약품 수 등을 기준으로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측정하는 추가적인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평가요약표

부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약사법 제 90조 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둔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설립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국정과제 및 다양한 상위계획에 부합하며 팬데믹 등 비상사태 대비 그 수혜대상은 전국민으로 볼 수 있고 민간의 역량이 mRNA 백신개발 등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백신 관련 분야는 국가 사무에 해당하기보다는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민간의 역량을 고도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대로 보조사업의 형태로 진행 가능함 · '25년 581백만원의 미집행이 발생하는 등 매년 상당액의 불용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추가적인 소명과정을 통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제시되었으나 인력채용의 어려움 및 장비도입 일정 상 발생한 불용액 등에 대해서는 대비가 가능했다고 판단되는 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백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기술지원, 규제전문기관으로서 컨설팅 지원, 규제과학 전문인력 교육 등 제품화 전주기를 지원함을 강조하지만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타 교육사업 및 민간의 교육사업 등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어 이들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약사법 제90조 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둔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설립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국정과제 32-4)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등에 부합하며 팬데믹 등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백신개발을 지원하는 4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있음(인건비 및 운영비 제외)

- 팬데믹 등 비상사태 대비 그 수혜대상은 전국민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의 역량이 mRNA 백신개발 등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국정과제 32-4)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등에 부합함

○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바이오의약품과 관련된 타 교육사업 및 다양한 민간의 교육사업 등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어 이들과의 중복이슈가 여전히 존재하며,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 별도의 사업운용이 필요한지 의문시됨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초기의 고충을 인정하더라도 상당액의 불용금액이 발생하였고 일부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예산 등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23년 이후 매년 억단위 이상의 불용액이 인력양성교육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인프라구축 지연 등의 형태로 소명하였으나 여전히 개선 가능성은 불분명함

- '25년에 국가 셀뱅크 운영 사업에 있어서 2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명되었으나 여전히 관리감독의 책임이 인정됨

- 지역적 한계로 인한 인력채용의 어려움 및 장비도입 일정 상 발생한 불용액 등에 대해서 소명하였지만 예상 또는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했다고 판단되는 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5년 미집행액의 총액이 581백만원에 달하는데 일부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액수일 수 있지만 그 외 사업규모 축소로 인하여 발생한 미집행액의 발생 이유에 따른 개선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업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서울은 20%, 세종과 광역시는 30% 그리고 자치도와 그 외 지역은 40%로 보조율을 조정하는 사업개선이 필요함 ·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지표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개선율(%)로는 실질적 사업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 개발하여 2027년도에 도입하고자 준비 중인 급식관리센터에서 조사하는 급식소 위생관리 점수를 잘 정착시키길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해당 사업은 국정과제 44인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달성을 목표로 함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하며, 급식소 위생·영양 현장 순회방문 지도, 이용자와 종사자 대상 맞춤형 식생활 교육, 식단·조리법 및 식품안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환경의 조성 등을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집행효율성 측면에서 잘 추진한 것으로 보임

○ 집행률은 과거 3년 100%로 매우 우수함

○ 현행 법령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설치·운영 중인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급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 구조에 따라 식약처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우선 교부하되, 지자체가 이를 하위 보조사업자인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전액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집행 절차의 복잡성과 별도의 행정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 122. 그 밖에 국가와 지자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센터별 총 사업비를 지원함

- 현재 매년 예산 편성 시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역별 보조율을 차등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을 20%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울 외 지역은 식약처 내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된 타 지자체 보조사업과 동일하게 국고보조율을 40%로 산정함

- 평택시의 경우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를 가산하여 국고보조율 60%로 설정함

-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서울은 20%, 세종과 광역시는 30% 그리고 자치도와 그 외 지역은 40%로 보조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지표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개선율(%)로는 실질적 사업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 개발하여 2027년도에 도입하고자 준비 중인 급식관리센터에서 조사하는 급식소 위생관리 점수를 잘 정착시키길 필요가 있음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창출지원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평가요약표

부 처	지식재산처
사 업	지식재산창출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보조사업]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 2(소상공인IP창출지원): 타기관 사업과 다소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이 사업의 핵심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이 필요함 - 성과 지표가 사업의 질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며 측정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함			

□ 종합평가 의견

○ 소상공인 및 중소상인의 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 활용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혁신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정책 목적은 정부의 민생·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부합하여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특히 기술 중심의 지식재산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소상공인·중소상인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점은 정책 포용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특성상, 민간 자율적 투자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소상공인의 경우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의 공적 지원 필요성이 큼

○ 내역사업 2(소상공인IP창출지원)의 경우 사업의 중요성은 높으나 타 부처의 사업과 유사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타부처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동 사업과 유사한 디자인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사업화라는 분명한 사업목표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정교한 사업 운영이 요구됨

- 중소 영세상공인을 위한 IP 창출지원사업이 고유의 사업으로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설계 필요하며 타 부처의 유사사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내용이 브랜드나 디자인의 지식재산화를 명확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마케팅이나 홍보를 위한 비용 지원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

○ 현재 제시된 성과는 만족도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질적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움

- 제시하는 지표의 측정산식에 대해 객관적 근거나 논리에 대한 설명이 부재함

- 다만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차년도부터는 개선된 성과 지표를 활용할 것을 기대함

평가요약표

부 처	지식재산처
사 업	지식재산연구활성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 2(한국지식재산연구원운영지원)의 경우, 기획, 관리, 수행, 평가, 환류, 성과 확산의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함. 기본 연구는 연구원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므로 소속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실행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다 타당하고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관련 법령 및 국가 지식재산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법적·정책적 타당성이 확인됨

○ 특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운영은 지식재산 관련 연구 수행과 정책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공공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식재산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 연구기관의 존재 필요성은 정책적으로 인정됨

- 기관의 중요한 책무와 지식재산 연구 수행이라는 핵심 기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역사업 2(한국지식재산연구원운영지원)는 향후 출연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연구원이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2(한국지식재산연구원운영지원)의 경우, 기획, 관리, 수행, 평가, 환류, 성과 확산의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함

- 기본 연구 관리에 있어 전 과정을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우수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음. 개별 연구원들의 동기 부여 및 성과 관리를 위한 보다 엄정한 제도의 실질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자체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지식재산처
사 업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보조사업]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타부처, 부처 내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음 - 컨설팅 사업의 사업비 책정에 대한 검토 및 컨설팅 품질관리 관련 사업개선이 요구되므로 관련하여 감액을 제안함 -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표준화된 KIT점수보다 심사위원 점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선정의 공정성 관리에 위험 요인이 있음 - 성과지표 개선의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예비창업자와 신생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지식재산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본 사업의 법적 근거가 확인됨

○ 국민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권리화 지원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중기부 등 유관 부처의 창업·기업성장 지원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지식재산처 내에서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별도 세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 사업의 내용과 체계가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중복된 부분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내역사업 2 (IP 나래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평가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선정 과정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 1차 심사 이후 2차 심사에서 객관적 평가(KIT)보다 심사위원의 평가점수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음

○ 컨설팅 사업의 품질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또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100일 간의 컨설팅 사업비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컨설팅 사업비 관련하여 소폭 감액을 제안함

○ 보조사업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관리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이 확인됨. 보조사업자인 전국 센터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3단계 역할 분담 체계, 상시 신고채널, 차등 관리·평가 체계가 운영 중임. 종합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배정에 반영하는 차등 관리·평가 체계가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됨

○ 2024년 사업 지적 사항으로 전문인력 관리 및 검증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은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2025년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개선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문인력 서비스 품질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개선: IP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대표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추가 개발이 필요함. 현재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차후 보다 개선된 지표가 제시되어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평가요약표

부 처	지식재산처
사 업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 1(발명교육인프라구축)을 포함한 일부 사업은 시·도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이관하거나, 중앙정부 보조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가 필요. 사업비 감액을 제안함 - 내역사업 4(발명·창의력대회)는 40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환경이 급변하였으므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발명을 포함한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미래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목표 측면에서는 일정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지식재산 기반 사회로의 전환 및 미래 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기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은 인정됨

○ 내역사업 1(발명교육인프라구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지속적 중앙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내역사업 1을 포함한 일부 사업은 시·도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이관하거나, 중앙정부 보조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비 감액을 제안함

○ 교육부, 지방교육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추진 중인 교육·인재 양성 사업과 협력을 통해 창의 및 지식재산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내역사업 간 구분이 다소 모호하며, 일부 내역사업은 목적과 대상 측면에서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내역 사업 간 조정을 제안함

○ 내역사업 4 (발명·창의력대회)는 발명 창의와 관련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사업으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 변화를 고려한 대폭적 사업개선 노력이 요구됨

○ 사업성과 지표가 사업의 질적 성과를 보여주기 힘든 단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내역사업 1(발명교육인프라구축), 4 (발명·창의력대회)는 1988년부터, 내역사업 2(발명인재육성), 3(발명교육강화)은 2008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오랜 기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축적된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이러한 사업에 대한 누적 성과를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적극적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평가요약표

부 처	지식재산처
사 업	지식재산활용(사업화,거래,평가)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보조사업]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사업 1(지식재산사업화지원)의 국외업무여비 미집행 등 사업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미집행 관련 개선 노력 필요하며 관련 국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함 - 추가적인 세부 지표 마련 등 성과지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지식재산권의 활용 고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및 관련 법·제도와 부합하여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지식재산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내역사업 1(지식재산사업화지원)은 타기관 사업과 중복되어 대학의 IP 사업화지원에 있어 중복수혜의 문제나 사업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 필요

○ 내역사업 1(지식재산사업화지원)에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되는 등 보조사업 집행에서 불용 및 전용 사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수행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함

- 특히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 해외 시장 개척 등 보다 적극적인 국외 업무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에 정합하도록 도입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표 성과지표 외에도 각 내역사업의 성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조적·질적 지표를 추가로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타기관 사업과의 중복수혜 문제나 사업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지식재산처
사 업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통합 - (유사중복) 지재권 상담 및 분쟁 초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지식재산 센터 운영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수행하는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과 통합운영하여 효율화 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재검토) 현재 성과지표인 '현지 초동대응 지원건수'는 단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횟수를 세는 산출 지표에 불과하므로, 결과지표 도입을 검토해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사업의 필요성 및 정책 타당성

- 본 사업은 세부사업(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내 유일한 보조사업인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보조)'에 한정하여 평가함

-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현지 법률상담 및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것은 국정과제(28-4, 35-5)와 연계된 필수적인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지재권 상담 및 분쟁 초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지식재산 센터 운영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수행하는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과 통합운영하여 효율화 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인력 축소 및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한 점은 예산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중국·베트남 등 특정 국가에 수요가 편중된 거점의 재배치 등 구조적 개편 노력은 다소 부족함

- 직접 지원비 대비 보조사업자의 사업관리비 및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집행 및 관리 체계의 적정성

- 1차 교부 집행률은 100%에 육박하나,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2차 실집행률은 2023년 94.7%(175백만 원 미집행), 2024년 98.7%(70백만 원 미집행) 수준으로 잔액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실수요를 반영한 집행 효율화가 요구됨

- 보조사업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현지 로펌 등과 계약하는 구조에서, 해외 파트너 로펌 선정의 투명성과 법률 서비스 단가 적정성에 대한 본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임

- 해외 지출의 특성상 현지 영수증 부풀리기나 허위 자문 등 보조금 누수 위험이 상존하므로, 서류 중심의 정산과 점검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 교차검증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해야 함

○ 성과달성도 및 환류의 적정성

- 핵심 성과지표인 '현지 초동대응 지원건수'의 2025년 실적이 1,474건으로 목표(1,362건) 대비 108.2%를 초과 달성하는 등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음

- 실제 해당 초동 대응이 기업의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 건수 중심의 지표 대신, '지재권 분쟁 해결률'이나 '기업의 경제적 피해 예방 추산액' 등 사업의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할 결과(Outcome) 중심 지표로 개편해야 함

- 수행기관 변경(KOTRA → 보호원) 및 거점형 운영방식 도입 등 외형적 체계 개편은 이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분쟁 대응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현지 초동대응'과 심판·소송 등의 '심층 분쟁 대응' 간의 업무 범위와 연계 프로세스를 명확히 획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직접 지원비 대비 보조사업자의 사업 관리비 및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변별력이 낮은 단순 지원 건수 지표를 폐지하고, '지재권 분쟁 해결률' 및 '기업의 경제적 피해 예방액' 등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입해야 함

- 타 민간위탁 분쟁지원 사업들과의 이력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특정 기업의 보조금 중복 수혜를 원천 차단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지식재산처
사 업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사업은 발명진흥회에 보조를 통해 주관대학을 선정하여 주관대학에서의 학위과정/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9개 대학에서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함 - 지식재산법이 정의하는 IP전문인력의 범위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내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지식재산 기반 경제로의 전환,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은 단기간에 시장 수요만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본 사업에서 양성 목적으로 하는 [IP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교육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정의와 양성 목표가 다소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실무형·연구형·정책형 인력 간 차별화된 양성 전략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IP 전문인력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개념과 일치하도록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적극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혁신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이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가 정책 및 산업 변화 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특히 AI 융합 교육, 바이오헬스 융합 교과, 지역 특화 기업 연계 등은 우수 사례로 판단됨

○ 취업 성과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해당 성과가 본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인지에 대한 근거 제시는 보완될 필요가 있음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국내교류협력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인권위원회
사 업	국내교류협력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내교류협력(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에 따른 인권단체 협력·지원 업무에 해당하며, 공모를 통해 기후위기·노동·혐오차별·지역인권·군인권 등 다양한 인권 현안을 대상으로 민간의 현장 접근성을 활용한다는 정책 목적의 타당성도 확보하고 있음 · 다만 본 사업은 집행·성과의 평균 수준은 높으나, 사업별 편차가 구조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3년 집행률은 97%대이지만 '25에 95.87%로 하락하고 반납 규모가 증가하는 흐름이 제시되어 있고, 정산자료에서 일부 단체는 집행률이 80%대까지 나타나는 등 기관별로 집행역량 편차 또한 존재함이 확인됨 · 이에 따라, 사업 수(지원 단체 수)를 축소하여 관리역량을 심층화하고, 정책 파급력이 우수하고 사업 성과가 담보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은 법적 근거가 강화된 상태에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19조의2) 공모(자율·지정 주제) 방식으로 민간의 현장 접근성을 활용해 인권 의식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구조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공모→선정→사전교육→분할교부(70/30)→중간점검·현장방문→정산→평가위원회→환류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사업 운영의 절차적 적정성도 확보되어 있음

○ 다만, 공모 공고 및 선정 기준에서 타기관 동일·유사 중복지원, 단체 운영비·홍보성·내부행사·연구용역성 실태조사 등은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유사·중복성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인권 단체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구조적으로 유사·중복 가능성이 상존하는 분야임

○ 사업내용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25 평가위원회 총평에서 사업기간 6개월의 촉박함, 서울 편중, 소규모 단체의 보고·정산 역량 지원 필요 등의 구조적 취약점도 확인됨

- '25 평가위원회 결과에서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90% 미만에 대한 감점이 실제 적용되었고(2개 단체), 이는 일부 단체에서 집행역량·일정관리·집행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객관 증거에 해당하여, 경쟁이 존재함에도, 실제 집행에서 90% 미만 감점 사업이 발생했다는 점은 선정의 엄격성만으로 집행역량 편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을 시사함

○ 사업 구조상 지원단체 수는 최근 3년간 빠르게 감소(16→13→11)하는 반면 평균 지원액은 일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체 보조금 예산 감소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집행 및 성과 측면에서 단체별 편차가 구조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3년 집행률이 97%대이나 '25년 95.87%로 하락하고 반납 규모가 증가하는 흐름이 있으며, 정산자료에서 일부 단체는 집행률이 80%대인 사례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에 이후에도 성과관리와 환류가 약화되지 않도록 다음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 지원단체 수를 축소하여 관리역량을 심층화하고, 정책 파급력이 우수하고 성과가 담보된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사업기간 촉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고·선정·교부 일정을 앞당기고, 분할교부(70/30)가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운영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서울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수행하고, 소규모 단체의 보고·정산 역량을 지원하는 표준 양식·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진흥
EBS프로그램제작지원
KBS대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AM라디오송출지원
미디어다양성증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언론중재위원회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 기반구축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정보화)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방송평가기반조성
방송광고공공인프라구축지원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방송정보활용기반체계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OTT산업경쟁력강화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재난방송 운영지원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정보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정보화)
KBS대외방송송출지원
EBS방송인프라개선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방송콘텐츠 진흥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과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의 목표와 효과성은 인정되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크리에이터 산업 내 시장 성숙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영세 창작자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양적 위주의 성과지표 관리를 지양하고, 사업 본연의 목표 달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중심의 지표로 전환하여 성과 관리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육성 사업

- 본 사업은 글로벌 방송·OTT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생태계 보호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하고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을 조성, 지역 방송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현 정부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의지와 긴밀히 맞물려 있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과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의 목표와 효과성은 인정되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크리에이터 산업 내 시장 성숙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영세 창작자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간 정합성을 고려한 성과지표의 전략적 재설계 필요

- '25년 성과지표의 경우 지표 안정성이 낮아 지표개선 권고에 따라 '26년부터 성과지표를 개선(방송·OTT콘텐츠 제작 시 AI·디지털 기술 투입비율(%))함

- 다만,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제작기간 단축율' 또는 '제작비용 절감율' 등의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질적 성과 중심의 지표 재설계 및 운영 내실화 기반의 결론 도출

- 사업의 성공적인 지속을 위해 정교한 사업 기획과 관리 주체의 구분·명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 특히, 성과지표를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숙'으로 전면 전환하여 기술 경쟁력과 시장 파급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지표로 고도화하고, 이를 환류할 것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EBS프로그램제작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차년도 프로그램 제작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성, 다양성, 창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교육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및 다양성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교육 공영방송 EBS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EBS 제공 프로그램의 공익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

- 국정과제 7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중인 사업이고, 민간·지자체에서 수행하거나 예산 외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기 어려움

○ 사업내용이 정책목표와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었고 광범위한 직접 수혜자를 감안할 때 지원규모가 적정함

- 사업내용이 유아·어린이, 청소년, 평생교육, 2TV 창의융합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으로 구체적이고 정책목표에 부합하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EBS 제작 프로그램들은 지상파TV, YouTube,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일반 국민 다수가 시청하고 있으므로 직접 수혜자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

○ 차년도 프로그램 제작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성, 다양성, 창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교육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 및 다양성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제작 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공성, 다양성, 창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실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부정수급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짐

○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도를 정량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TV 시청자 대상 설문조사를 단순 만족도가 아닌 프로그램의 공익성 및 다양성 기여도에 대한 평가 문항으로 변경 설계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새롭게 개발해 정책목표 달성도 정량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교육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및 다양성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KBS대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사업은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보여짐 - 방송법 제54조(업무) 및 제61조(보조금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5호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재정지원 및 보조금 규모가 수혜자 대비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보조사업 평가결과 '미흡'에 따른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상향 제시하였으며, 수혜자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업내용과 추진체계, 성과달성도 등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종합평가 의견

○ 본사업은 방송법 제54조에 따른 사회교육 방송과 대외방송 실시에 목적을 두며, KBS가 실시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은 국책방송으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필요가 있음

-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사회교육방송(한민족방송)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전문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북한 관련 정보의 확대 제공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등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가짜뉴스·왜곡정보·편향된 외신 보도가 급증하면서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방송(국제방송)은 공공외교 채널로서의 공적책무 강화를 통해 국제방송으로서의 글로벌 위상을 정립하는 등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본 사업은 한국방송공사의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의 운영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방송법 제54조(업무) 및 동법 제61조(보조금등)에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2025년도부터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청자 및 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의 목표치를 기존 대비 상향 조정하여(83점→87점) 설정하였으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프로그램 제작 실적(편수)은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직접 성과지표로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여짐

○ 보조사업 평가결과 '미흡'에 따른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상향 제시하였으며, 수혜자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업내용과 추진체계, 성과달성도 등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재정지원 및 보조금 규모가 수혜자 대비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현행 구조는 사업비가 제작지원(약 80% 이상)에 과도하게 편동되어 있어, 콘텐츠 유통을 통한 수익 개선 및 자생적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함 - 성과지표 또한 만족도나 제작편수 등 투입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역성 강화나 실제 유통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특히 실제 유통 실적이 사업 규모 대비 제한적이며, IP 확장 등 핵심 성과 관리가 부재함 - 아울러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기능은 문체부(콘진원), 지자체 등 타 부처 유사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높으며, 유통 활성화 패키지의 경우 역할 구분이 불명확함 - 또한, 성과지표 개선 없는 단순 증액은 관성적 보조에 그칠 우려가 크고, 공익성만 평가해서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목표 달성에도 부족하고 콘텐츠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으며, 일부 교류 행사는 실질적 성과가 낮은 행사성 경비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이므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콘탠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구조개선을 전제로 감액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구조개편 방안, 성과연동 체계, 예산 증액의 정량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제작 지원을 축소하고, 유통 중심 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 감액 판정을 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지역·중소방송의 공공성·다양성 구현과 지역 시청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제작, 콘텐츠 유통, 인력양성을 종합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성 자체는 인정됨. 지역방송이 지역 정보 전달과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매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 필요성 존재함

○ 다만 현행 사업 구조는 '제작 - 유통 - 인력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제작지원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유통성과 창출 및 수익구조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미흡한 상태임

○ 특히 제작지원 비중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유통 및 수익 창출 기능은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콘텐츠를 통한 자생적 경쟁력 확보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만족도, 제작편수 등 투입·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성 강화, 공공성 제고, 유통 수익 창출, 재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임

○ 실제로 일부 OTT 유통 및 해외 판매 사례가 존재하나, 판매금액은 개별 건 기준 수백만 원 수준이 다수이며 전체 유통 실적도 사업 규모 대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따라 콘텐츠 판매수익, 제작비 재투자, IP 확장 등 핵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존재함

○ 아울러 콘텐츠 제작지원, 유통 지원, 인력양성 등 사업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이미 유사하게 수행되고 있는 영역으로 기능적 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유통 활성화 사업은 번역, 자막, 해외마켓 참가 등 전형적인 콘텐츠 수출지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어 타 사업과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한 구조임

○ 사업계획 측면에서도 2026년 제작지원 증액은 공약 이행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성과지표 개선 및 구조개편 없이 단순 증액이 이루어질 경우 관성적 보조 확대에 그칠 우려가 큼. 또한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 등 일부 사업은 공동제작 및 실질적 성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행사성 경비로 운영되는 한계 존재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구조로는 지역방송의 자생력 확보 및 수익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 창출이 제한적이며, 제작지원 편중 구조, 성과지표 미흡,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등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제작지원비를 중심으로 감액 판정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AM라디오송출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민간 방송사업자 지원에 한정된 현행 구조의 정책적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재난방송지원사업과의 연계, 공영방송 주파수 활용 등 대안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액 요구는 객관적 산정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전년도 대비 감액이 타당함 -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달체계 단순화를 통해 위탁수수료 등 행정비용 절감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순 만족도 중심이 아닌 재난안전 기여도 등 정책 효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전환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공익적·공공적 유지 필요성이 있는 AM 라디오 방송의 송출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전쟁·재난 상황에서의 정보 접근성과 방송 소외지역 주민의 청취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 다만 실제 지원 대상이 특정 2개 지역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부족한 상황임

- 특히 재난문자, 모바일 경보 등 타 매체와 비교한 AM 라디오의 재난 대응 효용성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수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은 민간 상업방송사의 송출비용을 정액 보조하는 구조로, 공익적 목적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민간 사업자의 운영비 보전 성격이 강함

- 2024년 신규 도입 이후 2026년 100%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 비용 보조 사업이 관성적으로 확대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으며, 일몰제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재검토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유사 목적의 재난방송지원사업이 이미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재난 대응 체계 차원에서 통·폐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사업 예산은 AM 송신소 운영비와 중간 수행기관 위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혜 대상이 2개 사업자로 고정되어 있음에도 중간 협회를 통한 지급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행정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달체계의 단순화를 통해 위탁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증액 요구에 대한 객관적 산정 근거도 충분하지 않아 전년도 대비 감액이 타당함

○ 성과지표가 단순 만족도로 설정되어 있어 재난 대응체계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재난방송 가용성, 소외지역 커버리지 확대 등 정책효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전환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은 재난대응체계 내 실질적 역할 및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재난방송지원사업과의 연계, 공영방송 주파수 활용 등 대안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미디어 다양성 증진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법적 의무 대상과 비의무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의무 중심으로 사업 범위를 재정립하고, 통합시청점유율 산정의 법적·정책적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계적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 수를 명확히 산정한 후 이에 기반하여 예산을 재조정해야 함 - 성과지표는 법적 의무 대상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방송법에 따른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객관적으로 조사·산정하여 방송시장의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 기반의 정책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미디어 환경 변화로 TV 중심 조사체계의 정책적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데이터 조사까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계획 측면에서 통계 데이터 확보 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미디어다양성 어워즈' 등 행사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2026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함

-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비실시간 TV 시청기록 조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음

- 표본 수를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은 통계적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최소 표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는 없으며, 보조금 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기초조사와 본조사 통합 이후에도 실질적인 예산 절감 또는 효율성 제고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성과지표가 통합시청점유율 중심으로 설계되어 법적 의무 대상인 TV 시청점유율 규제와의 직접적 연계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 법적 근거가 명확한 실시간 TV 시청점유율 산정의 정확성 및 규제 활용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재설계가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은 법적 의무 대상과 비의무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 범위를 재정립하고, 통계적 기준에 기반한 예산 조정을 통해 구조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반영한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과 함께 방송·통신 통합 경쟁상황평가 체계로의 사업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장평가 의견 반영과 내역사업 통합을 통해 집행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입법 반영 실적 등 정책 효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효과성 중심의 성과지표로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방송법에 근거하여 방송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와 목적은 명확함

- 다만 방송통신 융합이 심화되는 환경을 고려할 때 방송시장만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구조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2012년부터 지속된 계속사업으로 매년 유사한 조사·분석 체계와 보고서 구성이 반복되고 있어 관성적 운영의 가능성이 있음

- 단순 연례보고서 발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시장 이슈 대응 및 법·제도 개선과 연계된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사업개선이 필요함

- 수행기관이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도 병행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 융합시장에 대한 통합적 경쟁상황평가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은 형식적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분석체계나 예산 구조의 실질적 개편 효과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통합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보조금 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중복 계상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사업 개선 및 성과지표 개편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추가 등 형식적 조정에 그쳐 실질적 환류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지표가 추진실적 및 만족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 목적과 직접 연계된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회 보고 이후 입법·정책 반영 실적 등 정책 활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효과성 중심 지표로 개선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은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반영한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과 함께 방송·통신 통합 경쟁상황평가 체계로의 사업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통합)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사업이며,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공공 개입은 불가피함. 그러나 현행 사업 구조는 동일 수행기관을 기반으로 유사 기능을 별도로 운영하는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일관성과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접근권 보장과 참여 확대를 분리된 정책영역으로 구분하는 부처의 논리는 정책 개념의 형식적 구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동일한 권리 확장 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영역으로 판단됨. 또한 방송사업자의 법적 의무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정이 지속적으로 해당 비용을 보조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정책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성과 측면에서도 현재 지표는 투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보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 · 독립적 사업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정책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함. 예산·성과관리·전달체계를 통합하고, 장애인 대상 접근권 보장과 전 국민 대상 참여 확대를 하나의 정책 프레임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방송법 제69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등에 근거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본권 보장 차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임. 특히 폐쇄자막, 수어, 화면해설 등 장애인 방송서비스는 정보 접근권과 직결되는 영역으로서 일정 수준의 공공재정 투입의 타당성은 존재함

○ 다만 현행 사업 구조는 동일 수행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중심으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사업」과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미디어 접근, 권익 보호,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정책 기능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정책 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성과관리의 분절, 행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부처는 본 사업이 '미디어 접근권 보장(Access)'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사업은 '미디어 참여 확대(Participation)'를 담당하는 서로 다른 정책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면 평가 결과 접근권 보장과 참여 확대는 상호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동일한 권리 확대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판단됨. 즉,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은 단순한 시청 환경 제공을 넘어 미디어 이해, 참여, 권익 증진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분절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낮음

○ 또한 본 사업은 방송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정이 해당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지원의 상시화 및 역할 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향후에는 공공의 역할을 직접 지원 중심에서 법적 의무 이행을 유도·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 측면에서도 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기술개발 등 다양한 내역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나, 일부 기술개발 사업은 연구개발과 서비스 지원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성과지표 또한 보급률, 편성분량 등 투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접근권 개선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특히 수신기 보급 확대가 실제 이용률 및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인과 분석이 미흡하여 재정투입 대비 효과성 검증이 부족한 상황임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과 같은 독립적 사업 구조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정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통합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성과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장애인 대상 접근권 보장과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참여·권익 증진 기

능을 하나의 정책 프레임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술개발 성격의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별도 체계로 재정비하고, 성과지표는 이용률, 접근성 개선, 정보 격차 해소 등 실질적 정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사업과의 통합을 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언론중재위원회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언론중재위원회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사업개선이 요구됨 - 정책목표는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임에도 예산의 약 77%가 인건비·경상비 등 조직 운영 관련 경비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목표-수단-예산 간 정합성 점검이 필요함 - '인건비' 내역사업은 결원율 및 항목별 집행 내역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바, 정원 100명 전원에 대한 12개월분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 보완이 필요함 - '경상비' 내역사업은 여비·일반수용비 등 실무 경비는 감액된 반면,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항목 간 산정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사업비' 내역사업은 국제협력·연구센터 운영 예산의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 보완이 필요함 ·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사업추진·전달체계, 환류 활동 측면에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중재위원 위촉 지연으로 인한 불용·반납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촉권이 전속된 구조적 한계가 있으나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 18개 중재부·10개 지역사무소 운영이 법제적 요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나, 디지털 행정 도입 등을 통한 운영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동일 거래처 분할결제 의심 사례는 실질적 부정집행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집행 단계에서의 사전·사후 점검 체계를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활용의 적정성' 및 '소관기관–지원기관 간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수년간 반복된 지적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대응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는 측면이 있음 · '언론분쟁 피해구제율' 성과지표는 최근 3년간 실적이 평균 70%를 상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목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도전성 제고가 필요하며, '25년 자율평가 권고를 수용하여 '26년 목표치를 3%p 상향한 것으로 확인되나 향후에도 성과관리의 도전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언론중재위원회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근거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공적 책임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사업비’ 내역사업 중 ‘조사 및 연구’ 및 ‘홍보 및 교육’의 경우, 준사법적 고유영역임이 확인되나 유관기관 사업과의 기능적 중첩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유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차별화·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은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정책목표는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임에도 예산의 약 77%가 인건비·경상비 등 조직 운영 관련 경비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목표-수단-예산 간 정합성 점검이 필요함

- ‘인건비’ 내역사업은 결원율 및 항목별 집행 내역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바, 정원 100명 전원에 대한 12개월분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 보완이 필요함

- ‘경상비’ 내역사업은 전년 대비 순감액·임차료 인상·시설장비유지비 증액의 외부 요인이 확인되나, 실무 경비를 감액하면서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항목 간 산정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함

- ‘사업비’ 내역사업은 국제협력·연구센터 운영 예산의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성 보완이 필요함

○ 또한, 보조사업은 집행 적정성, 사업추진·전달체계 효율성,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정성 및 환류 활동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어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중재위원 위촉 지연으로 인한 불용·반납 문제는 위촉권 전속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나, 위원회 운영 일정과 예산집행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 18개 중재부·10개 지역사무소 운영의 법제적 요건은 확인되나, 디지털 행정 도입 및 화상 조정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지속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동일 거래처 분할결제 의심 사례는 실질적 부정집행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집행 단계에서의 점검 체계를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활용의 적정성’ 및 ‘소관기관 - 지원기관 간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수년간 반복된 지적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대응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는 측면이 있음

○ ‘언론분쟁 피해구제율’ 성과지표는 최근 3년간 실적이 평균 70%를 상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목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도전성 제고가 필요하며, ’25년 자율평가 권고를 수용하여 ’26년 목표치를 3%p 상향한 것으로 확인되나 향후에도 성과관리의 도전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9조(예산) 등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방송통신 내용 심의 및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정량적 목표 설정이 어려운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평가방식이기 때문에 심의활동의 실제 효과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거의 매년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어 보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종합평가 의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9조(예산) 등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방송통신 내용 심의 및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은 정부의 국정 과제 및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방송통신 환경의 공공성 및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함

-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유해 정보 대응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사업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고 보임

○ 실집행율이 최근 3년간 96%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집행 적정성이 높으며 이월액이 거의 없고 불용액도 예산 대비 3-4% 수준으로 낮아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내용 및 사업 성격상 집행이 부진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관행적으로 반복 집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모니터링 체계 운영, 부정수급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정산·회계 관리, 실집행율 관리 등 전반적으로 재정·회계 운영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 추진 및 전달체계, 환류 및 제도 개선 노력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성과지표 체계는 정량적 목표 설정이 어려운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심의 활동의 실제 효과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여 새로운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본 사업은 거의 매년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어 보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 기반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절한 제재 처분을 통해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추진 및 전달체계는 절차적, 구조적으로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관리 주체와 집행 주체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관리 흐름이 체계화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도전적인 성과 목표값의 설정 등 사업개선이 필요함 - 최근의 성과 실적을 볼 때 목표 달성도가 100%를 상회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 기반구축 사업은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절한 제재처분을 통해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법규 위반 여부의 모니터링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분명함

- 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 기반구축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 8호,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제74조(협찬고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이 사업은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과 그에 기반한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 운영이란 2개 세부사업으로 적절히 구성됨

- 이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며 방송사업자의 과도한 방송광고, 협찬 고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통해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한다는 수혜 내용이 명확함

○ 사업추진체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연간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통보하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사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사업수행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통보가 이루어지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실적을 점검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법」을 근거로 2015년부터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축적된 인적(모니터링 수행 인력)·물적(모니터링 분석시스템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관련 법령 준수 및 정산 관리 등을 통해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 기반구축 사업의 성과지표는 법규 준수율로 해당 지표는 사업목표와 연동되어 있어 적절하며, 최근의 성과실적을 볼 때 목표 달성도가 100%를 상회하고 있어 좀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본 보조사업은 좀더 도전적인 성과 목표값 설정 등 사업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방송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방송산업은 허가·승인 등의 규제가 필요한 특수 시장으로 민간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이 불가피함 · 본 사업은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조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추진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8호(기금의 용도), 「방송법」 제90조의 2(시청자미디어재단)에 따라 방송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재정 지원 필요성이 있음

- 방송시장 내 불공정행위를 조사·감시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지속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

- 방송산업은 허가·승인 등의 규제가 필요한 특수 시장으로, 민간 자율적 감시체제 구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이 불가피함

○ 이 사업은 중소방송사업자 대상 공정경쟁 실태 서면조사와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사업 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시장 내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시청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방송사, 미디어렙사 회계자료 검증·조사 내역사업은 30억원 미만의 소액·직접 수행사업이어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추진 및 전달체계는 절차적, 구조적으로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관리 주체와 집행 주체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관리 흐름이 체계화되어 있음

- 이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총괄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부정수급 관리체계는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고 실제 부정수급의 문제는 없으며 특별한 사각지대나 관리부재 요소는 발견되지 않아 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짐

○ 이 사업은 공정경쟁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성 강화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임

- 성과지표는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인식도'로 설정되어 있으나 주관적 응답기반의 인식 조사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26년 이후부터는 '유료방송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개선 노력도'라는 지표를 신설하고 복합지표로 변경하여 정책 효과 측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은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외주제작 상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필수적 사업임 - '디지털·미디어 상생지원'이란 국정과제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체계도 잘 구축되어 있음 · 본 보조사업은 방송시장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수행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 점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방송콘텐츠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있는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 침해 등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즉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외주제작 상생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26조(기금의 용도)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정과제 108-3(디지털·미디어 상생지원'과 연계되어 있음

- 2017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사업임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에서 사업 내용은 외주제작 거래 실태 조사,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 등의 내역 사업으로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

- 편익의 직접적 수혜자는 지상파·종편 PP 등 33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이며, 간접 수혜자는 일반 국민을 포괄하고 있음

○ 사업추진체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을 한 후 수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체계로 적절히 형성되어 있음

- 부정수급 문제는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 및 집행 실적에 대한 점검, 공신력 있는 회계기관의 감사를 통한 집행실태 점검 등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음

- 2024년 보조사업 평가를 통해 예산감축이 권고되어 내역사업 축소 등 사업구성을 단순화하고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환류 및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성과 달성도 및 우수성을 파악하는 성과지표로 '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단위: 점)'와 '표준계약서 활용률(단위: %)' 등 2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성과 달성도는 100%이거나 100%를 상회하고 있어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조사업은 방송시장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 점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정보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의 팩트체크 플랫폼 지원은 구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재정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과거와 같이 사업이 중단되는 등 집행과 관리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허위 정보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은 보조사업자 점검 및 평가 체계가 미흡하고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허위정보 대응 역량강화 교육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적 기능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나, 팩트체크 플랫폼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구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은 정부 지원이 타당하지 않고 편익·수혜 대상이 불명확하므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민간 중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지정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매년 사업을 수행하는 운영 구조에서는 사업 수행이 고착되고 성과 개선 노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성과평가와 차년도 계획 환류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업자의 성과를 점검해야 함

- 현행 성과관리 체계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교육 이수 이후 정보 판별 능력 향상도, 허위정보 대응 행동 변화 등 결과 중심 지표 개발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사업내용 적정성 및 지원 규모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과 환류 활동 측면에서 감액 및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내역사업은 지원 프로그램의 연간 평균 시청률이 지상파 기준 0.03~0.4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2차 유통 실적도 대다수 방송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 수혜 도달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 '참여프로그램 통합관리서비스' 내역사업은 35개 방송사와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 행정지원 시스템임에도 '27~'28년 2년간 8억원 규모의 고도화 투자가 계획되어 있어, 이용자 규모 대비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내역사업은 '26년 기준 총 사업비의 99.3%가 평가원 활동비로 지출되는 구조에서, 해당 활동비가 방송 프로그램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보조사업은 사업추진·전달체계,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및 환류 활동 측면에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참여프로그램 통합관리서비스' 내역사업은 용역업체가 포함된 다단계 추진구조에 따른 행정비용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내역사업에서 편성권은 방송사 고유 권한으로 직접 조정의 제도적 한계가 있으나, 다수 방송사가 여전히 새벽 시간대에 본방송을 편성하고 있는 점에 대한 시청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환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성과지표 체계는 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내역사업의 산출에 기반하여 설정·관리되고 있어, 단순 방영 시간 중심의 성과 측정에서 벗어나 정책 효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방송법」 제3조·제69조·제70조·제89조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 근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청자의 방송참여 기회 확대라는 공익 목적상 정책적 타당성과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내역사업은 채택료 지원 방식 측면에서 유관 부처 창작지원 사업과 구조적 차별성이 확인되나, 지원대상 중첩 가능성에 대한 점검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 보조사업은 사업내용 적정성 및 지원 규모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감액 및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내역사업은 지원 프로그램의 연간 평균 시청률이 지상파 기준 0.03~0.4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2차 유통 실적 또한 방송사별 운영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의 방송 참여 기회 확대와 방송 편성 실현 자체에 정책적 의의가 있는 사업으로, 단순 시청률 및 온라인 유통 실적 외에도 공익적 효과와 제도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보완이 필요함

- ‘참여프로그램 통합관리서비스’ 내역사업은 35개 방송사 및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 행정지원 시스템에 ’27~’28년 2년간 8억 원 규모의 고도화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용자 규모 대비 투자 규모의 정당성과 기존 중복검증 업무의 AI 자동화에 8억 원을 투입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내역사업은 ’26년 기준 총 사업비의 99.3%가 평가원 활동비로 지출되는 구조에서 해당 지원이 방송 프로그램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현행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보조사업은 사업추진·전달체계,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및 환류 활동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여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내역사업은 최근 3년간 정산 후 보조사업자의 집행잔액 반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사후 정산 중심의 관리에 더해 사전·집행 단계에서의 집행계획 적정성 점검 및 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참여프로그램 통합관리서비스’ 내역사업은 용역관리 비용을 포함한 행정비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내역사업에서 편성권은 방송사 고유 권한으로 직접 조정의 제도적 한계가 있으나, 다수 방송사가 여전히 새벽 시간대에 본방송을 편성하고 있는 점에 대한 시청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환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성과지표 체계는 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내역사업의 산출에 기반하여 설정·관리되고 있어, 단순 방영 시간 중심의 성과 측정에서 벗어나 정책 효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시청자 미디어재단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통합)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3132-308)은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사업(3133-303)과 정책목표·대상·수행기관·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중첩되어 있어 두 사업을 시청자 미디어 재단 중심의 단일 사업으로 통합하고 동일한 성과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통합으로 권고함. 기존 체제에서는 간접비·성과관리·홍보·조사 등 행정비용이 이중화될 우려가 큼 ·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와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가 성과 지표이며, 두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임. 다만, 성과 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이용자 만족도 지표는 거의 포화 단계에 이르렀고,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의 경우,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시대 흐름에 따라 리터러시가 증진되는 면을 지닐 수 있어서, 보다 개선 된 성과 지표 체계 마련이 요청됨			

□ 종합평가 의견

○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의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로서, 지역·계층별 수요 편차가 크고 수익 창출이 어려워 민간 자율 공급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균등화된 정책 개입이 효율적임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의 정당성과 정책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음

- (방송법) 제90조의2 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법적 근거를 명시
- (방송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방송 참여, 미디어교육,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현 정부 국정과제)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 보호 국정과제(7번)와 연계
- (단위 사업 연계)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3100)> 내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3133)>

○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와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가 성과지표이며, 두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임. 다만,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이용자 만족도 지표는 거의 포화 단계에 이르렀고,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의 경우,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시대 흐름에 따라 리터러시가 증진되는 면을 지닐 수 있어서, 보다 개선 된 성과지표 체계 마련이 요청됨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3132-308)은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사업(3133-303)과 정책목표·대상·수행기관·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중첩되어 있어 두 사업을 시청자 미디어 재단 중심의 단일 사업으로 통합하고 동일한 성과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통합으로 권고함

○ 통합대상인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3132-308) 사업은 시각·청각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TV 보급,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스마트 수어방송·접근기술 개발,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 변환 환경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송법 및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확대 등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접근권 보장 자체의 정책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다만 본 사업의 목적은 '미디어 접근성 개선'이며, 실제 현장에서 접근권이 실현되는 경로는 ① 맞춤형 기기 보급 ② 장애인방송 콘텐츠

확대 ③ 미디어센터 이용 및 교육 ④ 권익상담·이용 지원이 연계성을 갖고 이어지는데, 이 중 상당 부분(센터 인프라 운영, 교육, 권익상담)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사업(3133-303)에서 별도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이는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임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방송평가기반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방송평가기반조성' 세부사업 내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 보조사업은 환류 활동, 성과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여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23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성과지표 실효적 개선을 지적받았음에도 '26년에야 지표 변경이 이루어져 개선 조치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으며, '26년 신규 지표('방송평가 개선추진 실적') 역시 회의 개최 실적(50%)과 만족도(50%)를 결합한 투입·과정 중심의 구조로,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수준이나 방송 품질 개선 여부를 직접 측정하는 결과 중심 지표로의 전환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 - 현행 성과지표는 규제·평가의 대상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지표로 사업의 성격 및 목적과의 정합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대표 성과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24년에는 실적치(74.2점)가 목표치(77.2점)에 미달(달성도 96.1%)한 것으로 확인됨 - 방송평가 결과가 재허가 심사에 1,000점 중 400점(40%)만 반영되는 현행 구조에서 평가 결과와 방송사의 공적 책임 이행 수준 제고 간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방송평가기반조성’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인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 사업은「방송법」 제17조 및 제31조에 근거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중복 사업도 확인되지 않음

○ 또한, 동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부정수급 관리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됨. 153개 사업자(371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규모를 감안할 때 현행 지원규모도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인정됨

○ 다만, 동 보조사업은 환류 활동, 성과관리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어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23년 보조사업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26년에야 이루어져 약 3년이 소요되었으며, 신규 지표(‘방송평가 개선추진 실적’) 역시 회의 개최 실적(50%)과 만족도(50%)를 결합한 구조로 결과 중심 지표로의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방송사의 공적 책임 이행 수준 및 방송 품질 개선 여부를 직접 측정하는 결과 지표로의 전환을 포함한 성과지표 체계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

- 현행 성과지표는 규제·평가의 대상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지표로 사업의 성격 및 목적과의 정합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4년 실적(74.2점)이 목표(77.2점)에 미달한 사실도 확인됨

- 방송평가 결과가 재허가 심사에 1,000점 중 400점(40%)만 반영되는 현행 구조에서 평가 결과와 방송사의 공적 책임 이행 수준 제고 간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디지털 광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사업 명칭과 실제 내용(제작·플랫폼 운영 중심) 간의 괴리가 존재함. 특히 13억 원 규모의 소액 사업임에도 KOBACO와 한국광고총연합회로 수행 주체가 분산되어 관리비 증가와 성과 책임성 약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감액으로 평가함 - 공익광고는 단순 편수 지원 및 정액형 매체 집행에 머물러 있어 민간 기능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광고정보센터 또한 민간 데이터 서비스와 기능이 중첩되는 전문책자 발간·시상 지원 등 부수적 사업 비중이 높은 상태임.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단순 도달률이나 만족도 위주여서 행동 변화나 산업 활용도 등 실질적 정책 효과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공익광고 체질 개선 △정보센터 기능 재정립 △수행체계 단순화 △성과지표 재설계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되, 여러가지 비효율적 요소를 조정해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방송광고의 공적 기능 강화와 산업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으로, 공익광고 제작·확산 및 광고정보센터 운영을 포함하는 구조임. 공익광고의 공공재적 성격과 광고정보 접근성 제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구조는 공익광고의 편수 고정형 제작, 월 정액형 매체집행, 광고정보센터의 운영비 중심 DB 관리 및 부수사업 병행 구조로 고착되어 있어 디지털 광고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낮은 상태임

○ 또한 사업명은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이나 실제 내용은 공익광고 제작과 플랫폼 운영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업명과 내용 간 괴리 존재함. 따라서 단순 연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구조개선을 전제로 한 연장 여부 판단이 필요함

○ 공익광고는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 확산 방식은 민간 광고시장과 유사한 매체 구매·집행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공공이 수행해야 할 영역과 민간 기능 간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임

○ 광고정보센터는 광고물 DB, 광고동향 정보, 전문책자 발간, 시상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광고 사례·트렌드 리포트·산업정보 제공 기능은 이미 민간 데이터서비스와 일부 중첩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전체 사업비가 13억원대의 비교적 소규모 사업임에도 공익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정보센터는 한국광고총연합회로 분산 수행되고 있어 관리비 증가, 정책 방향성 분산, 성과책임성 약화 등의 비효율 우려 존재함. 따라서 공공 고유 기능 중심 재편, 유사·부수 기능 축소, 수행체계 단순화 필요성 존재함

○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구조개편과 연계된 전략적 조정보다 행정적 감액 성격이 강한 상태임. 공익광고는 제작편수 고정, 매체별 정액형 집행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성과기반 캠페인 구조로의 전환이 미흡하며, 광고정보센터는 공공 데이터 플랫폼 기능보다 운영비 중심 구조와 전문책자·시상사업 등 부수기능 비중이 높은 상태임

○ 따라서 공익광고는 '편수 지원' 중심에서 '행동변화 성과연동형 캠페인 구조'로 전환하고, 매체집행은 민간매칭·성과연동 방식으로 재설계할 필요 존재함. 광고정보센터는 산업 데이터의 공공 개방, 연구·정책 활용, 공공 아카이브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행사성·부수적 지출은 축소할 필요 존재함

○ 최근 집행률은 높은 수준이나, 전액 민간경상보조 정액 지원 구조에서는 기계적 집행률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바로 집행 효율성이나 성과 우수성을 의미하지 않음

○ 공익광고는 통합 광고효과지수 등을 통해 일부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출생, 디지털 범죄 예방 등 주요 공익광고 주제에 대한 행동변화 효과를 계량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 존재함. 광고정보센터 역시 이용자 만족도와 방문지표는 제시되고 있으나, 데이터 개방 성과, 산업 활용도, 연구·정책 기여도 등 공공 기능 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미흡한 상태임

○ 따라서 성과지표는 도달률·만족도 중심에서 행동변화율, 산업 활용도, 데이터 개방 성과 등 질적 지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존재함

○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성은 인정되나, 공익광고의 전통적 집행 구조, 광고정보센터 기능의 민간 중복 가능성, 복수기관 분산 수행에 따른 비효율, 기금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부수사업 포함, 성과지표의 질적 한계 등이 지속되고 있어 현행 구조의 단순 연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조사업 연장은 가능하나, 공익광고 확산비 단계적 감액, 광고정보센터 부수사업 축소, 성과연동형 구조 전환, 공공 고유 기능 중심 재편, 수행체계 단순화를 전제로 한 '감액'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세부사업) - (재정사업 필요성)「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9조, 제30조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108(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연계되어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집행 효율성)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90.1%('23년)→93.1%('24년)→96.3%('25년)으로 지속 개선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0건으로 사업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성과달성도) '24년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기여도 목표를 달성하고, 지원기업 매출 증가율 16.9%, 고용 증가율 11.8% 등 실질적 성과가 확인됨.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기여도, 경영개선기여도 이외에도 사업 목적인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직접 연계되거나 방송광고 고유의 효과에 관한 보조적인 지표 발굴이 필요함 - (기 반영 사항) '24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일정수준 감축' 판정에 따라 '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49.9% 감액(1,883→944백만원) 편성되었으며, `25년 경영개선기여도 등 성과지표 신설, 지원기업 선정 시 경영상황 평가 배점 강화(30점→50점) 등 개선조치가 이행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및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광고 제작 및 송출을 통한 지원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민간에서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할 동기가 없어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이 확인됨

○ 본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944백만원으로 2025년(1,883백만원) 대비 49.9%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기업 수도 58개사('25년)에서 25개사('26년)로 축소될 전망임

- 혁신형 중소기업 67,276개사 중 '15~'24년간 지원기업은 743개사(1.1%)에 불과하고, 지원 경쟁률이 지속 증가('25년 3.5:1)하고 있어 수요 대비 지원 규모가 제한적임

○ '24년 보조사업평가 지적(성과지표 개발, 수혜자 확대)에 따라 신규 성과지표(경영개선 기여도) 신설, 지원기업 선정 시 경영상황 평가 배점 강화 등 이미 사업개선 조치가 이뤄짐

- '23년 결산 국회 지적사항(지원기업 선정단계에서 자부담 집행 가능성 확인 필요)에 대해, 지원기업 선정 시 경영상황 평가 배점을 강화(30점→50점)하여 자부담 능력 평가 비중을 높였으며, 그 결과 '25년 실집행률이 96.3%로 전년 대비 3.2%p 향상됨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90.1%→93.1%→96.3%로 지속 개선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0건으로 사업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4년 성과지표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기여도) 목표 6.84배 대비 실적 6.86배로 100.3% 달성하였으며, 지원기업 매출증가율 16.9%, 고용증가율 11.8%등 실질적 성과가 확인됨

○ 현행 성과지표인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기여도(지원기업의 방송광고 집행액/방송광고 제작 지원액)'는 지원금 대비 광고 집행 레버리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2024년 보조사업평가 지적에 따라 경영개선 기여도 지표가 신설되었으나, 방송광고 고유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등 보조적 지표가 성과관리 체계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법적 근거,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환류 및 개선노력 등 전반적인 평가항목에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상당 수준의 예산 감액이 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 개선에 한정한 소폭의 사업개선이 타당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방송정보활용기반 체계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재정지원필요성) KBS 등 민간에서 유사 콘텐츠 가치지수를 개발·발표한 사례가 있으나 특정 사업자가 산출한 지표는 업계 내 이해관계로 인해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실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소명함. 또한 '24년 사업 중단 시 방송사·광고회사 등 다수 업계 관계자의 재개 요청이 제기되어 예산이 복원된 점을 감안할 때, 공공 제공의 차별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소명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방송사·광고회사 등 상업적 수혜기관이 공공 데이터를 상업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분담 등 예산효율화 방안 검토계획 제출이 필요함 - (성과달성도)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방송통계포털 활용도)는 '25년 목표 75점 대비 실적 81.8점으로 109.1% 초과 달성하는 등 성과달성도가 우수함. 반면,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사업의 현행 성과지표인 '대국민 만족도 지수'는 사업 목적인 방송콘텐츠 제작·편성·광고 집행 등 실질적 활용과의 연계성이 미흡함 - (기 반영 사항) '25년 대비 9.9% 감액(452→407백만원) 편성되었으며, 해외 인터넷반응 조사 내역 제외, 통합DB 시스템 기능 고도화 종료 등 사업내용 조정이 이루어짐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4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정과제 108번 및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 상위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이 인정됨. 집행 측면에서도 최근 3년간 이월·불용이 없고 실집행률이 94% 이상으로 양호하며, 부정수급 적발 이력도 없어 사업관리의 적정성은 인정됨

○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 반복 지적된 민간 대체가능성 문제에 대해 KBS 등 민간 개발 유사 지수가 업계 내 이해관계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제 활용되지 않은 점, '24년 사업 중단 시 방송사·광고회사 등 다수 업계 관계자로부터 재개 요청이 제기되어 예산이 복원된 점 등이 확인되어 공공 제공의 차별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소명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24년 사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1인당 재정투입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재정효율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됨

- 방송사·광고회사 등 상업적 수혜기관이 공공 데이터를 상업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분담 등 예산효율화 방안 검토계획 제출이 필요함

- 현행 성과지표인 'RACOI 서비스 대국민 만족도 지수'는 시스템 편의성·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업 목적인 방송콘텐츠 제작·편성·광고 집행 등 실질적 활용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두 내역사업 모두 사업목표-추진전략-세부 사업내용 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명확하고 상위 정책 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원규모는 내역사업별 감액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집행 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 이월·불용이 없고 실집행률이 94% 이상으로 양호하며, 방미통위(중앙관서)→보조사업자의 2단계 전달체계로 행정비용이 최소화되어 있고, 이중적 관리체계 운영으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없는 등 집행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을 종합할 때, 본 사업은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사업에 대해서는 수혜범위의 구체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예산효율화 방안 검토계획 수립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활용도 측정 지표로의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지원 규모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및 환류 활동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여 감액 및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방송광고 마케팅 컨설팅 지원' 내역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고 제작 및 송출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무상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동일 세부사업 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 내역사업에는 자부담이 적용되고 있는바, 수익자 부담 원칙 및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자부담 도입을 통해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원협의회 운영 및 만족도 조사' 내역사업은 기업 수 연동 항목 감액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동결 및 홍보비 신규 편성으로 전체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직접사업비 40.9% 감소와의 정합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지원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은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및 환류 활동 측면에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지원협의회 운영 및 만족도 조사' 내역사업은 타 내역사업과 목적·지원대상·지원재원이 동일한 구조임에도 독립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는바, 유사 선례를 감안하여 직접사업비 내역사업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지역방송광고 시장활성화 기여도'의 구성 요소 중 '익년도 방송광고 집행 예정 기업 비율'은 실제 집행실적이 아닌 의향 응답에 기반하는 한계가 있어, 성과지표 보완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9조 제3호·제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도약·재기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보조사업은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여 ‘감액 및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방송광고 마케팅 컨설팅 지원’ 내역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고 제작 및 송출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무상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동일 세부사업 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 내역사업에는 자부담이 적용되고 있는바, 수익자 부담 원칙 및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자부담 도입을 통해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원협의회 운영 및 만족도 조사’ 내역사업은 기업 수 연동 항목 감액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동결 및 홍보비 신규 편성으로 전체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직접사업비 40.9% 감소와의 정합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지원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조사업은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및 환류 활동에 개선 필요성이 있어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 ‘방송광고 마케팅 컨설팅 지원’ 내역사업은 ’24년부터 사후컨설팅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중도포기도 지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나, 향후 참여 지속 유인 강화 및 컨설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지원협의회 운영 및 만족도 조사’ 내역사업은 타 내역사업과 목적·지원대상·지원재원이 동일한 구조임에도 독립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는바, 유사 선례를 감안하여 직접사업비 내역사업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3년 26.9%에서 ’24년 10.8%, 고용증가율은 ’23년 78.0%에서 ’24년 4.7%로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회성 재정지원에 따른 단기적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음

- 연도별 참여기업이 달라 연속성이 없으며 고용증가율은 지역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의 성과관리 필요성이 요구됨

○ 또한, 성과지표인 '지역방송광고 시장활성화 기여도'의 구성 요소 중 '익년도 방송광고 집행 예정 기업 비율'은 실제 집행실적이 아닌 의향 응답에 기반하는 한계가 있어, 성과지표 보완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의 자비 집행 내역 추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의향 응답이 아닌 실적 기반 지표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OTT산업 경쟁력 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지원사업 만족도가 제시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제 OTT 포럼, 해외 OTT 시장 조사 등을 통해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보조사업에 의해 직접적 편익을 제공받는 실수혜자가 방송사 및 OTT·미디어 콘텐츠 기업 및 종사자로 명확하므로, 실제적 지원 사업이나 대상자의 해외진출 건수나 계약액 등이 성과지표로 제시되어야 함 ·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하여 사업 목적·기대효과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하였고, 내역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실제적 방안 제고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수정이 부진하여 내역 사업 구성이 부적절하여 사업구성 개편이 필요함 · OTT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 1) 브랜드관(Shop-in-Shop) 전략: 티빙처럼 현지에서 이미 자리 잡은 플랫폼(디즈니+, 라인 등) 내에 전용관을 설치해 리스크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과 2) 플랫폼 통합(M&A) 시도: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넷플릭스 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 3) 정부 지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차원이 존재하는데, 이중 동 사업이 비교적 부분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부문에서 실제 OTT 해외 진출이 발생해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하여 사업 목적·기대효과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하였고, 내역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실제적 방안 제고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수정이 부진함

- 국내OTT사업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해외진출 전략 수립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국제 OTT 포럼과 시장 조사 등을 통하여 OTT 산업의 해외 진출 성과가 직접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치 제시가 없음

-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지원사업 만족도가 제시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제 OTT 포럼, 해외 OTT 시장 조사 등을 통해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보조사업에 의해 직접적 편익을 제공받는 실수혜자가 방송사 및 OTT·미디어 콘텐츠 기업 및 종사자로 명확하므로, 실제적인 지원 사업으로서 대상자의 해외진출 건수나 계약액 등이 성과지표로 제시되어야 하며, 내역 사업 구성 등 사업구성 개편이 필요함

- 국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에 대하여 국내 OTT 및 미디어, 콘텐츠 산업 종사자 등에게 동 사업의 필요성 및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 사업의 만족도 목표 달성함. (목표/실적(점)) '23년(70/82.3) , '24년(75/85.5) 그 외 사회적 가치 여부관련 ,보고서 작성을 하였으나, 성과지표 및 이에 대한 보조 지표로서의 의미가 부족함

○ 24년의 보조사업평가에서 사업 목적·기대효과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개발 권고와 내역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실제적 방안 제고 필요성 제기에 따라서 성과지표개발을 위한 사업자 의견 청취 등 개선조치 중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개선이 부족하여 여전히 성과 지표의 부족성이 나타남

- OTT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 1) 브랜드관(Shop-in-Shop) 전략: 티빙처럼 현지에서 이미 자리 잡은 플랫폼(디즈니+, 라인 등) 내에 전용관을 설치해 리스크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과 2) 플랫폼 통합(M&A) 시도: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넷플릭스 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 3) 정부 지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차원이 존재하는데, 이중 동 사업이 비교적 부분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점은 제한 요소임. 동 사업에서 지원받은 소규모 업체들의 실질적인 해외 계약 등 실적치가 제시되어야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사업은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를 통해 국제기구의 국내 의견을 반영하고, 현안을 분석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체계 마련을 추진 · 디지털미디어 대응, 통상 이슈 대응, 통일을 준비하는 방송 등의 프로그램은 정책적 필요성이 보이나, 통상에 대한 국제 기구 지원과 방송 콘텐츠 제작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의 취지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 분야 통상 대응, 국제기구 공동협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고, 방송 제작지원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종합평가 의견

○ 정책적 타당성: 방송통신분야의 글로벌 협력이 중요시되는 시점으로 디지털미디어 대응, 통상 이슈 대응,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포함하여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K-콘텐츠의 세계화 추진에 맞추어 적극적인 해외 기관과 협력을 통한 방송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사업은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음

○ 재정지원 필요성: 방송 국제기구 공동 협력 및 대응 체계, 통일 프로그램 개발은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

- 최근 FTA, 전자상거래 등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과 보안성, 전문성을 갖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필요성이 인정

- K-콘텐츠 인기와 더불어 한국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개별 콘텐츠 제작보다는 국가별 방송공동제작 규제에 따라 공동제작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

○ 사업내용의 적정성: K-콘텐츠 글로벌 지평 확대 및 미래지향적 통일 환경 마련의 목표에 따라 국제기구 방송 협력, 통상 대응체계 대응을 추진하는 콘텐츠 제작환경을 지원하고,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의 제작, 유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사업내용이 타당함

- 더불어, 국가 통일에서 방송 및 콘텐츠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비정치적, 생활밀착형 이슈로 통신에 대한 이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보조사업]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부정수급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외부 검증보고서를 포함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심도 있고 확인하고 있음

- 전체 감사는 사업비 교부시 계획서의 비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행 및 정산 점검에서는 집행 내역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음

○ 다만, 본 사업의 목적은 국제기구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 연구, 방송을 지원하는 부분과 국제 협력 방송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방송통신 분야 통상 대응, 국제기구 공동협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고, 방송 제작 지원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재난방송 운영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모바일·OTT·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수혜자 접근성 제고가 요구됨 · 행안부 사업과 콘텐츠, 수혜대상, 기능이 중복되어 장기적으로 통합이 요구됨 · 2026년 예산 증액에 따른 콘텐츠 제작 편수의 객관적 산정 근거가 부족함 · 반복적 불용과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한적이어서 개선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현행 성과지표의 도전성과 실제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지표 개선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콘텐츠 제작 예산의 증액 및 유사중복 사항을 고려할 때,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재난방송은 재난 시 사회적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됨

- 특히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한 법적 근거가 있고,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역시 공공적 필요성이 큼

○ 다만 현행 사업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함

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재난정보 전달 경로가 TV 중심에서 모바일·OTT·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지원 구조는 KBS 중심 방송 인프라 지원에 머무는 경향이 있음

- 행정안전부 등 유사 사업과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재난정보 생산·송출·모니터링 체계가 중복·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음

② 사업계획과 지원 규모의 객관성, 적정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

-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22.3% 증액되었고,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은 28.3% 증가함. 그러나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플랫폼별 도달률 개선, 재난방송 미실시 감소,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등 객관적 성과 근거는 마련되지 못함

-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 형태로 KBS 단독 수행 구조와 지정방식은 사업의 안정성은 있으나, 경쟁과 비교를 통한 비용·성과 검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③ 집행과 성과관리도 형식적 안정성에 비해 실질적 검증은 부족함

- 최근 3년 집행률은 100%로 나타나나, 일부 소규모 불용이 확인되었고, 청각장애인 접근성 보완 등 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도 교육 콘텐츠 제작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성과지표 역시 포괄적 지표와 평가단 점수가 기준이 되면서 실제 재난방송을 통한 취약계층의 만족도 혹은 영향 같은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관리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사업은 정책 목적의 정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방식으로는 “정상추진”으로 보기 어렵고 최종 평가는 ‘감액’이 타당함

- TV·라디오 중심의 전달 방식은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OTT 채널로의 확장을 추진하려는 구체적 노력은 확인됨. 다만, 정부의 요구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작 편수를 40편에서 90편으로 대폭 늘린 것은 그 타당성을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구분	2026년 정부안 (백만원)	조정 내용	감액액 (백만원)	감액 후 예산(백만원)
재난방송 운영지원	3,286	일반 콘텐츠 90개 → 40개 조정 수어콘텐츠 유지	500	2,786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2,719	일반 콘텐츠 확대분 감액 수어콘텐츠 등 현행 유지	500	2,219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567	(동결)	0	567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필수 사업으로, 위치정보 제공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정책적 타당성 및 사회적 효용 인정 · '17년 민간경상보조 전환 경과('15년 결산 과방위 환류), LBSP 노후 장비 교체('24~'26년) 등 부처의 검토 노력 인정 · 다만 '23년 결산 예결위 지적의 사업방식 적정성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성과지표 보강, 예산 산출근거 갱신, 재난안전사업평가 개선계획 이행 등 사업개선 권고사항 확인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9조·제30조에 근거하여 긴급구조 시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는 국민안전 분야의 필수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사업의 지속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17년 민간경상보조 전환은 '15년 결산 과방위 예비검토 지적사항(법적 근거 없는 출연금 우회 지원 문제) 환류 결과로, 부처가 임의 선택한 비목이 아닌 점 인정. '23년 결산 예결위 지적 환류로 '24~'25년 KTOA·KISA 등과 총 6회 협의, '26.3.31 '위치정보 이용 진흥 종합계획(안)'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추진 등 부처의 검토 노력 인정

- KTOA(통신사업자 사단법인)·KISA(법적 근거·인프라 선행 필요)의 입장, '13년 구축 LBSP 노후 장비 교체('24~'26년) 진행 사정, 위치정보 제공건수 정정(소방청 '24년 5,849,200건, 경찰청'24년 2,856,322건), 인건비·관제비 산출근거(KTOA 사규 및 SW기술자 평균임금 약93% 수준), 측위 정확도 외생변수 사정 등 인정

○ 다만 본 보조사업의 안정적 지속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개선 권고사항이 단계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음

- (운영방식 정비) '23년 결산 예결위 지적의 보조→민간위탁 전환 또는 보조사업 방식 유지 시 국가사무 수행 책임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26년 상반기 '위치정보 이용 진흥 종합계획(안)' 수립 시 법제 정비 사항의 충실한 반영

- (성과지표 보강)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적사항 환류로서 외생변수 영향이 적고 부처가 통제 가능한 대안지표(위치정보 제공건수, 긴급구조기관 만족도, 응답시간 등) 추가 개발

- (예산 산출근거 갱신) '25년·'26년 동일 편성된 예산 산출내역에 시장 단가 변동·기술발전·노후장비 교체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한 연도별 산출내역 갱신

- (개선계획 이행·내역사업 연계관리) 행안부 '25년 재난안전사업평가 '미흡' 개선계획 진척 점검 및 동일 세부사업 내 '신뢰도 향상' 사업과의 통폐합 검토 후속 조치

○ 종합적으로 운영 핵심 기능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면서 위 권고사항의 단계적 이행을 전제로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정보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청소년보호 앱(사이버안심존) 개발·보급 내역사업은 민간 서비스가 충분히 존재하며 공공부문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필수 정보인프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책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폐지함 -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용률과 성과가 저조한 수요자 대상 앱 사업에 배분되어 있어 재정 효율성이 낮고, 민간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연간 신규 가입률이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 0.5% 미만으로 서비스 도달률이 미미하여 정책 파급 효과가 제한적임 · 행정비용 비중이 약 28~3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사업 운영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환경 관리 및 사업자 의무 이행 점검은 공공 규제 집행 기능에 해당하여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청소년보호 앱(사이버안심존) 개발·보급은 민간 서비스가 충분히 존재하며 공공 부문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필수 정보 인프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책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미흡함

- 국가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중복 투자가 방지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정보 인프라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경쟁이 이루어지는 정보서비스임

○ 상당한 비중의 예산이 청소년보호 앱 개발·보급에 배분되어 있으나 연간 신규 가입률이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 0.5% 미만 수준이며, 사용자 도달률이 낮고 민간에서 충분히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성과 달성도가 현저히 낮으므로 클린 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내역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신 사업자 의무이행 점검 및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등 공급 측면 규제 집행 기능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적정함

○ 보조금 집행 절차와 회계 관리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비용 비중이 약 28~3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모니터링·점검 활동이 실제 유해 정보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이 보완되어야 함

- 모니터링 건수 등 투입·산출 중심 지표에서 벗어나 유해정보 노출 감소율, 위반 사업자 개선율, 재발 방지율 등 결과 중심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클린 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 내역사업의 청소년보호 앱 사업은 폐지하고, 청소년 디지털 보호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분산된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는 사업임. 특히 장기적 데이터 축적과 정책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신기술 환경 변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지속 필요성은 존재함 - 다만 조사·연구 및 정책 네트워크 중심으로 병렬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역사업 간 기능적 차별성과 성과 연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함. 또한 성과지표는 산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책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수행체계는 특정 기관 중심 구조로 경쟁성과 효율성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타 부처(과기정통부, 개보위 등)의 유사 정책사업과의 기능 중복 가능성, 재정지원 방식의 비효율성, 일부 예산의 성과 연결성 부족 등이 확인됨에 따라, 감액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사업은 지속하되, △조사·연구·네트워크·정책개발 기능 통합 및 구조 재편 △성과지표의 정책성과 중심 전면 개편 △유사사업과의 기능 조정 △수행체계 경쟁 도입 및 재정지원 방식 개선 △일부 조사연구·네트워크·행사성 예산 감액 등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인공지능, 플랫폼, 메타버스 등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권익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 정책 네트워크 운영, 정책개발, 신기술 환경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으로,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 정책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임

○ 특히 관련 법령과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 행태와 위험요인을 장기적으로 관찰·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기본 방향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면평가 결과 확인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장기간 조사·연구 및 정책 네트워크 운영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 유사한 기능이 반복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과제를 기존 구조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해 온 경향이 존재함

○ 부서는 조사·연구, 정책개발, 네트워크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구성에서는 내역사업 간 기능적 차별성과 성과 연계 구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연구·협의체 운영·정책보고서 발간이 병렬적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사업 내 기능 중복성과 구조적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재정지원 구조 측면에서 본 사업은 전액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행기관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중심으로 장기간 고정되어 있는 구조임

○ 이는 정책 연구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으나, 경쟁성 부족 및 외부 혁신 유입 제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부 사업을 재위탁하는 구조까지 포함할 경우 집행 구조의 효율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따라 수행체계는 경쟁방식 도입, 직접수행 확대 또는 출연금 체계 정비 등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 재정 측면에서도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메타버스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신규 편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기존 자율규제 사업을 종료하고 신규 사업으로 전환한 점은 구조조정 노력으로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신규 사업이 기존 정책 기능과 어떻게 차별화되고 정책 성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충분하지 않음

○ 또한 조사·연구 중심 사업에서 단년도 연구가 정책으로 실제 반영되는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며, 정책개발 내역사업 또한 발간 주기 및 속도 측면에서 급변하는 정보사회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성과지표가 '지원 건수', '정책 기여도 건수' 등 산출(Output)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 수준의 실질적 개선, 제도 개선 효과, 정책 반영 여부 등 결과(Outcome)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임

○ 특히 패널조사, 정책연구, 네트워크 운영 등에서 생성된 결과물이 실제 정책 채택 또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아울러 본 사업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에서 수행되는 유사한 이용자 보호 정책 연구 및 조사 사업과 기능적으로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 정책영역 내에서 유사 연구·협의체 운영이 반복될 경우 정책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유사 사업과의 기능 조정 및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사업은 지능정보사회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조사·연구 및 네트워크 중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단순 연장은 타당성이 제한적임

○ 따라서 사업은 지속하되, ▲조사·연구·네트워크·정책개발 간 기능 통합 및 연계 구조 재설계 ▲유사 사업과의 역할 정립 및 중복 기능 조정 ▲성과지표의 정책성과 중심 전면 개편 ▲수행체계의 경쟁성 강화 및 재정지원 방식 개선 ▲일부 운영·네트워크·조사 연구 예산의 구조적 감액 등을 전제로 한 감액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사업은 조건부 연장이 타당하며, 최종적으로는 감액으로 판단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사업은「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근거한 법적 기반으로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함 - 세부사업은 '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행정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 등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근거로 관련 내역사업의 '25년 예산을 일정수준 감축함 - DNA 성능 평가 제도 도입과 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기술도입 기술지원체계구축도 사업 내용이 적정함. 다만, 사업 내용의 추진 과정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제시가 필요하며, 경찰청이 선 인지 후 진행하는 사안에 대한 업무 협조의 범위 등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성과 지표의 목표치 설정 기준이 연간 1% 증가를 가정하여, 최근의 인터넷 상의 유해물 폭주 대비하여 너무 완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내역 사업구성 개편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의 감액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점검, 비교식별 기술 성능평가, 국가개발 비교식별 기술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관련 법률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지원함. 아울러 조치의무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및 제30조의6(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비교식별 기술 성능평가, 국가개발 비교식별 기술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관련 법률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지원하고 있음. 또한 조치의무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적 성격의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긴요함

○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관리, 비교식별 기술 성능평가, 국가개발 비교식별 기술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등 법률 이행 여부 확인 및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 재원분담 없이 국가보조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함

○ 3개 성과지표인 기술적조치개선(차단) 건수(단위:건), 불법음란정보 특징값(해시,DNA) 방심위 제공건수(단위:건), 특징기반필터링 기술 성능평가수행률(단위:%)이 모두 100%를 초과해 달성한 점은 긍정적임. 다만, 성과 지표의 목표치 설정 기준이 기술적 조치 개선과 불법 음란 정보 특정 값의 경우 연간 1% 증가를, 특징기반필터링 기술 성능평가수행률의 경우 연간 2% 증가를 가정하여, 최근의 인터넷 상의 유해물 폭주 대비하여 너무 완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사업기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 단계에선 감액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은 상담·안내 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목표인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와의 정합성이 낮고, 유사기관과의 기능 중복 및 역할 불명확성 문제, 운영형 고정비 중심 예산 구조, 성과지표의 질적 미흡 등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존재함 · 특히 본 사업이 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데이터 통합, 사건관리 및 이관 추적체계 구축, 정책환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단순 상담·연계 기능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정책 효과 창출에는 한계 존재함 · 사업비 중 상당부분이 강남의 고가 건물 임대료로 지불되고 있는 반면, 인건비 부족으로 가용 인력인 6~7명에 머물고 있어 사무실을 강북으로 옮기고 인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상담 중심 구조에서 해결 중심 구조로 전환 △유사기관과 기능 재정립 및 중복 조정 △성과지표의 결과지표 중심 개편 △성과연동 예산체계 도입 △임대료 축소 및 운영인력 확대 △사무실 이전을 통한 인건비 확보 등 사업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온라인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상담·분류·안내·연계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는 보조사업으로, 복합적·다부처 피해에 대해 이용자가 적절한 대응기관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공익적 필요성은 인정됨. 특히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상담·연계 기능을 제공하는 정책적 역할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다만 본 사업은 '피해구제 도우미'를 표방하면서 정책목표를 피해구제 수준까지 확장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수행은 상담·안내·연계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적인 분쟁 해결이나 피해구제 완결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정책목표와 사업수단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담 실적 중심의 운영으로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실질적 피해구제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 또한 본 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차별화된 기능보다는 상담·안내 중심 역할에 머물러 있어 기능 중복 및 역할 중첩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원스톱 창구로서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 사건 이관 및 처리 추적,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나, 현재는 이러한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실질적 허브 기능 수행에는 한계가 있음

○ 재정지원 구조 측면에서도 본 사업은 인력·임차·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형 고정비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장기간 유지될 경우 성과와 무관한 비용 지출로 고착될 가능성이 존재함. 상담센터 운영 특성상 일정 수준의 인력 중심 구조는 불가피하나,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운영비 중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사업계획 측면에서는 최근 온라인 피해 유형 증가에 따라 상담 수요 확대 및 인력 증원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예산 증액에 대한 수요 추계, 단위비용, 성과개선 목표 등 정량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증액의 타당성은 제한적임. 또한 상담 중심 구조에서 피해구제 성과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케이스관리, 이관 후 추적, 재접수 방지 등 핵심 운영요소가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판단됨

○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성과지표가 상담건수 및 만족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목표인 피해구제 실효성, 2차 피해 예방, 기관 간 책임공백 해소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관 후 해결완결률, 평균 처리기간, 재접수율, 취약계층 처리

비중, 피해금액 환급 기여도' 등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전환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사업은 온라인 피해 대응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전면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 구조 그대로의 단순 연장은 타당성이 낮으며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인 사업임. 따라서 사업은 유지하되 ▲상담 중심 구조에서 피해구제 성과 중심 구조로 전환 ▲유사기관과의 기능 재정립 및 역할 조정 ▲성과지표의 결과 중심 개편 ▲성과연동 예산체계 도입 ▲운영경비 중심 구조의 감액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연장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사업은 구조개선을 전제로 한 '조건부 연장(사업개선 및 감액)'이 타당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안전한 AI 활용 기반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사업은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침과 사업과 이용자 갈등을 해소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 - 홍보, 제보(갈등), 위원회의 3자 구도의 접근 방법은 우수하나, 평가 측도나 홍보 이외에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제보(갈등)에 대한 해결 사례도 보이지 않아 사업의 추진 방향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여 추진 필요 -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는 것 이외에 실적이나 활동을 확인하기 부족하고, 제시된 문제점에 따라서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참여인력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정책적 타당성: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면서, 반대급부로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안전한 활용은 중요한 정책적 사항임. AI 3대 강국 진입 및 AI 혁신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내용

-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하면서 부작용이나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 필요함

○ 재정지원 필요성: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은 법적인 근거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은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는 기능적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 주도의 지원이 필요

○ 사업내용의 적정성: 이용자-사용자 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위험성을 고유하는 기능으로 위험성 아내를 위한 노력, 제보된 위험성 기반으로 사업자의 자율 개선을 추진하고 연구반을 통해 안전성 확보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 집행 적정성: 예산의 집행은 점검 방법 개발 및 연구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결과물이나 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홍보, 프로그램 개발, 평가 등이 조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성과 보고서 미흡)

○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2026년 처음으로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 검증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움, 다만 기존의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같이 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보임

- 세부적인 갈등을 조정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과 노력은 신규 사업으로 보고서에서는 부족함. 다만, 소명 과정에서 신규 과제의 특성을 인식됨

-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참여율을 높이고, 조직적인 운영을 이한 개선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의 목적은 안전한 생성형인공지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4년 국회 지적과 같이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 또는 이에 따르는 사업계획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분석 단계의 개선도 상설적인 조직의 운영이 먼저로 보여짐

- 성과나 효과성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다양한 이슈 분석보다는 조직을 갖는 것이 우선시 되어, 사업의 개선이 선행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정부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구조로, 정책수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고정비 중심의 예산 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며, 한도 외 증액 요구는 전액 삭감이 타당함 - 연장평가에서 감축 권고를 받았음에도 구조적 개선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 점은 적절하지 않음 - 성과홍보 내용과 직접 연계된 지표로 재설계하여 사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청년 중심 1인 미디어 스타트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초기 창업자의 인프라 접근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는 인정됨

-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물리적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의 최우선 또는 최적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정부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보다는 교육, 역량강화, 사업화 지원 등 비시설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지역거점센터 종료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도 외 예산을 통해 유사 사업을 신규 요구하는 것은 관성적 계속사업의 연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이 콤플렉스 운영 등 고정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약 41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제한된 수의 입주공간과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구조는 비용 대비 직접 수혜자 규모 측면에서 적정성에 의문이 있음

- 과거 인프라 이전 사례 등을 볼 때 고정비 상승을 이유로 한도 외 증액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구조는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98%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 효율성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 외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개선 없이 한도 외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점은 개선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지표가 지원수, 만족도 등 단순 운영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홍보자료에서 제시한 매출·고용·투자유치 성과가 지표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을 통해 정부가 고정비 중심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현행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콤플렉스 운영비 등 고정비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함께 한도 외 예산 요구는 감액이 타당함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 내용과 체계를 적극 개선하고 행정비용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 사업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 민간·지자체에서 유사 중복사업을 실시중이고 지원규모 대비 직접수혜자의 수가 크지 않으므로 사업 내용과 체계를 적극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행정비용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성과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자 피해예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을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음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와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중이며, 민간·지자체에서 충분히 추진하거나 예산 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수행하기 어려움

- 일부 사업 내용은 민간·지자체 등의 사업과 유사중복되지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차별성을 갖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의 경우 지원규모가 적정하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는 지원규모 대비 직접수혜자의 수가 충분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본 사업의 두 내역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사업의 간접 수혜자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으로 광범위하지만 직접 수혜자는 각 사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제도의 실제 이용자로 한정됨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를 위한 사업들은 오프라인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어 직접수혜자의 수가 충분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실집행은 적절하나 행정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실집행률이 90% 이상이고,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보조사업자 관리가 적절함

- 행정비용 비중이 큰 편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행정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도를 정량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도를 정량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 전체적인 방송통신서비스 피해규모의 감축이나 일반 국민 또는 방송통신서비스 소외계층의 관련 역량 연간 향상률 등 성과지표를 새롭게 개발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 및 체계를 적극 개선하고 행정비용을 감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각 내역사업 추진체계와 성과평가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의 '25년 예산 대비 행정비용 비중이 51.7%로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통신유통시장 법제도 준수율은 온라인 모니터링도 포함하여 산정하고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의 경우 개선 성과지표를 활용해 성과달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확립을 위해 본 보조사업을 추진할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

- 국정과제 108-5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불공정 영업 및 불편광고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

- 민간·지자체에서 추진하거나 예산 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 평가 대상 보조사업의 내용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시장 기반 조성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고, 직접 수혜자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원규모 및 보조율이 적정함

- 평가 대상 보조사업의 사업내용이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각 시장의 해당 항목 모니터링 및 관련 운영경비 등 구체적이며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방송통신시장 이용자인 일반 국민으로 광범위함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실집행률이 90% 이상이나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의 '25년 예산 대비 행정비용 비중이 51.7%로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행정비용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보조사업자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도 이루어짐

○ 각 보조사업별 성과평가체계를 계속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통신유통시장 법제도 준수율은 온라인 모니터링도 포함하여 산정하고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의 경우 '24년 국회 지적사항에 따라 개선한 새로운 성과지표를 활용해 성과달성도를 측정하는 등 성과평가체계를 계속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각 보조사업별 성과평가체계를 계속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정보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공적 신뢰성을 가진 창구를 통해 일원화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재정지원은 필요하지만, 신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규모를 고려할 때 현행 인력·예산 규모는 과다한 측면이 있음 · 단일 보조사업자 지정 구조로 인해 경쟁·평가 압력이 약하므로 부정수급 관리, 인력 운영 실태점검, 업무 효율성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성적 운영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 성과평가와 차년도 예산 반영 절차를 제도화해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위치정보 신고·등록 지원 및 법·제도 상담은 규제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적 보완 기능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나, 산업진입 지원 기능과 규제 집행 보완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보다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공적 신뢰성을 가진 창구를 통해 일원화된 상담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재정지원은 필요하지만,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며 투입 인력의 평균적인 상담·서류 검토 부담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면 현행 인력·예산 규모는 적정하지 않음

○ 단일 보조사업자 지정 구조로 인해 경쟁·평가 압력이 약하므로 부정수급 관리, 인력 운영 실태 점검, 업무 효율성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성적 운영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 성과평가와 차년도 예산 반영 절차를 제도화해야 함

- 인력 투입 대비 산출 실적, 상담의 질적 수준, 중복 질의 감소 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함

- 상담 만족도는 서비스 품질을 일부 반영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는 인정되나, 목표치 설정 근거가 미흡하며 기계적 상승 구조에 그치고 있음

○ 위치정보 관련 법 위반 감소율, 신고 처리 기간 단축, 반복 질의 감소율 등 결과 중심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정보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정보화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의 목적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함

- 정보화 사업은 행정기관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전산화·자동화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연계·고도화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신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인프라 확충·디지털 서비스 개발의 단계를 포함하는데, 본 사업은 정보화 사업의 어느 단계에도 부합되지 않음

- 본 사업은 일차적으로는 위치정보 사업자의 규제 비용과 진입장벽을 낮추는 산업지원 정책의 성격이며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을 통해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다는 점 역시 산업지원 정책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동시에 관련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KBS대외방송송출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재정사업 필요성) 본 사업은「방송법」제54조 및 제61조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통한 국제친선, 한민족 동질성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어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중장기 운영효율화 검토) 단파송출의 실질적 수요가 감소하고, 수혜자의 매체 이용환경 변화로 유사 매체를 통한 이용대체가 있을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지속적 검토계획이 필요함 - (성과지표 고도화 필요) 현행 수신품질 만족도 지표는 단순 응답형 설문으로 구성되어 사업의 실질적 효과 측정에 한계가 있어 객관적 지표 보완이 필요함 - (기 반영 사항) 본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54.8억원으로, 2025년(60.89억원) 대비 약 10%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사업 중 송신시설 교체비 지원은 44.3% 감액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방송법」 제54조 및 제61조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통한 국제친선, 한민족 동질성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어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의 집행률은 97.8~100%로 양호하고, 성과지표(송신품질 최적화, 수신품질 만족도)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2026년 예산(안)은 5,480백만원으로 2025년(6,089백만원) 대비 10.0% 감액 편성되었으며, 송출비 지원은 5,329백만원에서 5,057백만원으로 5.1% 감액, 송신시설 교체비 지원은 760백만원에서 423백만원으로 이미 44.3% 감액됨

- 내역사업별 실집행률을 보면 송출비 지원은 양호하나, 송신시설 교체비 지원은 '23년 12.3%, '24년 81.1%, '25년 82.0%로 불안정한 요인이 있어,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송신시설 교체 중장기 계획('27~'29)을 조속히 확정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등 외부 변수를 사전에 점검하여 '23년과 같은 사업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송신품질 최적화는 최근 5년간 100% 목표를 달성했으며, 수신품질 만족도는 2025년 목표 71점 대비 실적 71.5점(달성률 100.7%)으로 목표를 달성함

○ 그러나 단파 라디오 방송 수요 감소와 매체환경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 계획이 필요하고 성과지표 고도화가 필요함

- 다만, 현행 수신품질 만족도 지표는 단순 응답형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신품질을 보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등의 보완적 지표 수립 노력이 필요함('27년 도입을 목표로 수신품질 측정 S/W를 개발 중)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분단 상황의 특수성(사회교육방송), 법적 근거(방송법 제54조)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중단 시 공익 침해 우려가 있어 당장의 감액·폐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효과성 관리의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 업	EBS방송인프라개선
보 조 유 형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해결하고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등 사업개선 노력이 필요함 - 중장기 계획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인프라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KBS-EBS 송신지원 이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EBS 방송인프라를 개선하여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교육 공영방송인 EBS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방송인프라 개선은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민간·지자체에서 추진하거나 조세지출·규제·정책금융 등 예산 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수행하기 어려우며, 이 사업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 및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중임

○ 사업내용이 정책목표와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었고, 직접 수혜자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가 적정함

- 각 내역사업은 방송제작시설 개선 지원과 서버 및 네트워크 시설개선 지원 내용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이고 교육 공영방송인 EBS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방송인프라 개선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며 방송인프라 개선을 통해 제작된 고품질의 EBS 프로그램을 시청 또는 소비하는 일반 국민이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로 광범위함

○ 중장기 계획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인프라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노후 장비가 적기에 교체되어 고품질 콘텐츠가 문제없이 제작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중장기 계획 속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KBS-EBS 송신지원 이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 효과성을 저해하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정책목표 달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EBS UHD 전환율과 EBS TV방송 수신품질만족도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중이나 향후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정책목표 달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해결하고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등 사업개선 노력이 필요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공정거래위원회
사 업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사업은 종합적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효율적으로 추진 중임 · 다만, 부정수급 관리 및 성과지표 관리에서 개선이 필요함 - 부정수급 징후에 대한 점검 관리강화 및 사전 예방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 - 조정위원회 개최 횟수 외에도 사업 내용에 따라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와 개선 의견 수렴 등으로 사업내용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은 종합적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뚜렷하고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다만, 부정수급 관리 및 성과지표 등에서 사업개선이 필요함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교육 등의 관리강화가 필요함

- 동 사업은 조정위원회 개최, 학술대회 개최, 관계 기관들과의 인적자원 및 정보교류, 소비자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어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성과 보조지표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금융위원회

핀테크 지원 사업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금융위원회
사 업	핀테크 지원 사업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 관련된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하며,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노력도 필요함. 보조사업평가 및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 사업별로 경쟁률,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단가 조정 및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가 필요하며, 부정수급 징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정수급 사례도 존재해 적극적인 조치 노력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공통요구자료’상 사업목적 및 내용이 더 적정하며, 일부 내역사업 목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내역사업 중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핀테크 기반구축’의 경우 사업목적에 동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시되지 않아,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지원 이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상위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공약 및 국정과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이 낮아, 동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상위계획 등 반영 노력이 필요함

○ 정부개입의 법적근거가 명확치 않음, 다만, 국가차원의 금융혁신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일정부분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됨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정부개입 법적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조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로 디지털 금융 혁신지원(샌드박스),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핀테크 기반구축 등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음

○ 재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세부 추진사업과 관련된 근거가 명확치 않으며,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노력도 필요함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에 ‘혁심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대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 규정은 존재하나, 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기업 지원, 기반구축 등과 관련된 지원 규정은 제시되지 않음

○ 동 사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연계,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 확충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산업육성을 위한, 일정부분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지원기관이라는 근거는 명확치 않음

○ 전년대비 사업규모는 적정하나, 세부 사업별로 사업성과와 경쟁률 등을 고려한 사업규모 산정이 필요함

- 예산소진시 마감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성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적정하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단가의 경우 적정 지원단가 산정 노력이 필요함

- 일부 사업들은 지원 기업수가 줄었음에도 지원단가를 높여 전체 사업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처는 전년도 실적 기반 반영 및 최근 3년간 기업당 지원금액 증가를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적정 지원금액에 기반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 99.2%이나, 실집행률은 98.6%임, '25년 실집행률은 98.8%로 비교적 양호

○ 사업추진체계 및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소명자료를 통해 제시한 내내역사업별 사업추진체계가 반영되었으면 함

○ 보조사업자의 경우, '26년부터 지정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보조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함

○ 부정징후 패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점검기한 미준수도 존재하는 등 전반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적극적 조치 노력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사업평가 및 국회 등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25년 국회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지급 구조 효율화, 교육과정 내실화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26년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지표 개선도 적정함

평가요약표

부 처	금융위원회
사 업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며, 법적근거가 명확하나, 실집행률 개선노력이 필요함. -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상위계획 반영 노력이 필요하며, 보조사업평가 및 국회 지적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낮은데, '26년 해외예산 부분에 대한 집행 노력이 필요 ('26년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제시하였음) - 지속적인 예산 집행률이 낮은 해외사업 대신 국내사업 중심의 사업개편도 고려 필요 · 보조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하며, 부정수급 등 사업 사후관리 관련 문제없음

□ 종합평가 의견

○ 사업목적이 사업내용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상위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은 존재하나,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이 낮아, 동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상위계획 등 반영 노력이 필요함

○ 정부개입의 법적근거가 명확하며, 금융 관련 협회 등 민간에서 일부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금융에 대한 감독 기능 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재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이 있음

○ 동 사업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보조사업자 관련 규정도 명시되어 있음

○ 사업 수혜대상자를 국내 진입, 해외 진출 금융회사의 점포 수로 제시하고 있어, 수혜대상자 제시는 적정함

○ 전년대비 13.5% 삭감되어, 동 사업의 최소한의 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집행률 개선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 100%이나, 실집행률은 78.5%임, '25년 실집행률은 57.9%로 연례적 집행률이 부진하여,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26년 명확한 집행계획 제시가 필요함

○ 사업추진체계 및 전달체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부정수급 등 사업 사후관리 관련 문제없음

○ 최근 3년간 사업평가 및 국회 등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여전히 실집행률이 낮아 실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유입 결과를 성과지표로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금융위원회
사 업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적근거는 명확하나, 지원단가 적정성 검토 및 비용지급 구조, 소송대리의 자부담 도입 고려 등의 개선이 필요함 - 동 사업 주요 추진방향을 상위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적 타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 불법사금융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 및 수요 증대, 규정개정 필요성 등이 존재하나,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선임된 대리인에 대한 지급단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보조사업평가 및 국회 지적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 보조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가 명확하며, 부정수급 등 사업 사후관리 관련 문제없음

□ 종합평가 의견

○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적정하게 제시되었음

○ 상위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이 있으나,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은 낮아, 동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상위계획 반영 노력 필요함

- 상위계획과 관련해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범정부 TF회의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정부개입의 법적근거가 명확하며, 국민을 불법적인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지므로 불법적 금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불법사금융 수법이 다양해지고, 초기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 피해구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를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도 인정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보조사업자 관련 규정도 명시되어 있음

○ 사업 수혜대상자를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수혜자로 제시하여 적정하나, 소송대리 수혜자 수는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전년대비 58.2% 증액되었으나, 실집행률, 이용현황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전체 사업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만, 단가기준 개선이 필요함

- '25년 실집행률 100%이며, 지원실적 급증으로 지원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비 일부를 전용하는 등 불법추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적극적 제도 홍보 등을 통해 예측된 지원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지원단가의 경우 실제 대리인의 노력이나 업무부담에 비추어 단가 조정이 필요함

- 선임된 대리인의 개입 범위와 강도가 각 사안별로 다양할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일관된 지급기준(선임료 20만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부처에서는 소명자료를 통해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의 변호사보수를 20만원, 관계인 지원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7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법률구조공단과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나, 대면평가시 확인

한 결과 변호사의 개입범위나 횟수, 성과 등 별도 지급 규정은 제시되지 않음

* 부처에서는 현재 관련 규정 정비 중이라고 답변하였음.

○ 소송대리의 경우 수혜자 자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 83.3%이나, 실집행률은 97%임, '25년 실집행률 100%로 최근 집행률은 양호

○ 부정수급 등 사업 사후관리 관련 문제없음

○ 최근 3년간 사업평가 및 국회 등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성과관리와 재추심 발생 관리 등은 조치가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됨

- 국회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수요예측, 불법추심 중단검토 등 사업성과와 관련된 지적은 개선 중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목표치 달성 편차가 심해, 적정 목표치 예측이 필요해 보이며, 동 사업에 대한 객관적 사업성과 측정 및 관리가 필요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권익민간협력

평가요약표

부 처	국민권익위원회
사 업	청렴권익민간협력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반부패·권익증진 확산을 위해 민간단체의 교육·캠페인·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기반 청렴 확산" 사업으로 정책목표(사회 전반 청렴문화 확산)는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확보하고 있음 · 본 사업의 구조적 취약점은 시장 수요에서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성과가 낮거나 수요가 불확실한 모델은 축소·종료하여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외부평가 고득점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할 필요성도 있음 · 또한, 사업주제·대상·단가·홍보·협업기관 매칭(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연계)을 통해 민간단체의 참여 유인을 높일 필요성도 있음 · 집행 통제는 현재 수준(전수 현장점검, 정산 유의사항 전달, 국고이자 반납 확인)을 유지하되, 성과 확산을 위해 연말 성과공유 간담회 및 우수사례 확산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청렴권익민간협력(민간경상보조)은 민간단체의 교육·캠페인·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반부패·권익증진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책목표 자체는 타당하며, 운영 과정에서 점검·정산·외부평가 체계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사업관리의 기본 통제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3년 민간보조사업의 실집행률 78.8% 및 불용 204 발생(2차 공모 수요부족)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24년부터는 연 2회 공모를 하지 않고 연 1회 공모를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선정시 심사위원회(외부7인, 내부2인)을 통한 평가를 통해 전년도 고득점 사업 및 신청 사업의 충실도를 고려하여 성과 우수 단체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됨

○ 성과관리·환류 측면에서도 외부평가(사업 70%+회계 30%) 점수에 따라 차년도 가감점이 적용되는 구조가 명확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류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25 하반기 점검 결과 보고에서 정산 유의사항 전달, '25 결과보고서 취합 및 12월 말 평가 계획, 12월 성과공유 간담회 계획이 제시되어, 점검 결과가 정산·평가·성과 확산으로 연결되는 연간 환류 사이클이 구축되어 있음

○ 다만, 환류가 성과·통제 측면에서는 성숙해졌으나, '23 수요부족의 원인을 "단체 참여 유인"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개선했는지(공모 설계 개선, 홍보 강화, 지원단가 조정, 협업기관 매칭 등)까지는 자료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향후 공모 수요를 안정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사업의 구조적 취약점은 시장 수요에서 확인되었으며,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단체가 없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고, 이후 감액 및 사업규모 조정을 통해 상당한 정상화를 이룬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성과가 낮거나 수요가 불확실한 모델은 축소·종료하여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외부평가 고득점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할 필요성도 있음

- 또한, 사업주제·대상·단가·홍보·협업기관 매칭(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연계)을 통해 민간단체의 참여 유인을 높일 필요성도 있음

- 집행 통제는 현재 수준(전수 현장점검, 정산 유의사항 전달, 국고이자 반납 확인)을 유지하되, 성과 확산을 위해 연말 성과공유 간담회 및 우수사례 확산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조달청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평가요약표

부 처	조달청
사 업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23년 여비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성과지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3년 공무국외출장 여비집행 부적정 등에 관한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성과지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제시되지 않음 - 보완지표 발굴을 통해 성과 달성도를 다각도로 조명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은 경제적·인력적 기반이 부족한 중소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수출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사업에서 기업이 특화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별 특성이 상이한 해외조달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단일 서비스 제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본 보조사업은 2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남

- 본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3년 국회에서 공무국외출장 여비집행 부적정 및 과다지급 관련 지적사항을 받아 환수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정기 점검 및 재발 방지대책은 제시되지 않음

- '25년의 경우 해외조달시장 진출 사업 간 유사·중복 요소에 대한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성과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분석을 통한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화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 유사·중복 사업의 경우 해당하는 요소를 검토하여 통합을 통한 사업 효율화 실시 및 유사 사업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성과 분석의 경우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제시되지 않음

○ 보조사업 성과지표의 경우 보조사업 참여기업 대상 수출액 증가율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24년에는 신규사업이었기에 달성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25년의 수출액 증가율 역시 제시되지 않아 본 사업의 성과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음

- 또한, 실적 증가율은 일부 기업의 수출실적이 크게 반영될 수 있으며, 사업과 무관한 성장이 전부 사업의 성과로 흡수될 위험이 존재함

-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 중앙값, 혹은 특정 수출 증가율 이상을 가진 중소기업의 비율 등 보완적인 지표 제시를 통해 성과 달성도를 다각도로 조명할 필요가 있음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우주항공청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우주항공청
사 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동 사업은 한국과학우주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학경진대회, 국제과학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임 - 한국과학우주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국대회와 국제교류만 남은 사업으로 기존의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통합 추진 또는 새로운 아이템 발굴이 필요 -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우주항공으로 세부화하는 내용의 신규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상당 부분은 이미 최신성을 잃은 것으로 보임			

□ 종합평가 의견

○ 정책적 타당성: 과학청소년단에 대한 국가 지원은 우주항공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청소년 잠재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경진대회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특히, 전국우주항공경진대회 및 수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제 과학교류는 미래 우주항공 과학자를 양성하는 계기를 제공함

○ 재정지원 필요성: 청소년의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를 통해 다양한 관심을 집중하기 위한 사업이나, 단순 경진대회만을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과학기술 저변확대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거나 특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임

○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추진에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1-3 전략으로 우주경제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는 항공/우주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단순 경진대회에 대한 취지로 보기는 어려움

- 더불어, 프로그램의 단순 폐지가 아니라, 과학기술진흥의 전체 프로그램에서 통합하거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의 프로그램은 다른 과학분야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프로그램의 구성은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으로 구성되어 단순하고 효과적인 체계를 갖춤

- 다만, 경직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이나 새로운 도전 항목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은 부족함

○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2022년 예산에 대한 “회계연도 불일치” 사건이 있고 이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짐, 사업 추진에서 재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다만, 경직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이나 새로운 도전 항목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은 부족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의 우주항공분야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로 진로를 갖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나, 다소 수동적인 운영으로 사업의 개선이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우주항공이라는 제한된 주제보다는 보다 넓은 분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전분야에 청소년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이 필요해 보임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재외동포청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평가요약표

부 처	재외동포청
사 업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통합 - 성평등부에서 실시하는 귀환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사업과 사업지역(베트남), 대상(귀환이주여성 및 자녀), 목적(지원) 등이 유사하므로, 사업효율을 위하여 합목적적이며 사업운영 노하우를 갖춘 한 부처에서 통합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담당부처는 별도 논의)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귀환한 혼인·이혼·자녀 양육·병역 관련 문제를 겪는 다문화 동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분명하나, 성평등부에서 실시하는 베트남 대상 귀환이주여성 사업과 지역(베트남 남부 및 북부)을 달리하지만 동일한 대상(귀환이주여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부처간 조정을 통해 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함

○ 사업계획 적정성

- 2023년 300백만 원에서 2024년 206백만 원, 2025년 146백만 원으로 축소되었고, 2026년에도 동일 수준(146백만 원)을 유지하는 등, 사업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보조율은 최대 95%로 설정되어 있어 자부담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함

- 사업 내용은 실태조사와 단체지원(교육·상담·캠페인 등)으로 포괄적이며,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좁히기보다 '다문화 취약동포'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 한정된 예산이 특정 고위험 집단(예: 귀환 후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녀, 현지에서 법·제도적 차별을 겪는 집단)에 집중되기 어려움

○ 집행효율성

- 2023~2025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다만 보조율이 최대 95%로 높고, 지원 단체 수가 소수(2건 등)에 그치는 상황에서, 자부담·기부·타 재원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 목적의 다른 재원과 비교했을 때 재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가 필요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정착·정체성·권리보호·갈등완화 등 핵심 목표를 직접 측정하는 지표(예: 지원 후 학업·취업·체류 안정, 법적 분쟁 감소, 자녀 교육·병역 문제 해결 등)는 설정되지 않았고, 사업 평가·환류 내역도 "해당 없음" 수준임

○ 종합의견

- (평가결과 제안) 성평등부에서 실시하는 귀환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사업과 사업지역(베트남), 대상(귀환이주여성 및 자녀), 목적(지원) 등이 유사하므로, 사업효율을 위하여 합목적적이며 사업운영 노하우를 갖춘 한 부처에서 통합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 (근거) 국내 다문화·외국인·이주민 정책 운영 관련 타 부처(성평등부) 사업과 대상·서비스(교육·상담 등 지원사업)가 중복될 소지가 크며, 동포청이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고유 기능(예: 국외 거주 다문화 동포의 모국 연계, 국적·병역·체류 복합 문제 해결 등)은 상대적으로 일부에 그침. 또한 "다문화 취약동포" 개념이 넓게 정의되어 있어, 실제 예산이 고위험·사각지대 집단(귀환 자녀, 현지 차별 피해자 등)에 집중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다문화·교육·교류 사업으로 분산될 위험이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재외동포청
사 업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할린동포는 국적 회복 이전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해 지자체 단독 지원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국비지원이 불가피하며, 역사적 상징성과 대상자의 고위험성(고령·질병·고립 위험)을 고려할 때, 1인당 비용 대비 사회적·도덕적 편익이 큰 사업으로 평가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인천광역시 재정자립도(49.2%)와 복지 수요를 고려할 때, 사할린동포 전용 시설 운영비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는 어렵고, 국비 100% 자치단체보조 방식(사업번호 122, 기준보조율 100%)은 법령·재정여건·대상 특성을 모두 반영한 구조로 볼 수 있음

- 경북도 재정자립도는 24.3% 수준으로, 고령·외국 국적 사할린동포를 위한 전용 양로시설을 단독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사할린특별법상 국가책무(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지원)를 감안하면 국비 100% 보조가 필요함

○ 사업계획 적정성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사할린동포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사할린동포는 국적 회복 이전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해 지자체 단독 지원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집행효율성

- 2023~2025년 동안 인천사할린동포 복지회관에 대한 교부예산(1,306백만 원/년)은 전액 집행되어, 3년 연속 실집행률 100%를 기록하였고, 이월·불용·부정수급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입소자 수·지원단가를 근거로 예산을 산출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집행과 산출 간의 정합성이 높음

- 2023~2025년 동안 경북대창양로원에 대한 교부예산 130백만 원은 전액 집행되어, 실집행률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월·불용·부정수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입소 인원에 따른 단가 산출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예산·집행·수혜 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한 편임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복지회관 지원은 독립 생활이 어려운 고령 사할린동포의 노후 주거·돌봄·의료·생활 지원을 통해, “여생을 고국에서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사업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

- 만족도 조사는 전체 세부사업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지만, 영주귀국·정착 관련 만족도가 9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회관 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추정됨

- 입소자 규모는 작지만, 역사적 상징성과 대상자의 고위험성(고령·질병·고립 위험)을 고려할 때, 1인당 비용 대비 사회적·도덕적 편익이 큰 사업으로 평가됨

평가요약표

부 처	재외동포청
사 업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지자체 수요, 동포 밀집지역의 재정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정착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기존 다문화·외국인 사업과 비교하여 동포 특화영역에 대한 발굴이 필요함 - 다만, 단기간에 예산과 지자체 수를 크게 확대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부담이 크므로, 기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성과평가 선행 후 차후 예산반영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은 국내 장기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한국어 교육, 역사·문화 프로그램, 내국인-동포 교류·축제 등은 기존 다문화·이주민 사업과 구분이 모호해 동포 특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중복 구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보완되어야 함

○ 사업계획 적정성

- 세부 프로그램이 "기존 지자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 발굴" 수준으로 포괄적이며, 축제·행사성 사업과 실질적 정착 성과(취업·체류 안정·권리보호 등)를 창출하는 프로그램 간 구분이 부족

- 2026년 예산을 2025년 대비 38.5% 증액하는 계획 역시, 1년차 사업 성과와 지자체별 편차 분석, 타 부처·지자체 사업과의 조정 계획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수요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시된 측면이 있음

○ 집행효율성

- 2025년 사업의 지자체 교부 기준 실집행률은 98.2%로, 집행 자체는 원활한 편이나, 지자체·하위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 구조, 비용 대비 성과, 축제·행사성 지출 비중 등 효율성 판단에 필요한 세부 자료 없이 "집행부진 없음"에 그쳐, 예산 확충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2025년은 사업 첫해로, 수혜자 수(3,000명→4,000명 예정) 및 지자체 수요(배정예산 460백만 원 대비 757백만 원 신청)를 통해 사업 수요는 확인되나, 현재의 성과지표는 수혜자 수 중심으로, 정착의 질(취업, 체류안정, 권리보호, 갈등 완화 등)을 보여주지 못함

○ 종합의견

-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성 및 정량지표로 평가를 선행한 후 예산 연계가 필요하며, 다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대상 사업과 기능조정 역시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재외동포청
사 업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은 동포 권익신장·교류·네트워크 측면에서 일정한 정책 필요성이 있으나, 기존 외국인·다문화·이주민 단체지원 사업과의 기능·대상 중복이 있고, 정착 인프라(상담·법률·노무·주거)와 직접 관련된 핵심 기능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6년 예산 151백만 원 급격한 증액에 대한 근거 및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현 시점에서는 부분적 감액과 단체 수·단가 재조정을 권고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국내 체류 동포의 정주화·사회통합 수요와 민간단체의 재정 취약성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공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외국인·다문화·이주민 단체 지원사업과의 기능·대상 중복이 있어, 동포 특화 영역과의 차별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음

○ 사업계획 적정성

-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5-1-2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의 이행수단으로, 국내동포 관련단체 공모·보조를 통해 권익신장·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상위계획과 형식적 정합성은 갖추고 있으나 2025년 51백만 원(13개 단체)에서 2026년 151백만 원(38개 단체)으로 196% 증액되었음. 최근 4년간 실집행·성과 분석, 단체별 역량·유사 중복 검토 없이 수요만을 근거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규모의 급격한 확대는 체계적 평가 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또한 교육·문화·교류 등 포괄적 표현에 그쳐 정착 인프라와 직접 관련된 핵심 기능(상담·법률·노무·주거 등)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부족함

○ 집행효율성

- 2022~2025년 집행률은 91~100%로 양호하며, 2025년 51백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다. 그러나 단체 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소액다건 사업으로 분산 지원되는 구조는, 행정·점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전체에는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국내동포 정착지원 건수 등 성과지표가 있으나,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에 특화된 하위지표는 부재함

- 최근 5년간 단체·사업 수는 유지되었지만, 단체별 성과(권익보호 사례, 피해구제, 취업·체류 안정, 갈등 완화 등)가 체계적으로 수집·분석되지 않아, 해당 보조금이 상위 성과지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평가결과의 주요 근거 및 지적사항을 작성

- (평가결과 제안) 사업 자체는 유지하되, 최근 실적·성과를 감안해 부분적 감액(예: 80~100백만 원 수준)과 단체 수·단가 재조정을 권고함

- (근거) 기존 외국인·다문화·이주민 단체 지원 및 관련 공모사업과의 기능·대상 중복이 크며, “동포 특화” 단체·사업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정착 인프라(상담·법률·노무·주거 등)보다 행사·교육·교류 등 포괄적 사업에 예산이 분산될 위험이 커, 우선 지원 분야를 정교화해야 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수출지원
지역연계/생태계기반구축
방산기술보호

평가요약표

부 처	방위사업청
사 업	방위산업 수출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재정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원규모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성과가 다소 불명확하므로 수출지원 상담건수 등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등 사업을 개선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국정과제와 연관성도 존재하며 여타 부처에 유사 사업이 존재한다고 사료되나 중복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방산수출경쟁력강화 내역사업을 통해 한국방산·보안수출주간(KODAS) 맞춤형 수출상담회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공동 운영(산업부·국방부·방사청)을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 방사청 예산은 3.3억원 규모임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범부처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 전담조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하 센터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치되어 재정지원이 가능하고, 국정과제 113 등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판단됨

- 여타 부처의 수출상담회와 유사한 성격이나 방산물자의 특수성(방사청 허가 필요 등)을 고려하면 중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됨

○ 사업계획은 사업목표에 부합되며, 지원규모도 적절하다고 사료됨

- 범정부적 수출지원을 통한 방산4대강국 진입 목표 달성과 연계되도록 사업이 구성되어 있고, 수출상담 건수가 '23년 272건에서 '24년 316건, '25년 49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액은 '24년 3.69억원, '25년 3.38억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집행률은 90%를 크게 상회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서 행정비용이 미발생하는 등 집행 효율성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보조금 세부 집행결과 점검,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검증,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정보공시 등을 통해 부정수급 등을 관리하고 있음

○ 방산수출액이 큰 폭 증가한 점 등 해당 사업의 성과는 우수해 보이나, 직접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제시되지 않음

- 방산수출은 전년대비 62% 증가

평가요약표

부 처	방위사업청
사 업	지역연계및생태계기반구축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목적과의 낮은 연계성 및 추진·전달 체계상 비효율성 등으로 감액을 권고 - 단순한 설비 보조금 지원은 방산업계 역동성 저하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아울러, 방산업계의 역동성 개선을 위해 혁신 역량 등을 추가 고려하여 보조금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가운데, 성과지표의 개선을 통해 목적 달성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국가 방위 역량 강화차원에서 과소투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개입의 타당성이 인정됨

- 금형 또는 설비 개선이 시급한 중소기업들을 지자체가 선별하여 기업의 자부담을 제외한 7:3의 비율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근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조금의 교부 등)를 갖추고 있음

-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유사사업(스마트공장 구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이 존재하나, 주로 노후화된 금형 및 기존 생산설비 교체를 지원한다는 점,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 시 수혜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 여부를 고려한다는 점 등에서 유사중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됨

○ 단순히 지역 방산 중소기업에 설비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원대상 선별에 유의할 필요

- 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저생산 기업의 생존 혹은 연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므로, 관련 혁신 기술 확보 등으로 생산성 향상이 예상되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업 선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설비(50%)에 비해 범용성이 낮은 금형 고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부담율(25%)을 적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지원 규모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 실집행률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혁신 생태계 활성화의 상위 목표와 연관성을 높일 필요

- ’24년 금형/설비 장비 납품 지연에 따른 계약 잔금 이월로 실집행이 저조(79.8%)하였으나, 이후 특이요인 미발생으로 개선되어 ’25년 실집행률은 99.0%를 기록

- 혁신 방산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혁신역량을 추가 고려하여 수혜기업을 선정할 필요

- 기초조사보고서에 부정수급 관리 및 환류·개선 등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부정수급 관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보다 핵심적인 성과지표를 고려할 필요

- 지원기업 생산 증가 등 일부 성과가 관측되나, 방산 특허 및 인증 건수나, G2G/B2B 방산 공급망 진입 실적 등 사업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결과 지표를 고려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방위사업청
사 업	방산기술보호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방산 공급망에 대한 면밀한 네트워크 분석과 무기 체계의 전략적·안보적 중요도 등을 토대로 취약한 고리를 제거하고 중첩적으로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 - 무기체계별로 국내 공급망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여 약한 고리에 해당되는 대상 기업을 선별함과 동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전략 무기의 설계 및 제조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업체인지 등을 확인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 종합평가 의견

○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방산업계 약한 고리인 중소·벤처기업 대상 해커들의 방산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한 점에서 정부 개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유사중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 법적 근거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청 훈령 제733호, '22.5.26.)로,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사이버공격 증가 및 영세성에 따른 보안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 개입을 통해 방산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

- 중소벤처기업부에 유사 사업이 존재하나 이는 민간 소유 기술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방산 공급망 참여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국가 소유 방산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 사업 구성요소는 방산기술보호라는 사업목적과 잘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방위사업청 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도 갖추고 있고, 지원규모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약한 고리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과 통합보안장비 구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방산기술보호라는 사업목적에 잘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방사청 내 방산기술보호 관련 상위계획인 「'22-'26 종합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보안 관제시스템 구축은 100%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망분리 등 심화된 보안 시스템은 기업규모, 방산매출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50~80%의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등 보조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시된 수혜자의 범위도 명확하다고 판단됨

사업명	수혜대상	정의/유형	수혜내용	수혜자 수			
				23년	24년	25년	26년 (예상)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중소중견 (직접)	방위산업/ 방산관련 중소중견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최대1억, 50~80%)	10社	10社	13社	13社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보안기능 통합 보안장비 (UTM) 임차비(최대250만)	41社	41社	41社	41社

○ 집행률 상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으며,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환류 및 개선노력 등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사업추진·전달체계는 방산 공급망에 대한

면밀한 네트워크 분석과 무기 체계의 전략적·안보적 중요도 등을 토대로 취약한 고리를 제거하고 중첩적으로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

- 최근 3년 간 실집행률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통합보안장비 사업 모두 9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음

- 부정수급 등 관리를 위해 지원기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이력 적발 시 보조금 환수조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외 이전년도 보조사업자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용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

-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해당 사업의 지원사항은 업체의 의무 사항인 점, 향후 전문화된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및 수행 필요성 등을 고려 '27년 보조사업 예산 '25년 대비 10% 감축을 권고 받았고, 성과지표 개선, 방산기술보호 기업 차별 지원 등 개선사항 등이 지적되어, 성과지표 개선, 지원비율 조정 등 반영할 예정

-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무기체계별로 국내 공급망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여 약한 고리에 해당되는 대상 기업을 선별함과 동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전략 무기의 설계 및 제조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업체인지 등을 확인하여 방산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 성과지표는 방산기술보호의 결과적 측면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목표를 지속 상회하고 있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어 우수한 정책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

- 핵심기술적용률(무기체계 핵심기술·기초연구수/최근 6년간 성공판정 핵심기술·기초연구수*100)은 사업 목적에 잘 부합하는 핵심적, 결과지표라 판단되며,

- 상향된 목표를 지속 초과달성하고 있어 보조금 사업이 예상된 정책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경찰청

교통안전활동

평가요약표

부 처	경찰청
사 업	교통안전활동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정책 타당성과 효과성이 증빙된 사업으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나, 단순 현금지원에서 교통안전예산과 교통복지예산의 전략적 협업을 통한 '이동권 보장' 중심의 패키지형 지원 모델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인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면허 반납시 인센티브(현금성 지원)를 제공하여 자발적 은퇴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함

- 고령운전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사업(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백만원)으로 유사사업은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증의 취소.정지)와 교통안전법 제3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함

- 면허반납 1%증가시 고령자 사고율 감소효과가 0.02142%(서울연구원)나타나 실효적인 고령자 교통안전정책으로 지원필요성은 인정됨

○ 현재까지는 장롱면허 소지자와 실제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를 일괄적으로 지원하여, 이미 운전을 안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교통사고 감소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예산 낭비 요소 지적 있음

- 이에따라, '26년부터 '실운전증빙' 차증지원을 통한 효율성 강화 조치예정임

○ 본 사업은 국비(30%)와 지방비(70%)가 매칭되는 보조사업임

-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 시기가 다르나, 제한된 비율의 국비 지원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음

- 현재 243개 지자체 중 241개(99.2%) 지자체 사업 참여 중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 단순히 '반납 건수'를 평가지표로 삼고 있으나, '실제운전증빙비율', '고령자사고감소'등의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반납자 수'라는 단순 투입 지표 대신, 실제운전자의 적극적 반납을 유도하고, 이동권 보장사업과 연계 및 지역주민참여도 강화방안 마련 필요함

○ 본 사업은 정책 타당성과 효과성이 증빙된 사업으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나, 단순 현금 지원에서 교통안전예산과 교통복지예산의 전략적 협업을 통한 '이동권 보장' 중심의 패키지형 지원 모델로 고도활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소방청

119구급대 지원
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
실화재훈련시설구축
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

평가요약표

부 처	소방청
사 업	119구급대 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법령(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19구급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해당됨 · 다만 본 보조사업은 생명을 구하는 고도의 전문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서비스의 단위당 단가가 낮은 수준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중증환자의 증가,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 장비도입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예산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은 장비보강과 서비스고도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성과지표인 전문교육 이수율은 투입지표로 사업의 최종 결과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성과지표 측정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을 통해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로 국민 생존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적 가치의 실현은 국가사무적 성격이 명확하며 민간의 수익성 결여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해야 할 사업임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가 있으나 실제 구급대원 인력 운용 및 차량·장비 관리, 출동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는 현재의 보조사업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본 보조사업들의 기준보조율이 50%이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을 균등하게 분담(50:50)하는 현행 방식은 소방·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밀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관리와 책임성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또한 원자재 가격 및 장비 단가 상승 등의 압력이 존재하나, 현행 매칭 비율 내에서도 사업 수행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본 보조사업은 생명을 구하는 고도의 전문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서비스의 단위당 단가가 낮은 수준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중증환자의 증가,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 장비도입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예산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본 보조사업들의 3개년 평균 실집행률이 모두 97%를 상회하여, 사업들의 실효성과 현장수요가 입증되었다고 평가됨

○ 본 보조사업들의 성과지표는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율'로 단일지표임

- 성과지표인 전문교육 이수율은 투입지표로 사업의 최종 결과를 대변하지 못함. 본 사업을 통한 119 구급서비스 질 향상이나 국민 편익증진을 포함할 수 있는 결과중심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4개년 연속 100%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당해 연도의 목표치가 전년도의 실제 실적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실적 추종형 목표치로 평가되는 등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또한 성과지표의 산식이 (전문교육 이수 누적인원/구급대원 수)로 전체대원 증가 시 성과가 과소평가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대원의 실질적 보유율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소방청
사 업	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찾아가는 상담실·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보조사업) 합산 예산이 '25년 3,704백만원→'26년 7,144백만원(+92.9%)으로 급증. 시도 50% 매칭 방식이 병행되는 구조에서 시도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며, 소방심리지원단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겸임 운영으로 역할 분담 실질화가 미완 · 인력 수급·품질관리·위탁역량 검토 미흡한 상태에서에서 단년도 예산이 과도증액됨에 따라 예산 감액 및 수행방식·대상자 선정·성과관리 체계 전반 재검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마음건강 선별-상담-회복-치료 단계 지원체계의 취지는 타당하며, 2025년 상담사 128명이 연간 105,950건(1인당 828건)을 처리하는 과부하 구조에서 인력 확충 필요성은 인정됨

- 찾아가는 상담실 및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소방청 직접 운영분과 시도 50% 매칭 보조 방식이 병행 운영되고 있음(보조사업 합산: '25년 3,704→'26년 7,144백만원, +92.9%).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2020년)되었으나 실제 서비스 제공은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보조 구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도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소방심리지원단의 역할 분담 소명은 인용 가능하나, 현재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부서 겸임으로 운영 중이어서 실질적 역할 분담은 확인하기 어려움

○ 보조사업 두 내역(찾아가는 상담실·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의 사업내용은 각각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으로 보건안전지원 목적과의 연관성은 인정됨. 부처가 소명한 선별→상담→회복→치료의 단계별 연계 체계도 일응 이해 가능함

- 다만 찾아가는 상담실의 핵심 성과 경로(상담 → 고위험군 발굴 → 병원 연계)가 실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성과 근거가 부족하며, 보조사업자(시도) 간 연계 품질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보조사업(찾아가는 상담실+스트레스 프로그램) 합산 예산이 '25년 3,704→'26년 7,144백만원(+92.9%)으로 급증. 찾아가는 상담실 단독으로도 3,014→6,204백만원(+105.8%). 상담사 128명→265명 단년도 137명 확충은 전문인력 수급·상담 품질관리 실현가능성 검토가 미흡하며, '1소방관서 1상담사'라는 행정목표 기반 산출로 정량적 수요 분석 부재

○ 시도별 분절적 위탁운영 구조로 행정비용 비효율 발생. 특정 기관의 장기 연속 수탁으로 인한 경쟁 제한 문제가 있으며, 보조사업 특성상 소방청 차원의 통합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음

○ 찾아가는 상담실·스트레스 프로그램의 시도 50% 매칭 보조 방식이 대폭 확대되는 예산 구조에서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도 부담 비율의 적정성 재점검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소방청
사 업	실화재훈련시설구축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2026년 추진 예정인 충북 등의 부지 조성 진척도를 면밀히 점검하여, 실질적인 공사 착수가 가능한 범위 내로 2027년 예산 재산정이 타당함 - 단순 시설 확충보다는 고도화된 집진 설비를 통한 환경 민원 해결 및 교관 양성 예산의 비중을 높여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함 - 최종평가결과: 사업개선 (지자체별 공정 단계 및 재정 여건과 연동된 국고 보조금의 탄력적 배분 권고)			

□ 종합평가 의견

1. 총평: 정책적 명분과 집행 현실 간의 괴리 보완 필요

○ 본 사업은 실전형 소방관 양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으로 정책적 정당성은 충분하나, 재정 운용 측면에서는 지자체별 인허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예산 배분'이 집행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특정 권역의 준비 부족이 예산 이월과 불용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착공 가능성에 기반한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함

○ 즉, 실화재 훈련을 늘려 소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 배분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2. 세부 항목별 핵심 진단

○ 행정적 선결 요건(부지·민원) 관리 미흡

- 일부 소방학교(광주, 제주 등)는 민가 인접에 따른 환경 민원과 부지 협소로 인해 '별도 부지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확보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됨

-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은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착공 가능 확약'이 없는 지자체의 예산은 실집행 시점까지 시기를 조정해야 함

○ 지원 단가 표준화 및 보조금 형평성 제고

- 개별 발주 중인 집진 설비 등 고가 특수 장비를 조달청 통합 발주 체계로 전환하여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3. 재정 효율화 및 사업 개선 방안

○ 첫째, '성과 기반 연동형 예산 배분' 도입이 필요. 지자체 준비 상태 등 행정 절차의 완결성을 점검하여, 준비된 지자체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함

○ 둘째, 성과지표를 '질적 중심'으로 전환해야. 단순 '시설 구축률' 대신 '훈련 만족도'와 '주민 민원 발생률' 등을 지표에 반영하여 시설의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해야 함

평가요약표

부 처	소방청
사 업	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25년 대형 사고를 계기로 화재예방 정책 강화 차원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화재 사각지대 해소 및 산불 초기 대응 강화의 정책적 타당성 및 사회적 효용 인정 · 비상소화장치함 '25년 실집행률 38.4%(이월 3,179백만원) 상황에서 '26년 추가 편성의 단계적 추진, 단독경보형 감지기 1차년도 실수요 검증 후 단계적 확대, 사업 구조 정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강화, 결과 중심 성과지표 보강 등이 사업개선 권고사항으로 확인됨

□ 종합평가 의견

○ 두 보조사업은 화재 사각지대 해소(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산불 초기 대응 강화(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함)를 위한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지속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부처 소명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평가의견에 인용·반영함

- [비상소화장치함] 단가 정정(7.5백만원/750만원), '25년 교부 시도 수 정정(10개), 추경 7월 지출·지방비 매칭 지연·경북 대형산불 집중 배정 등 불가항력 사유 인정. 국무조정실 합동 산불종합대책상 소방청 역할 명시 인정

- [감지기] 노후 아파트 5,584,897세대(83.5%) 화재 사각지대 확인, '24년 119빅데이터 분석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제2025-118-024호, '25.9.24)으로 화재안전취약자 개인정보 제공 법적 근거 확보 인정

○ 다만 두 보조사업의 안정적 지속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개선 권고사항이 단계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음

- (비상소화장치함 단계적 추진) '25년 이월분(3,179백만원) 우선 소진 진척에 따른 '26년 추가 편성(2,280백만원)의 단계적 집행계획 수립. 시·도별 집행역량 진단·차등 지원 체계 도입

- (감지기 단계적 추진) 「소방시설법」 제10조 의무설치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화재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관계를 정립하고, 세대내 초기 설치비용 지원(국비)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사후 유지·관리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1차 년도 실수요(신청률)와 중복 보급 여부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함

- (보조사업 관리체계 강화) 대상자 검증 표준화, 중복보급 방지 사후점검·환수 절차 명문화, 설치확인 표준 절차 마련.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점검률 확대, 취약계층 능동 관리, 비상소화장치함 동절기 관리)

- (성과지표·관리구조 보강) 결과(Outcome) 중심 지표 신설(보급 후 대피 성공률, 산불 초기 진화 성공률 등). 두 보조사업의 별도 세부사업 분리를 통한 집행·성과관리 투명성 확보

○ 종합적으로 두 보조사업은 정책 필요성이 인정되며, 집행실적 기반 단계적 확대 및 위 권고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사업개선 의견을 제시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국가유산예방관리강화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국가유산진흥원지원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국가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국가유산국제교류협력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운영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운영
사적관리
매장유산보호및관리지원
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관리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무형유산보호
고도 보존 및 육성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 문화유산 관람지원은 관람료 감면비용 보전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른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관람환경 개선비(감면비용의 9%) 등 부대비용이 편성되어 있어 효율적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문화유산 관람지원의 실집행률은 100%에 근접하나 보전적 성격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지원금으로 예산 집행률과 사업 효율성과의 연계성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 국가유산 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자치단체경상보조)는 매년 동일 금액(299백만원)으로 특정 지자체에 고정 지원되고 있어 운영의 공정성 제고에 관심이 요구됨 · 보조사업 전반의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보조금 투입 대비 성과의 객관적 검증에 한계 -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재정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사업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이 관람료 감면비용 보전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관람환경 개선비(감면비용의 9%) 등 부대비용이 함께 편성되어 있어 효율적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국가유산 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는 국가유산 산업 규모 확대와 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 간 연계, 기술 홍보,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으나 민간위탁 및 보조 방식 추진 시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문화유산 관람지원이 65개 사찰에 대한 관람료 보전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합리적인 보조금 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개선 검토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 등 주요 사업 관리지표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됨

- 또한 박람회 사업은 매년 동일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어 사업 내용 변화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 등 사업 운영의 탄력적 관리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문화유산 관람지원의 실집행률이 100%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해당 사업은 보전적 성격이 포함된 지원금 구조이므로 예산 집행률과 사업 효과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성과관리 체계 보완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고유의 성과지표가 미흡하여 보조금 투입 대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임

- 특히 문화유산 관람지원의 경우 관람객 수 증가가 사업 효과에 따른 것인지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므로 사업 효과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및 성과관리 체계 보완이 요구됨

- 또한 관람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체류시간 증가 등 실질적 정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결과지표 개발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국가유산예방관리강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이 세부사업은 '국가유산 안전관리 교육'과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역사업은 문화유산에 특화된 재해 예방수단으로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국가유산 안전관리 교육' 사업의 경우 소수 거주민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수행 방식의 개선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의견

○ ‘국가유산예방관리강화’ 세부사업은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국가유산 안전관리교육’ 내역사업은 국가유산을 온전히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교육을,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운영관리’ 내역사업은 평상시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정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으로써 국가유산에 대한 재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

○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온전히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평소 안전관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업목적은 타당하고 특정 유형유산의 관리 주체, 즉 고령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재해 발생을 사전에 감시, 정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은 국가유산 보호에 특화된 사업으로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현재 고령자에 대한 사실상 1:1 교육을 전제로 하는 ‘국가유산 안전관리교육’ 내역사업은 집체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법을 혼합하는 등 사업수행 방식을 개선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방재드론 사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의 부담 부분을 확대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산 안전관리교육’ 내역사업은 별도의 집행부진 사유 없이 사실상 예산이 모두 소진되고 있으나. ‘국가유산 방재드론시스템 운영관리’ 내역사업은 ’24년 83.8%, ’25년 92.6%의 실집행률을 보여 내역사업 간 차이가 있고, 예산의 일부가 불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이 사업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유산 안전관리교육 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분기별 집행점검, 사업운영 현장점검, 월별점검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진행하여 투명한 집행관리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세부사업은 안전교육 만족도를 성과달성 지표로 제시하고 있고, ’21년 이래로 100%를 초과하는 목표 달성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국가유산 안전관리교육 사업은, 화재 및 산불 대응과 방범 등의 사례가, 국가유산 방재드론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의 경우 24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사면 유실 및 붕괴 발견과 ’25년 고령 지산동 고분군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봉분 유실 발견이 성과로 제시되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 유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통합 운영을 통한 예산 효율화 필요성 있음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 '우리고장 국가유산활용 인지도 제고' 사업과,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전문인력 교육' / '사회적 약자 배려 국가유산 교육' / '어린이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제작, 보급' 사업은 내용간 유사성 높아 각각 하나로 통합 검토 -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내역 사업이나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 사업 등은 사업 모니터링 체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 기반 위에 추진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국가유산교육활용 진흥 사업은 「국가유산기본법」 23조(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에 근거한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국가유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자원으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주도적 정책 개입(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재정 및 관리, 활용 차원)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 동 사업은 세부 내역 사업들이 다수로 나뉘어져 있고, 세부 사업간 통합이 가능하게 보이는 사업들도 적지 않아 사업을 유형화하여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25년 기준 불용액은 552백만원이며, 내역 사업에서 국가유산체제 전환 안내판 전환 사업은 실집행률이 66.8%에 불과

○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하여 2023년 자체 점검, 지자체, 회계법인 합동보조금 집행 점검으로 8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2025년 보조금 사업 실태 점검에서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사업은 국가유산을 보존,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 인정되고 유용성이 확인됨

○ 다만, 사업들이 너무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부정 수급 의심 사례도 발생하여, 향후 사업의 유형을 단순화하고 이에 따라 민간위탁 수도 감축하여 사업을 단순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사업추진 체계 개편을 통하여 사업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비 매칭이 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국가유산진흥원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내내역 사업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내내역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을 재조정함 - 국제사회 대상 활동인지, 내국인 대상 활동인지와 같이, 자문기구 활동의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심포지움과 내국인 인식 개선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예산을 절감함

□ 종합평가 의견

○ 국가유산진흥원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한 특수 법인으로 국가유산과 관련된 보존, 활용, 보급에 있어 국가차원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은 기관 고유 기능 관련 활동으로 지원의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국가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국가문화유산진흥원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자문기구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국가유산 관련 활동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관련 지원 및 인식 제고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타 기관 사업들과의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지 않음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자문기구 사업은 국제심포지엄, K-Heritage 총서 발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인식 제고 사업 등을 강화하는 등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국제심포지엄의 경우 우천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2025년 참가자가 65명에 불과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의 실제 사업으로의 구체화 등은 시행되지 않은 채 2025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업이 보다 안정적 계획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제심포지움 참가자: 2023년 2,421명(온라인 참가자 포함), 2024년 109명, 2025년 65명

○ 동 사업이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둘 것인지 유네스코 무형유산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둘 것인지 목표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차원에서 사업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심포지엄과 아이디어 경진대회, 홍보 이벤트 등이 일회성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국제 사회 전문가와 내국인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 목표가 불분명함

-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기존 사업을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이 과정에서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은 만족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데,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에 만족했는지 여부로 동 사업의 성과를 접근하는 것은 보조사업 목적에 비추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보조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이 사업은 국가유산을 이용하는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공공재 성격의 국가유산이 갖는 비시장성이라는 사업적 제약을 고려하여 국가에 의한 정책적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대상 지원사업의 유형 중 체험, 공연,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한 국가유산청의 다른 사업에 의해서도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고, 시장기구에 의해서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모델을 가진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세부사업은,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의 사업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가유산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이 개발·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논리만으로는 지속적 보존·활용이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국가유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국가유산 소재 지역의 인구 감소·고령화로 저하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모델을 가진 관련 사업체의 초기 사업개발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의 사업임

○ 비시장성 공공재인 국가유산의 민간 사업화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유산을 보전·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육성의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음

○ 사회적 경제의 방식으로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는 것이므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나 민간자본 단독 투자로는 초기 사업 리스크가 높아 시장진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유산형 사회적 경제 분야의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마중물 역할로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유사중복가능성)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복가능성이 있으나 국가유산에 한정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부터 인증, 사회적기업의 전환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전략으로 하는 이 세부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에게 매년 일정 수준(’24년 5억원, ’25년 3.6억원의 예산으로 7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1년 이후 2 내지 6개 기업 등 소수 기업만이 신규 지정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있음

○ (추진방식의 개선필요성) 지원사업의 유형 중 체험, 공연,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한 국가유산청의 다른 사업에 의해서도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사업내용 개선이 필요함

- 지원 결과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에 대해 ‘우수 기업 선정 및 포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은 중복 지원에 해당하므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함(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통한 홍보로 충분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국가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가유산방문자센터건립' 세부사업은 '신안 해저유물 방문자센터건립 지원'을 내역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국가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라는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방문자센터의 수요자가 불분명하고, 아직 본격적인 건립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다는 점과 향후 구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유지, 관리 비용을 고려할 때, 예산을 대폭 감액하여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 종합평가 의견

○ ‘국가유산방문자센터건립’ 세부사업은, ‘신안 해저유물 방문자 센터 건립 지원’ 내역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국가유산을 활용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라는 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추상적으로는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업은 700년 전 중국, 고려(신안), 일본을 잇는 송·원대 무역선의 항해 및 난파와 침몰, 생존 등에 대한 증강 현실체험, 갯벌에 묻힌 700년 전의 보물선 신안선과 교역물품 등 미디어아트 구현, 세계자연유산 신안 갯벌 및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체험관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바, 수도권 집중된 문화 혜택을 극복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국가가 국가유산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문화유산을 향유하게 하려는 이 사업은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 사업은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측면을 부각하고 있으나 건축에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지연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수립과 집행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또한, 인근 관광지인 신안군 증도를 찾는 관광객을 방문자센터의 이용자로 예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안선을 전시하고 있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전시관 등 다른 유사 전시시설에 대한 방문수요를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전제에 있는 것으로 건물 구축과 향후 관리 비용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24년부터 ’26년까지로 예정된 사업이었으나 계약 체결 지연, 계절적 요인, 건립 부지 변경으로 사업예산이 예정대로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한데, 이미 ’23년 보조사업평가를 통해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음. 다만 이러한 결과는 시공 지연으로 때문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불가항력의 측면이 있었음. 최소 반기별로 국고보조금 현장/서면 점검을 하고 주기적으로 유선 협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보고받으며,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만으로 사업의 진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공정율을 기준으로 한 성과지표는 국가유산의 보호와 문화 향유라는 사업목적을 측정하는 적절한 성과지표로 볼 수 없으므로 방문자센터 건립 후 방문객의 숫자를 통해 지역 국가유산의 향유라는 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의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국가유산국제교류협력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한-아세안문화협력 지원 사업은 협의체 운영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내내역 사업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ODA 사업이 아닌 협력 사업인 만큼, 참가국이 공동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운영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한-아세안문화협력 지원 사업은 사업 성과를 각각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한-아세안 문화유산협력 지원사업은 국가유산국제교류 협력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28조(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에 근거, 지원의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한-아세안 문화유산협력 지원사업은 내역 사업으로 한-아세안 문화유산협의체 운영과 국내 문화유산 유관기관 회의, 주아세안 대사단 간담회, 국제포럼 등으로 진행되는데, ODA 사업이 아닌 만큼 이러한 협력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그 기반 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국제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협력의 취지를 살려 참가 국가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런 과정에서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

○ 정기적인 교류채널 확보 및 협력관계 유지라는 차원에서 동 사업의 운영 필요성이 인정되나,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그 후속, 연관사업으로 각 분야별 협력사업이 진행되는데, 동 사업 지원에 따른 문화유산 분야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집행 또한 적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유산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정부기관 등과 협의 진행 중이며 2027년 예산 반영을 계획하고 있어 환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성과지표인 국가유산 글로벌네트워킹 노력도(홍보대사 콘텐츠 업로드 건수, 국내외문화유산 긴급매입 검토활동 실적)는 국제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성과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성과지표에 기반한 성과 분석이 어려워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아카이빙된 콘텐츠 및 제작 콘텐츠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현 단계에서는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구축보다 콘텐츠 서비스 및 운영 활성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기관 운영비가 사업비 대비 높은 비중 차지하여 운영 효율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정부와 유네스코간 협정문(조약 제2440호)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이 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공동 발전의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지원의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

○ 아태지역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기 어려우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센터 운영은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강국 실현이라는 상위 과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적정하게 구성됨

○ 수혜 대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책결정자, 연구기관, 연구자, 아카이브 기관 및 일반대중 등으로 광범위하며, 전반적으로 지원 규모는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정보공유체계 활성화의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는 콘텐츠 활용도, 이용도 등에 근거하여 개발 방식 전반에 걸친 검토를 기반으로 지원규모가 산정될 필요가 있음

-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제작한 콘텐츠와 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는 자료의 최신성 및 조회 수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현 단계에서는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보다 콘텐츠 내실화 및 운영 활성화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구축 예산 감액과 새로운 내내역 사업 신설을 통한 네트워크 다변화 및 인식제고 노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업은 아태 지역 무형유산 종사자나 연구자, 정책 관계자뿐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2025년 보조사업 평가에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성과지표, 환류 체계 구축 미흡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환류 및 개선 노력과 관련하여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어떻게 환류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 환류 체계를 보다 제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제시된 성과지표(아태무형유산센터 교류실적)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라기보다 운영과 관련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점검한 지표로 보여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을 통한 성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여 개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지자체경상,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세계유산 홍보 지원과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은 모두 지자체 대상 공모 방식으로 세계유산 홍보 지원은 세계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중심 사업이며,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은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 및 추진 내용이 구분되고 있으나 일부 기능적 중복 가능성 검토 요구 됨 · 과오수급 징후(한국의갯벌 통합 모니터링, 129백만원)가 확인되어 보조금 관리체계 점검이 요구 됨 · 보조사업 고유의 성과지표가 미흡하여 보조금 투입 대비 성과의 객관적 검증에 한계 - 종합적으로 본 보조사업은 핵심 보조사업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의 실집행률이 최근 3년간 56%→64%→75%로 지속적으로 80% 미만이며,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 증액 근거가 불충분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세계유산법」에 따른 보존관리 지원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실집행률이 최근 3년간 80% 미만으로 지속되어 예산 규모가 실제 집행 수요 대비 과다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의 80% 증액은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와의 연계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활용프로그램 확대가 단순 행사 연계가 아닌 세계유산 활용 수요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반영하도록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량적 성과지표 관리 강화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이 12개 유산 79개 사업에 분산 지원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사업별 우선순위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 선정 단계에서의 집행 가능성 및 우선순위 검토 강화가 요구됨

- 또한 세계유산 홍보 지원과 활용프로그램이 모두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업 간 통합 운영 또는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화 검토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의 실집행률이 56%→64%→75%로 점진적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분할교부 및 연 4회 집행점검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집행 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집행관리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됨

- 또한 과오수급 징후(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129백만원)에 대해 후속 점검 및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별 고유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보조금 투입 대비 보존관리, 홍보, 활용 등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임

- 현재 세계유산 방문객 수 등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 측정에 머물러 있어 보존관리의 질적 수준, 홍보 및 활용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결과 중심 성과지표 도입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 내역사업은 2025년 실집행률 37.1%, 이월액 1,024백만원으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실집행 계획 검토 필요함 · 기관운영비(인건비·임대료 등) 비율이 전체 예산의 39%에 달하여 사업비 대비 과도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행정비용 검토 필요함 · 성과지표의 관대화 현상 해소 및 내역사업별 차별화된 결과지표 도입 · 종합적으로, 본 보조사업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환수라는 정책 목표는 타당하나, K-공유유산 사업의 실집행률 37.1% 등 집행 부진과 상대적으로 높은 행정비용으로 증액사유가 불충분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환수가 「문화유산법」에 근거한 국가 법정 책무로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재단의 국고 의존도가 100%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자체 수익기반 구축을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기관운영비(인건비·임대료 등) 비율이 전체 예산의 39%에 달하고 있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사업비 대비 행정비용 비중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의 2025년 실집행률이 37.1%(이월 1,024백만원)에 불과하여 예산 편성 규모가 실제 집행 역량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1차 집행률 100%와 실집행률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교부 이후 집행 관리 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성과지표 달성도가 매년 100% 수준으로 나타나 목표치 설정의 관대화 현상 개선이 요구됨

- 또한 활동 건수 중심의 산출지표로는 실질적 정책 성과를 충분히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내역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결과지표 개발과 도전적 목표치 재설정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사적관리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사적의 가치 보존과 국민의 향유권 증대라는 정책적 명분은 확고하나, 재정 투입의 급격한 팽창 대비 관리 체계의 실효성과 성과 관리의 과학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사업은 사적 유지관리, 경관개선 지원, 예비문화유산 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정 내역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어 사적의 학술적 연구나 보존 관리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최근 예산이 급증하였으며, 증액 규모의 대부분이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한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지원 규모 산출 근거의 객관성이 미흡함 - 전체 예산기준 집행률은 양호해 보이나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은 낮아 전체 집행률 수치와 실질적 현장 집행 실태 간의 괴리가 매우 큼 -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의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지자체 단계에서의 행정 지연 및 부지 확보 등 사전 절차 미이행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음 - 부정수급 적발 실적이 전무한 것은 점검 체계의 실효성 부족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관개선 사업 관련 현장 점검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 -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일부 이행되고 있으나, 근본적 구조 개선보다 예산 증액 위주의 수동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음 - 성과지표 설정의 관대화 및 부적절성과 결과 중심 지표로 개선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사적관리 사업은 사적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수행하는 국가 필수 사무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최근 기후변화, 도시개발 압력, 관광객 증가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사적의 물리적 훼손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다만 정책목표가 '보존·정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적의 사회적 활용 가치 증대 및 지역 균형발전 기여와의 연계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함

○ 사적 보존·관리 지원, 보존관리 개선 연구 등 핵심 기능 영역은 타 재정사업이나 민간·지자체 사업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고유성이 존재함. 다만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은 지자체 도시재생·도시재생사업과 기능적 차별성이 있으나, 지역활력 제고 차원에서 시너지를 위한 연계 노력이 필요함

○ 사업은 사적 유지관리, 경관개선 지원, 예비문화유산 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구조는 명확하지만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이라는 특정 내역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어 사적의 학술적 연구나 보존 관리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예산이 급증하였으나, 개소당 단가 산정의 적정성이나 물량 산출 근거를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향후 예산신청서상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사적 보존·관리 개선 연구' 예산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등 과다 편성되어 있음

○ 최근 3개년 집행률은 96~99% 수준으로 양호해 보이나, 이는 단순 교부 및 집행에 치중한 결과이며 실제 국정감사 지적 사항인 '현상변경 허가 사항 이행점검'의 경우 검증률이 2.3%에 불과하여 행정 관리의 실효성이 극히 낮음

○ 본 사업은 사적의 가치 보존과 국민의 향유권 증대라는 정책적 명분은 확고하나, 재정 투입의 급격한 팽창 대비 관리 체계의 실효성과 성과 관리의 과학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 중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을 중심으로 감액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매장유산보호및관리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국가의 법정 책무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명확하지만 하기 사유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사업 범위는 정책목표와 부합하며 각 내역사업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만, 내역사업 간 전략적 구조화 수준이 미흡하고 사업 종료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함 - 매장유산 발굴·보존·관리 전 과정에서 직·간접 수혜자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제도상 수혜자 범위 자체는 정책목표와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직접 편익을 받는 수혜자의 규모 대비 재정지원 규모의 정량적 분석은 다소 미흡함 - 최근 3년간 집행 수준은 대체로 양호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발굴조사 및 보존처리 사업은 현장 여건, 개발일정 변동, 유적 발견 규모 변동 등에 따라 집행 시점이 변동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 - 집행 절차가 다단계 승인·검토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행정비용 및 시간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 - 성과지표의 형식적 달성률은 매우 높으나, 목표치 보수성과 지표의 산출 중심 편중으로 실질적 정책성과를 설명하기 어려움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국가의 법정 책무로서 정책적 타당성은 명확하며 매장유산은 비가역적·비대체적 자산으로 훼손 시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제적 보호 필요성이 높음

- 국정과제 및 국가유산 규제 합리화 정책과 연계되어 발굴 비용의 국가 부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됨

○ 매장유산 조사비의 상당 부분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나, 국가적 보호 대상 유산 관리·긴급발굴·학술연구는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며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유물 보존처리 및 국가 귀속 유물 관리 비용은 시장 메커니즘으로 조달하기 어렵고 지역 간 재정격차로 인해 지자체 단독 부담이 곤란한 구조임

○ 매장유산 조사·보존·관리라는 고도의 전문 영역으로 타 사업과의 실질적 중복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자체의 문화유산 정비 사업과 일부 현장 조사업무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함

○ 사업 범위(조사→발굴→보존→관리)는 정책목표와 부합하며 각 내역사업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만, 내역사업 간 전략적 구조화 수준이 미흡하고 사업 종료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함

○ 본 사업은 매장유산 발굴·보존·관리 전 과정에서 직·간접 수혜자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제도상 수혜자 범위 자체는 정책목표와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직접 편익을 받는 수혜자의 규모 대비 재정지원 규모의 정량적 분석은 개선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집행 수준은 대체로 양호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조금 교부액 대비 실집행액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교부 이후 집행관리 체계는 일정 수준 작동하고 있음

- 다만 발굴조사 및 보존처리 사업은 현장 여건, 개발일정 변동, 유적 발견 규모 변동 등에 따라 집행 시점이 변동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

○ 외부 지적에 대한 즉각적 예산 대응은 이루어지고 있어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응하여 안전컨설팅 예산 증액, 관리감독자 교육 전파·모니터링 조치를 취한 점은 긍정적이며, 반복 지적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의 실집행률 부진에 대해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이라는 구조적 해결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국가유산법」에 근거한 국가의 고유 의무이며, 국정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사업 수행의 타당성이 높지만 하기 사유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부처 예산 기준 집행률은 양호하나, 보조사업 실집행 측면에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지속 점검이 필요함 - 2025년에는 교부액 10,000백만원 중 실집행액 7,007백만원으로 실집행률 약 70.1% 수준에 그쳐 미집행액 2,993백만원이 차년도로 이월 예상되며 대규모 이월의 반복 가능성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함. - 최근 부정수급 적발이 없는 점은 긍정적이나,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된 만큼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지속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단가 부풀리기가 적발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고가 장비·인경 도구 등의 조달 단가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가 만족도·전문가 평가 중심의 주관적 산출지표에 편중되어 사업의 정책목표(디지털화 완성도, 대국민 활용성)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원본 훼손 방지 및 대국민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DB 구축의 공공정책적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됨

- 문화유산 디지털화는 수익 창출 구조가 부재한 순수 공익사업으로 민간투자나 시장 기제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여 재정 직접 지원의 당위성이 확보됨

○ 팔만대장경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판 기초조사, 인경 및 디지털화, 종합 DB 구축을 수행하는 사업은 타 부처 및 지자체 사업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음

○ 부처 예산 기준 집행률은 양호하나, 보조사업 실집행 측면에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지속 점검이 필요함

- 보조사업 실집행률 기준으로는 2024년 95.8%로 양호하나, 2025년에는 교부액 10,000백만원 중 실집행액 7,007백만원으로 실집행률 약 70.1% 수준에 그쳐 미집행액 2,993백만원이 차년도로 이월 예상되며 대규모 이월의 반복 가능성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함

○ 기획·관리는 국가유산청이 실제 사업 수행은 민간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전달체계는 전문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설계되지만 추진절차별 행정비용의 고도화가 필요함

○ 2024·2025년 부정수급 적발이 없는 점은 긍정적이나,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된 만큼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지속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2023년도에 단가 부풀리기가 적발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고가 장비·인경 도구 등의 조달 단가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체계 구축이 요구됨

○ 2025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지적된 감축 권고를 수용하여 2026년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평가결과의 실질적 반영으로 인정됨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가 만족도·전문가 평가 중심의 주관적 산출지표에 편중되어 사업의 정책목표(디지털화 완성도, 대국민 활용성)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음

- 구축된 DB의 품질·정확도·활용 가능성 등 결과 측면의 성과 측정 지표 도입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관리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법정 책무 이행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하기 사유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내역사업 간 연계 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사업목표-추진전략-내역사업 간 성과 기여 경로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하며, 관리 활동 중심에 편중되어 결과지향적 구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총괄 실집행률은 외형적으로 안정적이고 세부사업 전체에서 이월은 3개년 전무함. 다만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보조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은 그간 부진하였으나 연차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추진주체별 역할분담은 형식적으로는 명확하나, 실무 단계에서는 기능 중첩 및 승인 단계의 다층 구조로 인한 비효율 가능성이 존재함 - 부정수급 관리현황을 점검하는 예방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의 실질적 운영 여부가 외부에서 확인되기 어려웠던 점은 향후 보완이 필요함 - 정책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2024년 실적이 급락하였음에도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2025년 목표를 대폭 하향 설정하였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관련 법에 근거한 국가의 법정 책무 수행 사업으로 상위 정책목표와의 정합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근현대문화유산은 급격한 도시화·개발 압력 속에서 사후 복원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자산이며, 민간 자율보존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 이하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므로 국가 개입의 타당성은 충분함

○ 본 사업은 사업 구성요소는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보호의 전 주기(발굴→등록→관리→활용)를 포괄하는 체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문화국가 실현 및 국가유산 체계적 관리 강화 정책과의 정합성은 전반적으로 확보됨

- 다만, 사업목표-추진전략-내역사업 간 성과 기여 경로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하며 관리 활동 중심에 편중되어 결과지향적 구조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집행 수준은 형식적으로는 안정적 범위에 속하고 이월도 전무하였음

- 다만,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보조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은 그간 부진하였으나 연차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본 사업은 국가유산청→지자체(보수·관리 실행 주체)→전문기관·시공업체(현장 수행)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한 공식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 다만, 추진주체별 역할분담은 형식적으로는 명확하나, 실무 단계에서는 기능 중첩 및 승인 단계의 다층 구조로 인한 비효율 가능성이 존재함

○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한 대응실적은 확인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환류 성과가 2025년에 나타남

○ 2025년 달성도는 정책고객 만족도 114.8%, 국가민속문화유산 성과 지수 105%로 외형상 우수하나, 성과관리 구조의 근본적 문제가 존재함

- 정책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2024년 실적이 목표 대비 하였으며, 2025년 목표(70.02점)는 국가유산청 자체평가계획의 측정방법(하강국면 시 상승 추세치 반영)에 따라 산출된 것임. 다만 급락 원인에 대한 세부 항목별 분석과 정책조치 연계 결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성과 개선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국가유산수리품질 향상을 통한 국가유산 가치 회복과 원형 보존의 정책적 취지와 공공성이 인정되어 정상추진으로 검토함 - 사업의 세부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업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 간 전략적 구조화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함 - 현재 수혜자 규모 및 향후 예상 수혜자 수를 감안한 정량적 재정수요 산출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추진방식과 전달체계를 검토할 경우 부처 직접사업, 보조사업, 위탁·출연 방식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내역사업별 추진 주체와 책임 범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부정수급 방지 예방 활동 시 전자집행관리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의 고도화 필요성이 있음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일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는 2025년 신규 설정 지표로 달성도 100%를 기록하였으나, 성과관리 체계의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정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정합성은 높은 편임

- 국가유산 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목재, 석재 등)는 생산여건 악화와 시장 수요 부족으로 민간 자생적 공급이 어렵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국가유산 수리의 진정성과 전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공공 차원의 비축·공급 개입이 필요함

- 전통재료 비축·공급은 시장성이 낮고 수익 창출이 어려운 순수 공익 기능으로, 민간 투자나 지자체 자체 재원만으로는 안정적 공급 체계 유지가 불가능하여 국고 지원의 당위성이 인정됨

○ 전통재료 비축·공급, 품질인증, 수리재료 산업화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내 수리재료센터가 유일하며, 타 부처·지자체의 유사 사업은 확인되지 않음

○ 사업 구성이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신설 기관 운영 특성상 사업 성과 축적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전통재료 비축·공급 대상 재료의 종류·수량·단가 산정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 대비 실제 공급 효과의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 내역사업은 2024년 교부액 3,308백만 원 대비 실집행 2,645백만 원(실집행률 80%)으로 집행잔액 663백만 원 발생. 반납대상 402백만 원은 전액 반납 완료하였으나, 보조금 편성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 정밀화가 필요함

○ 추진체계는 법령에 근거한 지정형 단일 수행기관 구조로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행정비용도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 외에도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관리·지원, 전통재료 진흥 등 복수의 내역사업을 동시에 수탁 운영하고 있어, 사업 간 예산 혼용 및 관리 복잡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으나, 관리 체계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모니터링 실질성 제고가 필요함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일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외부 지적 부재를 소극적 안정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자율적 내부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 사업 고유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재단 운영을 통한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 목적의 정책적 취지와 공공성은 인정되나 하기 사유로 사업개선이 필요함 - 수혜자 범위 자체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타당하나 구체적인 수혜자 규모(연간 현장 적용 건수, 기술 지원 대상 수 등)와 예산 규모 간의 정량적 연계 설명은 제한적임 -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없으며 관리 체계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보조사업 정산관리의 일부 취약성이 확인됨 - 외부 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외부 지적 부재를 소극적 안정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자율적 내부 환류 체계 구축이 미흡함 - 본 사업은 형식적 성과 달성률은 양호하나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정책목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성과지표 고도화가 요구됨 - 목표치 산출 방식이 과거 실적의 소폭 상향에 불과하여 중기적 성과 개선을 유도하는 도전적 목표로 기능하지 못하며 성과지표가 투입 지표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결과·효과 중심 지표로 개선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법률에 근거하여 재단 운영을 통한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정과제 및 국가유산 보존·관리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은 전반적으로 인정됨

- 전통건축수리기술은 수리대가기준·표준시방서 정비, 수리이력 DB 구축 등 공공재적 성격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고 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정부 재정 지원의 당위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품질 제고를 목표로 하여 국정과제 및 국가유산 보존·관리 분야의 중단기 정책 방향과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국가유산 보존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핵심 과제에 해당함

○ 본 사업의 직·간접 수혜자 범위는 제도적으로 특정 가능하며, 「제3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2024~2028)」에 중장기 수리정책과제와 사업계획이 명시되어 있어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은 확인됨

- 수혜자 범위 자체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타당하나 구체적인 수혜자 규모(연간 현장 적용 건수, 기술 지원 대상 수 등)와 예산 규모 간의 정량적 연계 설명은 제한적임

○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없으며 관리 체계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보조사업 정산관리의 일부 취약성이 확인됨

○ 최근 3년간 외부 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외부 지적 부재를 소극적 안정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자율적 내부 환류 체계 구축이 미흡함

○ 본 사업은 형식적 성과 달성률은 양호하나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정책목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성과지표 고도화가 요구됨

- 목표치 산출 방식이 과거 실적의 소폭 상향에 불과하여 중기적 성과 개선을 유도하는 도전적 목표로 기능하지 못하며 성과지표가 투입 지표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결과·효과 중심 지표로 개선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성은 긍정적이지만 집행 단계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사업 구조상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 조치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사업 목적과 상위계획 간 부합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의 시급성·우선순위 판단 기준이 평가 자료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함 - 부처 예산 집행 단계에서는 최근 3년간 집행률 100%로 형식적 집행 적정성은 확보되었으나, 보조사업 기준 실집행률은 구조적으로 저조하며 미반납액 규모가 확대되는 문제가 확인됨 - 중앙-지자체 보조사업 구조의 기본 틀이 사업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며, 다단계 행정절차는 국가유산 원형 보존과 보조금 집행 적정성 담보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정되지만 전달 효율성 저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실집행률이 낮거나 반복 이월이 발생하는 내역사업에 대한 위험 기반 집중 점검 체계가 미흡함 - 외부 지적에 따른 일부 구조 개편 조치는 이행되었으나, 감축 권고에 대한 실질적 재정 조정 환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지표 구성의 도전성 부족과 산출 중심 지표의 한계가 존재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법정 지원사업으로 국가의 재정개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명확하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수·관리·활용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민간 또는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 국가유산 훼손 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손실은 회복 불가능하거나 장기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사후 복구보다 사전적 재정투입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타당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됨

○ 국가유산은 비배제성·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로서 시장 기제에 의한 보존이 불가능하며, 소유자·관리자(지자체·민간)가 수행해야 할 보수·정비 비용이 막대하여 국가 재정지원 없이는 사실상 방치가 불가피함

○ 부처 예산 집행 단계에서는 최근 3년간 집행률 100%로 형식적 집행 적정성은 확보되었으나, 보조사업 기준 실집행률은 구조적으로 저조하며 미반납액 규모가 확대되는 문제가 확인됨

- 간접집행(보조사업) 기준으로 국가유산보수정비(일반)의 실집행률은 '23년 72.6%, '24년 70.4%로 2개 연도 연속 70%대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는 '23년 90.9%, '24년 88.5%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동일 사업군 내에서도 집행 효율성에 뚜렷한 편차가 존재함

- '24년 미반납액이 9,626백만 원(약 96억 원)으로 '23년 210백만 원 대비 급증하였으나, 이는 지자체의 비예치형 계좌 운용 특성 및 과년도 반납 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한 지방재정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집행 관리 체계상의 문제와는 구분됨. 다만, 미반납액 급증 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중앙-지자체 보조사업 구조의 기본 틀이 사업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며, 다단계 행정절차는 국가유산 원형 보존과 보조금 집행 적정성 담보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정됨. 다만 전달 효율성 저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 본 사업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실집행률이 낮거나 반복 이월이 발생하는 내역사업에 대한 위험 기반 집중 점검 체계가 미흡함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지표 구성의 도전성 부족과 산출 중심 지표의 한계가 존재함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이 사업은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보호를 규정한 관계 법령의 의무를 이행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사업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 동물,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 세부사업은 '2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아직 성과 달성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혹한기 서식 환경이 열악한 동물 보호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이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천연기념물동식물보호’ 세부사업은,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동물, 식물,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

○ ‘천연기념물 동식물 상시관리 강화(보조)’ 내역사업은, 기후변화 등 국내 환경 변화로 인해 겨울철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동물의 자연 먹이원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탈진 및 영양부족, 폐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민간단체의 단속적인 먹이 주기 활동만으로는 천연기념물의 장기적 보존과 개체군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비목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함

○ 이 세부사업은 ’25년에 시작된 사업으로서 92.85%의 실집행률을 보였고,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단체 등에 의한 소요량 조사를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호대상인 천연기념물과 근거리에서 서식환경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호단체에 의해 수행되어 특정 천연기념물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활동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하므로 현행 방식에 의한 천연기념물 보호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의 수요 조사 시 언론,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대량 폐사한 동물을 중심으로 우선 예산을 분배하여 지급하고, 먹이 주기 후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 폐사 개체 수의 증감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개선 필요) 성과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동물 구조, 치료 등의 보호활동 건수는 정량적인 지표로서 사업 추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 볼 수 있으나 보조사업 수행의 직접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보기에 미흡하므로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먹이 주기 후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 폐사 개체 수의 증감과 같은 성과지표 개선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무형유산보호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이 세부사업은 개별 예산 편성에 있어 구체적인 필요성과 배정 기준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사업이 갖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예산집행 기준 제시 등 사업개선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 사업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전승으로만 보존될 수 있는 무형유산 보호 목적의 다양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형유산 종목관리와 무형유산 저변확대 사업의 경우는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수행 방식의 개선으로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무형유산보호’ 세부사업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전형(典型) 계승을 통해서만 유지, 보전이 가능하지만 시장성을 갖기 어려운 전통 무형자산의 민간에 의한 단절 없는 전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직접적 제도운영과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임

○ 시장 수요 부족으로 민간의 안정적인 전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무형유산의 보호 및 미래세대 계승을 위해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바,「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국가유산기본법」등에 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이 사업은 무형유산원의 사업과 일부 유사·중복 여부가 문제 제기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 수단, 대상이 달라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사업은, 높은 변동성(무형유산 종목관리 내역사업)과 낮은 집행률의 제고라는 문제가 있으나 사업수행 방식 개선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사업은 ’23년 국고보조금 불용액·집행잔액 및 국립무형유산원 밀양 분원 건립사업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불용 등 3,34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24년에는 전승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참여율 및 수행능력이 문제되어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의 내용 부실 때문에도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음

- (집행수단의 다양화 및 보완) 무형유산 보전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무형유산 보유자 발굴 등과 같은 양적 지표 이외에도 지속가능하고 국민 일반이 향유할 수 있는 고품질의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집행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은 국가(국가유산청)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국가유산진흥원), 민간(대학) 등에 의해 수행되고 보조금법에 따라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25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에서 1건의 부정수급 사례(가족간거래)가 있었는바, 보조금 수급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이 사업은 ‘무형유산 지원 수혜자(단체) 실적’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무형유산 지원 수혜자는 매년 평균적으로 4.2% 정도 상승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고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국가유산청
사 업	고도 보존 및 육성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의 특성상 집행예측이 어려울 수 있으나 내역사업 간 집행 편차가 크고 실집행률의 구조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 진행 속도를 고려한 연차별 국비예산 조정 및 집행가능성에 따른 교부 등 집행률 제고방안 검토 필요 · 내역사업이 다양하고 사업 범위 확대되고 있으나 유형별·지역별 성과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성과지표 개선 필요하며, 특히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진흥 사업은 중장기 성과측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고도·역사문화권 보존·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6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4조 등 지원의 법적 근거 및 공공성이 인정되며 국정과제 방향에 부합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

- 5개 고도와 9개 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내역사업은 정책 연구부터 다양한 측면의 지역 지원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사업목적과 일치

- 사업대상이 명확한 만큼 지역 단위 내역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진행되며 정책수립 등 중앙의 역할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유산청이 직접사업으로 운영하는 등 효율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 보조사업은 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율 70% 또는 50%로 설정해 운영되고 있으며 설정된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유사사례 등에 비추어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 사업의 특성상 예산 예측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집행률 부진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예산효율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필요

- 사업단계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연차별 배분의 적정성 검토, 집행가능성에 따른 교부, 집행독려 등 다양한 측면의 집행률 제고방안 검토

- 유적발굴이 포함되지 않는 등 진행속도 예상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업 단계에서는 실집행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 성과지표는 설문결과에 기반한 전문가 만족도 및 거주민 생활 향상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적절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 다만 내역사업이 다양하고 사업 범위 확대되고 있음에도 유형별·지역별 성과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성과지표 개선 필요하며, 특히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진흥 사업은 중장기 성과측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보조)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정보화, 보조)
농촌통계조사분석(보조)
데이터기반농업활성화
농작업재해예방(보조)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신기술보급사업(보조, 지역지원)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 지역지원)
농촌자원소득화지원(보조, 지역지원)
농산업교육훈련지원(보조, 지역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농촌진흥청
사 업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유사중복 가능성, 내역사업과 세부사업 간 연계성 미흡 등에 따른 사업개선 및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함 -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의 경우,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어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함 -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은 세부사업 '농업기술협력지원'의 목적인 '공공·민간개발기술의 현장활용과 협력', '공공·민간기술 현장활용지원'보다는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가까움 - '기술보급체계다변화'와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은 통합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세부사업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공공·민간기술의 농업 현장활용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 식량안보, 수급안정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은 「농촌진흥법」, 「농업과학기술정보법」 등에 근거하고, 사업 범위가 적절히 규정됨

○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어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함

- 기초조사보고서에 제시된 콩 관련 사업비는 콩 생산·저장·가공·유통 자립형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 사업비로 농식품부의 컨설팅·시설·장비 등 지원과 유사함

○ 내역사업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은 세부사업 '농업기술협력지원'의 목적인 '공공·민간개발기술의 현장활용과 협력', '공공·민간기술 현장활용지원'보다는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가까움

○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은 자립형 식량작물 특화단지 사업화로 식량자급률 향상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므로 세부사업 '농업기술협력지원', 단위사업 '신기술보급사업'과의 연계성이 약함

○ '기술보급체계다변화'와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은 사실상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사업이므로, 재정 효율성과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해 두 사업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2024년, 2025년 실집행률은 81.8%, 89.8%, 93.1%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3년 평균 90% 미만으로 다소 미흡한 수준임. 따라서 지속적인 사업비 집행률 제고 노력이 이루어지고 집행률 개선방안 수립 및 추진계획이 이행될 필요가 있음

○ 사업 추진·전달체계는 효율적이며, 부정수급 등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짐. 단, 2023년, 2024년 미반납액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환류와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결과 및 영향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함

평가요약표

부 처	농촌진흥청
사 업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유사중복 가능성에 따른 예산 조정과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의 사업 구조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어, 사업 통합 검토가 필요함 -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를 늘리기 위한 사업내용 및 사업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세부사업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은 확산 거점마련, 데이터 활용 지원, 농업현장 기술 적용 및 모델화를 통해 스마트농업기술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농업 신기술보급'과 단위사업 '신기술보급사업', 국정과제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 산업으로 농업육성과 연관성, 정합성이 있음

-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현장 적용 및 확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본 세부사업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통한 농업경영체 소득 증대 및 식량 공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재정지원 타당성이 있음

○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테스트베드고도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등에 민간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개편하고, 민간과 지자체 간 협력 또는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공모하고 지자체 농촌지도사업기관 또는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수행주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성과 제고 및 재정 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통합하되 사업유형을 다양화(기술 실증·검증+모델확립, 모델도입+기반조성 등)하여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를 늘리기 위한 사업내용 및 사업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개년 실집행률은 95%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 추진·전달체계는 효율적이며 역할 분담은 대체로 적절함

○ 2024년 미반납액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 스마트팜 농가 생산성 향상률(%)은 결과 지표로서 본 사업의 실질적 성과 측정에 적합하고 최근 5년 성과목표를 달성함

평가요약표

부 처	농촌진흥청
사 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다음의 사업개선이 필요함 -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은 시·군지자체(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민간이 상기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개편을 검토하고, 민간과 지자체 간 협력 또는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대응 꿀벌수급안정지원'은 공공성이 큰 측면이 있으나 지원을 받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사적 편익도 발생함. 따라서 농가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과학적 분석 데이터 기반 농업정책 추진을 통해서 화학비료 저감, 고품질 퇴액비 생산, 안전 농산물 유통 등의 국가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공공성, 공익성이 커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음

○ 지역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및 영농상황의 효율적 관리와 농가 유용 영농정보 실시간 제공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은 시·군지자체(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민간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개편을 검토하고, 민간과 지자체 간 협력 또는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의 경우, 지자체가 분석 기반을 갖추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타당함. 단,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체계를 전체 시군에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기후변화 대응 꿀벌수급안정지원'은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세부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및 타 내역사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함

-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대응 꿀벌 수급안정지원 사업'을 청 신규사업인 '농업기상 재해 예방 세부사업'으로 이관을 추진하겠음"이라고 제시함

○ 기후변화 대응 꿀벌수급안정지원은 공공성이 큰 측면이 있으나 지원을 받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사적 편익도 발생함. 따라서 농가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후변화 대응 꿀벌수급안정지원은 3년 연속 실집행률이 상당히 부진함. 현재 집행부진 사유는 해소되었으나, 향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관련 예방 활동 및 자체 관리 노력, 부정수급 검토, 보고사업자 실적보고 제출 등 보조사업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부정수급 발생이 없음

○ 2023년, 2024년 미반납액의 반납 완료를 위한 조치 및 제시된 개선방안 이행이 필요함

○ 환경 보전, 농산물 안전 등 국민체감도가 높고 농업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다양한 항목에 대한 분석과 농업인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을 통해 국정과제, 프로그램, 단위사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함

평가요약표

부 처	농촌진흥청
사 업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보조)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일부 내역 사업의 낮은 실집행률, 제출 기한을 넘긴 보조사업자 실적보고 제출, 미반납액 등이 있어 사업개선 및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함 - 사업체계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내역사업과 세부사업 간 연계성 미흡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손실보상금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자 실적보고 제출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고 미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세부사업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은 '국제교역,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찰·방제 관리 체계 구축으로 농작물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 프로그램, 단위사업 등과 연관성, 정합성이 있고 정부개입 타당성이 있음

- 농작물 병해충·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방제 사업 추진은 시장 실패가 존재하여 지자체 및 민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지원 필요성이 큼

○ 사업체계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내역사업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과 세부사업 간 연계성 미흡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손실보상금의 불용액은 사전 예방 사업전환에 따른 과수화상병 발생 감소에 기인한 것임. 다른 내역 사업 중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의 실집행률이 2024년 82.4%와 2025년 92.9%로 낮은 편임

-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손실보상금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

○ 10단계 이상의 추진 절차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병해충 방제비의 경우, 제시한 계획대로 추진 절차 단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관련 예방 활동, 자체 관리 노력 및 후속조치 등 보조사업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부정수급 발생이 없음

- 단, 보조사업자 실적보고가 제출 기한을 넘겨서 제출됨. 따라서 제출기한 내에 실적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가 필요함. 또한, 미반납액 반납 조치와 패널티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평가와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대체로 적절히 조치함

- 단, 수행 중인 연구 완료 후 영농부산물을 자원화·순환농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병해충 피해감소 효과(%)는 결과 지표로서 적절함

○ 국정과제 '69-2 (재해국가책임제 도입) 이행으로 자연재해성 병해충 발생 피해 최소화'와 프로그램 목표 '병해충 신속 예찰·적기 방제 체계구축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농촌진흥청
사 업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정보화, 보조)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
1-2. 재정지원 필요성		○
1-3. 유사중복		○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
2-2. 지원규모 적정성		○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
3-4. 환류 및 개선노력		○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인력 운영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도 퇴사, 채용 공백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인력 활용 등 다양한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 인건비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 제시하고 있는 성과 창출의 범위, 폭이 크지 않으며, 창의적이며 혁신적 노력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존 관행을 벗어나 보다 혁신적인 성과 창출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 예상 성과를 핵심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의 필요성

- 「농촌진흥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지역 농업 정보화 육성을 위해 국가가 4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 및 재정 수반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지역 농업인 농업기술 역량 제고, 정보화 기술, 스마트 경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사업내용은 적정하게 구성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6년 국회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에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고,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해야 함.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①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26년부터 개선 사항을 이행 중임을 제시하였으며, ② 정기적 성과평가와 결과 점검을 토대로 1차 교부금 이후 최종 교부금 배정 시 차등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개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 집행 효율성

- 중도 퇴사 및 채용 공백 등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여도, 집행 잔액 발생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 인력 활용 등 다각적인 인력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한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가 요구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현재 제시되고 있는 성과지표는 온라인 판로 확대, 디지털 마케팅 기반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나 성과 창출의 범위와 파급력이 제한적으로 판단됨. 창의적·혁신적 접근 측면에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성과 창출 체계(플랫폼)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 성과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종합평가 및 제언

- 농촌진흥청은 '26년 보조금 교부 단계부터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 배분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27년 재정사업 평가 및 점검에서는 동 사업에서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평가요약표

부 처	농촌진흥청
사 업	농촌통계조사분석(보조)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통계자료의 활용도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전략 및 방안 마련, 성과지표 추가가 필요함 - '농촌통계조사분석'을 통한 통계자료의 활용도와 품질을 높이고, 통계 활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률을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집행 일정 관리 강화 등 사업관리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내역사업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은 농업인의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목표로 하며, 농업정책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타당함

- 국가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므로 국가 주도의 추진이 적절하며, 공공성 및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음

○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은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측면에서 다른 사업과 중복될 여지는 거의 없음

○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의 역할이 명확하고, 국가승인 통계자료의 작성을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 실집행률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집행잔액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 일정 관리 강화 등 사업관리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함

○ 자체관리 노력, 외부적발, 보조사업자 실적보고 등 부정수급 관련 사업 사후관리와 부정수급 방지 관련 예방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짐. 부정수급 발생이 없음

○ 2023년 미반납액 사유는 보조금 반환을 위한 세출예산과목 미편성으로, 반납 조치가 필요함

○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률을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을 통한 통계자료의 활용도와 품질을 높이고, 조사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내역사업 명이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인 점을 고려하여 통계 생산뿐 아니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심층 분석 계획 수립과 분석 기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결과는 농업인의 경영 의사결정과 농업 소득 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농촌진흥기관 종사자, 연구자 등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 국가 농업정책 개발 및 시행에 이바지함

평가요약표

부 처	농촌진흥청
사 업	데이터기반농업활성화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유사중복 가능성 등에 따라 사업 개선 및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함 - 내역사업 '농업재배 전주기 DB 구축'은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어 사업 개선 및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함 -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자동화 비중을 늘려가기 위한 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기술 도입, 방안 마련 등이 이행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체가 본 사업이 제공하는 정보 및 데이터 활용 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개선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내역사업 '농업재배 전주기 DB 구축'은 특정 농가 또는 민간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농업기술 연구·보급 및 농업경영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농업이 처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R&D 성과의 현장 적용 미흡 등을 해결하고자 하므로 공공성 및 공익성이 커 정부개입과 재정지원 타당성이 있음

○ 데이터 수집-활용-연계체계의 실효성 강화, 사업 성과 제고, 재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 내역사업 '농업재배 전주기 DB 구축'과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타 사업 간 기능적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수집-가공·분석-서비스 제공·현장 활용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생산성 향상 및 영농 현안 해결과 같은 사업 목표 및 세부 내용을 먼저 명확히 설정하고,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가공·연구·모델 개발·현장 실증·기술보급·서비스 제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목표 기반 사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표준화, 생산성 향상 및 영농 현안 해결을 위한 모델 개발·실증 기능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인프라 보급 및 확산을 담당하는 등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 이와 동시에 데이터 수집, 사업 목표 설정, 검증 및 실증된 모델·시설·기술 모델 보급 및 확산 등에 있어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농업재배 전주기 DB 구축'의 보조율은 지자체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의 데이터 수집 역할과 농촌진흥청의 데이터 관리 및 연구 수행 역할을 고려할 때 적절함

○ 내역사업 '농업재배 전주기 DB 구축'의 경우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자동화 비중을 늘려가기 위한 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기술 도입, 방안 마련 등이 이행될 필요가 있음

○ 미반납액에 대한 반납 조치가 필요함

○ 본 사업의 목적이 '품목별 재배 전주기 데이터를 구축하여 스마트농업 확산 및 데이터 기반 재배·경영의사결정 지원 기반 마련'이므로 농업경영체가 본 사업이 제공하는 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경영을 개선한 우수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고 사업개선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업경영체가 본 사업이 제공하는 정보 및 데이터 활용 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개선에 활용하는 시스템(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 간담회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농촌진흥청
사 업	농작업재해예방(보조)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농작업 재해위험 수준이 높고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농업 분야는 고령화 및 작업환경 특성상 재해위험이 높아 예방 중심 정책 필요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 - 취약지역 소외 방지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 실질적 수요·위험도 기반 예산 배분 체계 마련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재정지원 필요성) 농촌 고령화 및 분산된 작업환경 특성상 지자체 단독 추진 시 지역격차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국고보조(50%) 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역별 차등 배분 체계의 실효성 및 제도 개선 선행 필요. 부처는 보조사업연장평가 지적을 반영하여 2027년부터 적용할 '사업비 차등적용(안)'을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대안들은 지역별 실제 위험도나 수요 분석보다는 기존 예산 총액(834백만원)에 맞추어 설계된 한계가 있음

- (지원규모 적정성) 1안은 개소당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해 지원 대상을 139개소에서 52개소로 축소하였으나 배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2안은 지역 간 실제 농업인 수 및 위험도 격차에 비해 예산 차이(500~700만원)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차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집행효율성

-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 접근성 격차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환류 및 개선노력) 제도 개선 방안의 적용 시기 및 예산 확충 계획 간의 연계성 보완 필요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성과지표 체계 고도화 계획은 긍정적이나, 신규 사업의 성과 분리 측정 방안 마련 필요

○ 평가결과의 주요 근거 및 지적사항

- 내역사업 특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 온열질환 예방 사업은 원안 수용 가능하나,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 모델의 효과성을 평가한 후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취약지역 소외 방지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 고위험·재정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 배분 기준 마련

- 실질적 수요·위험도 기반 예산 배분 체계 마련 : 각 지자체의 실제 농업인 수, 고령화율, 과거 재해 발생 건수,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한 객관적 지표 기반 상향식 배분 체계 마련

평가요약표

부 처	농촌진흥청
사 업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의 부분 감액 및 운영 효율성 개선 필요 -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에 의한 감액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농업기계 안전교육은 농기계 이용 확대·고령농 비중 증가 속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조작법 등 교육과 점검 등에 대한 공공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세부 사업 중 농업기계교육지원, 교육용농업기계지원 등 2개 내역사업이 보조사업으로서 그 사업내용은 적정함

○ 농업기계 안전은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커서 예방 교육의 공공성이 인정되며, 농촌 고령층 등 취약 집단에 대한 교육·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재정지원은 필요함

○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자체 교육과정, 온라인 농기계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기계 순회 점검·수리와 병행하는 농기계 조작·안전교육 등과의 차별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 운전 자격증 제도 신설과 그 취득 실적을 성과지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고령화 실태 등을 감안하여 자격증 요건을 높게 설정하지 않더라도 필수 역량의 확보 실적을 명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안전운전 이행률, 사고(또는 사고관련 민원·위험행동) 감소 등 결과초점 성과지표 보완을 추진하도록 함

- 성과지표 보완을 통한 환류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통합교육 시범 운영과 같이 다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시도는 긍정적이며, 그 성과를 기초로 통합 운영을 확산하여야 함

○ (감액) 농업기계 교육 지원(보조),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보조)의 관련 예산은 지원하되,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에 의한 감액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농촌진흥청
사 업	신기술보급사업(보조, 지역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보조사업은 국가농업R&D로 개발된 신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실용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됨 · 기존 보조사업연장평가에 따라 예산 규모를 감축하였으나, 중기재정계획 투자계획에 따르면 '26년 37,780백만원에서 '29년 43,905백만원으로 대폭 증가를 계획하고 있어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함 · 농업의 경우 부가세 환급 품목별로 세금계산서 취소와 재발행 사례가 많다고 부정수급 이상징후 발생에 대해 소명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이상징후 적발과 해제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업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농업신기술시범사업은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 현장 실용화를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 지원이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농가 보급 목적으로 1962년부터 지원해 온 사업으로, 2025년 이후 안전 먹거리 공급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미래 유망 기술, 산업 지원 기술 중점 보급을 내용으로 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 사업임

- 본 보조사업은 위험 요인이 있으나 기술성이 높고 효과가 기대되는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1년 차(효과 검증), 2년 차(보완), 3년 차(기술 정립) 등 일몰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와 국가연구개발계획, 현장 이슈를 토대로 품질고급화기술, 안정생산기술, 미래생산기술, 산업기반구축기술 등 4대 중점사업으로 적절히 구성됨

- 지원대상은 개별 농가가 아닌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현장 수요가 비교적 높은 편임

- 2024년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사업 단위' 예산 규모가 '24년 64,275백만원에서 '25년 56,351백만원으로 약 10% 이상을 감축하였음

- '농업신기술(보조)'은 '24년 40,604백만원에서 '25년 37,780백만원으로 감축하였으나, 중기재정계획 투자계획에 따르면 '26년 37,780백만원에서 '29년 43,905백만원으로 증가가 계획되어 있어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 농업신기술시범사업의 실 집행률은 93.7%이며, 보조사업자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사업 추진 및 전달체계로 활용하고 있어 적절한 편임

- 부정수급 이상징후와 관련, 농업의 경우 부가세 환급 품목별로 세금계산서 취소와 재발행 사례가 많다는 부처 소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이상징후 적발과 해제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업 개선이 필요함

- 비수도권 비중이 90.6%로 균형발전사업 취지에 부합함

○ 본 보조사업은 최근(2025년) 기술 확산 농가증가율, 신기술 실천 기술수준 향상률 등 성과지표를 발굴하였고, 성과지표 적용 결과 신기술 수용시 미수용 농가보다 4~13배 소득 증가, 시범 농가 생산성 및 비용 절감 증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농촌진흥청
사 업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 지역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농산물 가공기술보급 및 융복합 상품개발 지원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삶의질 향상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내역사업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사업'은 수혜자에게 이용료 부담(수익자부담)케 하는 방식의 활용으로 감액 필요하며, 균형발전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수도권 비중을 상향하기 위한 사업 개선 필요 · 내역사업 '사업관리 및 운영'은 내용상 행정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전체 사업의 약 12%를 초과하므로 감액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및 융복합 상품개발 지원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와 농촌진흥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1개(특화자원 상품화 통합모델 시범 사업) 사업은 '26년 신규사업으로 재정사업 통합평가 대상 제외로 인해, 보조사업 평가대상은 2개의 내역사업임

○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 사업'은 상품개발 기반(시설 및 기계 등)을 이용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일정 수준의 부담 또는 이용료 부과 방안(수익자부담)을 실행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감액이 필요함

- 사업관리 및 운영 예산 규모는 전체 사업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비례하여 조정되지 않아 전체 사업의 12%를 초과하여 높은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은 집행률이 100%, 실 집행률('25년 종료 내역사업)도 적정한 수준임

- 농산물 가공기술보급,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사업은 농산물가공기술보급(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의 후속 사업으로, 도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신청받아 보조사업자를 선정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 및 전달체계가 적절함

- 부정수급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음

○ 본 보조사업은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설치, 품질인증 지원, 상품개발 시설구축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과 기관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창업자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 개선이 필요함

- 기존 평가 결과의 후속 조치 이행, 시설의 활용도 제고, 창업 연계 강화 노력

○ 본 보조사업의 비수도권 사업비 비중은 농산물가공기술보급사업은 94.8%이나, 농산물가공상품개발 기반조성사업은 83.3%로 지역균형분과 평균에 비해서 저조한 편임

- 농산물가공상품개발 기반조성사업의 비수도권 비중 증대를 위한 사업 개선 필요

○ 본 보조사업 중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 기반조성사업은 수혜자 부담 또는 이용료 부과를 통한 감액과 행정비용(전체사업 예산의 12% 초과)에 해당하는 '사업관리 및 운영' 예산의 감액 조치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농촌진흥청
사 업	농촌자원소득화지원(보조, 지역지원)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다음과 같은 사업개선이 필요함 -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은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또는 농경문화자원 보전 및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치유농업센터 구축(광역치유농업센터)'과 타 세부사업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중앙치유농업센터)'은 중앙과 광역 센터 간 기능 차별성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함 -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BF 본 인증 지연으로 이월액이 3년 동안 발생함.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세부사업 '농촌자원소득화지원'은 농촌소멸 위기 증가, 농업성장 정체 등에 대응하여 농촌의 치유·문화적 자원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 실현과 관계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부개입이 타당하며 재정지원 필요성 있음

○ 내역사업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은 농촌진흥청 R&D 성과인 지역의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 및 상품을 개발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와 연계한다는 점에서 농식품부 사업과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단,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또는 농경문화자원 보전 및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치유농업센터 구축(광역치유농업센터)'과 타 세부사업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중앙치유농업센터)'은「치유농업법」에 따르며, 사업목적과 지원대상, 역할에 있어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단, 중앙과 지역 센터 간 기능 차별성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본 사업의 재정 투입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실증·확산·교육·창업 지원·대국민 서비스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은 대상이 마을(주민)과 농장(농업인)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 수준의 자부담 부과가 필요함

○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BF 본 인증 지연으로 이월액이 3년 동안 발생함.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관련 예방 활동 및 자체 관리 노력, 부정수급 검토, 보고사업자 실적보고 제출 등 보조사업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부정수급 발생이 없음

○ 2023년, 2024년 미반납액이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평가감점 등의 불이익 조치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의 신체·심리적 건강증진 효과를 측정하는 결과 또는 영향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농촌진흥청
사 업	농산업교육훈련지원(보조, 지역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다음과 같은 사업개선이 필요함 - 「(현)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 발전협의회」운영을 통한 기관별 기능 구분·정립 및 단계별·대상별 교육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사업구조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실집행률 향상을 위한 관리와 지자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차년도 예산 차등 배정 조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교육사업 특성상 설문 기반 지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교육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정책적 타당성, 재정지원 필요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추진·전달체계 효율성,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환류 및 개선노력 등이 적절함

-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은 맞춤형 농업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인 기술수준 향상,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기반 확충, 신기술 현장확산 및 지역 농업경쟁력 제고, 농업인 교육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기여함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간 역할이 명확하고 추진체계가 효율적임

-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수행점검 연 2회, 사업관리 연 4회, 실적 보고 연 1회, 부정수급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적절히 관리함

- 실집행률 향상을 위한 관리와 지자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차년도 예산 차등 배정 조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25년 자율평가 및 연장평가 지적사항에 따라 예산 감액, 세부사업 이관, 성과지표 발굴 등 개선이 이루어짐

○ 단,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

-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은 주요 품목 등 지자체 특성과 현장 여건, 지역 농업인의 수요 등을 반영한 기술교육이며 수혜인원이 광범위함. 부-청 간 교육체계 효율화 및 집행 실효성 제고 노력이 상당히 이루어져 성과가 있었음

- 단, 향후에도「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 발전협의회」등 협의체 운영을 통한 기관별 기능 구분·정립 및 단계별·대상별 교육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사업구조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더해 상기 제시한 사업구조 재설계(부처별 영역 확정, (부)정책 교육, (청)기술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와 청 간 협의를 기반으로 '(가칭)농림식품 교육 통합 운영 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집행률 향상을 위한 관리와 지자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차년도 예산 차등 배정 조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교육사업 특성상 설문 기반 지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교육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산림청

탄소중립도시숲조성
국제산림개발협력(ODA)
산림탄소관리 및 활용 기반구축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산지관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산림휴양등산증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산림복원
백두대간보전
산림생물다양성증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불방지대책
사방사업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임산물수출촉진
묘목생산
목재생산관리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목재산업육성
목재이용증진
목재제품 품질관리
임업직불금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임업기능인양성
산림병해충방제
조림(지원)
정원 조성관리(지원)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탄소중립도시숲조성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2030 NDC 달성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됨. 당초에는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하락과 2024년 조성면적 목표 미달로 집행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면평가 결과 조성면적 미달은 재정당국의 예산 삭감 영향이 컸고, 자본사업의 집행률 저조 역시 사업 공기와 집행 기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확인되었음. 실제로 사업 기간을 고려한 실질 집행률은 85%를 상회하고 불용도 3% 수준에 그쳐, 표면적 집행률만으로 집행 부진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 당초 데이터 관련 내역사업 간 기능 중복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대면평가 결과 '기후대응도시숲 모니터링', '산림자원 통계분석 시스템', '도시숲 실태조사·통계관리', '관리지표 측정·평가'는 각각 기능이 구분되어 중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앞으로는 자본사업의 공기와 집행 기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률 관리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미 도입된 '도시숲 면적당 누적탄소흡수량' 지표가 사업의 본질적 성과를 보다 신뢰성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산출식의 타당성과 검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2030 NDC 달성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민간 투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당초 데이터 및 통계 관련 내역사업 간 중복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대면평가 결과 '기후대응도시숲 모니터링', '산림자원 통계분석 시스템', '도시숲 실태조사·통계관리', '관리지표 측정·평가'는 각각 기능과 활용 단계가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사업 간 데이터 연계와 공통 활용 범위는 보다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집중되어 상위계획 달성 기여도는 높음. 다만 수혜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단순한 포괄적 수혜 개념보다는 기후 취약지역 우선성, 지역별 실질 수혜 인구, 폭염·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함께 제시하여 사업 효과를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보조사업의 표면상 실집행률은 낮게 나타났으나, 조성면적 미달은 재정당국의 예산 미배정 영향이 컸고, 자본사업의 집행률 저조도 사업 공기와 집행 기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확인되었음. 실제로 사업 기간을 고려한 실질 집행률은 85%를 상회하고 불용도 3% 수준에 그쳐, 단순한 표면 집행률만으로 집행 부진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앞으로 표면 집행률뿐 아니라 사업 기간을 반영한 실질 집행성과를 함께 관리하고, 지자체별 사업 준비도와 집행 여건을 반영하여 물량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

○ 개편된 '도시숲 면적당 누적탄소흡수량' 지표는 사업의 본질적 가치인 탄소 흡수 기능을 직접 측정한다는 점에서 대표성과 상위 목표와의 연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만, 탄소흡수량은 수종, 수령, 관리 상태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산출식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국제산림개발협력(ODA)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가별 예산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략적 자원배분 체계가 불투명함 · 몽골 등 특정 국가에서 복수 사업이 병행되나 국가 단위 통합성과 분석은 미흡함 · 수원국 매칭 현물 자료가 부족하여 공동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검증이 제한적임 · 행정·종결 비용 비중 관리 기준이 부재하여 실질 개발효과 대비 효율성 평가가 어려움 · 성과지표가 산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과지표 계량화 부족 문제는 반복 지적됨 · 집행률 변동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부족함 · 사업 유형 간 통합관리 및 환류체계가 부재하여 시너지 창출이 제한됨 · 국내 정책 환류 체계가 미정립되어 장기적 성과 확산이 미흡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일반회계 100% 재원으로 추진되는 산림분야 양자 ODA 사업으로, 사막화 방지, 산불재난관리, 황폐림 복원, 혼농임업, 에코투어리즘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과 개도국 산림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 몽골·중남미·동남아·중앙아시아 등 다수 국가에서 민간경상보조 및 해외경상이전 방식으로 수행 중임

○ 기후변화 대응, 황사 저감, 국제사회 기여 및 국익 제고라는 목적은 타당성이 높고 특히 사막화 방지, 산불관리 시스템 구축은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 대응이라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함

○ 집행 및 관리 적정성 측면에서, 2024년 결산 106.95억원, 2025년 집행액 74.11억원, 2026년 예산 76.01억원으로 예산 변동성이 존재하고, 집행률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국가별 사업성과의 질적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특히 민간경상보조 및 해외경상이전 비중이 높아 성과 모니터링과 현지 통제 강화가 필요함

○ 성과관리 측면에서, 현재는 조림면적, 센터 구축 등 산출지표 중심 관리로 보이나, 탄소흡수량, 주민소득 지속성, 산불감소율 등 결과지표 체계는 강화가 요구됨

- 국가별 예산 배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 배분 체계가 불투명함

- 몽골 등 특정 국가에서 복수 사업이 병행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 단위 통합성과 분석 체계는 미흡함

- 수원국 현지 재정기여 수준에 대한 체계적 자료가 부족하여 사업의 공동책임성 확보 여부가 불명확함

- 행정·종결관리 비용 비중에 대한 관리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비 대비 실질 개발효과 검증이 제한됨

- 성과지표가 조림면적 등 산출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량화된 결과지표 부족 문제는 국회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산림탄소관리 및 활용 기반구축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당초 내역사업인 '온실가스 통계 DB 구축'은 타 사업과 기능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면평가 결과 본 사업은 지자체 기초자료의 수집·품질관리 지원,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은 현장 데이터의 생성·등록 기반 마련, 「산림탄소통계데이터 MRV 관리체계」는 축적된 데이터의 품질보증과 활용 고도화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능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당초 '특성화 대학 인재양성'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대면평가 결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전담기관으로서 위탁 성격으로 참여하고, 특성화학교 선정도 관련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선정 과정상의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성과지표는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활용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축 통계의 정책 활용도와 데이터 품질관리 성과, 배출 인재의 현장 연계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NDC 달성을 위한 산림 탄소흡수원 통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의 법적 의무 사항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민간에만 맡기기 어려운 영역임. 당초에는 타 사업과의 기능 중복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대면평가 결과 본 사업은 지자체 기초자료의 수집·품질관리 지원,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은 현장 데이터의 생성·등록 기반 마련, 「산림탄소통계데이터 MRV 관리체계」는 축적된 데이터의 품질보증과 활용 고도화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능은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 간 역할 분담과 데이터 연계 구조는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상위계획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투자 내용이 적절하며, 전국 17개 시도를 포괄하는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포괄성도 확보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 보조 인력은 단순 입력 인력이라기보다 자료 등록 여부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시스템을 통한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실질적 데이터 관리 인력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최근 3년 실집행률이 80% 후반대를 유지하며 전달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선 노력도 확인되었으며, 당초 우려되었던 인재양성 사업의 선정 절차 문제도 대면평가 결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전담기관으로서 위탁 성격으로 참여하고, 특성화학교 선정도 관련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기존 DB 구축률 지표를 100% 달성하는 등 사업의 추진 성실성은 높고, 2025년 신규 도입된 '품질점검실적' 지표도 데이터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시도로 평가됨. 다만 현행 지표는 사업의 실질적 활용 효과까지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축 통계의 정책 활용도, 데이터 품질관리 성과, 배출 인재의 산업계·현장 연계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성과지표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기관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나, 기관 정체성 및 기능 범위에 있어서 기능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므로 기관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진흥·규제 기능 혼재에 따른 이해충돌 리스크 존재하나 기능 및 구조 분리로 대처하고 있음 · 지표 설계 방식이 내부 집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외부 효과지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지원 성격의 보조사업이며, 주요 내용은 임산물 고부가가치화 지원,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 검사·인증, 임업경영체 컨설팅 및 산업지원, 목재 등의 품질관리·시험분석·인증, R&D 사업관리 및 성과확산, 임업정보통계 및 정책지원이 포함됨

○ 보조비목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편성되며, 기관은 진흥(지원) 기능과 동시에 인증·검사 등 준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기관지원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 구조인 만큼, 외부 보조사업자에 대한 부정수급보다는 기관 내부 위탁·용역·수의계약·검사/인증 이해충돌 리스크가 핵심 관리대상임

○ 특히 진흥(육성·인증) 대상 기업이 동시에 규제(시험·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이나 기관 차원에서 두 기능의 공간 및 조직을 분리하여 이해충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

○ 기관이 제시한 고부가가치 지정 확대, 산양삼 합격건수 증가 등은 우수한 수준의 성과이나, 해당 지표는 대부분 기관 자체 심사·지정·검사 결과에 기반한 내부 산출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정 이후 매출 증가율, 수출 확대율, 인증 유지율, 민간 자부담 확대율 등 외부 효과지표와의 연계성은 제한적임

- 성과가 우수하다는 결론 자체보다는, 지표 설계 방식이 내부 집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기관 정체성 및 기능 범위 문제에 있어서, 산양삼, 목재, 산림정보, 경영·컨설팅, 기술실용화, 취·창업 등 기능이 과도하게 포괄되어 있어 기관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산지관리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본 사업은 감액 및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산지 관리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보조사업인 '석재산업진흥기반 구축 및 산업활성화'는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부정수급 사례도 확인되어 감축이 필요함. 대면평가 결과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집행 부진과 관리상 문제가 함께 나타난 만큼 예산 조정은 불가피함 · 아울러 현행 문제는 단순 감액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움. 부정수급과 집행률 저조로 해당 지자체 자본사업에 대한 감축은 필요하나, 민간 채석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환경피해 저감 편익은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에 귀속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불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 방식의 근본적 재설계가 병행되어야 함 · 성과지표도 사업 효과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석재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환경피해 저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내역사업은 '합리적 산지관리'의 본질적 보전 목적과 비교할 때 산업 지원 및 민원 대응 성격이 다소 강한 측면이 있음. 다만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별도의 유사 세부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산지 정책 체계가 정책·계획·협의·관리·토석·석재산업진흥 기능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본 세부사업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보조율(40%)은 타 부처 유사 사업 대비 낮게 설정되어 재정 부담은 크지 않으나, 실질적 수혜 대상과 편익 귀속 구조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특히 해당 사업은 민간 채석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환경피해 저감 편익은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에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단순한 보조율 수준만으로 사업 참여 유인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환경피해 인근 주민 등 실질적 수혜 대상을 구체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 참여 의지뿐 아니라 비용 부담 구조와 지역사회 편익까지 함께 고려한 수요 분석을 통해 지원 규모의 논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 실집행률이 50~70%대로 낮고,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가족 간 거래 등 부정수급 사례도 확인되어 전달체계와 관리의 한계가 드러남. 다만 집행 부진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6년에는 이미 예산이 감축된 상태임.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불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커, 단순한 감액만으로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었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 자본사업은 우선적으로 감축하되, 자체적인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방식 자체도 함께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성과지표는 만족도와 단순 건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피해 저감이라는 사업의 실질적 결과를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환경피해 저감 효과, 재해 예방 기여, 제도 운영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국정과제와 연계된 법정 사업으로서 집행실적은 전반적으로 우수함. 당초에는 기준보조율 100%의 과다성이 우려되었으나, 대면평가 결과 본 사업은 수지차 방식으로 운영되어 자체수입 증가분이 국고 지원 규모에 이미 반영되고 있고, 행정비용도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해당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당초 전문업 역량 관리 지표의 미달이 구조적 문제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면평가 결과 이는 휴·폐업 기업이 모수에 포함되면서 나타난 측면이 있어 일정 부분 정상 참작이 가능함. 다만 휴·폐업 기업 증가는 산업 기반 약화의 신호인 만큼, 향후에는 경영 여건과 휴·폐업 현황을 함께 고려하여 지원 방식과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도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산림복지시설 이용 성과와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성과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실제 복지 산업 기반 강화와 정책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정과제와의 정렬성도 높음. 당초에는 동일 프로그램 내 타 사업과 서비스 내용 및 수혜 대상이 일부 중첩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면평가 결과 본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국립 산림복지시설 운영,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관리, 종합교육센터 운영 등 산림복지 체계 전반의 운영·관리 기반을 담당하는 사업으로서, 개별 시설 운영이나 현장 서비스 제공 중심의 타 사업과는 기능이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상위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나,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이루어져 있어 재정 운용의 탄력성에는 한계가 있음. 다만 당초 제기된 기준보조율 100%의 과다성 우려는, 대면평가 결과 본 사업이 시설 운영수입을 차감한 뒤 국고를 지원하는 수지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체수입도 증가 추세에 있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는 수지차 방식의 장점을 살려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 효율화와 자체수입 확대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 집행률이 100%에 근접하여 매우 우수하며, 부정수급 모니터링 체계와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도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음. 또한 행정비용도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관리비 등 최소한의 경상경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사 공공기관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용자 수 지표는 도전적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 양호함. 반면 신규 도입된 전문업 역량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대면평가 결과 이는 휴·폐업 기업이 모수에 포함되면서 평가 점수가 구조적으로 낮아진 영향이 있어 일정 부분 정상 참작이 가능함. 다만 휴·폐업 기업 증가 자체는 산업 기반 약화의 신호인 만큼, 단순 비율 목표만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성과지표는 시설 이용 성과와 전문업 육성 성과를 구분해 관리하고, 전문업 부문은 경영 여건과 휴·폐업 현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산림휴양 등산증진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산림휴양 등산 증진 세부사업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세부사업의 유사성을 가지는 내역사업을 통합함 - 국립산악박물관 유물구입사업은 시설공사 등 HW 사업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당 사업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국립산악박물관운영)으로 통합함 ·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사업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함 - 산림휴양서비스 활성화 내역사업 중 복합재해 위험성 사전진단 내내역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함 -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은 문제(최근 3년 69.6%)를 개선하여야 함 - 2023년 보조사업 평가 지적사항(실집행수준 개선, 성과지표 보완 등)을 반영하여 사업 보완을 하도록 함

□ 종합평가 의견

○ 산림휴양 등산 증진사업은 숲길·등산·산림레포츠 및 산림휴양서비스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산림휴양 등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기본적으로 인정됨. 다만, 본 사업은 타 세부사업과 내역사업간 유사성이 있어, 일부 내역사업의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함

- 본 사업의 국립산악박물관 유물구입 내역업은 시설공사 등 HW 사업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당 사업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국립산악박물관운영)으로 통합이 요구됨

○ 본 사업의 산림휴양서비스 활성화 내역사업 중 복합재해 위험성 사전진단 내내역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서 예산의 전액 삭감이 요구됨

- 복합재해 위험성 사전진단사업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안전진단 비용 일부(50%)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의 책임은 시설 운영자인 지자체에 있고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휴양림의 안전성 제고 효과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낮음(2023년 보조사업 평가 지적 사항)

○ 본 사업의 3년 예산 실집행률은 69.6%로 감액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함

○ 본 사업의 성과지표인 “자연휴양림 정밀안전진단 후속 조치율(%)”은 성과목표는 산림휴양서비스 활성화 내역사업 중 복합재해 위험성 사전진단 내내역사업에 대한 성과만을 평가할 수 있어, 대표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사업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함 - 무료 운영되는 사업(국립산악박물관, 국립등산학교 등)의 유료화를 진행하여 투입 예산을 감액함 - 성과목표 수치를 도전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만족도 성과 실적(2025년)을 명시함			

□ 종합평가 의견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 확산과 고품질 등산·트레킹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기본적으로 인정됨

○ 본 사업의 일부 내역 사업의 유료화를 통한 사업 예산의 감액이 필요함

- 무료 운영되는 사업(국립산악박물관, 국립등산학교 등)의 유료화를 진행하여 투입되는 예산을 감액함

○ 본 사업의 3년 예산 실집행률은 98.9%로 적절함. 사업 추진 및 전달체계 효율성,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관련한 문제는 없고, 2024년 보조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및 개선 노력이 확인됨

○ 본 사업의 성과지표인 “한국등산 ·트레지원센터 이용자수 (명)”의 성과 목표 수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등산·트레킹 서비스 만족도(점)”에 대한 2025년 성과 실적 수치를 명시함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산림복원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당초에는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유사 사업 간 기능 중첩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면평가 결과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과는 기능적 차별성이 인정되었고, 내역사업 간에도 대상지와 추진 체계의 차이가 확인되었음. 2025년 실집행률은 산림생태복원 50.1%, 대규모산림복원 34.7%,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46.4%로 저조하였으나, 이는 국가유산청 영향진단 절차 추가, 산주 동의 지연, 군립공원 편입 등 외부적·행정적 제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 불가피성이 인정됨. 복원사업은 지연될수록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감액보다 연차별 계획에 따른 엄정한 집행 관리가 중요함 · 당초 제기한 보조율의 적정성 문제도 대면평가 결과 사방사업과의 유사성이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70% 보조율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현행 성과지표는 면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실질적 복원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성과지표는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신규 복원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한 경우에 한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으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 자생력이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당초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백두대간보전'과 '산림생물다양성증진', 내역사업 내에서도 중복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대면평가 결과 각 사업은 목적, 대상지, 규모, 기간, 추진체계가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복원사업 간 기능과 대상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업별 역할과 연계 구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상위 법정 계획에 근거한 전 주기적 복원 체계는 적정함. 보조율도 대면평가 결과 사방사업과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훼손 산림 복원사업이 지역 개발 수요와 상충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70% 수준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구조는 지자체 보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복원 실행은 지자체가 담당하되, 타당성 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전체 집행률은 양호하나, 대규모 복원 및 산불 피해지 복원 등 핵심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은 최근 낮은 수준을 보였음. 다만 이는 국가유산청 영향진단 절차 추가, 산주 동의 지연, 군립공원 편입 등 외부적·행정적 제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복원사업 지연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감액보다 계획된 복원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지자체 보조 시 산주 동의, 영향진단, 관계기관 협의 등 주요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미 착수한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신규 복원사업도 유사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준비도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경우에 한해 추진해야 함

○ 현행 성과지표는 누적 면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물리적 복원 실적은 보여줄 수 있으나,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질적 성과를 충분히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식생 정착, 생태계 회복, 복원지 안정화 등 질적 성과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백두대간보전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본 사업은 감액 및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국가 생태축 보전이라는 정책적 취지는 타당함. 다만 핵심 내역사업인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60% 내외에 머물고 있음. 특허공법 선정 심의, 전신주 이설 협의 등 행정절차의 영향으로 일정 부분 정상 참작이 가능하나, 예산 비중이 큰 사업에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집행 가능 물량과 사전 준비도를 반영하여 사업 규모와 예산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당초 주민지원 사업은 보전 목적과의 연계성이 약한 것으로 보았으나,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과 행위 규제로 영향을 받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전 연계형 지원 사업으로서, 주민의 소득기반을 보완하고 보전 정책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다만 현행 성과지표는 사업 효과를 변별력 있게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예산 조정과 함께 생태축 복원 성과, 훼손지 개선, 주민 참여를 통한 보전 기여 등 사업 효과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백두대간 보호라는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은 높음. 세부사업 내에 복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성격이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주민지원사업 역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과 행위 규제로 영향을 받는 주민의 소득기반을 보완하고 보전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보전 목적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단순한 생산시설 지원이 아니라 보호지역 관리와 주민 상생을 위한 보전 연계형 지원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업 논리와 지원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수혜 대상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보조율도 사업 특성과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음

○ 세부사업 전체 집행률은 높으나, 핵심 내역사업인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60% 내외에 머물며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2025년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실집행은 다시 부진하였고, 그 결과 2026년에는 예산이 재차 감축되었음. 특허공법 선정 심의, 전신주 이설 협의 등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은 일정 부분 정상 참작이 가능하나, 예산 증액 이후에도 동일한 부진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외생 변수라기보다 사업 준비도, 공정 관리, 지자체 집행 여건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내역사업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은 실집행 가능 물량과 사전 준비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 규모를 현실화하고, 집행 여건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과 집행 점검을 보다 엄격히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성과지표는 주민지원 부문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으며, 일부 지표는 사업 효과를 변별력 있게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사업의 핵심 목표인 생태축 복원과 훼손지 개선 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성과지표는 단순 참여율이나 수입 증가율보다 생태축 연결성, 훼손지 복원 성과, 주민 참여를 통한 보전 기여 등 사업의 핵심 목표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결과 중심 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산림생물다양성증진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세부사업 내 산림생물자원관리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산림식물자원 보전관리)의 2025년 실집행률이 19.4%로 현저히 저조하여 감액이 필요함 - 산림식물자원 보전관리(무안 후계원 조성) 사업은 2025년 교부예산 500백만원 중 실집행 97백만원, 이월 403백만원으로 실집행률 19.4%에 그쳤으며, 2026년 예산은 3,850백만원(+670%)으로 대폭 증액됨

□ 종합평가 의견

○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은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산림보호구역의 관리·확대,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관리, 산림보호 예방·단속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2026년 예산 22,874백만원은 2025년 본예산 15,828백만원 대비 44.5% 증가한 것으로, 이 증가분의 대부분(96.1%)이 산림생물자원관리 내역사업의 시설조성 사업(국립산지생태원조성, 무안후계원조성)에 기인함. 해당 사업들의 2025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산림식물자원 보전관리의 보조사업 실집행률이 19.4%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산림식물자원 보전관리(무안 후계원 조성) 사업은 2025년 교부예산 500백만원 중 403백만원이 이월되어 실집행률 19.4%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3,850백만원(+670%)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이상을 종합할 때, 산림생물자원관리 내역사업 내 시설조성 사업(산림식물자원 보전관리)에 대하여 2025년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기간 연장 및 잔여예산의 적정 배분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와 단계에 있음에도 국고 100% 보조와 경직성 운영비 지출이 지속되고 있어 재정 효율성 측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대면평가 결과 자체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질 보조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또한 자본예산도 관람객의 인식 제고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2023년에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그 규모가 전체 예산 대비 매우 작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추가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음. 따라서 예산 감액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보완 사항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함 · 현행 성과지표도 사업의 실질적 운영 성과와 공공적 효과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상위 프로그램과의 연계성도 갖추고 있음. 동일 프로그램 내 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대면평가 결과 본 사업은 산림청이 조성한 수목원과 정원의 운영, 생물자원 보전, 정원문화 확산 등 정책의 이행 기반을 담당하는 사업으로서 타 사업과 기능이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만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생물자원 보전, 정원문화 확산 간의 연계 구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사업과의 단순 통합보다는 역할 구분을 유지하되, 각 사업이 상위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와 상호 연계 구조를 보다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출 구조상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경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면평가 결과 자체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질 보조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백두산호랑이 전시장 조성과 주차장 정비도 각각 고유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용객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었음

- 보조율 자체나 자본사업 구성을 이유로 한 일률적 조정보다는, 자체수입 확대 추세를 지속 관리하고 자본사업이 실제 운영 성과와 공공적 가치로 연결되도록 우선순위와 성과관리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 실집행률은 100%에 근접하여 전반적으로 집행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관리 실태 점검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도 1건 확인되었으나, 해당 부정수급은 2023년에 발생한 1건으로, 규모가 약 135만 원 수준에 그쳐 전체 예산 대비 매우 작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추가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음. 따라서 이를 예산 감축 사유로 보기보다는, 집행관리 보완 필요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 향후 집행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 징후 항목에 대한 디지털 모니터링과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반복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 즉각적인 집행 통제, 환수 및 제재, 재발 방지 환류가 연계되도록 내부통제 방식을 보완해야 함

○ 중장기 목표와 연계하여 매년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방문객 수 중심의 지표만으로는 사업의 실질적 공공성과 정책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단순 방문객 수 외에 생물자원 보전 가치, 시설 운영의 공공적 효과, 정원문화 확산 기여도 등 실질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산림재해일자리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산림재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의 정책적 필요성은 높고 집행 실적도 전반적으로 양호함. 당초 제기되었던 유사 인력사업과의 중복 우려도 대면평가 결과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전문 지원 기능을, 산림병해충방제의 이동단속초소는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본 사업의 산림재난대응단은 산림재난 현장 대응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됨 - 다만 드론 등 첨단 기술 도입과 통합 인력 운영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는 이에 충분히 맞춰 고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현행 '산림재해 예방면적'과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률'은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은 있으나, 실질적 위험 저감 효과까지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국정과제인 ‘산림재난 총력 대응체계 구축’과 연계되어 정책적 타당성이 높고, 공공재적 성격상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도 인정됨

○ 본 사업은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운용을 핵심 수단으로 하며, 대면평가 결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병해충방제 인력, 산림재난대응단 간의 기능 중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첨단 장비 도입과 인력 통합 운영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목표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드론, ICT 등 첨단 장비 활용과 통합 인력 운영에 따른 예방·관리 효율성 향상을 반영하여 ‘산림재해 예방면적’ 등 주요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성과지표는 현재 ‘산림재해 예방면적’과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재난 예방 활동의 범위와 사전 대응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은 있음. 다만 ‘산림재해 예방면적’은 활동 규모를 보여주는 데에는 유용하나 예방의 질적 수준까지 직접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률’도 사전 점검 이행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위험 저감 효과까지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함

- 현행 지표는 유지하되, 향후에는 점검 이후 후속 조치 이행 정도, 취약지역 위험 저감 효과 등 재난 예방의 실질적 성과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산불방지대책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주요 보조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수요·위험도 기반의 차등 배분 기준 명확화 및 대규모 증액 사업의 집행 가능성 확보 방안 제시 필요 - 보조사업 예산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되고 있으나, 동일 규모 중심으로 반복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별 산불 위험도 및 사업성과를 반영한 차등 배분 기준의 명확한 제시 필요 - 산불방지 안전공간(300-13)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106개소(88%) 대상지 선정 완료 등에 따른 추진사항이나, 법 개정 진행 중 상황에서 잔여 부지 확보 방안 구체화 및 집행 가능성 제시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법적 근거(산림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산림재난방지법) 명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대형화·동시다발화 추세로 정책적 타당성 인정

- 다만, 내역사업 전체의 성과를 '산불 건당 피해면적'이라는 단일 결과 지표로 포괄 관리하고 있어 개별 사업의 성과 기여도 파악 및 예산편성 환류가 어려운 구조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소화시설 운영, 안전공간 조성, 산불대응센터 구축 등 보조사업은 매년 동일한 운영 규모와 예산으로 반복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산불 발생 감소 또는 초기 진화율 향상에 미친 효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 부족

- 매년 상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있으나, 지역별 산불 위험도·관리면적 등을 반영한 차등 배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투명성 개선 필요

○ 집행 효율성

- 2025년 집행잔액 증가는 보조금 정산 절차 진행 중으로 최종 집행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산림재해드론 활용 등 일부 내역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발생 원인 분석 및 차년도 예산편성 반영 여부 제시 필요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현재 성과지표('산불 건당 피해면적')는 산불방지 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결과지표로서 의미가 있으나, 기상조건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개별 보조사업의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평가결과의 주요 근거 및 지적사항을 작성

- 보조사업 예산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되고 있으나, 동일 규모 중심으로 반복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별 산불 위험도 및 사업성과를 반영한 차등 배분 기준의 명확한 제시 필요

- 산불방지 안전공간(300-13)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106개소(88%) 대상지 선정 완료 등에 따른 추진사항이나, 법 개정 진행 중 상황에서 잔여 부지 확보 방안 구체화 및 집행 가능성 제시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사방사업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방사업은 산사태 예방을 내세우지만, 구조물 설치의 예방 효과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와 민간의 입장 차이도 있음 · 예방 필요성은 인정되나, 산사태·침식 등은 복합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구조물 설치만으로 대응하는 방식 외에도 비구조물 등의 환류 필요 · 신규 설치·확충에 예산 증액이 집중된 반면, 관리 예산 및 점검 등은 상응하게 증액되지 않아, 예산 편성의 점검이 필요함 · 따라서 현 형태의 사방사업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증액의 타당성은 다소 미흡해 예년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 제3차 사방사업 기본계획(2024~2028) 등에 근거하여 산사태·토석류 등 산지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사업으로서 정책 목적과 공익성이 인정됨

○ 다만, 현행 사업이 구조물 중심의 확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부처, 학계, 시민사회 간 견해 차이가 있는 만큼 사업의 수월성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집행 성과를 토대로 객관적 근거를 축적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특히 사방댐, 산지사방, 해안방재림 등 주요 사업은 일정한 예방 효과를 시사하는 연구와 사례와 반대로 벌목, 임도, 숲가꾸기와 같은 산림경영사업, 인공구조물 설치 등이 오히려 자연훼손이나 2차 피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어, 정책 목적과 사업 수단 간 재점검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추후 사업 예산 중 검증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 주기적 전수조사 또는 대규모 효과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거 논리가 마련되어야 함

○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규모와 확대 방식의 적정성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 산사태취약지역 증가와 생활권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재정투입은 타당하나, 1986년 이후 사방시설이 누적 설치되어 온 상황에서 추가 증설이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지, 기존 시설이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점검은 미흡함

- 더욱이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14.4% 증액되었고, 산지사방·산림유역관리 등 일부 내역사업은 대폭 확대됨. 결국 재정지원은 필요하더라도 현재의 산림 내부 토목 중심 구조는 산사태 위험을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 역시 있음

- 국정과제와 정부 요구를 근거로 한 관성적 증액과 공사 면적 확대보다, 지역·시민사회·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예방사업 실행 방식의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향후에는 사방사업 시행지역과 미시행지역 간 비교, GIS 기반 시설 위치와 산사태 발생지점의 중첩 분석, 시설별 유지관리 이행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및 과학적 측정 방법 개발이 요구됨

○ 종합하면, 사방사업은 공익적 목적은 인정되나, 사방시설의 규모와 면적을 급격히 확대하기보다, 사방사업에 대한 실증적 점검과 대안적 제도 마련을 우선 추진하며, 과학적 방식을 도입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적 타당성을 확보해 가야 할 것임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보조사업 수행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 보완 필요 · 조사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은 조사 품질 저하 및 집행 불확실성 우려가 존재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 본 사업은 「산림재난방지법」('26. 2. 1. 시행)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정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보조사업 성과가 세부사업 대표지표(위기경보 적시발령 비율, 우기 전 응급조치 이행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지표 체계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보조재원 투입의 정책효과를 분리·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임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실태조사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의 일부로서 기초조사 결과(60점 이상)에 따라 이행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되어 취약지역 확대에 직접적 정책성과가 있음

- 다만, 실태조사 완료 개소수 외에 조사결과의 정책 활용 수준(취약지역 지정 반영률, 산사태정보시스템 DB 등록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가 부족하며, 실태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 예산 증가와 조사결과 활용성과 간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보완 필요

○ 집행 효율성

- '26년 조사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조사 수행체계 정비, 계약·검수 일정 조기 착수 등 강화된 집행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조사물량 급증에 대응하여 조사결과의 위험등급 산정, 검수, 산사태정보시스템 등록, 취약지역 지정 반영 여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체성 보완 필요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 소명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확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연 2회 점검, 사방사업 우선시행,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집중 관리가 시행되어 우기 전 응급조치 이행률 지표와의 연계성이 인정됨

- 다만, 현 성과지표는 보조사업 수행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보조사업 수행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 보완 필요

○ 평가결과의 주요 근거 및 지적사항을 작성

- 보조사업 수행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 보완 필요

  - 조사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은 조사 품질 저하 및 집행 불확실성 우려가 존재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임산물수출촉진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원기업 반복·집중 지원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신규기업 참여 확대 장치 등 구조적 개편의 지연 - 중기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영세업체 지원 강화 및 추적 관리 및 사업효과성 점검이 필요함 - 수출 지속률·재계약률 등 질적 성과지표의 미흡 - e나라도움 외 현장 기반 성과검증 체계의 부족 - 타 부처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과의 역할 조정 및 전략적 통합의 미흡

□ 종합평가 의견

○ 임산물수출촉진 사업은 임산물 생산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산림소득을 증대하고 임업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조사업임

- 주요 내용은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홍보·마케팅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등이며 사업은 국고 보조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출기업 또는 관련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함

○ 임산물 산업은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와 산촌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은 인정됨

- 특히 고부가가치 임산물의 브랜드화 및 판로 다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산림소득 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따라서 정책적 필요성 자체는 유효하며, 단기간 내 사업을 종료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연장 여부는 현행 사업 구조의 적정성 및 성과관리 수준을 전제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집행률은 78.5%로 나타났으며, 농특회계 예산 부족이 주요 사유로 제시되었으나, 이월·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데 기인한 것임

- 그러나 향후 반복적인 불용 발생은 단순한 재원 부족 문제가 아니라 수요예측, 사업 설계, 참여기업 구조 등 구조적 요인 점검이 요구됨을 의미함

○ 특정 조직 또는 동일 기업에 대한 반복·집중 지원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지원 규모 감축 및 사업운영 개선 조치를 시행하였음

- 임산물 수출 산업은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수출기업 풀이 제한적인 특성이 있어 일부 기업의 반복 참여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인정되나, 다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신규 참여 기업 확대와 사업 참여 기회 균형을 고려한 운영 개선이 필요함

○ 현재 부정수급 방지는 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점검을 통해 회계적 집행 적정성 확인하고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수출기업 및 영세업체 특성을 특별히 고려한 현장 방문 중심의 점검 강화가 필요하며, 해당 사안에 관해 타 부처의 사례를 조사하여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음

○ 특히 행사 중심 지원의 경우 형식적 참여와 실질 성과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점검, 사후 성과 추적, 기업별 실적 비교 분석 등 보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함

○ 농식품부, 중기부, 지자체 등에서도 유사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여부와 협력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벤치마킹도 필요함

○ 현행 성과지표는 수출액, 참가기업 수, 상담건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 '25년 성과 달성률 105.7%로 초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외형적 성과는 제시할 수 있으나,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함

- 단기적 수출계약 체결과 지속적 수출 기반 형성은 구분되어야 하며, 중장기 추적지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출액 등은 환율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어 외부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율 산정 이전의 수출액으로 평가하는 등 성과지표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묘목생산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가 조림사업의 안정적 묘목 공급이라는 공공성은 인정됨 · 다만 보조율(30~70%)이 과도하게 폭넓고 직접·보조사업이 혼재되어 구조 명확화가 필요함 · 시설·투입 중심 지표는 존재하나 불량률·조림생존율 등 결과지표 관리 미흡함 · 스마트화는 자동제어 중심 단계로, AI 기반 품질·생존율 예측 체계가 미흡함 · 종자→묘목→조림 간 데이터 통합관리체계가 부재함 · 민유양묘장 보조의 가동률·성과 연동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함 · 공공성은 인정되나 성과관리 고도화 및 구조개편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묘목생산은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크고, 산림 특성상 회수기간이 장기화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일정 범위 내 국가의 보조는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특히 종자개량, 묘목생산, 기반시설 구축 등은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공공개입 필요성이 존재함

○ 본 사업은 국가 조림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국유·민유 양묘장에 대해 묘목 생산 기반 조성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임

- 주요 내용은 민유양묘장 시설 자동화·기계화 보조, 양묘시설 현대화 및 보수, 스마트 양묘시스템 도입 지원, 종자처리 및 종자 저장·관리 기반 조성, 묘목생산 기반 토양개량 지원으로 구성됨

- 보조율은 내역사업별로 30~7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국가 직접 수행 영역과 민간 지원 영역이 혼재된 구조임.

○ 국가 조림사업은 장기적 탄소흡수원 확보 및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반사업으로, 묘목 안정 공급체계 유지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 특히 산림재해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수종 전환 필요성 확대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묘목 품질관리 체계는 일정 부분 공공개입 필요성이 존재함

○ 시설 중심 지원 구조로 스마트화·현대화가 결과지표(불량률 감소, 생존율 향상 등)와 직접 연계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 성과계량이 미흡하여 생산량 중심 지표는 존재하나, 불량묘 비율, 규격충족률, 조림 후 생존율 등 결과 중심 성과지표가 보조사업 관리체계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시설보조 특성상 장비 가동률·성과 미흡 시 환수·조정 체계가 명확해야 하나, 가동률 점검 및 성과연계 구조의 체계성이 보완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은 국가 조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연장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설 중심 투자구조와 성과관리 체계의 한계를 고려할 때 조건부 연장이 타당함

○ 연장 시 다음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적절함

- 결과지표 중심 성과관리체계 구축

- 장비 가동률·생산성 연동 보조금 관리 강화

- 스마트화의 기술수준 단계 정의 및 AI 고도화 계획 명문화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목재생산관리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친환경목재생산 보조사업은 최근 3년 실집행률(0.7%→13.0%→20.0%)이 매우 낮으며 목재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면적 목재수확지 감소 등의 사유가 있으나 증가 추세도 가시적인 편이 아니므로 참여 유인 부족 또는 행정절차상 구조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존치면적, 보상방식, 검증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수립되어 있으나 환수체계가 구체화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기준, 단가 산정 근거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수립되어 있으나 사후관리 체제의 명확화가 필요함 · 국산재 생산량, 단위면적 생산성, 탄소저장 효과 등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편 필요 · 1~2단계에서 지급기준 명문화·구조조정·성과계약형 전환을 통해 정책·시장 영역을 분리한 후 궁극적으로 조림–숲가꾸기–목재생산을 통합한 생애주기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목재생산관리 사업 중 보조비목은 주로 '친환경 목재생산'에 해당하며, 산주가 일정 면적을 존치하거나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수확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임

- 목적은 환경 보전형 수확관리 확산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유도이며, 보조사업의 정책 목적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환경친화적 경영 유도라는 점임

- 그러나 집행률을 감안하면, 실제 보상정책(수단)이 친환경 조성(목적)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친환경 목재생산의 실집행률은 0.7%, 13.0%, 20.0%로 목재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면적 목재수확지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함

- 보조금 지급 기준, 단가 산정 근거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수립되어 있으나 사후관리 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함

○ 또한, 성과지표로 활용 중인 '국민체감도·만족도'는 목재생산 정책과의 직접적 인과성이 약하여 보조사업 성과지표로서 적합성이 낮음

- 국산재 생산량 증가, 단위면적 생산성, 탄소저장 효과 등 정책 직접성과 연계된 정량지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실집행률이 낮은 보조사업을 동일 구조로 연장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약함

- 단순 연장이 아닌 제도 개편을 조건으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목재생산관리 3단계 구조개편 로드맵을 제안함

- 1단계: 위성·드론 기반 존치면적 검증 도입을 통해 실집행률 90% 이상 회복을 목표로 참여유인 재설계

- 2단계: 보조금 지급방식을 성과계약형 지원 전환(3~5년 계약, 성과 달성 시 인센티브)하고 국민체감도 지표 삭제 또는 보조지표화, 국산재 자급률·탄소저장량 등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편하며, 환경보전형 수확은 국가개입 유지, 일반 상업벌채는 시장 중심 전환으로 정책·시장 영역 분리

- 3단계: 조림 - 숲가꾸기 - 목재생산 - 자원화 통합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하고 보조 중심 구조에서 인증·시장연계형 제도로 전환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임산물 소비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산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임 · 지자체·민간단체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앙정부는 예산 지원·관리, 실제 집행은 지방 및 민간 수행기관이 담당하는 구조임 · 성과지표가 행사 횟수·참여 인원 등 단순 실적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일부는 임업인 소득 증가 등 정책효과를 측정하고 있음 · 연례적 집행 부진과 불용 사례가 존재하므로 지자체 수요 예측, 수행기관 역량 검토 등 재정집행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 · 다수 지자체·민간단체 보조 구조로 인해 성과 책임이 분산되고 중앙정부의 상시 관리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리·책임 구조의 내실화가 요구됨 · 임가·농가 중복 지원 및 유사 사업 간 기능 중복 문제가 존재하며 본 사업의 관할 영역이 광범위하므로 통합관리, 기능 재조정 및 일부 사업 통폐합·감액 검토가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보조사업은 임산물의 소비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임산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됨

- 이를 위해 지자체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보조 방식으로 소비촉진 행사, 유통구조 개선, 홍보·마케팅, 판로 연계, 임업인 대상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사업은 주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되며, 중앙정부는 예산 지원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집행은 지자체 또는 민간 수행기관이 담당하는 구조임

○ 첫째, 보조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에서 성과지표가 단순 사업 수행 실적(행사 횟수, 참여인원 등)에 머물러 있고 유통구조 개선 보조사업을 통한 임업인단체의 출하액 증가 여부, 공영홈쇼핑 방송 횟수의 초과 여부 등 단순한 점이 있으나, 보조금의 투입으로 인한 임업인 소득향상이 측정 가능하므로 정책 효과를 일부 검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보조사업을 통한 성과 관리가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지표를 선정하는 등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둘째, 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사례, 불용 예산 발생 등이 있었으므로, 최근 일부 구조적 개선 및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사업이 정상의 기미를 보이고 있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노력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재정집행 분야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음

- 각 지자체별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예측(조사), 대상자 선정 시 사업 수행자 및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지자체·민간단체 보조 방식에 따른 관리 소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책임 구조의 내실화가 필요함

- 사업을 다수의 지자체 및 단체에 분산하여 위탁·보조하는 구조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관리·점검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함

- 이로 인해 성과 책임이 분산되고, 집행 부진 또는 성과 미흡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책임 구조의 내실화를 통한 중앙정부의 관리 부담 완화, 재정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임가와 농가 중복 지원 여부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두 분야를 통합 관리 및 운영할 방안이 필요함

○ 다섯째, 사업명과 달리 실제 적용 범위는 산업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해당되므로 본 사업의 일부 기능과 임산물생산기반 사업 등과의 통폐합 및 기능재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수반하여 시너지를 위한 감액이 불가피함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임산물 생산기반은 초기 투자비와 장기 회수구조 특성상 국가 지원의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나, 일부 시설·설비사업은 민간 대체 가능성이 존재함 · 사업 내 이질적 내역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기능·내역사업 간 통폐합과 이에 따른 예산조정 등 구조 재편이 필요함 · 보조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20~100%까지 편차가 크고 공공재 성격 사업과 수익성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 재설계가 요구됨 · 지자체·산림조합 등을 통한 다단계 집행구조로 인해 현장관리 중요성이 높으므로, 산림청의 직접 점검 및 밀착형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현 성과지표는 생산액 중심의 거시지표에 치우쳐 있어 시설사업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림경영지도 만족도 등 사업별 계량성과와 실질적 중복지원 관리체계 보완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임산물 생산기반은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크고, 산림 특성상 회수기간이 장기화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일정 범위 내 국가의 보조는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특히 종자개량, 묘목생산, 기반시설 구축 등은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공공개입 필요성이 존재하나 일부 설비·시설사업은 민간 대체 가능성이 존재함

○ 본 사업 내에 이질적인 내역사업들이 혼재하며 '21년 청정임산물이용증진과 분리되었으나 합리성과 효율성 보충이 필요하므로 기능 및 내역사업 간 통폐합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너지를 위해 예산조정도 필요함

○ 보조율이 20%~100%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법에 근거하여 일관성이 있으나 이질적인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어 관리가 필요함

- 100% 보조사업은 임업인 교육·지도 및 개발 품종의 통상실시 등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나, 일부는 수익성 기반 사업과 혼재되어 있음

- 이는 보조율 설계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하며, 보조율 재설계 필요성이 있음

○ 보조사업은 지자체 및 산림조합 등을 경유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보조사업자 3단계 선정, 매월 지자체 집행현황 점검에 따른 산림청의 직접 현장 점검, 보조사업 포기업자 참여 제한, 미이용산림자원센터의 실적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구조상 지자체가 관여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다른 사업에 비해 산림청의 현장점검 강화 등 보다 면밀하고 밀착된 모니터링이 필요함

○ 현재 성과지표는 생산액 증가 등 거시지표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개별 보조사업이 직접적으로 미친 성과를 분리 측정하기 어려움

- 특히 자원화센터 및 시설사업의 경우, 실제 매출 증가 기여도, 고용창출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임산물생산 단지 지원사업 예산투입 효율성, 산림경영지도 만족도 등에 대한 계량지표 보완이 요구됨

- 동일 수혜자 대상 복수지원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한되고 있으나 시스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목재산업육성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24년까지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매우 낮아 '25년에 추진현황 점검 등을 추진하여 실집행률은 향상되었으며, 점검 방식은 현장점검(연 2회) 및 서면·영상·대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과거 낮은 실집행률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현장 확인은 간헐적이며, 점검 대상이 지자체 위주로 설정되어 실제 보조금 수혜 업체에 대한 직접 점검은 제한적임 · 국산목재 산업은 여전히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단계이나, 다만, 현장점검 횟수 확대, 성과분석, 가이드라인, 컨설팅 등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 - 현장점검 의무비율 설정 및 부정수급 환수 체계 명확화, 성과지표 개선 - 목재산업육성과 목재이용증진 간 유사사업 방지 체계 구축			

□ 종합평가 의견

○ 목재산업육성 사업은 국산목재의 이용 확대, 목재산업 기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특히 보조사업을 통해 목재친화도시,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목재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원목 수급 변동성이 크며, 수입목재 대비 가격경쟁력이 낮아 민간 자생력이 제한적이며, 특히 산불 피해목·간벌재 활용 등 공익적 목적과 연계되는 영역은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함

○ 산업육성 단계가 일정 기간 경과에 따른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은 '24년을 마지막으로 지원 종료하였음

○ 특히 최근 2개년 자체평가 결과가 지자체의 신규사업 실집행 저조로 인하여 '미흡'으로 나타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차별 사업액 조정 및 사업 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실집행률이 '24년 38.4%에서 '25년 79.8%로 급증하였음

○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4년차 연차사업비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3년차 사업비를 줄여, 사업의 진행상황을 정상화 하기에 사업 공사비 등 적절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규모로 보임

○ '24년까지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아 '25년에 추진현황 점검 등을 추진하여 실집행률은 향상되었으며, 점검 방식은 현장점검(연 2회, 상·하반기) 및 서면·영상·대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 횟수(연 4회, 분기별)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장 확인은 간헐적이며, 점검 대상이 지자체 위주로 설정되어 실제 보조금 수혜 업체에 대한 직접 점검은 제한적임

○ 보조금 지급 이후 실물 설비·장비의 실제 가동 여부, 생산량 증가 여부 등 사후 관리체계가 필요함

- 특히, 설비지원 후 매출 증가율, 국산목재 사용 비율 증가 여부, 산불피해목 활용량 등의 교차 검증 체계가 필요함

○ 기관은 산업 기반 확충, 기업 수 증가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체감도 상승, 국산목재 시장점유율 변화, 목조건축 비율 확대 등 객관적 시장지표와의 연계는 제한적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목재이용증진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경계가 모호함(공공성 검증·민간지원 기준 명확화) - 일부 내역사업의 집행률이 구조적으로 저조하며, 단순 세수부족 설명으로는 불충분 - 보조 확대에 따라 현장검증·성과검증 체계가 필요함 - 공공성 검증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성과지표(국산목재 이용 증가율)를 지속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조율·보조대상에 대한 종료전략 및 자립유도 로드맵이 부재함			

□ 종합평가 의견

○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는 탄소중립·산불피해목 활용·목조건축 확대 등 국가 정책목표와 연계되어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 초기 시장개척 단계에서 일정 기간 재정지원은 타당함

- 본 사업의 목적은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신뢰 제고를 통해 국민인식 증진 및 국산목재 수요를 창출하고, 목재 유통체계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함

- 주요 보조사업 내용으로는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교육·홍보·체험 등), 목재유통센터 및 집하장 시설 보완·현대화, 목재제품 생산업체 노후시설 개선 지원, 목재제품 품질관리·검사 인력 양성 및 운영 지원임

○ 다만 일부 보조사업(유통시설·민간시설 개선 등)은 민간 영업활동과 밀접한 경향이 있으나, '25년부터 성과지표를 국산목재 이용 증가율(%)로 변경하면서 재정지원을 통한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직접적 개선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보조사업 실집행률은 일부 내역에서 매우 저조하며, 특히 목재유통관리 내역은 특정 연도 집행률이 극히 낮은 수준(19%대)까지 하락한 사례가 존재하였으나, '25년 실집행률을 97.6%까지 제고시킴

- 농특회계 세수 부족이라는 외부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유통관리 내역만 유독 낮은 집행률을 보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교부 후 집행지연, 공모-설계-준공 순연이 반복되는 구조는 보조사업의 설계·타이밍 자체 문제일 가능성이 있음

○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정산내역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현장실사·준공검사 등으로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나,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5년 성과지표를 유통센터·집하장 등의 국산목재 이용 증가율로 변경한 것은 적정함

○ 교육·인력양성 기능이 산림청·임업진흥원·타 사업에 산재함

○ 특히 유통관리 내역은 "민관협력 강화 → 국민이 쉽게 구매"라는 목적-수단 연결이 약하며, 보조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실제 소비확대로 이어지는지 실증 근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함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목재제품 품질관리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목재제품 품질관리 세부사업 내 목재생산업 등록·관리(지자체 보조) 내역사업의 최근 3년간('23~'25) 평균 실집행률이 73.2%로 연례적 집행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감액이 필요함 - 보조사업 실집행률이 '23년 61.0%, '24년 71.3%, '25년 87.4%로 3개년 평균 73.2%에 그쳐 매년 교부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는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함 - 또한, 성과지표인 '목재생산업 실적보고 데이터화 비율'이 2022년 이후 4년 연속 목표 대비 100% 달성으로 사실상 변별력이 부족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사무 수행 지원사업으로서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유통질서 확립은 소비자 보호와 국산목재 산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

○ 그러나 본 사업의 지자체 보조사업(목재생산업 등록·관리) 부분에서 연례적 집행 부진이 확인됨. 최근 3년간('23~'25) 보조사업 실집행률은 61.0%, 71.3%, 87.4%로 3개년 평균 73.2%에 그쳤으며, 3개년 누적 불용액은 109백만원에 달함.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최근 3년 평균 실집행률 69.7%로 집행의 적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음

○ 이에 대해 부처는 '26년 예산을 10백만원(136→126백만원)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에 따라 모니터링 이후 교부예산 규모를 실제 집행 가능 수준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과지표인 '목재생산업 실적보고 데이터화 비율'이 4년 연속 100% 달성으로 변별력이 부족함. '26년부터 성과지표를 변경할 예정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며 적절한 개선 방향으로 판단되나 설정 근거와 측정 방법의 구체성에 대해 강화가 필요함

○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에 대해 감액을 권고함. 목재생산업 등록·관리(지자체 보조) 내역사업의 '26년 예산 조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실집행 실적에 기반하여 조정하고, 성과지표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언함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임업직불금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임업직불금은 공익적 성격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이행점검 기능은 제도 신뢰 확보를 위해 필수적임 - 직불금 규모 확대에 비해 점검체계가 위험기반 방식으로 더욱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 - 일부 연도 불용 발생은 예산 산정의 정밀성 및 집행 안정성에 한계를 시사함 - 성과지표가 점검 건수 등 행정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부정수급 감소 효과 측정이 제한적임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정책성과 연계성이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중앙–지자체 점검 품질관리 체계의 표준화 수준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음 - 관리사업 특성상 집행 효율성과 성과지표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수급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사업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임

○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산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며, 수급 적정성 확보는 제도 신뢰의 전제조건이며, 이에 따라 이행점검 및 관리 기능은 직불금 제도 운영에 필수적이며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 특히 직불금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점검체계의 미비는 재정누수 및 정책 신뢰 저하로 직결될 수 있어 지속적 재정지원이 요구됨

○ 최근 사업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 체계의 제도적 기반은 유지되고 있으나, 다만 일부 연도에서 농특세수 부족과 인력수급 문제로 불용이 발생하고, 성과지표가 점검 건수·처리율 등 행정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부정수급 감소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본 사업은 직불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관리기능으로서 사업 연장은 필요하나, 다만 단순 유지가 아니라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

- 고위험군 집중점검 강화

- 부정수급 환수율·재발방지율 등 질적 성과지표 도입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임업기능인양성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 사항이지만, 추진체계가 환경변화 및 국내외 동일 분야 사례와 구조적으로 다르고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음 · 연속성과 전문성이 경쟁 및 성과 검증 장치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수료 후 경력·취업 추적체계를 정비하여 재정투입 대비 실질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1) 산림청 내 모든 교육훈련을 통합시행하는 종합훈련원의 신설 후, 2) 해당 종합훈련원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현 산림조합과 기술인회가 본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3)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운영 혹은 공모형으로 전환하는 순차적 구조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임업기능인양성 사업은 산림작업 종사자의 전문기술 습득과 안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재정지원 사업임

- 주요 내용은 임업기능인 영림단 교육, 임업기계조종사 교육, 산림기술자 법정의무교육, 임업훈련원 운영 및 시설보수, 임업기계지원센터 지원 등으로 구성됨

- 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산림기술인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훈련시설·장비는 국가 소유 자산을 활용하고 있음

○ 임업현장은 고위험 작업이 상존하며, 숙련 인력 확보와 안전교육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역량은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고령화된 산촌 인력 구조를 고려할 때 기능인 양성은 지속적 정책지원이 필요함

○ 「임업진흥법」 등에 따라 특정 조직에 위탁이 지속되고 있으나 관리적 차원에서 향후 다음과 같은 쟁점이 존재함

- 국내외 환경 및 유사분야 사례를 고려할 때 공모 절차 없이 특정 민간단체에 장기간 위탁이 지속되고 있음

- 국가 소유 토지·시설·장비를 기반으로 사실상 독점적 운영 구조가 형성됨

- 성과지표가 이수율·만족도 중심에서 최근 장비활성화율로 확장되었으나, 교육생들의 사후 경력추적 체계는 부재하여 교육의 사회적 영향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 최근 로봇 등 인력대체 장비가 고도화되고 있고 외국인 교육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력수급 및 교육수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연속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법적 근거가 있으나, 정책적으로 경쟁 및 성과 검증 장치를 대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해외 및 타 분야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 직영 또는 공모·지정 방식의 경쟁구조를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 비해 현 구조는 경쟁·재지정 평가 절차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의 보완이 요구됨

○ 국가 자산을 활용하는 장비·시설 사업에서 가동률 및 활용도에 대한 관리가 과거에 충분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장비활성화율 지표가 도입되었음

○ 또한 교육 수료 이후 취업·현장 투입 여부, 숙련도 향상, 사고율 감소 등 실질적 성과를 추적하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재정사업으로서의 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임

○ 내년부터 단기적으로는 이론교육(온라인 통합교육)과 현장교육으로 분리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으나, 통폐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 감액은 불가피함

○ 본 사업을 포함한 범 산림청 교육체계 개편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것을 권고함

- 1) 본 사업을 포함하여 산림청 내 모든 교육훈련을 통합시행하는 종합훈련원을 설립하고, 2) 해당 종합훈련원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현 산림조합과 기술인회가 본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3)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운영 혹은 공모형으로 전환하는 순차적 구조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산림병해충방제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동일 단위사업 내 인력 운영의 기능 중첩과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절차 누락으로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산림재해일자리는 현장 인력 전반을 포괄하는 반면 본 사업은 초소 감시 인력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능적 차별성이 인정되었음. 또한 공모 절차 누락은 민간경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추진된 것이어서 별도의 공모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소나무재선충병 70% 할증과 100% 보조율은 과거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반 병해충에 비해 최근 확산세가 두드러져 일반 병해충 대비 할증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대상지역의 중복 방제가 가능해 방제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성과지표 미달성도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급격한 확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 정상 참작이 가능함 · 다만 현행 성과지표만으로는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국정과제인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직결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에 근거한 법정 의무 사업임. 대다수 산림이 사유림·공유림인 상황에서 지자체 보조의 필요성도 큼. 당초에는 산림재해일자리 등 인력 지원 사업과의 중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대면평가 결과 산림재해일자리는 현장 대응 인력 전반을 포괄하는 반면 본 사업의 이동단속초소 운영은 소나무류 이동 단속, 일반병해충 방제 인력은 사무보조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능적 차별성이 인정됨

○ 상위계획에 근거하여 예찰·방제·수종전환 등 적절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음.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70% 보조율은 일반 병해충과 달리 확산성이 강하고 신속 대응이 필요한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민간 사업도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 평균 95% 이상의 높은 실집행률을 보여 전반적인 집행은 원활한 편임. 당초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 절차 누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면평가 결과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추진된 것이어서 일반 보조사업과 같은 선정 절차의 정합성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다만 국유림과 공유림·사유림이 맞닿은 지역에서는 방제 시차로 재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장 단위의 연계 관리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 국유림과 지자체 사업 구간 간 방제 일정과 현장 대응을 보다 긴밀히 연계하여 통합 방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과거 성과지표(발생 면적, 재발생률)의 목표 달성도는 양호하였고, 2025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실적 달성률'과 '일반병해충 방제율' 등 결과 중심 지표로 개편한 점은 긍정적임. 다만 신규 도입한 두 지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급격한 확산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정 부분 정상 참작이 가능함. 또한 일부 목표치는 과거 최대 실적과 도전적 수준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현실성과 논리성 측면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기후변화, 발생 추이, 최근 실적 변동성을 함께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논리를 보다 정교화하고, 지표 산식과 목표 수준도 실질적인 성과를 신뢰성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조림(지원)
보 조 유 형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조림(지원) 사업은 1946년부터 지속된 국가 핵심 산림정책으로, 탄소중립·산불복구 등 정책적 필요성은 높으나 면적당 수요가 포화상태인지 점검이 필요함 · 최근 4년 평균 실집행률 95.1%로 집행 안정성은 양호하나, 연차소요 사업 특성상 이월·불용 반복 구조 존재 · 경제림·큰나무·지역특화 등 세부사업이 다층화되어 기능 중복 및 관리 복잡성 발생 · 산불복구 조림은 단년도 성과평가 방식과 구조적 불일치 문제 있음 · 성과지표가 면적·개소 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 질적 성과관리 부족 · 종합적으로 조건부 연장하되, 성과체계 개편과 감액이 요구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1946년 식목일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국가 산림정책의 핵심 기반사업으로, 「산림기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제림 조성, 재해복구 조림, 밀원수림 조성,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등을 추진하며, 특히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과 산불피해지 복원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높으나 국토면적당 수요가 포화상태인지 점검이 필요함

○ 최근 4년간 평균 실집행률은 95.1%로 집행 안정성은 비교적 양호하나, 2023년 이후 대형산불 복구 수요 증가와 예산 변동 폭 확대에 따라 이월·불용 발생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

- 특히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은 연차소요 특성이 강해 단년도 성과평가와의 불일치 문제가 존재함

- 이는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경제림조성·큰나무조림·지역특화조림·내화수림대 등 유사 목적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어 관리 복잡성이 존재함

○ 보조율은 민유림의 경우 50~60% 수준으로 지방비 및 자부담을 전제로 하나, 산주 고령화 및 영세화 구조를 고려할 때 실질적 참여 유인과 사후관리 책임성 확보 간 균형이 중요함

○ 현재 성과지표는 식재 면적(ha), 단지 개소 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존율, 탄소흡수량, 경제림 수익성 등 질적·성과지향 지표는 약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사업은 국가 산림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사업으로서 연장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만, (1) 사업 유형 통합 및 구조 단순화, (2) 연차관리형 성과지표 도입, (3) 단지형 사업의 자립도 평가체계 강화, (4) 시설성 부대사업의 구조 분리 등 제도 개선과 감액을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요약표

부 처	산림청
사 업	정원 조성관리(지원)
보 조 유 형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사업개선으로 판정함 · 당초에는 건립 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집행 부진이 반복된 것으로 보았으나, 대면평가 결과 한국정원문화원(2024년 12월), 울산 정원지원센터(2025년 5월), 정원소재실용화센터(2026년 7월)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기존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인프라 투자 내역은 단계적으로 해소되고, 관련 예산도 종료 사업 완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축되는 구조로 판단됨 · 당초 일부 내역사업은 정책적 집중도를 분산시키고 본래 목적과의 연계성이 약한 것으로 보았으나, 대면평가 결과 무궁화 내역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었음 · 다만 앞으로는 남은 사업의 내실화를 중심으로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정원운영관리, 정원산업박람회, 정원정책제도지원, 무궁화동산조성관리, 보급형정원모델 개발·보급의 성과를 높이고, 기 구축한 자본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성과지표도 단순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국고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장기 계속사업으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내역사업이 함께 편성되어 있어 정책적 집중도가 다소 분산되어 보일 수 있음. 당초 무궁화 내역사업은 정원 산업이라는 본질적 목적과 다소 이질적으로 보였으나, 대면평가 결과 무궁화는 정원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고 무궁화동산 역시 정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었음

○ 상위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수혜 대상이 일반 국민 중심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후생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또한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은 시설 조성 자체보다 조성 이후의 운영과 활용이 더욱 중요함

- 보조금 투입에 따른 직접 수혜군과 기대효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단순 시설 확충보다 조성 이후의 운영 품질과 활용 계획을 함께 점검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건립 사업 등 자본 투자사업은 과거 행정절차 지연으로 집행 부진이 있었으나, 한국정원문화원, 울산 정원지원센터,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순차적으로 종료되면서 그 원인은 단계적으로 해소됨. 다만, 스마트가든 고사 등 조성 후 관리 문제와 사후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 즉, 조성 이후 유지관리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운영 책임성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수치적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방문객 수나 제도 개선 건수와 같은 지표만으로는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방문객 수 등 양적 지표의 비중은 낮추고, 지역 고용 효과, 시설 활용도, 관리 품질, 산업 활성화 등 사업 목적 달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 중심 지표로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가결핵예방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국가예방접종실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희귀질환자지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질병 연구 기반 조성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손상예방관리
병원체 자원은행 운영관리
질병관리청 정보화 기반운영(정보화)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일부 내역사업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의 구성과 지원 규모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내역사업(2개)에 대한 소액 불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회 지적 사항 및 사업 평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완료됨 -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어 향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국정과제에 해당하고, 상위 계획과 연계되는 등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의 경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유사중복 사업은 없음

○ 사업 내용의 구성과 지원 규모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내용은 상위 계획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며, 내역사업 간 상호연계성도 적정함
- 내역사업별로 수혜 대상을 정의하고 있으나, 내역 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특히 대국민 대상 간접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음

○ 일부 내역 사업의 집행률이 낮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만, 내역 사업의 예산이 전체 세부사업의 2%에 불과하는 소액이므로, 감액 판단 대신 사업방식 개선을 권고함

-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2개의 내역 사업에 대한 감액과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사업 추진 체계는 내역 사업별로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는 적절함
-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으나, 재난안전사업 평가의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는 완료되지 않음(내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 제고)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했으나,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3개의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2개의 성과지표는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실적보다 낮게 설정했으며, 차년도에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체감도에 대한 사업 성과가 인정되며, 재난안전사업의 효과도 인정됨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1개 내역 사업의 민간위탁이 예정되므로, 해당 금액을 감액함 -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 내용은 상위 계획과 부합하며, 지원 규모 산출도 적정함 - 예산 집행은 효율적이지만, 사업 추진 체계는 복잡하며,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환류가 미흡함 - 보조사업의 과년도 정산 후 미반납액이 존재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1개 내내역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 2027년 계획됨 - 사업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상위 계획의 성과에 기여한 실적과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 실적이 인정됨

□ 종합평가 의견

○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상위 계획과 연계성은 있으나, 국정과제에는 해당하지 않음
-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유사중복 사업은 없음

○ 사업 내용은 상위 계획과 부합하며, 지원 규모 산출의 과정은 적정함

- 본 사업은 국정과제, 상위 계획의 목표와 부합하게 기획되었음
- 직간접 수혜자를 비교적 정확하게 작성하고, 재정 수요를 고려한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하는 등 지원 규모의 산출 과정은 적정함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에 대한 국가의 보조를 1/2로 규정하고 있음. 단,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율은 명확하지 않은데, 유사 사업(감염병 관리 등)을 기준으로 보조율은 적정한 수준임

○ 예산 집행은 효율적이나 사업 추진 체계는 다소 복잡함

- 사업 추진 체계는 민간보조사업자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단, 30개 이상이 있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복잡함

○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는 적정하지만, 2024년 정산 후 미반납액이 존재함. 또한,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도 미흡함

-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는 적정하나, 2024년 정산 후 미반납액에 대한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음

○ 사업평가의 지적 사항에 대한 환류가 일부 완료되지 않았음

○ 사업의 성과지표는목표치를 달성했고, 사업의 성과는 우수함

- 2개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함
- 세부사업의 내역이 상위 계획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함
- 재난안전사업 효과성과 관련한 5개 영역의 증빙자료를 모두 인정함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국가결핵예방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연례적인 예산 불용이 있으므로,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이 타당하며, 재정지원이 필요성이 인정됨 - 예산집행률이 91.4% 수준으로,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지적 사항은 조치가 완료됐으나, 국회 지적 사항(2024년, 2025년)에 대한 조치는 일부 완료되지 않음 - 내역 사업의 전달체계가 복잡하여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이 있음
-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사업 내용의 상위계획 달성에 부합하며, 지원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사업 내용은 상위계획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며, 내역 사업 간 상호 연계성이 인정됨
- 내역사업별 직·간접 수혜자를 고려하여 재정 규모를 산출하는 등 지원 규모의 적정성이 인정됨
- 법령에 10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음

○ 예산 집행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완료됐으나, 일부 완료되지 않음

- 예산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연례적인 연구용역 이월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내역사업별 추진 주체의 역할 분담은 적절하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는 규정과 절차, 실행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적사항(민간위탁 전환)과 국회 지적사항(전담인력 처우 개선)은 완료됐으나,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는 완료되지 않음

○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했으며, 사업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우수하며,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도 높음

- 3개의 성과지표는 대부분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세부사업의 성과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성과의 우수성이 인정됨
- 국민 체감도 제고에 대한 사업의 성과도 우수함
- 재난안전사업 효과성과 관련한 5개 영역의 증빙자료가 모두 인정됨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일부 내역 사업의 감액 및 운영 효율성 개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생물테러(고위험 병원체·두창 등) 대비는 감염병 재난과 국가안보가 결합하는 영역으로, 비축·실험실·훈련·지휘체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상시 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타당함

○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의료대응요원 전문교육 운영과 지자체보조사업인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공공성이 커서 적정한 국가재정 투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들 교육훈련 사업은 동일한 모든 기관들에 대하여 매년 반복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

○ 생물테러 대응 요원 평가점수 향상률,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보호구 적용 정확도, 신종감염병 현장의료인력 대응 훈련 만족도 등 현재 성과지표 체계에 의한 환류는 대체로 적정함

○ (감액) 교육훈련 사업의 교육주기 조정,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의 일반용역의 일정 주기 시행 등으로 교육·훈련 예산의 일부 감액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이 대체로 정상 추진 중이며 일부 반복성 사업의 타당성 지속 확인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감염병 위기 시 지역 단위의 초기 탐지, 확진, 보고 등의 신속 진단·확인 역량은 팬데믹 대비 핵심 인프라로서 정책목표가 타당함

- 질병관리청의 성과관리 계획은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관의 체계 표준화·전문성 확보, 기술이전·교육·숙련도 평가 등을 통해 지역 진단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 포함하는 '국가 감염병 검사 관리체계'의 정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함

- 따라서 예산편성의 전제로서 여타 공공 및 민간 검사·진단 체계와 역할 분담과 통합성 제고가 필요함

○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자체 검사기관의 표준 운영체계 확립, 검사법 기술이전·교육, 숙련도 평가는 지역 역량의 핵심이므로 지자체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및 세계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 등의 사업내용은 적정함

○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워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적정 범위 내에서 분담하여 운영하는 구조로 집행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상 추진)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

- 선제적 국가 감염병 진단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재료비 지원(자치단체 경상보조),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 운영 지원(자치단체 경상보조), 선제적 국가감염병 진단체계 구축(자치단체 자본보조) 등 보조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일부 반복성 사업의 타당성 지속확인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보조사업이 대체로 정상 추진 중이며 일부 반복성 사업의 타당성 지속확인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역학조사(질병 조사)와 병원체 실험실 감시망은 '조기탐지 - 유행 규모 추정 - 변이·내성 확인 - 대응조치'로 이어지는 핵심 인프라로서 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신경증후군 등의 병원체 감시와 감시병원체 운송시스템 통합운영 등의 내역사업 구성은 대체로 적정함

○ 특히 급성호흡기감염증 등 병원체 감시 확대는 계절 유행, 변이 모니터링 분석의 필요 등 정책수요가 뚜렷하므로, 검체 확보 - 분석 - 통보의 핵심 프로세스를 유지함이 타당함

○ 또한 '감시병원체 운송시스템 통합운영'의 확대는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강화에 따른 것으로 적정함

○ (정상 추진) 바이러스성 급성설사 질환 병원체, 노로바이러스 유행, 병원성 비브리오균, 뇌염증후군 병원체 등 감시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 보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일부 세부 항목 예산의 타당성 확인 및 사업개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기후변화 심화와 국제이동 증가 추세 속에서 매개체(모기·진드기 등) 및 기생충의 감시는 말라리아·SFTS·쯔쯔가무시증 등 국내 주요 감염병의 조기 경보와 확산 차단을 위한 공공기능으로서 정책목표가 타당함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매개체 감시 시스템(VectorNet) 등 전국 단위 감시망 운영을 통해 발생·밀도 변화 감시를 수행

○ 기후변화대응 매개체 및 병원체 감시, 기생충질환 진단감시 및 분석, 감염병 매개체 국가방제사업 운영, 해외유입 매개체 및 기생충 감시 등 내역사업 구성이 대체로 적정함

- 말라리아 조기진단 강화, 분자역학 분석 확대,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거점 운영 등 탐지·분석의 핵심 프로세스는 필요성이 명확함

○ 감시·방제 사업은 조사→분석→현장대응으로 이어지는 반복적, 중층적 운영구조로 추진되고 있어 효율적 예산집행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권역별 거점센터' 등 신규·확대 요소는 매개체 감시체계 운영 현황과 지역별 감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감시 범위 확대 및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선)기생충 진단·감시는 수인성·식품매개 병원체 감시(Enter-Net)와는 감시대상 병원체 및 사업 목적이 상이하여 별도 체계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일부 감염경로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연계될 수 있어 감시 자료가 Enter-Net을 통해 환류되고 있으므로 정보의 공유와 공동 대응 등 역할분담 하에서 더욱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운영 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체 및 보고 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당해 사업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단·감시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활동의 성과를 활용한 감염병, 기생충 등 확산예방 효과를 초점으로 성과지표를 보강하여 운영하여야 함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국가예방접종실시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이 대체로 정상 추진 중이며 일부 반복성 사업의 타당성 지속확인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감염병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대표적인 예방적 공공투자로서 보건향상을 위한 집단면역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 등 정책목표가 타당함

- 예방접종의 표준접종시기·대상은 질병관리청 고시 및 관리지침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 다만 중장기적으로 백신 도입 우선순위 결정의 합리성, 비용효과성 기반 예방접종 전략, 백신 안전성 관리체계의 정립 등을 위한 정책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함

○ 국가예방접종은 의료기관 진료·건보 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비급여 항목인 예방접종,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예방접종 당일 단독 진찰료 청구 등 부당청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6년 예산 편성은 접종 대상 인구수, 접종 횟수, 백신 종류별 사용률, 접종기관 이용률, 백신비, 시행비, 보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규모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예산의 백신구매비, 시행비, 유통관리비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2026년에 전년 대비 약 22% 삭감한 예산을 요구

○ 다만 예산 규모가 방대하고 전국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항목의 지원 적정성에 대한 중간 평가와 환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상추진) 세부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조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백신비·시행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 지원,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 등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보조율 적용 및 인프라 지원 예산에 대한 점검 필요 - 홍보성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프라 예산은 단발성 여부를 명확히 하여 예산 낭비 차단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적극적인 환류 노력은 긍정적이나, 중복 및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관 간 사업 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필요 - 지방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하향 조정(특히, 서울 지역 대상)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업개선이 필요함 - 과거 5년 실적에 기반한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상위 지자체 평균 수준으로 목표치를 상향하여 재정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대국민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차원에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임

○ 만성질환은 발병 후 합병증 발생 시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사전 예방은 국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고수익 재정 투자이며 '진단검사 표준화' 및 '근거 생산' 등은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해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 인정

○ 세부사업은 국고(지자체)보조와 민간보조로 구성됨

- 지자체보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보조율 50%), 아토피천식 예방관리(50%), 암 역학조사 등 근거 생산(70%)

- 민간보조: 만성질환 인식개선(100%), 만성질환 조기인지(100%),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100%)

- 지방정부 보조사업의 경우 재정여건이 양호한 대도시의 경우(예, 서울)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비 매칭을 높여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가 필요함

-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매칭 금액 조정 및 진료비·약제비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지방정부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지급대상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임

- 다만, 보건의료 관련 재정사업의 경우 서울 30%, 지방 50%로 보조율을 설정하고 있는바, 본 사업도 재정여건에 따른 차등 적용 필요

○ 과거 실적에 기반한 관성적 목표 설정에서 탈피하여, 성과지표 검토 필요

- 환자관리율 108% 달성은 성과로 보이나, 목표치(51%)가 과거 5년 평균치에 기반해 낮게 설정된 지표로 비칠 수 있음

- 투입 예산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위 지자체 평균 또는 국가 권고 목표치를 기준으로 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예산 투입의 명분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현재 정률 50%지원 방식에서 지방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한 보조율 제도개선이 필요함 - 현재 일률적인 50% 보조율에서 탈피하여, 국고보조율 지원방식을 기존 일원보조율(전국 50%)에서 이원보조율(서울 30%, 지방 50%)로 개선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건강조사 활용률' 지표를 고민할 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외에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의 활용률에 대한 적극적인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데이터 활용률(97%)이라는 성과지표에서 벗어나 지역 간 건강 격차 감소 등 실질적 보건 결과 지표 도입이 필요함 - 정체된 인식 개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체계를 검토하고, 데이터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고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종합평가 의견

○ 국가 보건 통계의 표준 및 정책 근거 생산의 핵심

-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한 본 사업은 전국 258개 보건소별로 표준화된 건강 지표를 생산하는 국가의 필수 사무로 인정됨

-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성과를 측정하는 전국 단위 지표인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정책적 정합성을 지님

- 지자체 자체 예산만으로는 조사의 객관성과 전국적 비교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국가 재정지원의 당위성이 크지만, 데이터 품질의 제고를 위해 조사방식은 통일하되, 재정지원은 지역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용 방안 검토 필요

○ 세부사업은 지자체와 매칭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다음과 같음

- 자치단체경상보조(보조율 50%): 지역사회건강조사(약 89억 원),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약 4.6억 원)

○ 조사 방식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대면 면접 조사 방식은 조사원 인건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음

- 2025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신뢰도 및 질제고를 위해 조사 품질, 참여 편의성 등의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조사대상자 전원 면접 조사 대신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사원 인건비와 부대비용 절감이 필요함

○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2.7%(282백만 원) 감액된 10,113백만 원임

- 지역사회건강조사 예산 감소(282백만 원)가 이뤄져서 표본·지표·질관리 등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어려움 예상, 지역사회건강조사 대표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지원 규모 유지 필요

○ 현재 일률적인 50% 보조율 적용방식을 개선하여, 재정 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의 보조율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비 매칭을 높여 중앙정부 재정 부담 완화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희귀질환자 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정상추진 - 본 재정사업은 건보재정과 연계하여 재정효율화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 측면에서도 적절 본인부담금 체계화 된 점이 인정됨 - 본인부담상한제 연계로 중앙 재정부담 완화와 지역 보조율 체계의 지속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인건비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2025년 271억 원에서 2026년 178억 원으로 34.2%(약 92.6억 원) 감소하는 등 본인부담상한제 연계 필요성 인정되며, 정상추진 필요 - 유전상담의 수가화 등 향후 건보 및 국고 재정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 신규 인력 증원(19명)외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EMR 연계 자동 등록 시스템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사업 운영 방식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이 필요함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크게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민간보조와 국고보조(지자체보조)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 민간경상보조은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17개소),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희귀질환자 쉼터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등임

- 자치단체경상보조 방식은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를 통해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서울 30%, 기타 지방 50% 국고보조율 적용)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주요 조치사항과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권역별 책임 의료 역할을 부여하여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졌고, 국회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지원 탈락자 비율을 감소(13.5%→10.6%)시켰음

- 국고와 건보재정 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국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핵심적인 제도 개선 추진한 점은 우수하며, 유전상담사 인력 예산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운영체계의 효율화 필요

-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연계로 중앙 재정부담 완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인건비 부담 개선을 위한 사업운영체계 개선 필요

○ 본 세부사업은 국회와 외부 평가에서 제기된 '지역 격차'와 '재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의료비 지원 사업에 연계한 것은 적절함

- 또한, 성과지표를 기존의 단순 통계에서 '환자 만족도' 중심의 결과지표로 변경한 점도 사업의 질적 관리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

○ 2026년 증원되는 등록전담인력(19명)의 성과를 단순 '건수'가 아닌 '진단 소요 기간 단축'이나 '미진단 질환의 최종 진단율'과 같은 투입 대비 산출(Outcome) 중심의 지표로 전환하여 예산 투입의 명분을 강화해야 함

- 물론 현재 등록사업은 초기단계로서 안정적 정착 및 확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성과지표 수립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기금존치평가의 지적 사항에 대한 환류 및 성과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사업 내용은 적정하며, 지원 규모도 적정함 - 예산 집행은 적정하며, 추진 전달체계는 효율적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적정하게 이뤄짐 - 기금존치평가의 지적 사항에 대한 환류는 완료되지 않았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 성과지표의 주기(2년)를 고려할 때 단년도 성과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상위정책의 목표 달성도, 국민 체감도 및 만족도,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됨

□ 종합평가 의견

○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유사중복 사업은 없음

-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상위 계획과 연계되어 정책 타당성이 인정됨
-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예산 외의 정책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유사중복에 해당하는 사업은 없음

○ 사업 내용이 적정하며, 지원 규모는 적정함

- 사업 내용과 국정과제, 상위계획 간 연계성이 있으며, 사업의 목표와 내용 간 정합성도 인정됨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과 비교할 때 이 사업의 보조율은 적정함

○ 예산 집행은 적정하며, 추진전달체계는 효율적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적정함

-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추진 전달체계는 효율적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규정과 점검, 모니터링도 적정함
- 기금존치평가의 지적 사항에 대한 환류는 완료되지 않았음

○ 성과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평가주기(2년)를 고려하고 사업의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 간 관계를 고려할 때 성과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단년도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하고, 당해연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 상위정책의 목표 달성도, 국민체감도 및 만족도, 재난안전사업 효과성이 인정됨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한센병환자관리지원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집행률은 내역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100%에 가까움 - 다만, 2026년 예산은 외국인 이동검진버스 교체 운영비용 등이 일시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2027년에는 일시적 증가요인을 제외하고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는 이용자 만족도로 설정됨. 보다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 만족도는 2024년에 신규 설정된 지표로 2024년과 2025년 모두 목표치를 80점으로 설정함. 실적은 2024년 81.8점, 2025년 85.4점으로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 - 유사한 소록도병원 고객만족도조사 목표점수가 88점인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동 사업은 한센병 환자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지원, 재활 지원, 민간단체 지원, 시설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감염병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

○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부 소관인 소록도병원관리사업과 한센환자치료사업이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소록도병원을 통해 직접 수행되는 구조인데, 동 사업은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한센병환자의 재활과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함

- 예산은 2025년 11,652백만원에서 2026년 12,920백만원으로 1,250백만원(10.7%) 증액됨. 증액은 외국인 이동검진버스 교체 운영비용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함. 전년 예산 규모 등을 비교하면 지원규모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등 내역사업별로 사업 추진 방식이 다양함. 전달체계는 각 내역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률은 100%로 유지되고 있음. 실집행률은 내역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9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집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성과지표로 2024년부터 한센시설 이용자 만족도(점수)를 설정하고 있음. 2024년과 2025년 모두 목표치를 80점으로 설정하였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024년과 2025년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또한, 소록도병원 고객만족도조사 목표점수가 88점이며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의 고객만족도 성과목표가 93점 내외임. 따라서, 한센시설 이용자 만족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6년 예산은 외국인 이동검진버스 교체 운영비용 등이 일시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2027년에는 일시적 증가요인을 제외하고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질병 연구 기반 조성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이 대체로 정상 추진 중이며 일부 사업의 운영 효율성 개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질병 위기(감염병·만성질환 등)에 대한 데이터·모형·분석 등 과학적 근거 생산과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은 공공재 성격이 강해서 당해 세부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질병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질병 대응 연구 및 기반 조성, 질병 데이터 개방·활용 및 평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의 내역사업 구성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지원규모는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매년 반복 편성되는 하수감시 운영 지원 규모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율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하수기반 감염병 예측 또는 예방 효과 등 결과 초점의 성과지표를 추가 개발하여 환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상 추진)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인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내역사업의 예산은 2025년 1,048백만원에서 2026년 1,194백만원으로 13.9% 증액되었음

- 이 보조사업은 주로 하수감시 사업을 위한 운영재료비를 지원하는데 2024년부터 재료비의 단가(73.3천원)와 병원체 수(5개)는 유지하면서 2026년 예산은 감시대상 하수처리장 수를 99개에서 105개로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음

- 당해 보조사업은 특별한 감액 사유가 없으며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 내용의 구성과 지원 규모는 적정함 - 세부 사업의 집행은 적정하며, 사업의 추진 체계도 효율적임 -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사업 평가 등 지적 사항에 대한 환류 체계를 명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국민체감도에 기여한 실적과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에 기여한 실적이 인정됨

□ 종합평가 의견

○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국정과제에 해당하며,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이 있음
-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으며, 국가의 비용 부담 의무가 명시됨
- 유사중복 사업은 없음

○ 사업 내용의 구성과 지원 규모는 적정함

- 본 사업은 국정과제, 상위 계획의 목표와 부합하게 기획되었음
- 직간접 수혜자의 범위와 수혜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었으며, 지원 규모는 적정함

○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체계는 효율적이며,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는 적정하게 이뤄짐.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한 환류 실적이 인정됨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은 99%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집행은 적정함
- 사업 추진 체계는 적절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는 규정과 절차, 실행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증빙되어 있음. 다만, e나라도움에서 부정수급 모니터링 대상 사업이 적발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한 환류 실적이 인정됨. 다만, 재난안전사업의 평가 지적 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등 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를 명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상위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됨

- 2개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음
- WHO 합동외부평가(JEE)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우수 성과를 입증하는 등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동 사업이 기여했다고 판단됨
- 감염병 위기 국민안심도 등 국민체감도에 기여한 실적은 인정됨
- 재난안전사업 효과성과 관련한 5개 영역의 증빙자료를 모두 인정함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보 조 유 형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내용 체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타당성이 있으며, 재정지원의 근거도 명확하고 유사중복은 없음 - 내역 사업별 사업 내용과 추진체계는 적정하지만, 내역 사업 간 이질성이 크고, 사업 범위도 방대하며, 전달체계도 상이하므로, 하나의 세부 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내역사업별로 수혜대상과 수혜자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지원 규모도 적정함 - 예산 집행은 적정하며, 부정수급 관리와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체계는 적정함 - 사업의 성과목표는 달성했으나, 최근 실적치를 고려할 때 차년도에는 도전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정책적 타당성이 있으며, 재정지원의 근거도 명확하고, 유사중복은 없음

- 사업의 목적은 명확하고 국정과제, 상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12개 내역 사업 중 4개 내역 사업(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신속대응,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가 명확하며, 그 외 내역 사업은 보조를 명시하는 등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유사중복 사업은 없음

○ 사업 내용은 상위계획에 부합하나, 내역 사업 구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또한, 사업의 수혜 대상에 고려한 재정 규모는 적정함

- 사업 내용은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구성됐으며, 내역 사업별로는 사업의 목표와 추진 전략이 명확하게 제시됨
- 그러나, 내역 사업 간 이질성이 크고, 사업 범위도 방대하며, 전달체계도 상이하므로, 하나의 세부 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내역 사업별 수혜 대상과 수혜자 수를 구체적이며, 지원 규모는 적정함

○ 집행의 효율성은 높고, 세 개의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도 적정하며, 평가 및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도 적정하게 이뤄졌음

- 예산 집행은 적정하게 이뤄졌음
- 사업의 추진 체계는 효율적으로 이뤄졌으며,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여지는 없음
-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 등의 근거가 명확하며, 부정수급 등 자체관리 노력이 있으며, 외부 적발 기관은 없음

○ 성과달성도는 우수하며, 국정과제 및 상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효과가 인정되고,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도 4개 영역을 인정함

- 세 개의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다만, 초과 달성 수준을 볼 때 차년도에는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사업 효과는 4개 영역에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재난안전에 이바지한 성과가 인정됨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손상예방관리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내역 사업을 세부사업과 정책 목표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내역 사업별 재정 수요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 내역 사업은 상위 정책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만, 정책 목표과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내용이 있음. 세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손상관리'와 연관된 내역 사업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내역 사업별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수요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과 지원 규모 등이 일관되지 않는 내역 사업(예,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함

□ 종합평가 의견

○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손상예방법」 시행(2025.1.)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손상예방 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인정되며, 국정과제, 상위계획과 연계됨
- 손상예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는 명확함
- 유사중복 사업은 없음

○ 사업 내용은 적정하며, 지원 규모도 적정함

- 사업내용이 정책 목표, 사업 목적에 부합하나,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함. 손상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업과 그 외 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에 편성했으나, 내역 사업 간 상호연계성은 미흡함
- 사업의 수혜대상의 범위는 명확하고, 재정 수요도 적정함

○ 예산 집행은 적정하나, 사업 추진체계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집행은 상당히 적정하나, 향후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명확하나, 사업의 추진체계와 자문기구가 연계되는 등 다소 복잡하므로, 일반 국민이 사업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도시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사업 자율 평가 및 국회,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이뤄짐. 다만, 2026년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는 하반기 추진 예정이므로, 추진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성과는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함

- 네 개의 성과지표는 대부분 성과목표치를 달성했으며, 1개 성과지표의 달성률만 99.9%임
-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낙성예방홍보영상'과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성과가 제고됨
- 재난사업 평가의 5가지 항목을 모두 인정함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병원체 자원은행 운영관리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 - 향후 사업 운영 시 사업 수행 성과 및 운영 실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차등 지원 기준 및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등 지원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의 보조사업은 임상, 동물유래 및 환경 등 다양한 분리원에서 분리된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감염병 원인균의 수집, 관리, 특성 분석, 장기보존 및 분양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및 국민보건 증진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됨

○ 보조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고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음

○ 본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며, 간접 수혜자는 일반 국민임. 직접 수혜자는 5개 기관으로 한정적이지만, 최종 수혜자는 국민으로 그 영향이 광범위함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 사업의 예산은 '24~'26년 600백만원으로 동일함. '26년 기준 바이러스2, 의진균1, 구강세균1, 인수공통감염병원인균1 총 5기관에 600백만원으로 정액보조 방식으로 지원됨

- 사업 시행 초기에는 민간수행기관의 장비·시설 등의 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율 100%의 정액보조가 이루어졌으나, 2024년 예산 편성 시 2023년 연차평가 결과(수행기관별 사업 추진 실적 등)를 반영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한 바 있음

- 2025년 및 2026년 예산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며 차등 지원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은 '23년 97.3%, '24년 100.0%, '25년 100.0%임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전문은행(민간기관) 등 관련 기관별 역할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전문은행(민간기관)은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대통령령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회를 거쳐 선정됨

○ 향후 사업 운영 시 사업 수행 성과 및 운영 실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차등 지원 기준 및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등 지원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부 처	질병관리청
사 업	질병관리청 정보화 기반운영(정보화)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국립결핵병원 EMR 시스템 운영은 민간 전문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상시 수행하는 위탁형 구조이므로, 현행 보조사업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비목 전환(사업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조 방식은 계약 기반 성과관리(SLA, 장애·보안 대응 기준 등)와 책임 귀속의 직접성이 위탁계약 방식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비목 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이 필요함 - 부처는 행정위임위탁규정을 개정('26.2.19., 제52조의2 신설)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27년 전환을 확약한 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전환 시에는 SLA 설정, 장애·보안 대응 기준 명확화 등 계약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설계하여 서비스 연속성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의견

○ 본 세부사업은 전산장비 유지관리, 공통기반·대표누리집 운영, 보안시스템 운영, 국립결핵병원 EMR 시스템 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EMR 운영은 민간경상보조 비목에 해당함. 본 평가는 해당 보조비목의 연장 필요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임

○ (재정사업 필요성) 국립결핵병원 EMR/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MEDIRO) 운영은 공공병원의 진료·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고, 구 시스템의 한시적 유지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재청구·이의신청 대응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필요성이 제시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 2025년 계획은 구 시스템 최소 유지와 MEDIRO 운영·유지관리, 인프라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ITSM 기반 운영 통제 및 만족도 관리 체계 등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됨. 사업비 분담률은 질병관리청(2개 병원)과 보건복지부(7개 병원)의 소속 병원 수 기준 2:7로 산정되어 합리적 기준이 확인됨

○ (집행 효율성) 보조금 관리 절차와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부정수급 적발이력 없이 외부 회계감사 결과도 적정하여 현행 체계 내에서의 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실질적 수행 구조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상시 운영을 담당하는 위탁형 사업에 해당하므로, 현행 보조 방식보다는 계약 기반 성과관리(SLA, 장애·보안 기준 등)와 책임 귀속의 직접성이 확보되는 위탁계약 방식이 전달체계로서 보다 적합함. 이와 관련하여 부처는 행정위임위탁규정을 개정('26.2.19., 제52조의2 신설)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한바, '27년 민간위탁 전환을 위한 구조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 있음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요구사항 처리율, 종합 만족도 개선(65.7→72.3점, 전년 대비 6.6점 상승) 등 운영 성과는 일정 수준 확인되며, 전문기관의 상시 운영 역량에 기반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종합적으로, EMR 운영의 공공성과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고, 사업계획·집행관리·성과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으나, 상시 운영형 사업의 전달체계로서 현행 보조 방식보다 위탁계약 방식이 보다 적합하므로, '27년 민간위탁으로의 비목 전환(사업개선)이 필요함

- 전환 시에는 SLA 설정, 장애·보안 대응 기준 명확화 등 계약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설계하여 서비스 연속성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평가요약표

부 처	새만금개발청
사 업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보 조 유 형	지자체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사업개선(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 이번 배수지 공급 물량은 옥구 급수구역 계획 계획 급수인구 대비 적고,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주여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용수시설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필수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과거 토지보상 및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해 공정 지연이 발생된 바 있어 철저한 집행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이 필요 - 성과지표를 누적건설공정률 외에 예산 집행률(%), 준공기한 준수 여부, 총사업비 증감률(예산 초과 여부) 등 현실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로 제시할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이 사업은 새만금 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배수지 2개소(옥구배수지, 계화배수지)를 건설하여 새만금 권역별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새만금사업법」 제1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한 보조사업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의 수혜 대상을 일반국민으로 하고 이들에게 새만금 지역내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도 부처는 최초 직접 수혜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SOC사업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배수지 공급 물량은 옥구 급수구역 계획 계획 급수인구 대비 적고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에서 정주여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용수시설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필수기반시설이라는 부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원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 예산집행률은 '24-'25년의 경우 집행률 100%를 달성하고 있으나 과거 토지보상 및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해 공정 지연이 발생된 바 있어 철저한 집행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이 필요

-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7년 적기 준공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부처 의견을 수용하고,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등에 따라 28년에 수변도시가 완공될 예정이고,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간선관로도 완공될 예정이므로 옥구배수지는 '27년 적기 준공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필요

○ 상수도시설건설공정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당해 회계연도 본 예산의 95%를 집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누적공정률을 산정하게 되면 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대부분 100% 이상 달성도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큼

○ 이번 배수지 공급 물량은 옥구 급수구역 계획 계획 급수인구 대비 적고,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주여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용수시설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필수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과거 토지보상 및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해 공정 지연이 발생된 바 있어 철저한 집행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이 필요

○ 성과지표를 누적건설공정률 외에 예산 집행률(%), 준공기한 준수 여부, 총사업비 증감률(예산 초과 여부) 등 현실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로 제시할 필요

평가요약표

부 처	새만금개발청
사 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보 조 유 형	민간자본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2025년 실집행률이 26.4%에 불과하게 된 원인 및 실효적 대책 마련 시급하며 특히 보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공정 및 집행 관리가 요구됨 · 사업 초기 착수 지연과 행정 절차 정체로 인해 예산의 70% 이상이 유휴 자금화되는 구조적 부실이 있었음에도 다가오는 27년 사업 준공시 까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함 · 2025년도 이월액과 실제 공사 소요 기간을 정밀 재산정하여, 2026년 예산의 이월, 후행년도로 재배분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감액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27년도 사업 종료시까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공정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인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설계 완료 및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필요

□ 종합평가 의견

○ (재정사업 필요성)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국가전략산업·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책과 연계된 거점으로, 대용량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력인프라 구축의 정책적 필요성은 높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장기 수요와 계통 안정성을 고려한 방향 전환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 변전소 - 광역계통"으로 연결되는 비교적 명료한 구조로 사업계획은 적정함

- 다만, 총사업비가 단기간 500억대에서 1,000억대 수준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안 비교, 비용-편익 분석, 수요 시나리오 검증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2026년 예산 요구 44억 역시 2025년 실집행·공정계획 대비 다소 여유 있게 편성된 측면이 있음

○ (집행 효율성) 2025년 예산은 상당 부분 교부되었으나 실제 공사·토지매입 등 실집행이 지연되고 있어, 전력설비 사업 특유의 설계·인허가 리스크가 집행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공정률·인허가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예산이 선반영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이월·불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사업은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초기 단계로, 아직 변전소·송전선로 등 실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공정률 외에 가시적인 성과(전력공급 안정성 개선, 신규 입주기업 가동지원 등)는 제한적임

- 이차전지 산업 자체가 글로벌 수요 둔화·환경 갈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특화단지 조성·가동 속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공사 진척과 입주·가동 현황에 따라 성과를 재점검하는 것이 타당함

○ 공사비 상승 및 계약 유찰 등 시장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목표치에 근거한 예산 편성을 반복하고 있어 요구액의 감액 불가피

- 2025년도 실집행률이 26.4%로 극히 저조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결여되었으며, 대규모 예산 유휴화가 발생함. 현장의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액을 실제 공정에 맞춰 현실화해야 함

- 사업은 유지하되 2025년 실집행·공정계획을 반영해 2026년 예산요구액 중 일부를 감액·후행 연도로 재배분하고, 동시에 ① 변전소 방식 전환 및 총사업비 증액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원가·타당성 검증, ②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패키지 내에서의 역할 정립, ③ 공정률·결과지표(전력공급 효과, 투자·고용 유발 등)에 기반한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함

부처별·사업별 평가의견서

해양경찰청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평가요약표

부 처	해양경찰청
사 업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보 조 유 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지적사항	
	유	무
1. 재정사업 필요성		
1-1. 정책적 타당성		O
1-2. 재정지원 필요성		O
1-3. 유사중복		O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O
2-2. 지원규모 적정성		O
3. 집행 효율성		
3-1. 집행 적정성	O	
3-2.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O
3-3. 부정수급 등 관리 적절성		O
3-4. 환류 및 개선노력		O
4.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4-1. 성과 달성도·우수성	O	

최종 평가결과 (O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O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 성과관리체계의 고도화: 목표설정의 도전성과 복합지표의 투명성 확보			

□ 종합평가 의견

○ 본 사업은 계절 및 이용객 변동에 따른 연안사고의 상시위험, 해양경찰의 현장대응 특성 활동을 종합하면, 재난 안전 공공서비스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고, 재정지원의 지속 필요성이 큼

- 보조사업(연안안전지킴이)은 연안사고예방법상 근거가 명시된 예방 순찰, 지도 보조 기능으로, 성수기 연안 이용객 집중을 고려할 때 한시적 운영보다 안정적 운영모델 설계가 적정해보임

○ 집행 측면에서 간접집행사업인 연안안전지킴이 보조사업도 99.3%로 높은 실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달체계도의 운영 안정성이 확인되고, 보조사업은 공모-선정-교부-점검-정산의 명확한 구조임을 확인함. 다만, 일부 집행부진 사유가 반복됨에 따라 높은 실집행률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은 없고, 현장점검 및 e-나라도움 기반 모니터링, 정산 정보 공시가 수행된 것을 제시됨. 다만, 23년 연장평가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부재, 점검 기준 절차 미흡을 제도개선 분야로 지적되었음. 이에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이 제시되어 개선노력이 확인되나, 운영규정의 제도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민·관·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연안사고 발생 저감률(%), 연안사고 예방활동율(%)을 활용하고 있으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은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지속적인 성과달성도가 확인됨. 다만, 목표치 산출이 최근 3년평균 대비 일정 증가추세를 반영한 방식이라 목표의 도전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의 성과지표인 지킴이 배치지역의 사고저감, 예방활동 기반 지표는 23년 보조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단일지표 중심 문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개선방향과 정합적임

- 일자리사업 평가기준에 기반한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은 취약계층참여율 지표에서 상대적을 높은 성과수준을 유지하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지표에서는 전체 일자리 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달성하고 있음이 확인됨

2026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III

기획예산처
보조사업평가단